

Foreword	1	책을 펴내면서
Preface	4	서문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10	1. 독립선언문 (1776)
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1776)	13	2. 버지니아 권리 장전 (1776)
The Virginia Act For Establishing Religious Freedom (1786)	17	3.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 (1786)
The Northwest Ordinance (1787)	20	4. 북서법령 (1787)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787)	23	5. 미국의 헌법 (1787)
The Federalist Papers: Federalist No. 10	38	6. 제임스 메디슨, 연방주의자 논문 No. 10 (1787)
The Bill of Rights (1791)	48	7. 권리 장전 (1791)
Othe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51	8. 그 밖의 헌법 수정
George Washington: Farewell Address (1796)	54	9. 조지 워싱턴: 고별 연설 (1796)
Thomas Jefferson: Inaugural Address (1801)	63	10. 토머스 제퍼슨: 첫 취임사 (1801)
James Monroe: The Monroe Doctrine (1823)	68	11. 제임스 먼로: 먼로 독트린 (1823)
James Polk: Manifest Desting	71	12. 포크 대통령의 첫 연례교서 (1845)

Woodrow Wilson: Fourteen Points Speech (1918)	132	26. 우드로 윌슨: 14개항 (1918)
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s" Speech (1941)	137	27.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네 가지 자유" 연설 (1941)
The Atlantic Charter (1941)	143	28.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서양 헌장 (1941)
Harry S. Truman: The Truman Doctrine (1947)	145	29. 해리 트루먼: 트루먼 독트린 (1947)
Dwight D. Eisenhower: Atoms for Peace (1953)	149	30.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평화를 위한 원자력 (1953)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rown v. Board of Education (1954)	153	31.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 (1954)
John F. Kennedy: Inaugural Address (1961)	161	32. 존 F. 케네디: 취임사 (1961)
John F. Kennedy: American University Address (1963)	166	33. 존 F. 케네디: 아메리칸 대학교 연설 (1963)
Martin Luther King, Jr.: "I Have a Dream" Speech (1963)	172	34. 마틴 루터 킹 목사: 링컨대통령 기념관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3)
Lyndon B. Johnson: Civil Rights Statements (1964)	176	35. 린든 B. 존슨: 민권 연설 (1964)
Jimmy Carter: United Nations Address (1977)	180	36. 카터 대통령: 유엔 연설 (1977)
U.S. Supreme Court 25 Historic Decisions	184	37. 미국 대법원의 역사적 25가지 판결

Daniel Webster: Second Reply to Robert Hyane (1830)		13. 다니엘 웹스터: 로버트 헤인에 대한 제 2차 답변 (1830)
Andrew Jackson: Proclamation (1832)	78	14. 앤드루 잭슨: 포고문 (1832)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1835)	84	15.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835년)
Ralph Waldo Emerson: Self-Reliance (1841)	86	16. 랠프 왈도 에머슨: 자립 (1841년)
Introduction to the Court Opinion on the Dred Scott Case (1857)	96	17.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1857)
Abraham Lincoln: First Inaugural Address (1861)	106	18. 에이브러햄 링컨: 제 1차 취임사 (1861)
Abraham Lincoln: State of the Union Address (1862)	110	19. 에이브러햄 링컨: 연례교서 (1862)
Abraham Lincoln: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1863)	112	20. 에이브러햄 링컨: 노예 해방 선언 (1863)
Abraham Lincoln: The Gettysburg Address (1863)	116	21. 에이브러햄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 (1863)
Abraham Lincoln: Second Inaugural Address (1865)	118	22. 에이브러햄 링컨: 제 2차 취임사 (1865)
Theodore Roosevelt: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1907)	121	23. 데어도어 루즈벨트: 천연 자원의 보존 (1907)
Woodrow Wilson: First Inaugural Address (1913)	125	24. 우드로 윌슨: 첫 취임연설 (1913)
Woodrow Wilson: Mobile Speech (1913)	130	25. 우드로 윌슨: 모빌 연설 (1913)

FOREWORD/ 책을 펴내면서

The Public Affairs Section of the U.S. Embassy Seoul prepared this booklet to provide accurate, comprehensive and objective information about American history and democracy.

For Americans, democracy is not only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as Abraham Lincoln said, it is also a limitation on majoritarian rule. Because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by settlers from other nations who had different political, social, religious and economic beliefs, in order to become one nation, the country's founders did something no other society had ever done -- they set up elaborate safeguards to ensure that the majority did not become a tyrant by force of numbers. This is the ideal that out of many will emerge one. American democracy is about many people seeking to find common ground.

As you will see from this booklet, America's search for democracy has not been perfect. To look at American democracy is to look at a country in the midst of a continual search that many believe must never stop. Democracy is not so much an end result, but the process by which a nation and its people strive towards the ideal.

This booklet consists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country's search for democracy. The term "document" has been broadly interpreted to include court decisions, legislative acts, presidential decrees, essays, letters, speeches, an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Constitution?the bedrocks of American political democracy. These materials chart America's search for itself, a process that has continued for almost four centuries.

An electronic version of this booklet Living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and Democracy" can be found at 본 책자는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되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라 함은 에이브러험 링컨이 천명했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주의원칙에 대한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가로서의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각양각색의 정치·사회·경제 이념을 신봉하는 이주민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국의 건국시조들은 당시 세계 어느 사회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했다. 즉 다수 집단이 숫자의 횡포에 기댄 독재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으로부터 단일한 의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건국의 이상이었다. 미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구성원들로부터 공통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책자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독자들도 깨닫게 되겠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미국의 노력이 완벽했던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들여다 본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결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 부단한 노력의 도상에 서있는 한 나라를 들여다 보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는 최종적인 결과물로서가 아니라한 국가와 그 국민들이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과정 자체에 보다 큰 의미가 있다.

본 책자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에 관련된 자료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란 폭넓게 해석되어 법원판결, 법률, 대통령령, 에세이, 서한, 연설문을 비롯하여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인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모두 포괄한다. 이 자료들은 근 4세기에 걸쳐 지속되어온 과정인 미국의 정체성 탐구노력을 보여준다.

"Info-pediaUSA" URL: www.americancorners.or.kr.

Dr. Kim Su Nam, Directo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Center, and all of the staff of the Public Affairs Section of the U.S. Embassy Seoul, who worked on the Korean Textbook Project, wish you every success in your study of the United States. We also extend our thanks to Kwun Dae-Suk and Jeon Yun-Woo who worked on the design and publishing of the booklet.

We appreciate your feed-back about this booklet. Please contact us via the contact information listed on the back cover page.

April 2006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irs Section U.S. Embassy, Seoul 본 책자『살아있는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서(Living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and Democracy)』는 'Info-pediaUSA'(www.americancorners.or.kr)에서 전자문서 포맷으로도 제공된다.

자료정보센터(Information Resource Center) 관장을 맡고 있는 김수남 박사 이하 한국텍스트북프로젝트(Korean Textbook Project) 참가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 전직원은 미국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독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본 책자의 디자인과 출판에 도움을 준 권대석님과 전윤우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본 책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환영하며, 뒤 표지에 인쇄된 연락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06년 4월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 자료정보센터

Archive of American Public Address / 미국 대중연설 자료 모음

This volume is updated from an original compilation of noteworthy documents by Dr. Henry Steele Commager, one of America's leading historians and the editor of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a compendium of more than 500 state papers, famous speeches, and significant court decisions. Dr. Commager wrote the introduction to this pamphlet and the commentaries that precede the individual documents. Because of space limitations, a number of the documents have been considerably abridged.

이 책은 500여건의 국가 문서, 유명한 연설문과 주요 법정 판결문 등을 요약해 놓은 "미국 역사문서"의 편집자인 저명한 미국 사학자 헨리 스틸 코메이저가 편찬한 "살아 있는 미국 역사 문서" 에 최신 문서와 미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추천한 문서를 추가한 것이다. 코메이저 박사는 이 책자의 원문과 개별 문서의 앞에 나오는 소개문을 썼다. 지면의 제한 때문에 많은 문서가 대폭 축약되었다. The United States is at once a very new nation and a very old nation. It is a new nation compared with many other countries, and it is new, too, in the sense that it is constantly being renewed by the addition of new elements of population and of new States. But in other senses it is old. It is the oldest of the "new" nations; the first one to be made out of an Old World colony. It has the oldest written constitution, the oldest continuous federal system, and the oldest practice of self-government of any nation.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eatures of America's youth is that the whole of its history belongs in the period since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The whole of its history is, therefore, recorded: indeed, it is safe to say that no other major nation has so comprehensive a record of its history as has the United States, for events such as those that are lost in the legendary past of Italy or France or England are part of the printed record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merican record is not only comprehensive; it is immense. It embraces not only the record of the colonial era and of the Nation since 1776, but of the present fifty States as well, and the intricate network of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and Nation. Thus, to take a very elementary example, the report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fill over 400 volumes, and the reports of some States are almost equally voluminous: the reader who wants to trace the history of law in America is confronted with several thousand stout volumes of legal cases.

No one document, no handful of documents, can properly be said to reveal the character of a people or of their government. But when hundreds and thousands of documents strike a consistent note, over more than a hundred years, we have a right to say that that is the keynote. When hundreds and thousands of documents address themselves in the same ways, to the same overarching problems, we have a right to read from them certain conclusions which we can call national

미국은 매우 새로운 국가임과 동시에 매우 오래된 국가이다. 미국은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새로운 나라이고, 또한 새로운 인구 요소와 새로운 주가 추가되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새로운 나라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볼때 미국은 오래된 국가이다. 미국은 신생국 중 가장오래된 나라이며, 구 세계 식민지에서 태어난 최초의 신생국이다. 미국은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 가장 오래 계속된 연방제도, 그리고 가장오래된 자치정부의 관행을 갖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젊은 미국의 특징 중 하나는 미국 역사 전체가 인쇄기 발명 이후 시대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체 역사는 기록에 남아 있으며, 실로 어떠한 주요 국가도 미국만큼 완전한 역사의 기록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 역사에서 전설적인 과거로 잊혀진 부분도 미국 역사에서는 인쇄된 기록의 일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역사는 완전할 뿐 아니라 방대하기도 하다. 그것은 식민시대, 1776년 이후의 독립국 시대의 기록뿐 아니라 또한 현 50개 주의 기록과, 주들과 국가 사이의 복잡한 관계의 기록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 기초적 예만 들어보아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 기록만 해도 400권 이상에 달하며, 어떤 주의 대법원 판결 기록 조차 이에 못지않을 정도의 방대한 양이다. 미국 법률사 연구에 뜻을 둔 독자는 수 천 권의 두툼한 판례문과 씨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느 하나 또는 몇 개의 문서가 어느 한 국민 또는 정부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이야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몇 십만 권의 문서가 100여년 이상에 걸쳐 일관된 어조를 띄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하나의 기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만 건의 문서가 동일한 주요 문제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민족성이라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역사적 문서는 그 국민성의 특별한

characteristics.

The historic documents presented here have been chosen not to illustrate particular traits of national character, but for their intrinsic importance. Yet who that reads them can doubt that they did, in fact, illustrate some pervasive traits of character, some dominant and persistent preoccupations? What are some of the preoccupations, or some of the traits of character, that we can fairly read out of these documents?

First, that men make government; that government comes from below, not above; that its purpose is to advance the happiness and the welfare of men and that it has, in the long run, no other or higher purpose.

Second, that government so constructed is a limited government, limited in its power, and in the scope of its power. And there are some things government cannot do, some areas where it may not enter.

Third, that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limiting government is by law; that all government should be government under the law and by the law; that no men or institutions are above the law.

Fourth, that in a highly complex society, made up of many states and many peoples, it is essential to formalize governmental arrangements. That the nature and power of government therefore should be set forth in written constitutions; that these constitutions are paramount; that their provisions are to be judged by courts; and that the decisions of courts are to be respected and observed by all branches of government and all elements of society.

Fifth, that such principles as self-government, or freedom, or social welfare, are not static but dynamic; that each generation will broaden its concept of the nature of these principles; that the function of government is to enable society to enlarge the areas of self-government, of freedom, and of social welfare.

Sixth, that just as no man is an island unto himself, so no nation is an island unto itself, but part of a larger community of n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is peculiarly dependent on and related to other peoples and other nations; that it has obligations to the community of nations which it cannot ignore and which it must and does fulfill.

Seventh, that all government-and indeed all social

특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고유의 중요성 때문에 선택된 것들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를 읽고서 누가 이들 문서가 몇 가지 퍼져있는 성격적 특징을, 또는 몇 가지 지배적이면서 끈질긴 선입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이의를 달 것인가? 이들 문서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선입관 혹은 몇 가지 성격적 특징이란 무엇일까?

첫째, 인간이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로부터가 아닌 밑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정부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외의 또는 그 보다 높은 목적은 없는 것이다.

둘째, 그렇게 해서 구성된 정부는 그 권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권력의 한계가 제한되어 있는, 제한된 정부라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될 분야도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를 제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법률이라는 관념이다. 모든 정치는 법에 따른, 법에 의한 정치가 되어야 하며, 법 위에는 어떠한 인간이나 기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여러 주,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고도로 복잡한 사회에서는, 통치제도를 성문화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격 및 권한이 성문헌법으로 명문화된다. 이들 헌법은 최고가 되며, 그 규정은 법원에 의해 심의된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삼부(三府) 및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의해 존중되고 준수된다.

다섯째, 자치, 자유, 사회복지와 같은 원칙들이 정적이 아닌, 동적이라는 것이다. 각 세대는 이들 원칙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확대할 것이며, 정부의 기능은 사회가 자치, 자유, 사회복지의 분야를 확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여섯째, 어느 누구도 혼자만의 섬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국가도 혼자만의 섬이 아니라, 더 큰 국제사회의 일부라는 것이다, 미국은 남달리 여타 국민과 여타 국가들에 의존해 있고, 관련을 맺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이를 꼭 수행해야 하며, 또 수행할 수 있다.

일곱째, 모든 정치는, 그리고 모든 사회활동은, 도덕질서의 일부이다. 이러한 활동은 도덕적 원칙과 activities-are part of a moral order; that they rest upon moral principles and standards; and that to be valid they must be consistent with that order and observe those standards.

Henry Steele Commager

기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러한 질서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 그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헨리 스틸 코메이저

Foreword	1	책을 펴내면서
Preface	4	서문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10	1. 독립선언문 (1776)
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1776)	13	2. 버지니아 권리 장전 (1776)
The Virginia Act For Establishing Religious Freedom (1786)	17	3.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 (1786)
The Northwest Ordinance (1787)	20	4. 북서법령 (1787)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787)	23	5. 미국의 헌법 (1787)
The Federalist Papers: Federalist No. 10	38	6. 제임스 메디슨, 연방주의자 논문 No. 10 (1787)
The Bill of Rights (1791)	48	7. 권리 장전 (1791)
Othe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51	8. 그 밖의 헌법 수정
George Washington: Farewell Address (1796)	54	9. 조지 워싱턴: 고별 연설 (1796)
Thomas Jefferson: Inaugural Address (1801)	63	10. 토머스 제퍼슨: 첫 취임사 (1801)
James Monroe: The Monroe Doctrine (1823)	68	11. 제임스 먼로: 먼로 독트린 (1823)
James Polk: Manifest Desting	71	12. 포크 대통령의 첫 연례교서 (1845)

Daniel Webster: Second Reply to Robert Hyane (1830)		13. 다니엘 웹스터: 로버트 헤인에 대한 제 2차 답변 (1830)
Andrew Jackson: Proclamation (1832)	78	14. 앤드루 잭슨: 포고문 (1832)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1835)	84	15.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835년)
Ralph Waldo Emerson: Self-Reliance (1841)	86	16. 랠프 왈도 에머슨: 자립 (1841년)
Introduction to the Court Opinion on the Dred Scott Case (1857)	96	17.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1857)
Abraham Lincoln: First Inaugural Address (1861)	106	18. 에이브러햄 링컨: 제 1차 취임사 (1861)
Abraham Lincoln: State of the Union Address (1862)	110	19. 에이브러햄 링컨: 연례교서 (1862)
Abraham Lincoln: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1863)	112	20. 에이브러햄 링컨: 노예 해방 선언 (1863)
Abraham Lincoln: The Gettysburg Address (1863)	116	21. 에이브러햄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 (1863)
Abraham Lincoln: Second Inaugural Address (1865)	118	22. 에이브러햄 링컨: 제 2차 취임사 (1865)
Theodore Roosevelt: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1907)	121	23. 데어도어 루즈벨트: 천연 자원의 보존 (1907)
Woodrow Wilson: First Inaugural Address (1913)	125	24. 우드로 윌슨: 첫 취임연설 (1913)
Woodrow Wilson: Mobile Speech (1913)	130	25. 우드로 윌슨: 모빌 연설 (1913)

Woodrow Wilson: Fourteen Points Speech (1918)	132	26. 우드로 윌슨: 14개항 (1918)
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s" Speech (1941)	137	27.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네 가지 자유" 연설 (1941)
The Atlantic Charter (1941)	143	28.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서양 헌장 (1941)
Harry S. Truman: The Truman Doctrine (1947)	145	29. 해리 트루먼: 트루먼 독트린 (1947)
Dwight D. Eisenhower: Atoms for Peace (1953)	149	30.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평화를 위한 원자력 (1953)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rown v. Board of Education (1954)	153	31.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 (1954)
John F. Kennedy: Inaugural Address (1961)	161	32. 존 F. 케네디: 취임사 (1961)
John F. Kennedy: American University Address (1963)	166	33. 존 F. 케네디: 아메리칸 대학교 연설 (1963)
Martin Luther King, Jr.: "I Have a Dream" Speech (1963)	172	34. 마틴 루터 킹 목사: 링컨대통령 기념관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3)
Lyndon B. Johnson: Civil Rights Statements (1964)	176	35. 린든 B. 존슨: 민권 연설 (1964)
Jimmy Carter: United Nations Address (1977)	180	36. 카터 대통령: 유엔 연설 (1977)
U.S. Supreme Court 25 Historic Decisions	184	37. 미국 대법원의 역사적 25가지 판결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 1. 독립선언문(1776)



As the war between Great Britain and her American colonies, which had begun in April 1775, continued, the prospects for reconciliation faded, and complete independence became the goal of the colonies. On June 7, 1776, at a meeting of the Continental Congress, Richard Henry Lee, of Virginia, introduced a resolution stating that the "colonies are, and of right ought to be, free and independent States." On June 10, a committee was appointed to prepare an independence proclamation. The actual writing was assigned to Thomas Jefferson. On July 4, the Declaration was agreed to and sent to the legislatures of the thirteen States for signatures and ratification.

The Declaration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a profound and eloquent statement of political philosophy-the philosophy of democracy and of freedom; second, a statement of specific grievances designed to prove that George III had subverted American freedoms; and third, a solemn statement of independence and pledge of support for that policy.

1775년 4월에 시작된 대영제국과 아메리카 식민지들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화해전망이 사라지고 완전독립이 식민지들의 목표가 되었다. 1776년 6월 7일 대륙의회 회의 석상에서 버지니아의 리처드 헨리가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주가 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결의문을 상정했다. 이어 6월10일 독립선언문을 마련하기 위해 한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초안작성은 토마스 제퍼슨에게 위촉되었다. 7월 4일 선언문이 채택되어 서명과 비준을 받기 위해 13개 주의 각 입법부로 보내졌다.

이 선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부분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정치철학의 심오하고도 웅변적인 성명이고, 둘째 부분은 조지 3세가 미국의 자유 사항들을 전복시켰음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불만들을 진술했고, 그리고 셋째 부분은 독립과 독립정책에 대한 지지를 다짐하는 엄숙한 성명이다.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one people to dissolve the political bands

인간사의 진행과정에서 한 국민이 자기들을 타자에게 얽매이게 하는 정치적 속박을 해체하고, which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and to assume the Powers of the earth, the separate and equal station to which 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entitle them, a decent respect to the opinions of mankind requires that they should declare the causes which impel them to the separation.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Prudence, indeed, will dictate that Governments long established should not be changed for light and transient causes; and accordingly all experience hath shown, that mankind are more disposed to suffer, while evils are sufferable, than to right themselves by abolishing the forms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But when a long train of abuses and usurpations, pursuing invariably the same Object evinces a design to reduce them under absolute Despotism, it is their right, it is their duty, to throw off such Government, and to provide new Guards for their future security. -- Such has been the patient sufferance of these Colonies; and such is now the necessity which constrains them to alter their former Systems of Government. The history of the present King of Great Britain is a history of repeated injuries and usurpations, all having in direct object the establishment of an absolute Tyranny over these States. To prove this, let Facts be submitted to a candid world...

In every stage of these Oppressions We have Petitioned for Redress in the most humble terms: Our repeated Petitions have been answered only by repeated injury. A Prince, whose character is thus marked by every act which may define a Tyrant, is unfit to be the ruler of a free people.

그리하여 스스로 지상의 열강들에 끼어 자연의 법칙과 신의 법칙에 따른 독립적이고 평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는 인류의 의견들을 예절 있게 존중하면서 자신들이 독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선언해야만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 바.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에는 삶, 자유 및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는 것,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들 사이에 정부들이 수립되며, 이들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연유한다는 것,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그러한 목적들을 파괴하는 것이 될 때에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버려 새 정부를 수립하되. 인민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원칙들에 입각하여 그 토대를 마련하고 또 그런 형태 하에 권력을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라는 것 등이다. 사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지 오래된 정부는 사사로운 일시적 이유로 바꿔서는 안되며, 또 모든 경험에 의하면 인류는 악폐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동안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정부) 형태를 폐기함으로써 그러한 악폐들을 시정하느니 오히려 참고 견디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항상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부조리와 권리 침해를 끊임없이 일삼음으로써 국민을 절대적인 전제 하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분명할 때는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를 떨쳐버리고 자신들의 미래의 안전을 지켜줄 새로운 수호자들을 마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듯 이들 식민지들은 참을성 있게 고통을 견디어 왔으며, 부득이 구 정부 체제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대영제국의 현 국왕의 역사는 오직 이들 주에 대해 절대적 전제체제를 부과하려는 직접적인 목적만을 지닌 위해와 권리침해가 반복된 역사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정한 세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제시하는 바이다...

(주: 이어 이 문서는 영국 왕에 대한 불만사례를 약 25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그는 공공 복지를 위해 필요한 법률들의 재가를 거부하였으며,"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등등) Nor have We been wanting in attention to our British brethren. We have warned them from time to time of attempts by their legislature to extend an unwarrantable jurisdiction over us. We have reminded them of the circumstances of our emigration and settlement here. We have appealed to their native justice and magnanimity, and we have conjured them by the ties of our common kindred to disavow these usurpations, which, would inevitably interrupt our connections and correspondence. They too must have been deaf to the voice of justice and of consanguinity. We must, therefore, acquiesce in the necessity, which denounces our Separation, and hold them, as we hold the rest of mankind, Enemies in War, in Peace Friends.

We, therefo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General Congress, Assembled, appealing to the Supreme Judge of the world for the rectitude of our intentions, do, in the Name, and by Authority of the good People of these Colonies, solemnly publish and declare, That these United Colonies are, and of Right ought to be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at they are Absolved from all Allegiance to the British Crown, and that all political connection between them and the State of Great Britain, is and ought to be totally dissolved; and that as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ey have full Power to levy War, conclude Peace, contract Alliances, establish Commerce, and to do all other Acts and Things which Independent States may of right do. And for the support of this Declaration, with a firm reliance on the Protection of Divine Providence, we mutually pledge to each other our Lives, our Fortunes, and our sacred Honor.

Source: F. N. Thorpe, ed., Federal and State Constitutions, vol. 1 (1909), 3.

이러한 모든 억압 행위에 대해 우리는 가장 겸허한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을 청원하고 했다. 그러나 청원할때마다 그 대답은 반복된 위해(危害)였다. 이렇듯폭군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행동에 의해 그성격이 드러난 군주는 자유시민의 통치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국 동포들에게 주의를 불충분하게 환기시켜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회가 우리에게 부당한 관할권을 뻗치려는 시도에 대해 수시로 경고해 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곳에서의 우리의 이주와 정착상황을 일깨워 주곤 했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감과 관용에 호소했고, 우리의 혈연에 호소하여, 우리들 상호관계와 통신을 불가피하게 저해할 그 같은 권리침해를 거부하도록 간청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정의와 동일혈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들을 여타 인류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싸울 때는 적으로 대하고, 평화 시에는 우방으로 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미국 대표들은 소집된 전체대륙의회에서, 우리 의도의 결백성을 굽어보시는 세계 최고의심판자에게 호소하면서, 이들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의 권한에 의해, 다음과 같이엄숙하게 발표하고 선언한다. 즉, 이들 연합 식민지는자유독립 주들이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하며, 그들은영국국왕에 대한 일체의 충성으로부터 해방되며,그들과 대영제국 사이의 모든 정치적 결합이 전면해체되며,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하며, 그리고 그들은자유독립국으로서 전쟁하고 강화하고, 동맹 맺고통상하고, 그리고 독립 국가들이 행할 권리가 있는모든 행동과 일을 수행할 완전한 권한을 보유한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섭리의 보호에 굳게 의지하면서 이 선언을 지지하기 위해 서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및 우리의 신성한 명예를 걸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1776) / 2. 버지니아 권리장전 (1776)

Bills of Rights had been long familiar to both Englishmen and Americans. Thus, as early as 1641 the Colonv of Massachusetts had adopted a "Body of Liberties," and many of the American colonies rejoiced in declarations of rights and freedoms in their charters. All American colonials, too, knew the history of Magna Carta, of the Petition of Rights and the Bill of Rights in the mother country. But the American bills of rights were the first in all history to be part of the Constitution, and thus paramount law. The first and most famous of these bills was the one drawn up by George Mason and adopted by the Virginia Assembly on June 12, 1776. This eloquent statement of fundamental rights was widely copied not only in America, but abroad; it was especially popular in France and contributed to the later French Declarations of the Rights of Man.

권리장전은 영국인이나 미국인에게 오래 전부터 익숙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1641년에 벌써 "자유권법"을 채택했으며, 미국의 여러 식민지는 자기들의 헌장에 권리와 자유의 선언을 삽입하였다. 미국의 모든 식민지 주민들은 모국 (영국)의 '대헌장', '권리청원' 및 '권리장전'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권리장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법인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이 장전중에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조지 메이슨이 기초하여 1776년 6월 12일 버지니아 의회가 채택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되었다. 기본권에 대한 이 웅변적인 성명은 미국에서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널리모방하는 바가 되었다.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그 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기여하게 되었다.

June 12, 1776

- I. That all men are by nature equally free and independent, and have certain inherent rights, of which, when they enter into a state of society, they cannot, by any compact, deprive or divest their posterity; namely, the enjoyment of life and liberty, with the means of acquiring and possessing property, and 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 and safety.
- II. That all power is vested in, and consequently derived from, the people; that magistrates are their trustees and servants, and at all times amenable to them.
- III. That government is, or ought to be, instituted for the common benefit,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people, nation or community; of all the various modes and forms of government that is best, which is capable of producing the greatest degree of happiness and safety and is most effectually secured against the danger of maladministration; and that, whenever any government

- 1.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게 자유롭고도 자주적이며 일정한 천부의 권리들을 갖고 있는 바, 인간들이 한 사회의 성원이 될 때, 예컨대 생명과 자유의 향유와 같은 그러한 권리를 후손들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 2.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인민으로부터 나오며, 그리고 행정 장관들은 인민들의 수탁자이자 종복이며 인민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 3. 정부는 인민, 국가, 혹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의 편익과 보호와 안보를 위하여 제도화되며, 혹은 마땅히 제도화 되어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정부라도 부적절하거나 혹은 상기의 목적들에 위배될 때에는 그 공동체의 대다수 성원은 그들의 정부를 개혁하거나 개편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의심의 여지도 없고, 양도할 수 없고 무효화 할 수 없다.

shall be found inadequate or contrary to these purposes, a majority of the community hath an indubitable, unalienable, and indefeasible right to reform, alter or abolish it, in such manner as shall be judged most conducive to the public weal.

IV. That no man, or set of men, are entitled to exclusive or separate emoluments or privileges from the community, but in consideration of public services; which, not being descendible, neither ought the offices of magistrate, legislator, or judge be hereditary.

V. That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of the state should be separate and distinct from the judicative; and, that the members of the two first may be restrained from oppression by feeling and participating the burthens of the people, they should, at fixed periods, be reduced to a private station, return into that body from which they were originally taken, and the vacancies be supplied by frequent, certain, and regular elections in which all, or any part of the former members, to be again eligible, or ineligible, as the laws shall direct.

VI. That elections of members to serve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in assembly ought to be free; and that all men, having sufficient evidence of permanent common interest with, and attachment to, the community have the right of suffrage and cannot be taxed or deprived of their property for public uses without their own consent or that of their representatives so elected, nor bound by any law to which they have not, in like manner, assented, for the public good.

VII. That all power of suspending laws, or the execution of laws, by any authority without consent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is injurious to their rights and ought not to be exercised.

VIII. That in all capital or criminal prosecutions a man hath a right to demand the cause and nature of his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accusers and witnesses, to call for evidence in his favor, and to a speedy 4. 어떠한 인간이나 혹은 인간집단이나 그의 공동체로부터 독점적 혹은 별도의 이득이나 특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공공봉사에 대한 보수의 경우는 제외되나, 이 역시 그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으며, 또 행정장관직이나 입법의원직이나 법관직도 세습되어서는 안 된다.

5. 국가의 입법권과 행정권은 분립되어야 하고, 또 사법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괴로움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억압행위를 삼갈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며 민간인의 지위로 되돌아가게 하여 그로 인한 공석이 정규적인 선거에 의해 충원되도록 해야 한다.

6. 의회에서 국민대표로서 봉직할 사람들의 선거는 자유선거라야 하며, 모든 인간은 투표권을 가지며, 이들의 동의 없이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공용(公用)을 위해 그들의 재산을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이 동의하지 않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도 구속 받을 수 없다.

7.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을 역행하는 모든 권력은 어떠한 당국이라도 국민 대표들의 동의 없이 행사 할 때는 국민들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행사해서는 안 된다.

8. 인간은 모든 사형선고나 사형선고를 받기 앞서자기에 대한 고발의 이유와 성격을 알리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고발자들과 증인들과 대면할 권리가 있고, 또 공평무사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 없이는 유죄로 판정할 수 없고 또 자신의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9. 과도한 보석금을 의당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또 과도한 벌과금도 부과해서는 안되고 또 잔인하고 기이한 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위법사실의 증거 없이 의심스러운 장소를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his vicinage, without whose unanimous consent he cannot be found guilty, nor can he be compelled to give evidence against himself; that no man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by the law of the land or the judgment of his peers.

IX. That excessive bail ought not to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X. That general warrants, whereby any officer or messenger may be commanded to search suspected places without evidence of a fact committed, or to seize any person or persons not named, or whose offense is not particularly described and supported by evidence, are grievous and oppressive and ought not to be granted.

XI. That in controversies respecting property and in suits between man and man, the ancient trial by jury is preferable to any other and ought to be held sacred.

XII. That the freedom of the press is one of the greatest bulwarks of liberty and can never be restrained but by despotic governments.

XIII. That a well regulated militia, composed of the body of the people, trained to arms, is the proper, natural, and safe defense of a free state; that standing armies, in time of peace, should be avoided as dangerous to liberty; and that, in all cases, the military should be under strict subordination to, and be governed by, the civil power.

XIV. That the people have a right to uniform government; and therefore, that no government separate from, or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of Virginia, ought to be erected or established within the limits thereof.

XV. That no free government, or the blessings of liberty, can be preserved to any people but by a firm adherence to justice, moderation, temperance, frugality, and virtue and by frequent recurrence to fundamental principles.

수색하거나 혹은 지명되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적혀있는 일반 체포영장은 고통과 압박을 주는 것이며,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11. 인간 대 인간의 송사에서는 배심에 의한 옛날식 재판이 다른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12. 언론의 자유는 위대한 자유의 보루 중 하나이며, 전제적인 정부가 아닌 이상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

13.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규율 없는 국민군은 자유국가를 위한 적절하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패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군부는 문관의 권한에 엄격히 예속시켜야만 한다.

14. 인민은 동일한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때문에 버지니아의 정부와는 별도의 독립된 정부가 같은 정부테두리 안에 수립되거나 확립되어서는 안된다.

15. 어떠한 인민도 정의, 절제, 자제, 절약 및 덕행에 대한 확고한 신봉에 의해서만 자유정부 혹은 자유의 축복을 보전할 수 있다.

16. 종교, 즉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의무과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오직 이성과 신념에 의해서만 지시될 수 있는 것이며 힘이나 폭력으로 지시될 수는 없다. XVI. That religion, or the duty which we owe to our Creator and the manner of discharging it, can be directed by reason and conviction, not by force or violence; and therefore, all men are equally entitled to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conscience; and that it is the mutual duty of all to practice Christian forbearance, love, and charity towards each other.

The Virginia Act For Establishing Religious Freedom (1786) / 3. 버지니아의 종교자유령 (1786)

At the time of the American Revolution the Church of England was the Established Church in all the southern colonies under British rule in North America. One of the most remarkable consequences of the Revolution wa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American States-and the new United States-took the lead in the western world in this policy of separation. Although 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of 1776 had announced the principle of religious liberty, actual disestablishment of the Church did not come until after the Revolution. There was bitter opposition to disestablishment, not only from the Anglicans but also from other dissenting churches, and it was not until January 16, 1786, that the combined efforts of James Madison and Thomas Jefferson succeeded in pushing through in Virginia this famous statute of religious liberty. Jefferson, who all his life exalted intellectual freedom, regarded this statute as one of his most notable contributions. It was widely translated, and achieved world renown.

미국 혁명 당시 북미의 영국통치를 받는 전체 남부 식민지에서는 영국교회가 국교의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 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 중 하나가 국가와 교회의 분리다. 즉. 미국의 각 주와 신생 미국은 서방세계에서는 매 먼저 이 정교분리 정책을 취한 것이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이 종교자유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이 같은 분리가 실제로 실현된 것은 독립전쟁 이후의 일이다. 이 분리에 대해서는 성공회 측에서 뿐 아니라 기타 교회들에서도 맹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리하여 1786년 1월 16일 제임스 매디슨과 토마스 제퍼슨의 협력에 의해 비로소 이 유명한 종교 자유령이 버지니아에서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평생을 통해 지적 자유를 고양시켰던 제퍼슨은 이 법령을 자신의 가장 두드러진 기여의 하나로 간주했다. 이 법령은 널리 번역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Well aware that Almighty God hath created the mind free; that all attempts to influence it by temporal punishments or burdens, or by civil incapacitations, tend only to beget habits of hypocrisy and meanness, and are a departure from the plan of the Holy Author of our religion, who being Lord both of body and mind, yet chose not to propagate it by coercions on either, as was in his Almighty power to do; that the impious presumption of legislators and rulers, civil as well as ecclesiastical, who, being themselves but fallible and uninspired men, have assumed dominion over the faith of others, setting up their own opinions and modes of thinking as the only true and infallible, and as such endeavoring to impose them on others, hath established and maintained false religions over the greatest part of the world, and through all time; that to compel a man to furnish contributions of money for the propagation of opinions which he disbelieves, is sinful and 전지전능하신 신이 인간의 심령(心靈)을 자유롭도록 창조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처벌이나부담 혹은 공민자격 박탈에 의해 인간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는 오직 위선과 야비의습성만을 낳게 하기 쉬우며, 따라서 우리 종교의거룩한 창시자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짓인바, 그분은영육의 주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힘을 지니셨음에도불구하고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영(靈)이나육(肉) 어느 편에도 압박을 가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며, 민간인이건 성직자건 입법자들과 통치자들이스크로 오류 없고 비범함을 자처하면서 타자의 신앙을지배하여 자기들 자신의 견해와 사고방식 만이진실되고 오류 없는 유일한 것으로 만들어 타자에게 강요하려 애씀으로써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항시 거짓

tyrannical; that even the forcing him to support this or that teacher of his own religious persuasion, is depriving him of the comfortable liberty of giving his contributions to the particular pastor whose morals he would make his pattern, and whose powers he feels most persuasive to righteousness, and is withdrawing from the ministry those temporal rewards, which proceeding from an approbation of their personal conduct, are an additional incitement to earnest and unremitting labors for the instruction of mankind; that our civil rights have no dependence on our religious opinions, more than our opinions in physics or geometry; that, therefore, the proscribing any citizen as unworthy the public confidence by laying upon him an incapacity of being called to the offices of trust and emolument, unless he profess or renounce this or that religious opinion, is depriving him injuriously of those privileges and advantages to which in common with his fellow citizens he has a natural right; that it tends also to corrupt the principles of that very religion it is meant to encourage, by bribing, with a monopoly of worldly honors and emoluments, those who will externally profess and conform to it; that though indeed these are criminal who do not withstand such temptation, yet neither are those innocent who lay the bait in their way; that to suffer the civil magistrate to intrude his powers into the field of opinion and to restrain the profession or propagation of principles, on the supposition of their ill tendency, is a dangerous fallacy, which at once destroys all religious liberty, because he being of course judge of that tendency. will make his opinions the rule of judgment, and approve or condemn the sentiments of others only as they shall square with or differ from his own; that it is time enough for the rightful purposes of civil government, for its officers to interfere when principles break out into overt acts against peace and good order; and finally, that truth is great and will prevail if left to herself, that she is the proper and sufficient antagonist to error, and has nothing to fear from the conflict, unless by human interposition disarmed of her natural weapons, free argument and debate, errors ceasing to be dangerous when it is permitted freely to contradict them.

종교들이 확립 유지되어 왔으며, 남들이 신봉하지 않는 견해들을 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기금(寄金) 하도록 강요함은 죄악이자 횡포이며, 심지어 자신의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들 중 누구라고 지적해서 지지를 강요하는 것조차도. 신도가 자신의 도덕적 귀감으로 떠받들고, 의(義)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힘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는 특정 목사에게 기부하는 평안한 자유를 빼앗는 짓이며 또, 그 목사들이 신도들의 지지에서 우러나온 일시적인 보상, 즉 인류를 가르치는 정성어린 꾸준한 노고에 대한 추가적인 보람을 주는 보상을 빼앗는 짓이며, 우리의 민권은 우리의 견해가 물리학이나 기하학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종교적 견해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때문에 어떤 시민이 이런 저런 종교적 견해를 공언하거나 규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신임과 보수를 받는 직책에 취임할 능력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공표함은 그가 그의 동포 시민들과 같이 천부의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을 해롭게 박탈하는 짓이며, 이는 종교적 견해를 고백하고 또 이에 순응하게 될 사람들을 속세의 명예와 보상의 독점으로 매수함으로써, 오직 종교가 권장하려는 그 원칙들을 타락케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로되, 그들의 앞 길에 유혹의 미끼를 놓아두는 자도 죄 없는 것은 아니며, 민정장관이 자신의 권력으로 의견의 분야에 개입하고, 또 그러한 의견이 좋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러한 분야의 직업 혹은 원칙들의 전파를 억제함을 용납하는 것은 위험한 오류이며, 이는 즉각 모든 종교의 자유를 파괴한다. 왜냐하면, 그 자는 그 경향의 심판관이 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판단의 척도로 삼을 것이고 또 오직 사람들이 자기 견해와 부합되는지 틀리는지에 따라서 타자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도 비난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며, 민정(民政)의 의로운 목적들에 따라 그의 관리들은, 원칙들이 깨어져 평화와 질서에 역행하는 명백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이에 개입해야 할 충분한 시기이며, 그리고 끝으로, 진실은 위대하며 그 자체로 내버려두면 득세하게 마련이고 오류에 대한 Be it therefore enacted by the General Assembly, That no man shall be compelled to frequent or support any religious worship, place, or ministry whatsoever, nor shall be enforced, restrained, molested, or burdened in his body or goods, nor shall otherwise suffer on account of his religious opinions or belief; but that all men shall be free to profess, and by argument to maintain, their opinions in matters of religion, and that the same shall in nowise diminish, enlarge, or affect their civil capacities.

And though we well know this Assembly, elected by the people for the ordinary purposes of legislation only, have no powers equal to our own and that therefore to declare this act irrevocable would be of no effect in law, yet we are free to declare, and do declare, that the rights hereby asserted are of the natural rights of mankind, and that if any act shall be hereafter passed to repeal the present or to narrow its operation, such act will be an infringement of natural right.

적절하고도 충분한 적대자이고 또 인간이 진리의 천부의 무기인 자유논쟁과 토론을 강제로 빼앗기지 않는 한 싸움을 두려워 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한편 오류는 자유로운 반박이 허용될 때 위험하지 않게 된다.

이에 총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즉, 누구나 어떤 종교적 예배나 장소나 목사에게 자주 가라거나 혹은 지지하도록 일체 강제해서는 안되며, 또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신체나 재산상으로 강요하거나 억제하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며, 그밖에 그 자신의 종교적 견해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해서도 안되며, 모든 인간은 종교문제에 대한 자기 견해를 자유로이 공표하게 해야 하고 논쟁에서 자유로이 주장하게 해야 하며,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결코 인간은 그들의 민권행사를 축소 당하거나 확대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민이 오직 통상적인 입법목적을 위해서 선출된 이 의회가 우리와 동일한 권력을 갖고 구성될 앞으로의 의회들의 행동을 제한할 아무런 권한도 없음을 알고 있으나 우리의 이 행동이 철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함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선언할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선언에서 주장된 제 권리는 인간의 천부의 권리로서, 앞으로 지금의 선언을 철회하기 위해서나 그의 실천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법령을 통과시킨다면 그러한 행동은 천부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The Northwest Ordinance (1787) / 4. 북서법령 (1787)



The general principles for American expansion westward on the continent had been laid down in Thomas Jefferson's Ordinance of April 23, 1784, but, since it did not provide in detai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structure, it was never put into effect. The Northwest Ordinance of July 13, 1787, which applied to the government of territory settled northwest of the Ohio River, fundamentally followed Jefferson's Ordinance. Its immediate impulse came from members of the Ohio Company of Associates and of the Society of the Cincinnati, who wished to establish colonies in the Ohio country. The authorship of the Ordinance is a matter of controversy, but it seems probable that Rufus King and Nathan Dane were its principal authors.

1784년 4월 23일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법령이 미대륙의 서부확장을 위한 '일반 원칙'들을 설정해 놓았지만, 그 법령은 행정조직 구조의 제정에 관한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유효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오하이오강 북서 지역에 정착한 영토의 정부에 적용되었던 1787년 7월 13일의북서법령은 기본적으로 제퍼슨 대통령의 법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 법령을 제정하고자 한 직접적인 충동은오하이오 지방에 식민지를 개설하기를 원했던오하이오 동인회(Ohio Company of Associates)회원들과 신시내티 협회(the Society of the Cincinnati)회원들로부터 나왔다. 이 법령의 기안자가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도루퍼스 킹(Rufus King)과 네이단 데인(Nathan Dane)이 주요 기안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Be it ordained by the United States in Congress assembled, That the said territory, for the purposes of temporary government, be one district, subject, however, to be divided into two districts, as future circumstances may, in the opinion of Congress, make it expedient.

소집된 미국 의회에서 잠정적인 통합 목적을 위해 모든 주가 본 속령을 1개의 구역으로, 그러나 장래의 사정에 따라 의회의 여론이 본 속령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2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도 있게 하는 법령이 제정되기를

Article I.

No person, demeaning himself in a peaceable and orderly manner, shall ever be molested on account of his mode of worship or religious sentiments, in the said territory.

Article II.

The inhabitants of the said territory shall always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and of the trial by jury; of a proportionat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in the legislature; and of judicial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e common law. All persons shall be bailable, unless for capital offenses, where the proof shall be evident or the presumption great. All fines shall be moderate; and no cruel or unusual punishments shall be inflicted. No man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or property, but by the judgment of his peers or the law of the land; and, should the public exigencies make it necessary, for the common preservation, to take any person's property, or to demand his particular services, full compensation shall be made for the same. And, in the just preservation of rights and property, it is understood and declared, that no law ought ever to be made, or have force in the said territory, that shall, in any manner whatever, interfere with or affect private contracts or engagements, bona fide, and without fraud, previously formed.

Article III.

Religion, morality, and knowledge, being necessary to good government and the happiness of mankind, schools and the means of education shall forever be encouraged. The utmost good faith shall always be observed towards the Indians; their lands and property shall never be taken from them without their consent; and, in their property, rights, and liberty, they shall never be invaded or disturbed, unless in just and lawful wars authorized by Congress; but laws founded in justice and humanity, shall from time to time be made for preventing wrongs being done to them, and for preserving peace and friendship with them.

요망한다.

이에 전술 기관(의회)은 하기 조항들이 원래의 모든 주(13주)와 본 속령의 주민 및 주들 간의 맹약 조항(Articles of Compact)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리고 이 맹약 조항은 공동의 승인에 의하지 않는 한 영구히 개정될 수 없는 것임을 확정 선언했다. 즉,

제1조. 본 속령에서 온건하고 정숙한 몸가짐으로 처신하는 어는 누구도 자기의 예배의식이나 종교적 감정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2조. 본 속령의 주민들은 인간 보호령, 배심재판, 입법부에서의 인구비례 대표제, 그리고 보통법의 관례에 따른 사법절차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언제나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증거가 명백하거나 추정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사형에 관계될만한) 중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보석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벌금은 적절해야만 하며, 그리고 잔인하거나 흔하지 않은 특별한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유나 혹은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안되며, 다만 자기 동배(同輩)들 의 판단이나 혹은 본 속령의 법률에 의해서만 박탈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긴급사태가 전체 주민들의 공공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재산 징발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특별한 봉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권리와 재산을 공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이라도 선의이고, 그리고 사전에 맺어진 부정 없는 개인의 계약이나 합의를 방해하거나 혹은 이에 영향을 주는 법률이 본 속령에서 제정되거나 혹은 효력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이해되고 선언 되었다.

제3조. 선정(善政), 인류의 행복, 교육, 그리고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종교, 도덕, 그리고 지식(학문)은 영구히 장려되어야 한다. 원주민(인디언)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선의가 언제나 지켜져야 하며, 그들의 토지와 재산은 그들의 승인 없이 결코 탈취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 권리 및 자유는 미합중국의의회가 승인한 공정하고 정당한 전쟁을 하는 경우가

Article IV.

The said territory, and the States which may be formed therein, shall forever remain a part of this Confedera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bject to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to such alterations therein as shall be constitutionally made; and to all the acts and ordinances of the United States in Congress assembled, conformable thereto.

Article V.

There shall be formed in the said territory, not less than three nor more than five States.

Article VI.

There shall be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 in the said territory, otherwise than in the punishment of crimes whereof the party shall have been duly convicted: Provided, always, That any person escaping into the same, from whom labor or service is lawfully claimed in any one of the original States, such fugitive may be lawfully reclaimed and conveyed to the person claiming his or her labor or service as aforesaid.

아닌 이상 결코 침해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원주민들에게 저질러지는 사악한 행위를 방지하고, 인디언들과의 평화와 우호를 보존하기 위해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법률들이 수시로 제정되어야 한다.

제4조. 본 속령 및 본 속령 내 형성될 모든 주는 영구히 미합중국 연합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과 이 조항의 합헌적으로 이루어진 수정 조항들, 그리고 소집된 미합중국 의회의 모든 제정법 및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본 속령 내에는 3개 내지 5개 주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6조.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속령 내에서 노예제도는 물론 비자발적 노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원래의 모든 주(13주) 중 어느 주에서 법에 의해 노동 혹은 봉사가 요구되고 있는 자가 본 속령으로 도주해 왔을 경우, 이러한 도망자에 대한 합법적 반환이 요구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도망자는 전술한 노동 혹은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인도될 수 있다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787) / 5. 미국의 헌법 (1787)

When the colonies' first attempt at national government, formed under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proved unsuccessful in welding the thirteen original States into a unified nation, the American people adopted the present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world's oldest national constitutions, it became the fundamental law of the land on March 4, 1789. A few years later the first ten amendments, the so-called Bill of Rights, were added, to be followed during the next century and a half by several more amendments.

연합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하에 형성되었던 최초의 중앙 정부가 초창기의 13개 주를 묶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드는데 실패하자 미국 국민들은 현미국 헌법을 채택했다. 세계 최고(最古) 헌법의 하나인미국 헌법은 1789년 3월 4일 미국의 기본법이 되었다. 수년 후, 이른바 권리장전인 첫 10개 헌법 수정조항이추가된 뒤, 그 후 1세기 반 동안 대 여섯 개의수정조항이 추가되었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ticle I

Section 1.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Section 2.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chosen every second Year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

No Person shall be a Representativ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wenty five Years, and been seven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in which he shall be chosen.

Representatives and direct Tax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which may be included within this Un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which



전 문

우리 미국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며, 전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우리 현 세대와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제 1 조

제1항. 본 헌법에서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의회에 귀속되며, 미국 의회는 상원 (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다.

제2항. 하원은 2년마다 각 주 주민이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 선거인은 주의회의 가장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o the whole Number of free Persons, including those bound to Service for a Term of Years, and excluding Indians not taxed, three fifths of all other Persons. The actual Enumer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first Meeting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every subsequent Term of ten Years, in such Manner as they shall by Law direc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exceed one for every thirty Thousand, but each State shall have at Least one Representative; and until such enumeration shall be made, the State of New Hampshire shall be entitled to choose three, Massachusetts eight,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one, Connecticut five, New-York six, New Jersey four, Pennsylvania eight, Delaware one, Maryland six, Virginia ten, North Carolina five, South Carolina five, and Georgia three.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from any State, the Executive Authority thereof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oose their Speaker and other Officers; and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Section 3.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chosen by the Legislature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Immediately after they shall be assembled in Consequence of the first Election, they shall be divided as equally as may be into three Classes. The Seats of the Senators of the first Class shall be vac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second Year, of the secon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fourth Year, and of the thir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sixth Year, so that one third may be chosen every second Year; and if Vacancies happen by Resignation, or otherwise, during the Recess of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the Executive thereof may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Legislature, which shall then fill such Vacancies.

다수의 입법기관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누구든지 연령이 만 25세에 달하지 못했거나, 미국의 시민으로서 7년이 채 못되었거나, 또한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하원의원 수와 직접세는 미국에 가입한 각 주의 인구 수에 따라 각 주에 배당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않은 원주민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 밖의 모든 인원의 5분의 3을 더하여 산출한다. 인구 수 산정은 제1회 미국 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고, 그 후에는 매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 의원의 수는 인구 3만 명에 대해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인구 수가 산출 될 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 아일랜드주와 프라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어느 주의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원은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임명하고 탄핵권을 전유한다.

제3항. 상원은 각 주의 입법부가 선거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상원의원이 첫 선거에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 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반으로 나눈다. 제 1반의 의원은 2년 만기로서 그 의석을 비워야 하며, 제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Years, and been nine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for which he shall be chosen.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esident of the Senate, but shall have no Vote, unless they be equally divided.

The Senate shall choose their other Officers, and also a President pro tempore, in the Absence of the Vice President, or when he shall exercis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 be on Oath or Affirma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ried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Judgmen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but the Party convicted shall nevertheless be liable and subject to Indictment, Trial, Judgment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Section 4. The Times, Places and Manner of holding Elections for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be prescribed in each State by the Legislature thereof; but the Congress may at any time by Law make or alter such Regulations, except as to the Places of choosing Senators.

The Congress shall assemble at least once in every Year, and such Meeting shall be on the first Monday in December, unless they shall by Law appoint a different Day.

Section 5. Each House shall be the Judge of the Elections, Returns and Qualifications of its own Members,

2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반의 의원은 6년 만기로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매 2년마다 개선(改選)될 수 있게 한다. 어떤 주의회가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주의회의 다음 회기에 보결 의원이 선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령이 만 30세에 미달하거나,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못하거나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그러나 표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상원은 의장 이외의 직원을 선출하고 또 부통령이 결원으로 있을 때, 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상원은 모든 탄핵 권한을 전유한다. 동 목적으로 회합시, 상원위원은 선서 또는 확약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심의의 경우, 대법원장이 심의를 주재한다. 누구든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탄핵 소송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미국에서의 명예직, 촉탁직, 또는 영리직을 보유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에 미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을 받은 자는 이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항. 상원위원과 하원위원을 선거할 시일,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는 제외된다.

미국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소집되어야 한다. 집회 날짜는 법률로서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한, and a Majority of each shall constitute a Quorum to do Business; but a smaller Number may adjourn from day to day, and may be authorized to compel the Attendance of absent Members, in such Manner, and under such Penalties as each House may provide.

Each House may determine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punish its Members for disorderly Behavior, and, with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expel a Member.

Each House shall keep a Journal of its Proceedings, and from time to time publish the same, excepting such Parts as may in their Judgment require Secrecy; and the Yeas and Nays of the Members of either House on any question shall, at the Desire of one fifth of those Present, be entered on the journal.

Neither House, during the Session of Congress,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adjourn for more than three days, nor to any other Place than that in which the two Houses shall be sitting.

Section 6.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receive a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to be ascertained by law, and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They shall in all Cases, except Treason, Felony and Breach of the Peace, be privileged from Arrest during their Attendance at the Session of their respective Houses, and in going to and returning from the same; and for any Speech or Debate in either House, they shall not be questioned in any other Place.

No Senator or Representative shall, during the Time for which he was elected, be appointed to any civil Off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have been created, or the Emoluments whereof shall have been increased during such time;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Member of either House during his Continuance in Office.

Section 7. All Bills for raising Revenue shall origin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the Senate may 12월 첫번째 월요일로 정한다.

제5항.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의 경우,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 할 수 있으며, 또 각 원에서 정한 방법과 벌칙에 따라서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권한이 부여된다.

각 원은 의사규칙을 결정하여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축출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며, 각 원에서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시로 발표해야 한다. 각 원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의 찬반의 수를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미국 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도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는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하고 있는 곳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6항. 상·하원의원은 법률로 확정되는데 따라 직무에 대한 보수를 미국 국고에서 지급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특별 중죄 및 치안 교란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 출석 중이거나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의에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않는다.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증액되는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되지 못한다. 또한 미국의 공직에 있는 자는 누구나 재직 중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제7항. 세입 징수에 관한 법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의되어야 한다. 단, 상원은 그 법안을 다른 법안에 대한 것과 같이 수정을 가하여 이를 제의 하거나 동의 propose or concur with amendments as on other Bills.

Every Bill which shall have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shall, before it become a Law,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he approve he shall sign it, but if not he shall return it with his Objections to that House in which it shall have originated, who shall enter the Objections at large on their Journal, and proceed to reconsider it. If after such Reconsiderations two thirds of that House shall agree to pass the Bill, it shall be sent, together with the Objections, to the other House, by which it shall likewise be reconsidered, and if approved by two thirds of that House, it shall become a Law. But in all such Cases the Votes of both Houses shall be determined by Yeas and Nays, and the Names of the Persons voting for and against the Bill shall be entered on the Journal of each House respectively. If any Bill shall not be returned by the President within ten Days (Sunday excepted) after it shall have been presented to him, the Same shall be a Law, in like Manner as if he had signed it, unless the Congress by their Adjournment prevent its Return, in which Case it shall not be a Law.

Every Order, Resolution, or Vote to which the Concurr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be necessary (except on a question of Adjournment)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before the Same shall take Effect, shall be approved by him, or being disapproved by him, shall be repassed by two thirds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Rules and Limitations prescribed in the Case of a Bill.

Section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o borrow Money on the credit of the United States;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할 수 있다.

상 · 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안은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이에 서명하고 만약 승인하지 않는 때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 받은 의원은 전체 이의사항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재심의 결과,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가결하는 때에는 해당 의원은 이 법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에 송부해야 한다. 다른 원에서는 이 법안을 심의하여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하는 때에는 이 법안은 법률로서 성립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어떤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고 10일 이내에 (일요일 제외) 대통령이 이를 의회로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률로 성립된다. 단, 미국 의회가 휴회하여 이를 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는 법률로 성립되지 않는다.

상·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나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만약 대통령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안에 관하여 규정된 규칙과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재가결해야 한다.

제8항. 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 바, 미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단, 모든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에 동일하여야 한다.

- 미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할 권리.
- 외국, 주 상호간, 원주민 종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To establish an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 and uniform Laws on the subject of Bankruptc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o coin Money, regulate the Value thereof, and of foreign Coin, and fix the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To provide for the Punishment of counterfeiting the Securities and current Coin of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Post Offices and post Roads;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To constitute Tribunals inferior to the Supreme Court;

To define and punish Piracies and Felonies committed on the high Seas, and Offenses against the Law of Nations;

To declare War,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and make 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

To raise and support Armies, but no Appropriation of Money to that Use shall be for a longer Term than two Years;

To provide and maintain a Navy;

To make Rules for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 of the land and naval Forces;

To provide for calling forth the Militia to execute the Laws of the Union, suppress Insurrections and repel Invasions;

To provide for organizing, arming, and disciplining, the

권리.

- 미국 전체에 공통된 동일한 귀화규정과 파산문제에 관한 동일한 법률을 제정할 권리.
- 화폐를 주조하고 미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할 권리.
- 유가증권과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법규를 정할 권리.
 - 우체국과 우편물 수송 도로를 설치할 권리.
- 일정 기간 동안 저작가의 저술과 발명가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케 하여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할 권리.
 - 대법원에 예속하는 하급 법원을 조직할 권리.
- 공해상의 해적행위 및 그 밖의 중죄와 국가 법률에 위반하는 죄를 정하고 그것을 처벌할 권리.
- 전쟁을 선포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 모병(募兵)하고 군대를 지원할 권리. 단, 이 목적을 위한 경비 충당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해군을 조직하고 유지할 권리.
- 지상군과 해군의 통수 및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 미국의 법률을 시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국민군을 소집하는데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 국민군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국민군 중 군 복무하는 자를 통수하는데 관한 규칙을

Militia, and for governing such Part of them as may 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reserving to the States respectively, the Appointment of the Officers, and the Authority of training the Militia according to the discipline prescribed by Congress;

To exercise exclusive Legislation in all Cases whatsoever, over such District (not exceeding ten Miles square) as may, by Cession of particular States, and the Acceptance of Congress, become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exercise like Authority over all Places purchased by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in which the Same shall be, for the Erection of Forts, Magazines, Arsenals, dock-Yards, and other needful Buildings;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thereof.

Section 9. The Migration or Importation of such Persons as any of the States now existing shall think proper to admit, shall not be prohibited by the Congress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but a Tax or duty may be imposed on such Importation, not exceeding ten dollars for each Person.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No Capitation, or other direct, Tax shall be laid, unless in Proportion to the Census or Enumeration herein before directed to be taken.

No Tax or Duty shall be laid on Articles exported from any State.

정할 권리. 단, 국민군의 장교를 임명하고 의회가 규정하는 규율에 따라 국민군을 훈련시키는 권한은 각 주에 주어짐.

- 특정한 주가 양도하고 미국 의회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소재지로 되는 지구(면적 10마일 평방을 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탄약고, 병기고,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한 부지로서 주 입법부의 승인을 얻어 매수한 모든 장소에 대해 유사 권한을 행사함.

- 이상 기술한 여러 권리와 이 헌법에 의하여 미국 정부, 정부부처, 또는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다른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도 적당한 일체의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리.

제9항. 현존하는 어떤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에 대해 미국 의회는 1808년 이전에는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과세할 수 있다.

인체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있어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할 수 없다.

국민자격 박탈법 또는 소급법은 통과될 수 없다.

인두세 또는 그 밖의 직접세는 미리 규정된 인구조사나 계산에 비례하지 않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떠한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통상이나 세입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떠한 주의 항구에 대해서도 다른 주에서 의무적으로 입항 시키거나, 출항 수속을 하거나, 관세를 지불케 할 수 No Preference shall be given by any Regulation of Commerce or Revenue to the Ports of one State over those of another; nor shall Vessels bound to, or from, one State, be obliged to enter, clear or pay Duties in another.

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and a regular Statement and Account of the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all public Money shall be published from time to time.

No Title of Nobility shall be gra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or Trust under them,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accept of any present, Emolument, Office, or Title, of any kind whatever, from any King, Prince or foreign State.

Section 10. No State shall enter into any Treaty, Alliance, or Confederation;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coin Money; emit Bills of Credit, make any Thing but gold and silver Coin a Tender in Payment of Debts;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 facto Law, or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or grant any Title of Nobility.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lay any Imposts or Duties on Imports or Exports, except what may be absolutely necessary for executing its inspection Laws: and the net Produce of all Duties and Imposts, laid by any State on Imports or Exports, shall be for the Use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nd all such Laws shall be subject to the Revision and Control of the Congress.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Congress, lay any Duty of Tonnage, keep Troops, or Ships of War in time of Peace, enter into any Agreement or Compact with another State, or with a foreign Power, or engage in War, unless actually invaded, or in such imminent Danger as will not admit of delay.

Article II

없다.

국고금은 법에 의한 세출승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출될 수 없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정식 회계 계산서를 수시로 공포하여야 한다.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유급 또는 위임에 의하여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증여,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항. 어느 주도 어떠한 조약, 동맹관계, 또는 연합관계를 체결하지 못하며,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지 못하며,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금화 및 은화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채무 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자격 박탈법이나 소급법이나 계약상의 채무를 훼손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또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못한다.

어느 주라도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 수입은 미국 국고에서 사용케 해야 한다. 또 미국 의회가 이와 같은 모든 주 법을 수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어느 주도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톤(tonnage) 세를 부과하거나 평시(平時)에 군대나 군함을 배치하거나,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거나, 현실적으로 침공을 당하고 있거나 사태가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할 경우가 아니면 교전할 수 없다.

제 2 조

제1항.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 귀속된다. 대통령의

Section 1.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shall hold his Office during the Term of four Years, and, together with the Vice President, chosen for the same Term, be elected, as follows

Each State shall appoint, In such Manner as the Legislature thereof may direct, a Number of Electors, equal to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to which the State may be entitled in the Congress: but no Senator or Representative, or Person holding an Office of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ppointed an Elector.

The Electors shall meet in their respective States, and vote by Ballot for two Persons, of whom one at least shall not be an Inhabitant of the same State with themselves. And they shall make a List of all the Persons voted for, and of the number of Votes for each; which List they shall sign and certify, and transmit sealed to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irect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pen all the Certificates, and the Votes shall then be counted.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be the 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there be more than one who have such Majority, and have an equal Number of Votes, the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immediately choose by Ballot one of them for President; and if no Person have a Majority, then from the five highest on the List the said House shall in like Manner choose the President. But in choosing the President, the Votes shall be taken by States, the Representation from each State having one Vote; a quorum for this Purpose shall consist of a Member or Members from two thirds of the States, and a Majority of all the States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In every Case, after the Choice of the President,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of the Electors shall be the Vice President. But if there should remain two or more who have equal Votes, the Senate shall choose from them by Ballot the Vice President.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 기간의 임기를 갖는 부통령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거된다.

각 주는 주 입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가 미국 의회에 보내는 상원위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러나 미국의 상·하원의원, 또는 미국의 촉탁직이나 영리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선거인들은 각기 그 주에서 회합하고 비밀투표에 의해 2인을 선거해야 한다. 단. 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 자신들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인들은 모두 득표자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후 봉함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하원의원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최다득표자로서 그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를 넘었을 때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만약 2인 이상이 동수의 득표를 하고, 또한 과반수를 넘었을 때에는 하원은 즉시 비밀투표로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거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수 득표자 5명 중에서 대통령을 선임 한다. 단, 이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주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주 총수의 3분의 2개 주의 각 대표 혹은 대표들로 구성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대통령을 선출한 후에 최다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단,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 투표로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The Congress may determine the Time of choosing the Electors, and the Day on which they shall give their Votes; which Day shall be the sam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No Person except a natural born Citizen, 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neither shall any Person be eligible to that Offic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five Years, and been fourteen Years a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said Office, the Same shall devolve on the Vice President, and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of Removal,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both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declaring what Officer shall then act as President, and such Officer shall act accordingly, until the Disability be removed, or a President shall be elected.

The President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his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either be increased nor diminished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elected, and he shall not receive within that Period any other emolument from the United States, or any of them.

Before he enter on the Execution of his Office, he shall take the following Oath or Affirmation: -- "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2.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he may require the Opinion, in writing, of the principal Officer in each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upon any Subject relating to the Duties of their respective Offices, and he shall have Power to grant

의회는 선거인을 선출할 시기와 투표일을 결정하며, 투표일은 미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 출생할 때부터 시민이 아닌 자는, 또는 헌법 제정 시 미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또한 연령이 만 35세에 미달하거나, 미국에서 14년간 거주하지 않은 자도 대통령에 선임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그 권한과 직무를 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대통령직은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면직되거나, 사직하거나, 사망하거나, 집행 불능케 되는 경우에 법률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집행 불능 원인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해당 관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은 그 직무에 대하여 규정된 시기에 보수를 받는다. 보수는 임기 중 증액 또는 감액되지 않는다. 또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이나 다른 주로부터도 다른 보수를 받지 못한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나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전·보호·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맹세)한다."

제2항. 대통령은 미국 육·해군의 총사령관이며, 또한 각 주의 국민군이 현역 복무시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장관으로부터 각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문서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면할 권한이 있다.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nd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but the Congress may by Law vest the Appointment of such inferior Officers, as they think proper, in the President alone, in the Courts of Law, or in the Heads of Departments.

The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fill up all Vacancies that may happen during the Recess of the Senate, by granting Commissions which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eir next Session.

Section 3. He shall from time to time give to the Congress Information of the State of the Union, and recommend to their Consideration such Measures as he shall judge necessary and expedient; he may, on extraordinary Occasions, convene both Houses, or either of them, and in Case of Disagreements between them, with Respect to the Time of Adjournment, he may adjourn them to such Time as he shall think proper; he shall receive Ambassadors and other public Ministers; he shall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and shall Commission all th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4.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Article III

Section 1.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대통령은 상원의 전의에 의하여 또한 그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단, 건의와 동의는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공사와 영사, 대법원 법관 및 헌법에 별도의 임명 규정이 없으나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단, 미국 의회는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하급관리의 임명권을 대통령, 법원 또는 각부 장관에게 법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 휴회 중에 발생할지 모를 모든 공석을 위임을 통해 충원할 권한이 있다. 단, 그 위임은 의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미국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법안들에 관해 의회의 심의를 권고해야 한다. 특별히긴급할 때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 일원(院)을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양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는 대통령이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양원의 휴회를 명할 수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단을 접견하고법률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유의하고 미국의 모든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4항. 대통령, 부통령 및 미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죄와 경죄로 인하여 탄핵을 받고 또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는 면직된다.

제 3 조

제1항. 미국의 사법권은 대법원과 더불어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귀속한다.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법관은 충실히 근무하는 동안은 재직하며, 또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 보수를 받는다. 이러한 establish.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ur, and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their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Section 2.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 -- 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 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 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 -- 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 -- 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 --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 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 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such Trial shall be held in the State where the said Crimes shall have been committed; but when not committed within any State, the Trial shall be at such Place or Places as the Congress may by Law have directed.

Section 3. Treas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consist only in levying War against them, or in adhering to their Enemies, giving them Aid and Comfort.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of Treason unless on the Testimony of two Witnesses to the same overt Act, or on Confession in open Court.

보수는 재임 중 감액되지 않는다.

제2항. 사법권은 미국의 본 헌법과 법률 및 미국의 권한 하에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되는 조약에 입각하여 발생하는 보통법 및 형평법상의 모든 사건에 미친다. 사법권은 또한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련되는 모든 사건, 해사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국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모든 소송, 2개 주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소송, 어떤 주나 그 시민이 외국, 또는 그 시민 혹은 국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소송에 미친다.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사건과 주가 당사자로 되는 사건은 대법원이 제 1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그 이외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의회가 정하는 예외를 갖고 또 의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대법원이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행한다. 그 재판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범죄가 어느 주에서도 행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 의회가 법률로서 정하는 장소에서 이를 심리한다.

제3항. 미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와 지지를 제공할 경우에만 성립된다. 누구든지 명백한 상기의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언이 있거나 공개법정에서 이를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the Punishment of Treason, but no Attainder of Treason shall work Corruption of Blood, or Forfeiture except during the Life of the Person attainted.

Article IV

Section 1. Full Faith and Credit shall be given in each State to the public Acts, Records, and judicial proceedings of every other State. And the Congress may by general Laws prescribe the Manner in which such Acts, Records and Proceedings shall be proved, and the Effect thereof.

Section 2. The Citizens of ea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A Person charged in any State with Treason, Felony, or other Crime, who shall flee from Justice, and be found in another State, shall on Demand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State from which he fled, be delivered up, to be removed to the State having Jurisdiction of the Crime.

No Person held to Service or Labour in one State, under the Laws thereof, escaping into another, shall, in Consequence of any Law or Regulation therein, be discharged from such Service or Labour, but shall be delivered up on Claim of the Party to whom such Service or Labour may be due.

Section 3. New States may be admitted by the Congress into this Union; but no new State shall be formed or erec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any other State; nor any State be formed by the Junction of two or more States, or Parts of Stat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s of the States concerned as well as of the Congress.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ispose of and mak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respecting the Territory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United States; and nothing in this Constitution shall be so construed as to Prejudice any Claims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미국 의회는 반역죄의 처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반역죄로 인한 국민 자격 박탈 선고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혈통 오손이나 또는 재산의 몰수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제 4 조

제1항. 각 주는 다른 모든 주의 공공 조치, 기록 및 재판 절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미국 의회는 일반 법률에 의하여 그와 같은 조치, 기록 및 재판 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 효력에 관하여 규정 할 수 있다.

제2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떤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들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과 면책 사항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어떤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을 받은 자가 법망을 피해 다른 주에서 발견되는 경우, 그 주는 범인이 도피한 주의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범인을 인도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로 이송하여야 한다.

어느 주에서는 주 법률에 의하여 복역 또는 노역에 처해진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할 경우에, 그 도피한 주의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서도 그 같은 복역이나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않으며, 그 같은 복역이나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도피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3항. 미국 의회는 새 주를 편입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주의 관할 구역에서도 새로운 주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관련 주의 입법부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어떠한 새 주도 형성할 수 없다.

미국 의회는 미국에 소속하는 영토와 그 밖의 재산을 처리하고 또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본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이나 어떤 특정한 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particular State.

Section 4. 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nd shall protect each of them against Invasion; and on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 or of the Executive (when the Legislature cannot be convened) against domestic Violence.

Article V

The Congress, whenever two thirds of both Houses shall deem it necessary, shal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stitution, or, o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s of two thirds of the several States, shall call a Convention for proposing Amendments, which, in either Case, shall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is Constitution, when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ree 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or by Conventions in three fourths thereof, as the one or the other Mode of Ratification may be proposed by the Congress; provided that no Amendment which may be made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shall in any Manner affect the first and fourth Clauses in the Ninth Section of the first Article; and that no State, without its Consent, shall be deprived of its equal Suffrage in the Senate.

Article VI

All Debts contracted and Engagements entered into, before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as valid against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Constitution, as under the Confederation.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Judges in every State shall be bound thereby, any 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before mentioned, and the Members of the several State Legislatures, and all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both of the United States 제4항. 미국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주에 대하여 그 공화정체를 보장하고, 침략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하고 또 각 주의 입법부나 행정부(입법부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에 의하여 주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 5 조

미국 의회는 상하 양원 의원의 3분의 2가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이 헌법 개정을 발의 해야 하며, 혹은 3분의 2개 주의 주 입법부가 요청할 경우에는 개정을 발의하기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헌법 개정은 4분의 3개 주 입법부에 의해 비준되거나 혹은 4분의 3개 주의 각 헌법회의에 의해 비준되거나 혹은 4분의 일부로서 충분한 효력을 발생하며, 의회는 이 두 가지 비준 방법 중에서 한가지 방법을 제의 할 수 있다. 단,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개정은 어떠한 방식으로나 본 헌법 제1조 9항 1절 및 4절을 변경할 수 있다. 어느 주도 동의 없이 상원에서의 평등한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이 헌법이 채택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채무와 체결된 모든 계약은 이 헌법 하에서도 연합규약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이 헌법과 헌법을 이행하여 제정되는 법률 및 미국의 권한 하에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 법규이다. 모든 주의 법관은 이 법규에 구속되며, 어떤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이와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전술한 상하 양원의원, 각 주 입법부 의원, 미국 및 모든 주의 모든 행정관과 사법관은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이 헌법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직이나 신임에 의한 공직에 종교상의 자격은 and of the several States, shall be bound by Oath or Affirmation, to support this Constitution; but no religious Test shall ever be required as a Qualification to any Office or public Trust under the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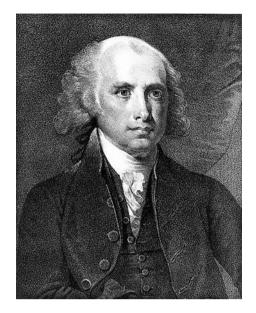
Article VII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s of nine States shall be suffici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Constitution between the States so ratifying the Same. 요구되지 않는다.

제 7 조

이 헌법이 이를 비준하는 각 주간에 확정되기 위하여는 9개 주의 헌법회의의 비준이 있으면 족하다.

The Federalist Papers: Federalist No. 10/6. 제임스 메디슨, 연방주의자 논문 No. 10 (1787년)



(James Madison, author of Federalist No.10)

Federalist No. 10 (Federalist Number 10) is an essay by James Madison and the tenth of the Federalist Papers. It was published on November 22, 1787 under the pseudonym Publius, the name under which all the Federalist Papers were published. Federalist No. 10 continues a theme begun in Federalist No. 9; it is titled, "The Same Subject Continued: The Union as a Safeguard Against Domestic Faction and Insurrection."

Publius argued that a strong, large republic would be a better guard against the dangers of faction than smaller republics? For instance, the individual states. Opponents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 favor of which Publius was arguing, offered counterarguments to his position, substantially derived from the commentary of Montesquieu on this subject.

November 23, 1787. To the People of the State of New York:

AMONG the numerous advantages promised by a well-constructed Union, none deserves to be more accurately developed than its tendency to break and control the violence of faction. The friend of popular governments never finds himself so much alarmed for their character and fate, as when he contemplates their propensity to this dangerous vice. He will not fail, therefore, to set a due value on any plan which, without violating the principles to which he is attached, provides a proper cure for it. The instability, injustice, and confusion introduced into the public councils, have, in truth, been the mortal diseases under which popular governments have everywhere perished; as they continue to be the favorite and fruitful topics from which the adversaries to liberty derive their most specious declamations. The valuable improvements made by the American constitutions on the popular models, both ancient and modern, cannot certainly be too much admired; but it would be an unwarrantable partiality, to contend that they have as effectually obviated the danger on this side, as was wished and expected. Complaints are everywhere heard from our most considerate and virtuous citizens, equally the friends of public and private faith, and of public and personal liberty, that our governments are too unstable, that the public good is disregarded in the conflicts of rival parties, and that measures are too often decided, not according to the rules of justice and the rights of the minor party, but by the superior force of an interested and overbearing majority. However anxiously we may wish that these complaints had no foundation, the evidence, of known facts will not permit us to deny that they are in some degree true. It will be found, indeed, on a candid review of our situation, that some of the distresses under which we labor have been erroneously charged on the operation of our governments; but it will be found, at the same time, that other causes will not alone account for many of our heaviest misfortunes; and, particularly, for that prevailing and increasing distrust of public engagements, and alarm for private rights, which are echoed from one end of the continent to the other. These must be chiefly, if not wholly, effects of the unsteadiness and injustice with which a factious spirit has tainted our public administrations.

연방주의자 논문 No. 10은 연방주의자 논문들 중 10번째 있는 것이며,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에 의해 쓰여진 에세이다. 이것은 퍼블리어스(Publius)라는 필명으로 발행되는 모든 연방주의자 논문들 중 1787년 11월 22일에 발행된 것이다. 연방주의자 논문 No. 10은 "동일한 주제 연속됨: 국내의 파벌과 폭동에 대한 보호책"라는 연방주의자 논문 No. 9의 주제를 잇고 있다.

퍼블리어스는 파벌의 위험을 대처하는데 강력하고 거대한 공화국이 더 작은 공화국들 (예를 들어, 각개별 주들) 보다는 더 나은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블리어스가 주장하는 것에 찬성하여 미국 헌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몽테스키외의 논평에서 도출한 반론을 제안했다.

1787년 11월 23일, 금요일. 뉴욕주 주민들에게:

잘 구축된 연방이 약속하는 수많은 이점 중에서 가장 올바르게 개발하여야 하는 것은 파벌의 폭력을 저지하고 통제하는 연방의 성향이다. 민주 정부의 친구는 민주 정부가 가진 위험한 악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 정부의 성격과 운명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놀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친구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원칙을 깨뜨리지 아니하면서도 적절한 치유책을 제공하는 계획에 대하여서 마땅한 가치를 설정하는 데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공공적 협의의 장에 도입된 불안정, 불의, 혼란은 자유의 적들이 가장 허울좋은 주장의 근거로 선호하는 유익한 주제로 존속되면서 전세계에서 민주 정부들이 사라진 실제 원인인 불치병으로 작용했다. 고대와 현대의 국민 중심 모델을 토대로 한 미국의 헌법을 통하여 구현된 소중한 개선의 가치는 아무리 찬미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지만, 희망하고 기대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사려 깊고 고상한 시민들과, 공적 신념과 사적

By a faction, I understand a number of citizens, whether amounting to a majority or a minority of the whole, who are united and actuated by some common impulse of passion, or of interest, adversed to the rights of other citizens, or to the permanent and aggregate interests of the community.

There are two methods of curing the mischiefs of faction: the one, by removing its causes; the other, by controlling its effects.

There are again two methods of removing the causes of faction: the one, by destroying the liberty which is essential to its existence; the other, by giving to every citizen the same opinions, the same passions, and the same interests.

It could never be more truly said than of the first remedy, that it was worse than the disease. Liberty is to faction what air is to fire, an aliment without which it instantly expires. But it could not be less folly to abolish liberty, which is essential to political life, because it nourishes faction, than it would be to wish the annihilation of air, which is essential to animal life, because it imparts to fire its destructive agency.

The second expedient is as impracticable as the first would be unwise. As long as the reason of man continues fallible, and he is at liberty to exercise it, different opinions will be formed. As long as the connection subsists between his reason and his self-love, his opinions and his passions will have a reciprocal influence on each other; and the former will be objects to which the latter will attach themselves. The diversity in the faculties of men, from which the rights of property originate, is not less an insuperable obstacle to a uniformity of interests. The protection of these faculties is the first object of government. From the protection of different and unequal faculties of acquiring property, the possession of different degrees and kinds of property immediately results; and from the influence of these on the sentiments and views of the respective proprietors, ensues a division of the society

신념의 친구들과, 공적 자유와 사적 자유의 친구들은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고, 경쟁 정당 간의 갈등 속에서 공익이 무시되고 있고, 정부의 조치가 정의의 법칙과 소수당의 권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해 당사자이자 고압적인 다수의 우월한 힘에 의하여 취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도처에서 비난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초조하게 이러한 비난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기를 바랄지라도 알려진 사실의 증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검토해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통의 일부를 정부의 활동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비난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동시에 다른 원인이 우리의 가장 중대한 여러 불행뿐 아니라 특히 대륙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메아리치고 있는 공공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또 더 커지고 있는 것과, 사적 권리에 대한 경고를 초래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당파적 정신이 불안정성과 불의로써 우리의 공공 행정을 오염시킴으로써 초래한 유일한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된 결과는 될 것이다.

나는 파벌을 여러 시민이 전체의 다수인지 소수인지에 관계 없이 공통의 열정이나 이익으로 뭉치고 고무되어 다른 시민들의 권리나 공동체의 항구적이고 총체적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파벌의 불행을 치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파벌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벌이 존재하는 데 필수적인 자유를 파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의견과,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치료법은 질병 그 자체 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유와 파벌의 관계는 공기와 불의 관계와 같은데, 공기가 없으면 into different interests and parties.

The latent causes of faction are thus sown in the nature of man; and we see them everywhere brought into different degrees of activity, according to the different circumstances of civil society. A zeal for different opinions concerning religion, concerning government, and many other points, as well of speculation as of practice; an attachment to different leaders ambitiously contending for pre-eminence and power; or to persons of other descriptions whose fortunes have been interesting to the human passions, have, in turn, divided mankind into parties, inflamed them with mutual animosity, and rendered them much more disposed to vex and oppress each other than to co-operate for their common good. So strong is this propensity of mankind to fall into mutual animosities, that where no substantial occasion presents itself, the most frivolous and fanciful distinctions have been sufficient to kindle their unfriendly passions and excite their most violent conflicts. But the most common and durable source of factions has been the various and unequal distribution of property. Those who hold and those who are without property have ever formed distinct interests in society. Those who are creditors, and those who are debtors, fall under a like discrimination. A landed interest, a manufacturing interest, a mercantile interest, a moneyed interest, with many lesser interests, grow up of necessity in civilized nations, and divide them into different classes, actuated by different sentiments and views. The regulation of these various and interfering interests forms the principal task of modern legislation, and involves the spirit of party and faction in the necessary and ordinary operations of the government.

No man is allowed to be a judge in his own cause, because his interest would certainly bias his judgment, and, not improbably, corrupt his integrity. With equal, nay with greater reason, a body of men are unfit to be both judges and parties at the same time; yet what are many of the most important acts of legislation, but so many judicial determinations, not indeed concerning the rights of single persons, but concerning the rights of large bodies of

불은 순식간에 꺼지게 된다. 그러나, 파벌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정치생활에 필수적인 자유를 없애는 것은 공기가 불에 파괴의 힘을 준다는 이유로 동물의 생명에 필수적인 공기를 없애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첫 번째 치료법이 현명하지 못한 방법인 것처럼, 두 번째 치료법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다. 인간의 이성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또 인간이 이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한, 서로 다른 의견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이성과 자기애 사이에 연계성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의견과 열정은 서로에 대하여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성은 자기애가 애착을 가지는 대상이 될 것이다. 재산권의 근원이 되는 인간 능력의 다양성은 이해관계가 통일되기 위해 극복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1차적 목표이다. 재산을 획득하는 서로 다르고 동등하지 아니한 능력을 보호함으로써, 서로 다른 종류와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이러한 능력이 각 재산권자의 정서와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사회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파벌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파벌의 잠재적 원인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원인이 문명사회의 상이한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정도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도처에서 본다. 종교와 관련하여, 정부와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관행의 주제와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는 열정과, 우월성과 권력을놓고 야심을 가지고 경쟁하는 다른 지도자에 대한 애착과, 인간 열정의 관심을 받는 행운을 누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착 등이 인류를 파벌로 분열시켰으며,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불타게 하였으며, 인류를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서로 괴롭히고억누르도록 하였다. 서로 적대감을 가지려는 인류의성향이 너무 강한 나머지, 실질적인 사유가 없는경우에도, 가장 하찮고 비현실적인 차이 조차도 좋지아니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가장 폭력적인 분쟁을

citizens? And what are the different classes of legislators but advocates and parties to the causes which they determine? Is a law proposed concerning private debts? It is a question to which the creditors are parties on one side and the debtors on the other. Justice ought to hold the balance between them. Yet the parties are, and must be, themselves the judges; and the most numerous party, or, in other words, the most powerful faction must be expected to prevail. Shall domestic manufactures be encouraged, and in what degree, by restrictions on foreign manufactures? are questions which would be differently decided by the landed and the manufacturing classes, and probably by neither with a sole regard to justice and the public good. The apportionment of taxes on the various descriptions of property is an act which seems to require the most exact impartiality; yet there is, perhaps, no legislative act in which greater opportunity and temptation are given to a predominant party to trample on the rules of justice. Every shilling with which they overburden the inferior number, is a shilling saved to their own pockets.

It is in vain to say that enlightened statesmen will be able to adjust these clashing interests, and render them all subservient to the public good. Enlightened statesmen will not always be at the helm. Nor, in many cases, can such an adjustment be made at all without taking into view indirect and remote considerations, which will rarely prevail over the immediate interest which one party may find in disregarding the rights of another or the good of the whole.

The inference to which we are brought is, that the CAUSES of faction cannot be removed, and that relief is only to be sought in the means of controlling its EFFECTS.

If a faction consists of less than a majority, relief is supplied by the republican principle, which enables the majority to defeat its sinister views by regular vote. It may clog the administration, it may convulse the society; but it will be unable to execute and mask its violence under the forms of the Constitution. When a majority is included in a faction, the form of popular government, on the other

축발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그러나, 파벌의 가장 흔하고 지속적인 원인은 재산의 다양하고 불평등한 분배였다. 재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사회에서 서로 구별되는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다. 채권자와 채무자역시도 이와 유사하게 서로 구별되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 지주, 공업인, 상인, 자본가와, 이 보다 덜중요한 이익을 대변하는 계층이 필요에 의하여문명국가에서 성장하였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정서와견해에 고무되어 서로 다른 계급으로 분열되었다.이러한 다양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규제하는 것이현대법의 주된 역할이 되었으며, 여기에 정부의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운영에서 당파와 파벌의 정신이개입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일에 대하여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왜곡됨이 분명하고 도덕적 고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집단이 재판관인 동시에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이 이상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권리가 아닌 여러 시민으로 이루어진 큰 집단의 권리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활동과 수많은 사법적 판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또. 스스로 결정한 바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동참하지 아니한 여러 부류의 입법자 집단은 무엇이란 말인가? 개인 채무와 관련한 법률이 제안되었는가? 이는 채권자를 한 쪽 당사자로 채무자를 다른 쪽 당사자로 하는 질문이다. 정의는 이들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며, 또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 가장 수가 많은 당파, 달리 말하면 가장 강력한 파벌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외국 제조업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데 대하여 국내 제조업자가 고무되어야 하는가, 또 고무된다면 어느 정도 고무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지주와 제조업자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며, 어느 쪽도 정의와 공익만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활동은 가장 엄격한 공평무사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이며, 다수당에게 정의의 지배를 누르도록 더 큰 기회와 hand, enables it to sacrifice to its ruling passion or interest both the public good and the rights of other citizens. To secure the public good and private rights against the danger of such a faction, and at the same time to preserve the spirit and the form of popular government, is then the great object to which our inquiries are directed. Let me add that it is the great desideratum by which this form of government can be rescued from the opprobrium under which it has so long labored, and be recommended to the esteem and adoption of mankind.

By what means is this object attainable? Evidently by one of two only. Either the existence of the same passion or interest in a majority at the same time must be prevented, or the majority, having such coexistent passion or interest, must be rendered, by their number and local situation, unable to concert and carry into effect schemes of oppression. If the impulse and the opportunity be suffered to coincide, we well know that neither moral nor religious motives can be relied on as an adequate control. They are not found to be such on the injustice and violence of individuals, and lose their efficacy in proportion to the number combined together, that is, in proportion as their efficacy becomes needful.

From this view of the subject it may be concluded that a pure democracy, by which I mean a society consisting of a small number of citizens, who assemble and administer the government in person, can admit of no cure for the mischiefs of faction. A common passion or interest will, in almost every case, be felt by a majority of the whole; a communication and concert result from the form of government itself; and there is nothing to check the inducements to sacrifice the weaker party or an obnoxious individual. Hence it is that such democracies have ever been spectacles of turbulence and contention; have ever been found incompatible with personal security or the rights of property; and have in general been as short in their lives as they have been violent in their deaths. Theoretic politicians, who have patronized this species of government, have erroneously supposed that by reducing mankind to a perfect equality in their political rights, they

유혹을 부여하는 입법 활동은 없을 것이다. 단 1 실링이라도 소수당 측에 부담을 더 안긴 바가 있다면, 이 1 실링은 다수당 측의 주머니에서 아낀 돈일 것이다

현명한 정치가가 이러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익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명한 정치가가 항상 주도권을 잡지는 못할 것이다. 또,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사항을 고려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러한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사항은 어느 당파가 다른 당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전체의 이익을 무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즉각적 이익 보다 우선시 되기가 어렵다

이상(以上)에서 시사하는 바는, 파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서만 치유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파벌이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정기적 투표를 통하여 다수파가 소수파의 사악한 견해를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공화정의 원칙에서 그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 이 파벌은 행정부를 방해하고, 사회에 소동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폭력을 자행하고이를 헌법의 테두리 하에서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어떠한 파벌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민주정부의 형태 때문에 다수파의 열정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공익과 다른 시민들의 권리가 모두 희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파벌의 위험에 대항하여 공익과사적 권리를 확보하고, 또 동시에 민주 정부의 정신과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집중될 가장 큰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정부가 그토록 오랫동안 겪어 온 치욕에서 구원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즉, 과반수가 동시에 동일한 열정이나 이해관계를 갖는 상황을 방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동일한 열정이나

would, at the same time, be perfectly equalized and assimilated in their possessions, their opinions, and their passions.

A republic, by which I mean a government in which the scheme of representation takes place, opens a different prospect, and promises the cure for which we are seeking. Let us examine the points in which it varies from pure democracy, and we shall comprehend both the nature of the cure and the efficacy which it must derive from the Union.

The two great points of difference between a democracy and a republic are: first, the deleg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latter, to a small number of citizens elected by the rest; secondly, the greater number of citizens, and greater sphere of country, over which the latter may be extended.

The effect of the first difference is, on the one hand, to refine and enlarge the public views, by passing them through the medium of a chosen body of citizens, whose wisdom may best discern the true interest of their country, and whose patriotism and love of justice will be least likely to sacrifice it to temporary or partial considerations. Under such a regulation, it may well happen that the public voice, pronounced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will be more consonant to the public good than if pronounced by the people themselves, convened for the purpose.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may be inverted. Men of factious tempers, of local prejudices, or of sinister designs, may, by intrigue, by corruption, or by other means, first obtain the suffrages, and then betray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he question resulting is, whether small or extensive republics are more favorable to the election of proper guardians of the public weal; and it is clearly decided in favor of the latter by two obvious considerations:

In the first place, it is to be remarked that, however small the republic may be, the representatives must be raised to a certain number, in order to guard against the 이해관계를 가진 과반수가 그 수나 지역 상황 때문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압제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열정과 기회가 동시에 부여된다면, 도덕적 동기와 종교적 동기도 적절한 통제장치가 되지 못한다. 도덕적 동기와 종교적 동기는 개인의 불의와 폭력에 대하여서도 적절한 통제장치가 되지 못하며, 함께 모인 사람의 수에 비례하여, 즉 효력이 필요해지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효력이 약해진다.

주제에 대한 이러한 견해로부터, 직접 모여서 정부를 운영하는 소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를 나타내는 순수 민주정은 파벌의 불행에 대한 치유의 여지가 없다. 거의 모든 경우에, 공통의 열정이나 이해관계를 전체의 과반수가 느끼게 될 것이고, 정부 형태 그 자체로부터 커뮤니케이션과 조화가 도출될 것이며, 힘이 약한 당이나 마음에 들지 아니한 개인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견제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정은 항상 소란과 다툼의 장이 되었으며, 항상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권과 맞지 아니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그 존속기간이 짧았을 뿐 아니라 폭력으로 끝을 맺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종류의 정부를 지지해 온 이론적 정치인들은 인류의 정치적 권리를 완벽하게 평등하게 하면 인류가 완전히 평등해지고, 그 재산과 의견과 열정이 비슷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다.

대의정치가 이루어지는 정부를 가리키는 공화정은 새로운 전망을 열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치료법을 약속한다. 공화정이 순수 민주정과 다른 점을 검토해보자. 이를 통하여 치유법의 속성과 연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그 효력을 모두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민주정과 공화정의 가장 큰 두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부의 위임에 있어서, 공화정 에서는 소수의 시민을 나머지 시민 전체가 선출하여 정부를 위임한다. 두 번째, 공화정은 더 많은 시민과 더 넓은 영토에 적용될 수 있다. cabals of a few; and that, however large it may be, they must be limited to a certain number, in order to guard against the confusion of a multitude. Hence,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in the two cases not being in proportion to that of the two constituents, and being proportionally greater in the small republic, it follows that, if the proportion of fit characters be not less in the large than in the small republic, the former will present a greater option, and consequently a greater probability of a fit choice.

In the next place, as each representative will be chosen by a greater number of citizens in the large than in the small republic, it will be more difficult for unworthy candidates to practice with success the vicious arts by which elections are too often carried; and the suffrages of the people being more free, will be more likely to centre in men who possess the most attractive merit and the most diffusive and established characters.

It must be confessed that in this, as in most other cases, there is a mean, on both sides of which inconveniences will be found to lie. By enlarging too much the number of electors, you render the representatives too little acquainted with all their local circumstances and lesser interests; as by reducing it too much, you render him unduly attached to these, and too little fit to comprehend and pursue great and national objects. The federal Constitution forms a happy combination in this respect; the great and aggregate interests being referred to the national, the local and particular to the State legislatures.

The other point of difference is, the greater number of citizens and extent of territory which may be brought within the compass of republican than of democratic government; and it is this circumstance principally which renders factious combinations less to be dreaded in the former than in the latter. The smaller the society, the fewer probably will be the distinct parties and interests composing it; the fewer the distinct parties and interests, the more frequently will a majority be found of the same party; and the smaller the number of individuals composing a majority, and the smaller the compass within

한편, 첫 번째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국가의 진정한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애국심과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일시적이거나 편파적 고려사항을 위해 국가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시민의 선택된 집단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공적인 겨 해 를 통과시킴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발전시키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하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모인 국민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 보다 국민의 대표자가 대변한 공적인 목소리가 공익에 더 크게 부합할 수 있다. 반면, 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당파적 기질, 지역적 편견, 또는 사악한 계획을 가진 자는 음모나, 부패나, 여타 수단으로 먼저 찬성표를 얻은 다음 국민의 이익을 배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의문은, 공익을 적절하게 수호할 자를 선출함에 있어 소규모 공화정과 대규모 공화정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냐 하는 문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답은 대규모 공화정이 된다.

우선, 공화정이 아무리 작더라도 소수의 음모를 막기 위해 대표자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공화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수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표자의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두경우에 대표자의 수는 각 유권자의 수에 비례하지 아니하며, 소규모 공화정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비율이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대규모 공화정에 적합한 대표자의 비율이 소규모 공화정 보다 낮지 아니하다면 대규모 공화정이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대표자를 뽑을 확률도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대규모 공화정에서는 각 대표자가 소규모 공화정 보다 더 많은 수의 시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자격이 부족한 후보가 선거에서 흔히 자행되는 사악한 수법을 써서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국민의 표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능력과 가장 호소력 있고 확고한 성격을 가진 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which they are placed, the more easily will they concert and execute their plans of oppression. Extend the sphere, and you take in a greater variety of parties and interests; you make it less probable that a majority of the whole will have a common motive to invade the rights of other citizens; or if such a common motive exists, it will be more difficult for all who feel it to discover their own strength, and to act in unison with each other. Besides other impediments, it may be remarked that, where there is a consciousness of unjust or dishonorable purposes, communication is always checked by distrust in proportion to the number whose concurrence is necessary.

Hence, it clearly appears that the same advantage which a republic has over a democracy, in controlling the effects of faction, is enjoyed by a large over a small republic,--is enjoyed by the Union over the States composing it. Does the advantage consist in the substitution of representatives whose enlightened views and virtuous sentiments render them superior to local prejudices and schemes of injustice? It will not be denied that the representation of the Union will be most likely to possess these requisite endowments. Does it consist in the greater security afforded by a greater variety of parties, against the event of any one party being able to outnumber and oppress the rest? In an equal degree does the increased variety of parties comprised within the Union, increase this security. Does it, in fine, consist in the greater obstacles opposed to the concert and accomplishment of the secret wishes of an unjust and interested majority? Here, again, the extent of the Union gives it the most palpable advantage.

The influence of factious leaders may kindle a flame within their particular States, but will be unable to spread a general conflagration through the other States. A religious sect may degenerate into a political faction in a part of the Confederacy; but the variety of sects dispersed over the entire face of it must secure the national councils against any danger from that source. A rage for paper money, for an abolition of debts, for an equal division of property, or for any other improper or wicked project, will be less apt

이 경우 대부분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용이 있으며, 중용 외에는 어느 쪽에서나 불편이 내재되어 있다. 선거구민의 수를 너무 늘리게 되면, 대표자가지역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그이해관계도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선거구민의 수를 너무 줄이게 되면, 대표자가 이러한 지역의 상황과이해관계에 지나치게 결부되어 더 크고 전국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 부적합하게 된다. 연방 헌법은 이점에서 적절한 조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크고 총체적인이해관계가 국가, 지역 및 주 입법부의 특수한 상황에반영된다.

다른 차이점은 민주 정부 보다 공화정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시민의 수와 영토의 크기가 더 크다는 점이며, 이 상황 때문에 공화정 보다는 민주정에서 당파적 조합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게 된다. 사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사회를 구성하는 상이한 정당과 이해관계의 수도 적을 것이며, 동일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빈도도 줄어들 것이며, 과반수를 구성하는 개인의 수도 적을 것이며, 이들이 포함되는 범위도 좁을 것이며, 압제의 계획을 조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용이성도 높아질 것이다. 범위를 넓히면, 정당과 이해관계가 더 다양해지며, 전체의 과반수가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공통의 동기를 가지게 될 확률이 낮아지며, 그러한 공통의 동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를 느끼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단결하여 행동하기가 더 힘들어 질 것이다. 다른 장애물 외에도, 정의롭지 못하거나 명예롭지 못한 목적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동의가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에 비례하는 불신에 의하여 견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파벌의 결과를 통제함에 있어서는 공화정이 민주정 보다 유리하며, 대규모 공화정이 소규모 공화정보다 유리하며, 연방이 그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 보다 유리하다. 이러한 이점은 현명한 견해와 고결한 정서로 지역의 편견과 불의의 계획 보다 우월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서 오는 것인가? 연방의 대의정치가 이러한 필수적 장점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점은 더 다양한 to pervade the whole body of the Union than a particular member of it; in the same proportion as such a malady is more likely to taint a particular county or district, than an entire State.

In the extent and proper structure of the Union, therefore, we behold a republican remedy for the diseases most incident to republican government. And according to the degree of pleasure and pride we feel in being republicans, ought to be our zeal in cherishing the spirit and supporting the character of Federalists.

PUBLIUS

정당이 있어서 어느 한 정당이 나머지 모든 정당의수를 능가하여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생기는 안정감에서 나오는 것인가? 또, 연방을구성하는 정당의 다양성이 커진 것이 이러한 안정감을증대하는 데 기여하는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점은불의의 이해관계를 가진 과반수의 은밀한 의도를조율하고 실행하는 데 더 큰 장애물이 놓이는 데기인하는 것인가? 여기서, 다시 가장 중요한 이점은연방의 크기이다.

당파 지도자는 그 영향력으로 특정 주에서 불꽃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다른 주에까지 번지는 큰 화재를 일으킬 수는 없다. 종교 분파는 연방의 일부에서 정치파벌로 변질될 수 있지만, 연방 전역에 다양한 분파가퍼져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여기에서 나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지폐, 채무탕감,재산의 균등한 분배, 또는 여타 부적절하거나 사악한프로젝트에 대한 열망은 연방의 특정 구성원에 만연할수는 있더라도 연방 전체에 만연하기는 어려우며, 특정군이나 지방을 오염시킬 수는 있으나 어떤 주 전체를 오염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방의 크기와 적절한 구조에 있어서, 우리는 공화정부에 가장 일어나기 쉬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보고 있다. 우리가 공화주의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가지는 기쁨과 자부심의 정도에 따라 연방주의자의 정신을 소중히 간직하고 연방주의자의 성격을 지지하는 우리의 열정도 커져야 할 것이다.

퍼블리우스(PUBLIUS).

The Bill of Rights (1791) / 7. 권리장전 (1791)

The Bill of Rights is the name given to the first ten amendments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fter the Constitution was ratified, the first U.S. Congress met in Federal Hall in New York City. Most of the delegates agreed that a bill of rights was needed and most of them agreed on the rights they believed should be enumerated

The task of drafting the Bill of Rights fell to James Madison, who based his work on 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It had been decided earlier that the Bill of Rights would be added to the Constitution in the form of amendments (the list of rights was not inserted into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was feared that modifying the document's text would necessitate the rather painful process of re-ratifying the Constitution). Twelve amendments were originally proposed in 1789, but two failed to be ratified by the states at the same time as the remaining ten.

The Bill of Rights was easily passed by the House in 1789. On November 20th of that same year, New Jersey became the first state in the newly formed Union to ratify these amendments. Other states followed, and the last ten of the original twelve amendments, now designated as the First through Tenth Amendments, became law on December 15, 1791, when they were ratified by the Virginia legislature.

권리장전은 미국 헌법의 처음 10개 수정조항으로부터 명명되었다. 헌법이 비준된 후에 최초의 미국 국회가 뉴욕시에 있는 연방홀(Federal Hall)에서 소집되었다. 의원들의 대부분은 권리장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그들이 믿었던 권리들이 열거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권리장전의 초안작성에 대한 임무는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이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의 자신의 작업을 바탕으로 했다. 권리장전은 수정의 형태로 헌법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헌법의 재비준 과정을 보다 힘들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권리의 구체적 목록들이 헌법의 내용에 삽입되어 있지 않았었다.) 12개의 수정 조항들은 1789년에 최초로 제안되었으나, 두 조항 제외한 10개 조항만이 비준되었다.

권리장전은 1789년에 의회에서 쉽게 통과되었다. 같은 해 11월 20일, 뉴 저지(New Jersey)가 이러한 수정조항들을 비준하기위해 새롭게 형성된 연방의 첫 주가 되었다. 다른 주들도 잇달아 비준을 하였으며, 현재 첫번째에서 열번째까지의 수정조항들로 명시된 최초 12개의 수정조항들 중 마지막 10개의 수정조항들이 버지니아 입법부에 의해 비준된 1791년 12월 15일에 법제화되었다.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제1조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Amendment II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Amendment III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Amendment VI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제2조

통제가 잘된 국민군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장하고 소지하는 인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

평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宿營)할 수 없다. 전시라 할지라도 법률로서 정하는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숙영을 할 수 없다.

제4조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 받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체포 및 압수 영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될 자나 압수할 물품을 기재하지 않고는 이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누구든지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않는다. 단,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면을 당하여, 복무 중에 있는 주 국민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다.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두 번씩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사유재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고 공공용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제6조

모든 형사 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행하여진 주와 지구(이 지구는 법률에 의하여 미리지정한다)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개 재판을받고 또 사건의 성격과 이유에 관한 통고를 받을권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 받을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Amendment VII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Amendment VIII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Amendment X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위하여 강제적인 수속을 하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보통법 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에 걸려 있는 가격이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호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은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에 처하거나, 또한 잔혹하고 이례적인 징벌을 가할 수 없다.

제9조

이 헌법에 측정권리가 열거되는 것은 인민이 향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가 부인되거나 경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 헌법에 의하여 미국에 위임되지 않고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여러 권리는 각 주나 인민에게 유지된다.

Othe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8. 그 밖의 헌법 수정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years necessitated the adoption of additional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These included amendments granting Congress the power to levy taxes on income (1913) and giving women the right to vote (1920). An amendment outlawing sale of intoxicating liquors (1920) was repealed in 1933. A 1951 amendment limited Presidents to two terms in office, and a 1965 amendment provided for the transfer of power upon removal or disability of a President, and for filling a vacancy in the Vice Presidency.

The Following are texts of several important amendments of particular interest to students and others:

여러 해에 걸친 미국 내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의 변화 때문에 추가 헌법 수정 조항들의 채택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에는 의회에 소득세 징수권을 부여하고(1913),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수정 조항들이 포함된다. 한편 주류 판매를 불법화하는 (1913) 수정 조항들은 1933년에 폐기되었다. 1951년의 한 수정조항은 대통령 임기를 2차까지로 제한했고, 또 1965년의 수정조항은 대통령이 해임되거나 무능력자가 되었을 경우의 대통령권한이양을 규정했고, 또 이에 따른 부통령의 공석충원을 규정했다.

다음은 연구학도들과 기타 인사들의 특별한 관심사가 될 몇몇 중요한 수정조항들이다.

AMENDMENT XIII(1865)

Section 1.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whereof the party shall have been duly convicted, shall exist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plac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AMENDMENT XIV(1868)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Section 2.

Representativ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제13조 (1865년)

제1항: 노예 또는 강제적 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합중국 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어떠한 장소에도 존재할 수 없다.

제14조 (1868년)

제1항: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지배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강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지배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항: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원주민을 제외한 각 주의 총 인구수이다. 단, 합중국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 합중국 의회의 하원의원, 각 counting the whole number of persons in each State, excluding Indians not taxed. But when the right to vote at any election for the choice of electors for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he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of a State, or the members of the Legislature thereof, is denied to any of the male inhabitants of such State, being twenty-one years of age,*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way abridged, except for participation in rebellion, or other crime, the basis of representation therein shall be reduced in the proportion which the number of such male citizens shall bear to the whole number of male citizens twenty-one years of age in such State.

Section 3.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or elector of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r hold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or under any State, who, having previously taken an oath, as a member of Congress, or as an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s a member of any State legislature, or as an executive or judicial officer of any Stat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same,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But Congress may by a vote of two-thirds of each House, remove such disability.

*Changed by section 1 of the 26th amendment.

Note: Article I,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was modified by section 2 of the 14th amendment.

AMENDMENT XV(1870)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race, color, or previous condition of servitude.

AMENDMENT XVII(1913)

Note: Article I,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was modified by the 17th amendment.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elected by the people 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 입법부의 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란이나 기타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이며 미국 시민인 해당 주의 남자 주민 중 어느 누구도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한되는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자시민의 수가 그 주의 만 21세에 달한 남자시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항: 과거에 합중국 의회의 의원, 합중국의 관리, 주입법부의 의원, 주행정관, 또는 사법관으로서 합중국 헌법을 옹호할 것을 선서한 자가 후에 이에 대한 폭동 또는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지지를 제공한 자는 누구든지 합중국 의회의 상원 또는 하원의원,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 합중국 또는 각 주 밑에서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단, 합중국 의회는 각 원(院)의 3분의 2의 투표로서 그 실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1870년)

제1항: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복종상태에 의하여 합중국 또는 어떤 주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제17조 (1913년)

제1항: 합중국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1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항: 상원에 있어서 어떤 주의 대표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단, 주입법부는 주민이 입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그 주의 행정부에게임시로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s.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of any State in the Senate, the executive authority of such State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Provided, That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may empower the executive thereof to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people fill the vacancies by election as the legislature may direct.

This amendment shall not be so construed as to affect the election or term of any Senator chosen before it becomes valid as part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 XXVI(1971)

Note: Amendment 14,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was modified by section 1 of the 26th amendment.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ho are eighteen years of age or older,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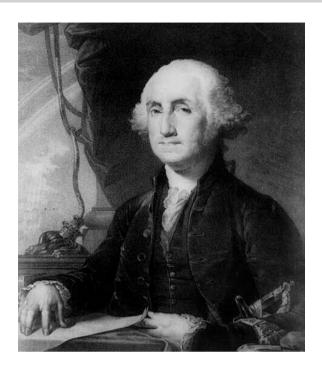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항: 18세 이상의 미국시민의 투표권은 미국 연방 정부나 어느 주에 의해서도 연령 때문에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항: 의회는 이 조항을 적절한 입법으로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George Washington: Farewell Address (1796) / 9. 조지 워싱턴: 고별연설



George Washington, Commander-in-chief of the American armies during the Revolution, and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1787, was unanimously elected the first President of the new nation, and then re-elected in 1792. There is no doubt that he could have held the office as long as he lived, for no man was more admired and revered by the people. He concluded, however, that two terms were enough, and on the occasion of his retirement from his second term prepared what would come be known as his farewell address. Technically speaking, it was not an address, but an open letter to the public published in the form of a speech. It appeared in many American newspapers on September 17, 1796. Washington's fellow Americans gave it the title of "Farewell Address" to recognize it as the President's valedictory to public service for the new Republic. Its advice and injunctions have influenced American history more than Washington himself could have anticipated: the warnings against party strife and factionalism; the warnings against foreign influences or embroilments; the plea for morality and good faith in all public affairs.

독립전쟁 중의 미국 군 총사령관이었고, 1787년의 헌법제정회의 의장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신생 미국의 초대대통령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그 뒤 1792년에 재선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약 그가 원했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워싱턴 이상으로 국민의 숭앙을 받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두 번의 임기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할 때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그의 고별연설로 알려지게 되었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연설이 아니라 연설의 형태로 대중에게 발행된 일종의 공개 편지였다. 이 공개 편지는 미국의 수 많은 신문사들의 1796년 9월 17일자에 실려있다. 위싱턴의 동료 미국인들은 신생 공화국의 공무에 대한 대통령의 고별로서 승인하기 위해 이 공개 편지에 '고별연설'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 그의 충고와 훈시는 그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국 역사에 미쳤다. 그는 당쟁과 파벌주의를 경고하였고, 외세의 영향 또는 간섭을 경고하였고, 또한 모든 공적 사안에서의 도덕성과 선의를 호소하였다.

Sept. 17, 1796

Friends and Fellow-Citizens:

The period for a new election of a citizen, to administer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being not far distant, and the time actually arrived, when your thoughts must be employed designating the person, who is to be clothed with that important trust, it appears to me proper, especially as it may conduce to a more distinct expression of the public voice, that I should now apprize you of the resolution I have formed, to decline being considered among the number of those out of whom a choice is to be made.

The unity of Government, which constitutes you one people, is also now dear to you. It is justly so; for it is a main pillar in the edifice of your real independence, the support of your tranquility at home, your peace abroad; of your safety; of your prosperity; of that very Liberty, which you so highly prize. But as it is easy to foresee, that, from different causes and from different quarters, much pains will be taken, many artifices employed, to weaken in your minds the conviction of this truth; as this is the point in your political fortress against which the batteries of internal and external enemies will be most constantly and actively (though often covertly and insidiously) directed, it is of infinite moment, that you should properly estimate the immense value of your national Union to your collective and individual happiness; that you should cherish a cordial, habitual, and immovable attachment to it; accustoming yourselves to think and speak of it as of the Palladium of your political safety and prosperity; watching for its preservation with jealous anxiety; discountenancing whatever may suggest even a suspicion, that it can in any event be abandoned; and indignantly frowning upon the first dawning of every attempt to alienate any portion of our country from the rest, or to enfeeble the sacred ties which now link together the various parts.

For this you have every inducement of sympathy and interest. Citizens, by birth or choice, of a common country,

친구들과 동포시민 여러분:

미국 행정부를 관리할 한 시민을 새로 선출할 시기가 이제 멀지 않았으며, 또 여러분 각자가 그처럼 중요한 신임을 받을 사람의 선출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실제로 도달한 지금은 그러한 선출대상이 될 몇 사람 중에 포함되는 것을 사양하기로 한 내 결심을 여러분께 알리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그러한 결심은 일반국민의 소리를 더욱 분명히 표명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을 한 국민으로 구성케 하는 통일된 정부는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합니다. 그것은 그럴 만 한 바,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의 전당에서 여러분의 국내 안온과 대외 화친과 여러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여러분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를 떠받치는 하나의 큰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과 여러 진영에서 많이 애쓸 것이고, 많은 책략을 동원할 것이 쉽게 예견될 뿐 아니라, 그것은 국내외 적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또 적극적으로(때로는 은밀하고도 교활하게) 그 포문을 집중시킬, 여러분의 정치적 보루의 급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국민의 집단 및 개인적 행복에 대한 국민총화의 무한히 큰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하고, 또 그 가치에 대해 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부동한 애착심을 품으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정치적 안정과 번영의 수호자로 늘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고,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감시하고, 그것이 어떻든 파기될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보여주는 모든 것에 반대하고, 또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여타 지역들과 소원케 하거나 혹은 현재 여러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신성한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대해 바로 그 시초에 분연히 반대의 뜻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무한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동정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출생 또는 선택에 의해 같은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이 나라를 집중적으로 사랑할 의무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자격을 나타내는 미국인이란 호칭은 언제나 that country has a right to concentrate your affections. The name of American, which belongs to you, in your national capacity, must always exalt the just pride of Patriotism, more than any appellation derived from local discriminations. With slight shades of difference, you have the same religion, manners, habits, and political principles. You have in a common cause fought and triumphed together; the Independence and Liberty you possess are the work of joint counsels, and joint efforts, of common dangers, sufferings, and successes.

While, then, every part of our country thus feels an immediate and particular interest in Union, all the parts combined cannot fail to find in the united mass of means and efforts greater strength, greater resource, proportionably greater security from external danger, a less frequent interruption of their peace by foreign nations; and, what is of inestimable value, they must derive from Union an exemption from those broils and wars between themselves, which so frequently afflict neighbouring countries not tied together by the same governments, which their own rivalships alone would be sufficient to produce, but which opposite foreign alliances, attachments, and intrigues would stimulate and embitter. Hence, likewise, they will avoid the necessity of those overgrown military establishments, which, under any form of government, are inauspicious to liberty, and which are to be regarded as particularly hostile to Republican Liberty. In this sense it is, that your Union ought to be considered as a main prop of your liberty, and that the love of the one ought to endear to you the preservation of the other.

To the efficacy and permanency of your Union, a Government for the whole is indispensable. No alliances, however strict, between the parts can be an adequate substitute; they must inevitably experience the infractions and interruptions, which all alliances in all times have experienced. Sensible of this momentous truth, you have improved upon your first essay, by the adoption of a Constitution of Government better calculated than your former for an intimate Union, and for the efficacious

지방의 차이에 기인하는 어떠한 명칭보다도 더 의로운 애국적 긍지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여러분은 동일한 종교와 예절과 관습과 정치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통의 대의 하에 함께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독립과 자유는 공동회의와 공동 노력, 공통된 위험과 고난과 성공의소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이 이같이 연방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특수한 관심을 갖는 한, 연방 하에 결속된 여러분의 모든 지역은 수단과 노력을 한데 뭉침으로써, 보다 큰 힘, 보다 훌륭한 기략, 따라서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보다 큰 안보, 국내평화에 대한 외국 간섭의 축소를 어김없이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소중한 것은, 그들(각 주)이 연방을 지킴으로써 그들 상호간에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정부 밑에 뭉쳐 있지 못한 이웃 나라들은 번번히 이런 분쟁과 전쟁과 전쟁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그들이 서로 적대시하기만 해도 일어나기 마련이며, 또 외세와의 동맹, 결탁 또는 음모는 이러한 분쟁을 자극하고 격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방을 지켜나가면) 그들(각 주)은 지나치게 군사기관(군부)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큰 군사기관(군부)은 어떤 정부 하에서건 자유를 위해 이롭지 못하며, 또 특히 공화정적 자유를 위해서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연방은 여러분의 자유의 대들보로 간주되어야 하며, 또 여러분의 연방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에게 자유보존의 가치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연방의 효능과 영속을 위해서는 한 통합정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역간의 동맹은 그것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통합정부를 적절하게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같은 동맹은 모든 동맹체들이 어느 시대에서나 겪은 협정위반과 해체를 불가피적으로 경험할 것이 틀림 없습니다. 이 중요한 진실을 잘 인식한 여러분은 친밀한 병합과 공동 관심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과거의 것보다 더 잘 구상된 정부에 관한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여러분의 첫 시도의 결과를 개선했습니다. 본 정부는 우리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충분한 연구 management of your common concerns. This Government, the offspring of our own choice, uninfluenced and unawed, adopted upon full investigation and mature deliberation, completely free in its principles, in the distribution of its powers, uniting security with energy, and containing within itself a provision for its own amendment, has a just claim to your confidence and your support. Respect for its authority, compliance with its laws, acquiescence in its measures, are duties enjoined by the fundamental maxims of true Liberty. The basis of our political systems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make and to alter their Constitutions of Government. But the Constitution which at any time exists, till changed by an explicit and authentic act of the whole people, is sacredly obligatory upon all. The very idea of the power and the right of the people to establish Government presupposes the duty of every individual to obey the established Government

Towards the preservation of your government, and the permanency of your present happy state, it is requisite, not only that you steadily discountenance irregular oppositions to its acknowledged authority, but also that you resist with care the spirit of innovation upon its principles, however specious the pretexts. One method of assault may be to effect, in the forms of the constitution, alterations, which will impair the energy of the system, and thus to undermine what cannot be directly overthrown. In all the changes to which you may be invited, remember that time and habit are at least as necessary to fix the true character of governments, as of other human institutions; that experience is the surest standard, by which to test the real tendency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of a country; that facility in changes, upon the credit of mere hypothesis and opinion, exposes to perpetual change, from the endless variety of hypothesis and opinion; and remember, especially, tha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our common interests, in a country so extensive as ours, a government of as much vigor as is consistent with the perfect security of liberty is indispensable. Liberty itself will find in such a government, with powers properly distributed and adjusted, its surest guardian. It is, indeed, 조사와 신중을 기한 숙고 하에 채택한 것이며, 그 원칙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정해졌고, 권력이 자유롭게 분산되고, 안보와 정력을 결합하고, 자체 내에 자체의 개정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본 정부는 여러분의 신임과 지지를 마땅히 받을 만 합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법을 준수하고 그 조처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기본 원리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우리 정치 제도의 기본은 국민들이 그들의 정부 기구를 만들고 변경하는 권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 의한 명백하고도 인증된 조치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존재하는 이 헌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성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국민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개념 그 자체는 그렇게 설치된 정부에 순종해야 하는 모든 개인의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의 정부를 유지하고 현재의 행복을 지속시키려면, 여러분이 인정된 정부 권한에 대한 변칙적인 반대에 꾸준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정부 원칙을 변경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그 구실이 아무리 그럴 듯 하더라도 그에 주의 깊게 저항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가지 공격 방법은 우리 제도의 활력을 손상시킬 헌법개정의 형태를 취하며, 이는 직접적으로는 전복할 수 없는 것을 서서히 약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에 참여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는, 정부의 진정한 성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시간과 관습이 필요조건 이라는 점, 한 나라의 현존구조의 진정한 경향을 시험 하는 데는 경험이 가장 확실한 표준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한 가설과 견해만을 믿고 손쉽게 변경하면, 한없이 많은 가설과 견해로 인한 끝없는 변경을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또 우리나라 같이 광대한 국가에서 공동관심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완전한 확보에 적합할 만큼 활력에 찬 정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이 적절하게 분산되고 조정되어 있는 그 같은 정부에서 자유 그 자체는 그 정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호자가 됩니다.

사실, 정부가 너무나 허약해서 파당적 시도에 견딜

little else than a name, where the government is too feeble to withstand the enterprises of faction, to confine each member of the society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by the laws, and to maintain all in the secure and tranquil enjoyment of the rights of person and property.

There is an opinion, that parties in free countries are useful checks upon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and serve to keep alive the spirit of Liberty. This within certain limits is probably true; and in Governments of a Monarchical cast, Patriotism may look with indulgence, if not with favor, upon the spirit of party. But in those of the popular character, in Governments purely elective, it is a spirit not to be encouraged. From their natural tendency, it is certain there will always be enough of that spirit for every salutary purpose. And, there being constant danger of excess, the effort ought to be, by force of public opinion, to mitigate and assuage it. A fire not to be quenched, it demands a uniform vigilance to prevent its bursting into a flame, lest, instead of warming, it should consume.

It is important, likewise, that the habits of thinking in a free country should inspire caution, in those intrusted with its administration, to confine themselves within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spheres, avoiding in the exercise of the powers of one department to encroach upon another. The spirit of encroachment tends to consolidate the powers of all the departments in one, and thus to create, whatever the form of government, a real despotism. If, in the opinion of the people, the distribution or modif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powers be in any particular wrong, let it be corrected by an amendment in the way, which the constitution designates. But let there be no change by usurpation; for, though this, in one instance, may be the instrument of good, it is the customary weapon by which free governments are destroyed. The precedent must always greatly overbalance in permanent evil any partial or transient benefit, which the use can at any time yield.

Of all the dispositions and habits, which lead to political prosperity, Religion and Morality are 수 없고, 사회의 각 구성원을 법이 제정하는 제한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고, 또 모두가 인권과 재산을 안전하고도 조용한 가운데 계속 누릴 수 없게 된다면, 그 정부는 명목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자유 국가에서 정당은 정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또자유의 정신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데 유익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군주주의 형태의 정부에서는 애국심이 파당 정신에 찬성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관대하게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중적 성격을 갖는 정부에서, 즉 순수하게 선거를 통하는 정부에서는 이것은 고무되어서는 안 되는 정신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자연적 경향 때문에 찬양할만한 목적이 있을때마다 언제나 그 같은 정신이 과다하게 나오고, 또확실히 과열 될 위험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론의 힘을 빌려 완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은 따뜻이 열을 내되 아주 꺼지지 않도록, 갑자기 타오르지 않게끔 꾸준히 경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자유국가에서는 통치를 위임 받은 사람들이 한 부서의 권력행사가 다른 부서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면서 허용된 헌법상의 영역 내에 국한시키도록 조심하는 사고의 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식을 좋아하는 기질은 모든 부서의 권한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치형태가 다를지 모르나 사실상의 전제정치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약 헌법적 권한의 배분이 어떤 특정면에서 잘못이라는 국민의 여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헌법규정에 따른 개정을 통해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 침해에 의한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자유 정부를 파괴하는 통상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런 선례는 어느 때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적인 또는 과도적인 혜택이 영구적인 악에 의해 틀림없이 크게 압도될 것입니다.

정치적 번영으로 이끄는 모든 자질과 관습 중에서 종교와 도덕은 없어서는 안 되는 지주가 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이 커다란 지주, 인간과 시민의 의무를 가장 확고하게 떠받치는 이 지주를

indispensable supports. In vain would that man claim the tribute of Patriotism, who should labor to subvert these great pillars of human happiness, these firmest props of the duties of Men and Citizens. The mere Politician, equally with the pious man, ought to respect and to cherish them. A volume could not trace all their connections with private and public felicity. Let it simply be asked, Where is the security for property, for reputation, for life, if the sense of religious obligation desert the oaths, which are the instruments of investigation in Courts of Justice? And let us with caution indulge the supposition, that morality can be maintained without religion. Whatever may be conceded to the influence of refined education on minds of peculiar structure, reason and experience both forbid us to expect, that national morality can prevail in exclusion of religious principle.

It is substantially true, that virtue or morality is a necessary spring of popular government. The rule, indeed, extends with more or less force to every species of free government. Who, that is a sincere friend to it, can look with indifference upon attempts to shake the foundation of the fabric?

Promote, then, as an object of primary importance, institutions for the general diffusion of knowledge. In proportion as the structure of a government gives force to public opinion, it is essential that public opinion should be enlightened.

Observe good faith and justice towards all Nations; cultivate peace and harmony with all. Religion and Morality enjoin this conduct; and can it be, that good policy does not equally enjoin it? It will be worthy of a free, enlightened, and, at no distant period, a great Nation, to give to mankind the magnanimous and too novel example of a people always guided by an exalted justice and benevolence.

In the execution of such a plan, nothing is more essential, than that permanent, inveterate antipathies against particular Nations, and passionate attachments for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국의 공덕을 외치더라도, 공염불로 끝날 것입니다. 순수한 정치가들은 성직자에 못지않게 종교와 도덕을 존중하고 소중히 해야 합니다. 종교, 도덕과 개인 및국민의 행복 간의 모든 연관관계는 한 권의 책으로도다 기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히 따져봅시다. 만약 법원의 심리 방편이 되고 있는 선서에서종교적 의무감이 영원히 작용하지 않게 된다면, 재산과명성과 생명의 안전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도덕이종교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가정을 허용할 때는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이한 재능을 갖는 사람들에대한 차원 높은 교육의 모든 영향을 인정한다고할지라도,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종교원칙을 제외한국민도의의 앙양을 기대할 수 없게 합니다.

미덕 또는 도덕이 대중정치의 필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진실입니다. 도덕은 힘의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모든 범주의 자유 정부들을 지배합니다. 자유정부의 성실한 동조자라면 누가 이 정부의 기초를 흔들려는 시도를 냉담한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차적 중요성을 지닌 목적으로서, 지식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제도를 촉진해야 합니다. 한 정부 구조가 여론으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는데 비례해서, 여론의 계발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모든 국가에 대해 선의와 정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와의 평화와 화친을 조성해야 합니다. 종교와 도덕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정책 역시 그것을 똑같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이미 숭고한 정의와 전수정신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한 국민들이 인류에게 관대하고도 매우 고상한 모범을 보여주도록, 자유롭고 계몽되고 또 머지 않은 시기에 위대하게 될 한 국민에게 어울리는 과업인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부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구적이고도 완고한혐오감을 갖는 한편 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열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하고 대신 모든국가들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우호적인 감정을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국에 대해 습관적증오나 혹은 습관적인 호의를 품는 국민은 자신들의

others, should be excluded; and that, in place of them, just and amicable feelings towards all should be cultivated. The Nation, which indulges towards another an habitual hatred, or an habitual fondness, is in some degree a slave. It is a slave to its animosity or to its affection, either of which is sufficient to lead it astray from its duty and its interest. Antipathy in one nation against another disposes each more readily to offer insult and injury, to lay hold of slight causes of umbrage, and to be haughty and intractable, when accidental or trifling occasions of dispute occur.

So likewise, a passionate attachment of one Nation for another produces a variety of evils. Sympathy for the favorite Nation, facilitating the illusion of an imaginary common interest, in cases where no real common interest exists, and infusing into one the enmities of the other, betrays the former into a participation in the quarrels and wars of the latter, without adequate inducement or justification. It leads also to concessions to the favorite Nation of privileges denied to others, which is apt doubly to injure the Nation making the concessions; by unnecessarily parting with what ought to have been retained; and by exciting jealousy, ill-will, and a disposition to retaliate, in the parties from whom equal privileges are withheld.

Against the insidious wiles of foreign influence (I conjure you to believe me, fellow-citizens,) the jealousy of a free people ought to be constantly awake; since history and experience prove, that foreign influence is one of the most baneful foes of Republican Government. But that jealousy, to be useful, must be impartial; else it becomes the instrument of the very influence to be avoided, instead of a defense against it. Excessive partiality for one foreign nation, and excessive dislike of another, cause those whom they actuate to see danger only on one side, and serve to veil and even second the arts of influence on the other. Real patriots, who may resist the intrigues of the favorite, are liable to become suspected and odious; while its tools and dupes usurp the applause and confidence of the people, to surrender their interests.

증오심이나 애착심의 노예이며, 어느 경우에나 그 같은 마음은 그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와 이익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한 나라의 한 타국에 대한 반목은 사소한 불의의 분규가 생겨도, 각국은 상대국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고, 사소한 불쾌원인을 악용하고 또 오만하고 고집불통이 되게하기 쉽습니다.

이와 똑같이 한 나라의 다른 나라에 대한 정열적인 애착심도 각종 불행을 낳습니다. 좋아하는 나라에 대한 동정은 진정한 공동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상적인 공통이익의 환상을 갖기 쉽게 하고, 또한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경의를 품게 함으로써, 전자로하여금 적당한 오인이나 적당한 이유없이 후자의분쟁과 전쟁에 공연히 관여케 합니다. 이것은 또한좋아하는 국가에게 타국에게는 거부하고 있는 특권을양도케 하는데, 그것은 양보하는 국가로 하여금 관계를유지해야 할 나라와 불필요하게 헤어짐으로써, 또한평등한 특권을 보류 당한 국가들의 시기, 악의 및복수심을 자극함으로써 이중의 피해를 받기 쉽게합니다.

외세의 음흉한 농간에 대항하는 자유민의 빈틈없는 경계심은 언제나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와 경험은 외세가 공화정치의 가장 유해한 적 중의 하나임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빈틈 없는 경계심도 쓸모 있는 것이 되자면 공평 무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외세를 막아내지 않고, 피해야 할 바로 그 외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어느 한 외국에 대한 과도한 편애와 다른 어느 외국에 대한 과도한 혐오는 오직 그 전자의 위험만을 보게 하고, 후자에 대한 압력의 술책을 은폐하고 옹호하는 구실을 주게 됩니다. 편파주의에 사로잡힌 바보들은 민중의 갈채와 신임을 부당하게 차지하려다 국가의 이익을 희생하지만, 편파 주의자들의 술책을 배격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은 의심과 미움을 받게 되기 일쑤입니다.

외국에 대한 우리 행동의 대원칙은 우리가 상업관계를 확대하면서, 되도록 최소한의 정치적 관련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맺어 놓은 The great rule of conduct for us, in regard to foreign nations, is, in extending our commercial relations, to have with them as little political connection as possible. So far as we have already formed engagements, let them be fulfilled with perfect good faith. Here let us stop.

Europe has a set of primary interests, which to us have none, or a very remote relation.

Why, by interweaving our destiny with that of any part of Europe, entangle ou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toils of European ambition, rivalship, interest, humor, or caprice?

It is our true policy to steer clear of permanent alliances with any portion of the foreign world; so far, I mean, as we are now at liberty to do it; for let me not be understood as capable of patronizing infidelity to existing engagements. I hold the maxim no less applicable to public than to private affairs, that honesty is always the best policy. I repeat it, therefore, let those engagements be observed in their genuine sense. But, in my opinion, it is unnecessary and would be unwise to extend them.

Taking care always to keep ourselves, by suitable establishments, on a respectable defensive posture, we may safely trust to temporary alliances for extraordinary emergencies.

Harmony, liberal intercourse with all nations, are recommended by policy, humanity, and interest. But even our commercial policy should hold an equal and impartial hand; neither seeking nor granting exclusive favors or preferences; consulting the natural course of things; diffusing and diversifying by gentle means the streams of commerce, but forcing nothing; establishing, with powers so disposed, in order to give trade a stable course, to define the rights of our merchants, and to enable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m, conventional rules of intercourse, the best that present circumstances and mutual opinion will permit, but temporary, and liable to be from time to time abandoned or varied, as experience and circumstances shall dictate; constantly keeping in view, that it is folly in

계약들에 한해서는 완전한 신의를 지키고 그 계약들을 수행합시다. 이 정도에서 그칩시다.

유럽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혹은 거리가 매우 먼 일련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유럽의 어느 지역의 운명과 얽히게 함으로써 우리의 평화와 번영이 유럽의 야심, 경쟁, 이해관계, 일시적 기분 혹은 변덕에 말려들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현재처럼 자유로이 회피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외부세계의 어느 지역과도 항구적인 동맹을 피하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 계약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장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오해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언제나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은 개인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공사에도 적용될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듭 말하거니와, 이들 계약들을 그 순수한 바탕에서 준수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그 계약들을 확대하는 일은 불필요하고도 현명치 못할 것입니다.

적절한 군비로 우리의 방위태세를 남이 넘보지 못하게 유지하도록 항상 배려한다면, 우리는 비상시에 대비한 잠정적 동맹에 의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책상으로 보나 인간성과 이해관계로 보나 모든 나라들과 화평하고 자유로이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역 정책은 평등하고 공평무사해야 하며, 그리고 독점적인 혜택이나 특혜를 바라거나 혹은 주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리를 따라야 할 것이며, 그리고 온건한 방법으로 상업의 흐름을 넓히고 그리고 다변화하되, 무엇이나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역의 안전한 길을 닦아 주고 우리 상인들의 권리를 확정해주고 그리고 정부가 그 상인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력으로 관례적인 교류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역원칙은 현정세와 상호 의견이 허용하는 최선의 것이 되어야 하지만, 잠정적인 것이며, 그리고 경험과 사정이 명령하는데 따라서 시시로 포기 혹은 변경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one nation to look for disinterested favors from another; that it must pay with a portion of its independence for whatever it may accept under that character; that, by such acceptance, it may place itself in the condition of having given equivalents for nominal favors, and yet of being reproached with ingratitude for not giving more. There can be no greater error than to expect or calculate upon real favors from nation to nation. It is an illusion, which experience must cure, which a just pride ought to discard.

Though, in reviewing the incidents of my administration, I am unconscious of intentional error, I am nevertheless too sensible of my defects not to think it probable that I may have committed many errors. Whatever they may be, I fervently beseech the Almighty to avert or mitigate the evils to which they may tend. I shall also carry with me the hope, that my Country will never cease to view them with indulgence; and that, after forty-five years of my life dedicated to its service with an upright zeal, the faults of incompetent abilities will be consigned to oblivion, as myself must soon be to the mansions of rest.

Relying on its kindness in this as in other things, and actuated by that fervent love towards it, which is so natural to a man, who views it in the native soil of himself and his progenitors for several generations; I anticipate with pleasing expectation that retreat, in which I promise myself to realize, without alloy, the sweet enjoyment of partaking, in the midst of my fellow-citizens, the benign influence of good laws under a free government, the ever favorite object of my heart, and the happy reward, as I trust, of our mutual cares, labors, and dangers.

George Washington
United States, September 17th, 1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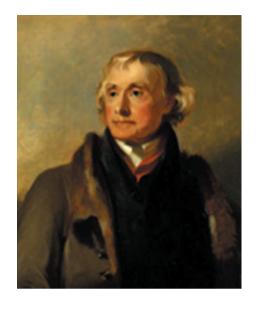
상업정책은 1국이 타국으로부터 사심 없는 혜택을 구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리고 그러한 성격의 어떠한 혜택에 대해서도 독립의 일부를 대가로 지불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혜택의 수락으로 자국을 허울 좋은 혜택과 같은 가치의 물질로 갚았는데도 그이상 더 많이 갚지 않았다 해서 망은의 비난까지 받게되는 상태에 빠뜨릴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간에 진정한 후의를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일보다더 큰 과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경험이 깨우쳐 주게 되는, 그리고 또한 올바른 자존심에 의해마땅히 내버려야 하는 환상입니다.

나의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검토해 볼 때 나는 고의적인 과오는 생각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결함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오를 범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오가 어떤 것들일지라도, 나는 전지전능한 신에게 과오가 흔히 사악이 되기 마련인 그 사악을 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경감시켜 주시기를 열렬하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과오를 너그러이 봐주는 일을 언제까지라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매우 열심히 봉사한 45년간의 근무생활이후에 나 자신이 멀지 않아 휴식의 저택으로 넘겨져야할 수 밖에 없듯이, 무능에 연유한 과오들도 망각에로 넘겨질 것이라는 희망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친절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향토와 구세대에 걸친 선조들의 향토에 대해 애향심을 갖는 인간에게 극히 자연스러운 열렬한 애국심의 자극을 받은 나는 은퇴하면 자유정부 하에서 선한 법률들의 인자한 영향을, 나의 국민들 속에 끼어서,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기쁨을 순수하게 실현하겠노라고 나 스스로 다짐했던 바가 이루어질 것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바, 이 자유정부는 항상 내가 즐겨 염원해온 것이며, 우리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애쓰고, 서로 위험에 부딪히고 한 결과인 복된 보답인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

Thomas Jefferson: First Inaugural Address (1801) / 10. 토마스 제퍼슨: 첫 취임사



Thomas Jefferson, autho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Virginia Statute of Religious Liberty, the western land ordinances of 1784 and 1785, and a host of other state papers, one-time Governor of Virginia, Minister to France, Secretary of State, and Vice-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elected to the Presidency in 1800. Jefferson combined a soaring idealism with immense practicality; he was at once scholar, scientist, architect, lawyer, founder of the Democratic party, and practical statesman. His First Inaugural Address, delivered on March 4, 1801, is a classic exposition of the democratic philosophy, memorable alike for its philosophy and for its literary beauty.

1800년 제3대 미국대통령으로 선출된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문, 버지니아주의 종교 자유법 1784년과 1785년의 서부토지조례, 그리고 기타 많은 공문서의 기안자이자 버지니아 주지사, 주 프랑스 미국공사, 국무장관, 미국 부통령 직을 역임했다. 미국의 민주주의 신념의 대변자들 중 으뜸가는 능변가였던 제퍼슨은 당시 치솟고 있던 이상주의와 광범한 실용주의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즉, 그는 학자, 과학자, 건축가, 변호사, 민주당 창설자이자 실제적인 정치가였다. 1801년 3월 4일 그의 첫 대통령 취임연설은 민주주의 철학의 고전적인 설명이며, 그 철학과 문체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길이 기억할만한 연설이다.

During the contest of opinion through which we have passed the animation of discussions and of exertions has sometimes worn an aspect which might impose on strangers unused to think freely and to speak and to write what they think; but this being now decided by the voice of the nation, announced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nstitution, all will, of course, arrange themselves under the will of the law, and unite in common efforts for the common good. All, too, will bear in mind this sacred

우리가 거쳐 온 의견 다툼의 기간 동안 토론과 능력 발휘의 활성화는 때때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생각한 바를 말하고 쓰는 데 익숙하지 않은 국외자들을 오도할 수도 있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국민의 소리에 의해 결정되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포되었기에 모든 사람이 당연히 법률의 의지를 받들 자세를 가다듬고 공동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힘을 합칠 것입니다. 또한 비록 모든 경우에 다수의 의사가 관철되어야 하지만 그 의사가

principle, that though the will of the majority is in all cases to prevail, that will to be rightful must be reasonable; that the minority possess their equal rights, which equal law must protect, and to violate would be oppression. Let us, then, fellow-citizens, unite with one heart and one mind. Let us restore to social intercourse that harmony and affection without which liberty and even life itself are but dreary things. And let us reflect that, having banished from our land that religious intolerance under which mankind so long bled and suffered, we have yet gained little if we countenance a political intolerance as despotic, as wicked, and capable of as bitter and bloody persecutions. During the throes and convulsions of the ancient world, during the agonizing spasms of infuriated man, seeking through blood and slaughter his long-lost liberty, it was not wonderful that the agitation of the billows should reach even this distant and peaceful shore; that this should be more felt and feared by some and less by others, and should divide opinions as to measures of safety. But every difference of opinion is not a difference of principle. We have called by different names brethren of the same principle. We are all Republicans, we are all Federalists. If there be any among us who would wish to dissolve this Union or to change its republican form, let them stand undisturbed as monuments of the safety with which error of opinion may be tolerated where reason is left free to combat it. I know, indeed, that some honest men fear that a republican government can not be strong, that this Government is not strong enough; but would the honest patriot, in the full tide of successful experiment, abandon a government which has so far kept us free and firm on the theoretic and visionary fear that this Government, the world's best hope, may by possibility want energy to preserve itself? I trust not. I believe this, on the contrary, the strongest Government on earth. I believe it the only one where every man, at the call of the law, would fly to the standard of the law, and would meet invasions of the public order as his own personal concern. Sometimes it is said that man can not be trusted with the government of himself. Can he, then, be trusted with the government of others? Or have we found angels in the forms of kings to govern him? Let history answer this question.

올바른 것이 되려면 합리적이어야 하고, 소수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법률이 평등하게 그것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압제가 될 것이라는 이 신성한 원칙을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우리 한마음 한 뜻으로 단결합시다. 화합과 애정 없이 자유와 삶 자체마저도 황량한 것이 되는 우리의 사회적 교류를 회복시킵시다. 그리고 비록 인류가 참으로 오랫동안 피 흘리고 고통 받아 온 원인이었던 종교적 편협성을 이 땅에서 몰아냈다고 하나, 만약 그에 못지않게 전제적이고 사악하며 혹독하고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가할 수 있는 정치적 편협성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아직껏 이루어 낸 것이 거의 없는 셈이란 것을 상기합시다.

고대 세계의 진통과 혼란의 와중에도, 피를 흘리고 학살을 당하면서도 오랫동안 잃었던 자유를 추구하는 격분한 사람의 몸부림치는 발작을 통해서도 굽이치는 그 큰 물결이 심지어 이 멀고 먼 평화로운 해안까지 미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굽이치는 물결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정도가 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덜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두고서 의견이 양분될 것이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의 차이가 곧 주의(主義)의 차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 의(主義)를 가진 형제를 서로 다른 이름들로 불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공화주의자들이며, 우리는 모두가 연방주의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연방의 해체나 그 공화정 체제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된 의견이 용인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안전의 기념비로서 방해 받지 않게 유지될 수 있게 합시다. 그 잘못은 어느 때고 이성에 의해 격퇴되는 법입니다.

일부 정직한 사람들이 공화제 정부는 강력할 수 없다고, 이 정부가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애국자라면 세계의 최상의 희망인 이 정부가 혹시 스스로를 지킬힘을 결여할 수도 있다는 이론적이고 환상적인 두려움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자유롭고 굳건하게 지켜온 정부를 성공적 실험의 절정에서 저버리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는 이

Let us, then, with courage and confidence pursue our own Federal and Republican principles, our attachment to union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Kindly separated by nature and a wide ocean from the exterminating havoc of one quarter of the globe; too high-minded to endure the degradations of the others; possessing a chosen country, with room enough for our descendants to the thousandth and thousandth generation; entertaining a due sense of our equal right to the use of our own faculties, to the acquisitions of our own industry, to honor and confidence from our fellow-citizens, resulting not from birth, but from our actions and their sense of them; enlightened by a benign religion, professed, indeed, and practiced in various forms, yet all of them inculcating honesty, truth, temperance, gratitude, and the love of man; acknowledging and adoring an overruling Providence, which by all its dispensations proves that it delights in the happiness of man here and his greater happiness hereafter; with all these blessings, what more is necessary to make us a happy and a prosperous people? Still one thing more, fellow-citizens; a wise and frugal Government, which shall restrain men from injuring one another, shall leave them otherwise free to regulate their own pursuits of industry and improvement, and shall not take from the mouth of labor the bread it has earned. This is the sum of good government, and this is necessary to close the circle of our felicities.

About to enter, fellow-citizens, on the exercise of duties which comprehend everything dear and valuable to you, it is proper you should understand what I deem the essential principles of our Government, and consequently those which ought to shape its Administration. I will compress them within the narrowest compass they will bear, stating the general principle, but not all its limitations. Equal and exact justice to all men, of whatever state or persuasion, religious or political; peace, commerce, and honest friendship with all nations, entangling alliances with none; the support of the State governments in all their rights, as the most competent administrations for our domestic concerns and the surest bulwarks against antirepublican tendencies; the

정부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정부야말로 모든 사람이 법의 부름에 법의 깃발 아래로 달려가 자신의 일처럼 공공질서의 침해에 대항할 유일한 정부라고 믿습니다. 가끔씩 듣기로 인간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인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간을 통치할, 왕으로 변장한 천사들이라도 찾아냈다는 말입니까? 이 물음은 역사로 하여금 대답하게 합시다.

그러니 용기와 신념을 갖고 우리 스스로의 연방제와 공화제의 원칙들을 따르고 연방과 대의정체(代議政體)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밀고 나아갑시다. 다행히도 자연과 넓은 대양에 의해 지구의 4분의 1에서 일어나는 절멸의 대파괴로부터 떨어져 있고, 나머지 4분의 3의 타락상을 용인하기에는 너무 고결하고, 우리 자손들을 천대, 만대까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선택된 나라를 가졌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의 근면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동포들로부터 태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과 그에 대한 동포들의 평가에서 비롯되는 명예와 신뢰를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에 대해 마땅한 이해를 지녔고. 자애로운 종교의 교화를 받고 다양한 형태의 종교에 입도하고 정진하며 지금까지 그 모든 형태의 종교는 공히 정직·진리·절제·감사 및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온갖 베품을 통해 인간의 현세에서의 행복과 내세에서의 더 큰 행복에 기뻐함을 증명하시는 지배적 섭리를 인정하고 경배하며 - 이 모든 축복을 지녔으니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래도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 외의 모든 면에서는 근면과 발전에 대한 노력을 스스로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놓아두며 노동자가 취득한 빵을 그 입에서 빼앗지 않을 현명하고 검소한 정부입니다. 이것이 선정의 요체이고 또한 우리의 지복(至福)을 완결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직무의 수행에 착수하려는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근본 원칙들과 그에 따른 시정의 구체적인 원칙들을 여러분이 마땅히 preservation of the General Government in its whole constitutional vigor, as the sheet anchor of our peace at home and safety abroad; a jealous care of the right of election by the people; a mild and safe corrective of abuses which are lopped by the sword of revolution where peaceable remedies are unprovided; absolute acquiescence in the decisions of the majority, the vital principle of republics, from which is no appeal but to force, the vital principle and immediate parent of despotism; a well disciplined militia, our best reliance in peace and for the first moments of war, till regulars may relieve them; the supremacy of the civil over the military authority: economy in the public expense, that labor may be lightly burthened; the honest payment of our debts and sacred preservation of the public faith;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and of commerce as its handmaid; the diffusion of information and arraignment of all abuses at the bar of the public reason;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the press, and freedom of person under the protection of the habeas corpus, and trial by juries impartially selected. These principles form the bright constellation which has gone before us and guided our steps through an age of revolution and reformation. The wisdom of our sages and blood of our heroes have been devoted to their attainment. They should be the creed of our political faith, the text of civic instruction, the touchstone by which to try the services of those we trust; and should we wander from them in moments of error or of alarm, let us hasten to retrace our steps and to regain the road which alone leads to peace, liberty, and safety.

I repair, then, fellow-citizens, to the post you have assigned me. With experience enough in subordinate offices to have seen the difficulties of this the greatest of all, I have learnt to expect that it will rarely fall to the lot of imperfect man to retire from this station with the reputation and the favor which bring him into it. Without pretensions to that high confidence you reposed in our first and greatest revolutionary character, whose preeminent services had entitled him to the first place in his country's love and destined for him the fairest page in the volume of faithful history, I ask so much confidence only as may give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일반 원칙을 밝힘으로써 - 그러나 그것의 갖가지 한계를 거론하지는 않는 채로 - 여러분이 알아야 할 원칙들을 가능한 한 최소의 범위 내로 압축해 말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지위나 파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정확하게 대우함; 모든 국가와 평화, 교역 및 정직한 우정을 유지하고 어떤 국가와도 동맹 관계를 맺지 않음;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가장 유능한 행정 기관으로서 그리고 반공화제의 추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벽으로서 주 정부의 모든 권리를 옹호함; 국내의 평화와 국외에서 안전을 위한 최후 보루로서 중앙 정부의 헌법상의 모든 활력을 보존함; 평화적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명의 검에 의해 잘려나갈 폐습들의 온건하고 안전한 교정책으로서 국민의 선거권을 빈틈없이 배려함; 전제주의의 사활적 원칙이자 직접적 모체인 강제력에 호소하지 않으려면 공화제 국가의 사활적 원칙인 다수결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 평화 시와 정규군으로 교체될 때까지의 전쟁 초기 동안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국민군; 군사적 권한에 대한 민간 권한의 우위; 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공 비용의 절약, 우리의 채무를 정직하게 상환하고 공적 신의를 신성하게 보존함; 농업과 그 시녀로서의 상업을 장려함. 지식을 보급하고 모든 폐습은 공적 이성의 법정에 기소함;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인신 보호율의 보호를 받는 신체의 자유 그리고 공정하게 선정된 배심원들에 의한 심판. 이상의 원칙들은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 혁명과 개혁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었던 찬란한 성군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 현인들의 지혜와 영웅들의 피가 바쳐졌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정치적 신념의 강령, 시민 교육의 교과서 및 우리가 신임하는 자들의 근무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오나 위급의 순간에 그것들로부터 빗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서둘러 걸음을 되짚어 평화, 자유 및 안전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을 되찾읍시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이 내게 부여한 직책을 맡고자 합니다. 여러 하위 관직에서 이 최고 직위의 어려움을 지켜보았던 경험으로 나는 불비한 사람이 취임시의 명망과 호의를 그대로 지니고 이 firmness and effect to the legal administration of your affairs. I shall often go wrong through defect of judgment. When right, I shall often be thought wrong by those whose positions will not command a view of the whole ground. I ask your indulgence for my own errors, which will never be intentional, and your support against the errors of others, who may condemn what they would not if seen in all its parts. The approbation implied by your suffrage is a great consolation to me for the past, and my future solicitude will be to retain the good opinion of those who have bestowed it in advance, to conciliate that of others by doing them all the good in my power, and to be instrumental to the happiness and freedom of all.

Relying, then, on the patronage of your good will, I advance with obedience to the work, ready to retire from it whenever you become sensible how much better choice it is in your power to make. And may that Infinite Power which rules the destinies of the universe lead our councils to what is best, and give them a favorable issue for your peace and prosperity.

지위에서 물러나는 법이 드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탁월한 공로로 조국의 사랑의 품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만하고 충실한 역사서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우리의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혁명적 인물에게 여러분이 걸었던 그 큰 신뢰를 감히 요구하지 않고 나로서는 다만 국사의 적법한 집행이 굳건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정도의 신뢰를 바랄 뿐입니다. 때로는 내가 파단 미숙으로 일을 그르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옳을 때에도 때로는 전역을 조망하지 못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잘못 - 결코 고의적인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만 - 에 대한 여러분의 관용을, 그리고 만약 모든 부분, 부분을 다 살핀다면 하지 않을 비난을 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여러분의 옹호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투표에 함축된 승인은 내게는 지난 세월에 대한 커다란 위안입니다. 내 장래의 갈망은 미리 베풀어 주셨던 분들의 호평은 유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다함으로써 다른 분들의 호평도 사며 모든 분들의 행복과 자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의의 후원을 믿고서,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면 언제나 물러날 준비를 갖춘 채, 순순히 그 과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운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협의회들을 최상의 존재로 이끌고 그것들에 여러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순조로운 결실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The Monroe Doctrine (1823) / 11. 제임스 먼로: 먼로 독트린 (1823)



(President James Monroe)

The Monroe Doctrine, named after President James Monroe, proclaimed that the Americas should be closed to future European colonization and free from European interference in sovereign countries' affairs. It further stated the United States' intention to stay neutral in European wars and in wars between European powers and their colonies. The US would also consider any new colonies or interference with independent countries in the Americas as hostile acts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immediate background of the doctrine was the claims of Russia on the northwest coast of North America and the struggle of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for independence. The Monroe Doctrine, announcing in a broad way the separation of the New World from the old, was the first distinctively American doctrine o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President Monroe's Seventh Annual Message to Congress on December 2, 1823:

제임스 먼로 대통령에서 이름을 딴 먼로 독트린은 아메리카 대륙이 장래 유럽의 식민화로부터 차단되야 하며, 주권 국가들의 사안들에 있어 유럽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더나아가 유럽의 영향력과 그들의 식민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유럽국가들간의 전쟁에 중립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밝힌 것이었다. 미국은 또한 어떤 새로운 식민지들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 국가들에 대한 간섭을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먼로 독트린을 나오게 한 근인은 북미주 북서해안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주장과 중남미국가들의 독립 투쟁이었다.

신세계(서반구)의 구세계로부터의 독립을 널리 선포한 먼로 독트린은 국제관계에서 천명된 미국 최초의 독트린이었다.

다음은 1823년 12월 2일에 미국의회에 보낸 먼로 대통령의 제7차 국정연설에서 발췌한 것이다.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cherish sentiments the most friendly in favor of the liberty and happiness of

미국시민은 대서양 건너편 유럽에 사는 동포들의 자유와 행복을 환영하는 가장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their fellow-men on that side of the Atlantic. In the wars of the European powers in matters relating to themselves we have never taken any part, nor does it comport with our policy to do so. It is only when our rights are invaded or seriously menaced that we resent injuries or make preparation for our defense. With the movements in this hemisphere we are of necessity more immediately connected, and by causes which must be obvious to all enlightened and impartial observers. The political system of the allied powers is essentially different in this respect from that of America. This difference proceeds from that which exists in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and to the defense of our own, which has been achieved by the loss of so much blood and treasure, and matured by the wisdom of their most enlightened citizens, and under which we have enjoyed unexampled felicity, this whole nation is devoted. We owe it, therefore, to candor and to the amicable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ose powers to declare that we should consider any attempt on their part to extend their system to any portion of this hemisphere as dangerous to our peace and safety. With the existing colonies or dependencies of any European power we have not interfered and shall not interfere. But with the Governments who have declared their independence and maintain it, and whose independence we have, on great consideration and on just principles, acknowledged, we could not view any interposition for the purpose of oppressing them, or controlling in any other manner their destiny, by any European power in any other light than as the manifestation of an unfriendly disposition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he war between those new Governments and Spain we declared our neutrality at the time of their recognition, and to this we have adhered, and shall continue to adhere, provided no change shall occur which, in the judgm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is Government, shall make a corresponding change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indispensable to their security.

The late events in Spain and Portugal show that Europe is still unsettled. Of this important fact no stronger proof can be adduced than that the allied powers should have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국가 자신들이 관련된 문제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거니와 그러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우리 정책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권리가 침해 당하거나 혹은 위협당할 때에만 우리는 이에 대해 분노하거나 우리의 방위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반구의 동태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그 이유는 교양 있고 공정한 모든 관측자들에게 명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합국들의 정치체제는 미국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상이합니다. 그 차이는 양측의 각 정부 내에 존재하는 것들에 연유하는데, 이 나라 전 국민이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자체방위는 그렇게도 많은 피와 재물을 잃으면서 성취했던 것이고, 또 가장 교양 있는 미국 시민들의 지혜에 의해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국방 하에 우리는 유례없는 지복(至福)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그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허심탄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그들이 이 서반구의 어느 곳에라도 그들의 제도를 확장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편 유럽의 어느 국가에 속하는 현 식민지나 속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방해한 바 없으며, 또 앞으로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여 유지하였고, 또 우리가 깊이 고찰한 끝에 호혜의 원칙에 따라 승인한 정부들을 억압하거나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그들의 운명을 지배하려는 목적 하에 취하는 유럽 어느 국가의 간섭행위도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의도의 발현이라고 밖에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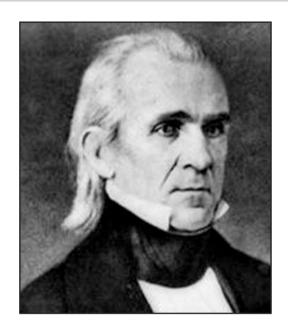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신생 정부들을 승인할 때 그들과 스페인간의 전쟁에 대해 중립을 선언했으며, 또 우리는 그 중립을 고수해 왔고, 또 앞으로도, 만약 본 정부의 주무 당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측의 적절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중립을 계속 고수할 것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의 최근 사태는 유럽의 분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야말로 연합국이 그들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스페인의 thought it proper, on any principle satisfactory to themselves, to have interposed by force in the internal concerns of Spain. To what extent such interposition may be carried, on the same principle, is a question in which all independent powers whose governments differ from theirs are interested, even those most remote, and surely none of them more so than the United States. Our policy in regard to Europe, which was adopted at an early stage of the wars which have so long agitated that quarter of the globe, nevertheless remains the same, which is, no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concerns of any of its powers; to consider the government de facto as the legitimate government for us; to cultivate friendly relations with it, and to preserve those relations by a frank, firm, and manly policy, meeting in all instances the just claims of every power, submitting to injuries from none. But in regard to those continents, circumstances are eminently and conspicuously different. It is impossible that the allied powers should extend their political system to any portion of either continent without endangering our peace and happiness; nor can anyone believe that our southern brethren, if left to themselves, would adopt it of their own accord. It is equally impossible, therefore, that we should behold such interposition in any form with indifference. If we look to the comparative strength and resources of Spain and those new Governments, and their distance from each other, it must be obvious that she can never subdue them. It is still the tru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leave the parties to themselves, in hope that other powers will pursue the same course...

국내사건에 힘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데 대한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일한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한 개입을 어느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가는 그들의 정부와 상이한 정부를 갖는 모든 독립국들에게, 설사 그 나라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관심사가 되는 문제이며, 물론 미국에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큰 관심사가 되는 문제입니다.

유럽 지역을 너무나 오랫동안 들끓게 했던 대전의 초기에 우리가 채택한 대유럽 정책은 아직도 불변입니다. 즉, 그것은 어느 유럽국가의 국내 사건에도 간섭하지 않고, 사실상의 정부를 우리에게는 합법적 정부로 간주하고, 그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도모하고, 또 솔직하고도 공고하고 활기찬 정책을 통해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제나 모든 국가의 정당한 주장을 충족시키고, 어느 국가로부터의 권리침해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서반구) 대륙들의 환경은 분명히, 그리고 현저하게 상이합니다. 연합국이 우리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대륙 어느 지역에 그들의 정치 제도를 확장하기는 불가능 하며, 또 우리의 남부 형제국들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을 때 자의에 의하여 그러한 정치제도를 채택하리라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태이건 그 같은 간섭을 무관심하게 방관해야 한다는 것도 위에 못지않게 불가능합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들 신생 정부들의 힘과 자원을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상호간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스페인이 그 정부들을 결코 정복할 수 없음이 명백해집니다. 미국의 진정한 정책은 다른 국가들도 우리와 동일한 노선을 추구하리라는 희망 하에 간섭함이 없이 당사자들 자신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James Polk's First State of the Union Address (1845) / 12. 포크 대통령의 첫 연례교서 (1845)



In his first State of the Union Address on December 2, 1845, President James Polk announced to Congress that the principle of the Monroe Doctrine should be strictly enforc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aggressively expand into the West. This message of Polk's was second in importance only to the original Monroe Doctrine with regards to American expansionism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It inaugurated a new era in history of the Monroe Doctrine and was closely connected with Polk's policy toward Oregon and Texas.

1845년 12월 2일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그의 첫 연례교서에서 먼로 독트린의 원리는 강력하게 강화되어야 하며 미국은 적극적으로 서구세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포크 대통령의 이러한 메세지는 초기 19세기의 미국의 팽창주의에 관한 독창적인 먼로 독트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이교서는 먼로 독트린의 역사에 있어 새 시대를 열었으며, 오레곤과 텍사스에 대한 포크 대통령의 정책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The rapid extension of our settlements over our territories heretofore unoccupied, the addition of new States to our Confederacy, the expansion of free principles, and our rising greatness as a nation are attracting the attention of the powers of Europe, and lately the doctrine has been broached in some of them of a 'balance of power' on this continent to check our advancement. The United States, sincerely desirous of preserving relations of good understanding with all nations, can not in silence permit any European interference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and should any such interference be attempted

…지금까지 점유되지 않았던 우리 영토에 대한 미국인 정착의 급속한 확장, 신주들의 우리 연방 가맹자유 원칙의 확장, 그리고 한 나라로서의 우리 국가의 강대화는 유럽 국가들의 주의를 끌고 있으며, 또최근에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 대륙에서 우리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세력균형"에 관한 독트린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깊은 이해관계를 유지하기를 진지하게 바라는 미국은 북미대륙에 대한어떤 유럽 간섭도 묵인할 수 없으며, 또 만약 그러한어떤 간섭을 시도한다면 만난을 무릅쓰고 그에 저항할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will be ready to resist it at any and all hazards.

It is well known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all nations that this Government has never interfered with the relations subsisting between other governments. We have never made ourselves parties to their wars or their alliances; we have not sought their territories by conquest; we have not mingled with parties in their domestic struggles; and believing our own form of government to be the best, we have never attempted to propagate it by intrigues, by diplomacy, or by force. We may claim on this continent a like exemption from European interference. The nations of America are equally sovereign and independent with those of Europe. They possess the same rights, independent of all foreign interposition, to make war, to conclude peace, and to regulate their internal affairs.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can not, therefore, view with indifference, attempts of European powers to interfere with the independent action of the nations on this continent. The American system of government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at of Europe. Jealousy among the different sovereigns of Europe, lest any one of them might become too powerful for the rest, has caused them anxiously to desire the establishment of what they term the balance of power.' It can not be permitted to have any application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and especially to the United States

We must ever maintain the principle that the people of this continent alone have the right to decide their own destiny. Should any portion of them, constituting an independent state, propose to unite themselves with our Confederacy, this will be a question for them and us to determine without any foreign interposition. We can never consent that European powers shall interfere to prevent such a union because it might disturb the 'balance of power' which they may desire to maintain upon this continent. Near a quarter of a century ago the principle was distinctly announced to the world, in the annual message of one of my predecessors, that:

"The American continents, by the free and independent condition which they have assumed and maintain are 본 정부가 타국 정부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간섭한 일이 없음은 미국민들과 모든 국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국가들의 전쟁이나 동맹에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또 정복을 통해 그들의 영토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국가들의 국내 분규에서 그 어떤 측에도 가담하지 않았으며, 또 우리 자신의 정치형태가 최선이라고 확신하면서 음모, 외교, 또는 힘으로써 우리 제도를 전파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대륙을 유럽 간섭으로부터 면제되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과 동등한 주권 독립국가들입니다. 아메리카 국가들도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 간섭을 일체 받지 않아야 하고, 전쟁을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국내 문제들을 다스리고 하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므로 미국민은 이 대륙의 국가들의 자주적 조치에 간섭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시도를 무관심하게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부제도는 유럽의 그것과 전적으로 상이합니다. 유럽의 상이한 주권국들이 그 중 한 나라가 여타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강대하게 되지 않게 하려는 그들 사이의 질시는 그들을 불안케 하여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세력균형"의 확립을 바라게 했습니다. 그것을 북미 대륙에서, 특히 미국에게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륙의 인민들만이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언제나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이 대륙에서 한 독립국가를 구성하는 어떤 지역이 우리 연방에 가입하기를 제안한다면, 그것은 그들과 우리가 외국의 간섭 없이 결정해야 할문제입니다. 우리는 유럽 국가들이 이 대륙에서유지되기를 원할지도 모르는 "세력균형"을 교란할 수있다는 이유로 그 같은 연방을 방지하려고 간여하는일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약 25년 전, 나의선임자 한 사람은 그 연례교서를 통해 이 원칙을세계에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즉.

"그들이 자유와 독립의 조건 하에서 장악하여 유지하고 있는 남북 미주 대륙은 금후 어떠한 유럽 국가에 의해서도 미래의 식민지화 대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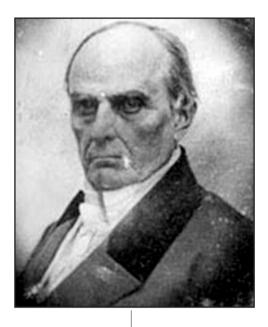
만약 어떤 유럽 국가가 북미주에 식민지를 새로

henceforth not to be considered as subjects for future colonization by any European powers."

This principle will apply with greatly increased force should any European power attempt to establish any new colony in North America. In the existing circumstances of the world the present is deemed a proper occasion to reiterate and reaffirm the principle avowed by Mr. Monroe and to state my cordial concurrence in its wisdom and sound policy. The reassertion of this principle, especially in reference to North America, is at this day but the promulgation of a policy which no European power should cherish the disposition to resist. Existing rights of every European nation should be respected, but it is due alike to our safety and our interests that the efficient protection of our laws should be extended over our whole territorial limits, and that it should be distinctly announced to the world as our settled policy that no future European colony or dominion shall with our consent be planted or established on any part of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확립하려고 시도한다면, 이 원칙들은 훨씬 강화된 힘을 갖고 적용될 것입니다. 현 세계 정세 하에서 지금은 먼로 씨가 선언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또 그 원칙의 슬기로움과 건전한 정책에 대한 나의 진정한 동의를 성명하는데 적절한 시기라고 간주합니다. 특히 북미주에 언급한 이 원칙의 재확인은 오늘날 어떠한 유럽 국가도 이에 저항하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된다는 한 정책을 강력히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유럽 국가들의 기존 권익을 존중해야 하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법은 우리의 전 영토에 걸쳐서 보호되어야 하며, 또 우리가 앞으로 북미대륙의 어떤 지역이건 유럽 식민지나 속령이 창설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확정된 정책으로서 세계에 분명하게 선언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당연합니다….

Daniel Webster's Second Reply to Robert Hayne (1830) / 13. 다니엘 웹스터: 로버트 헤인에 대한 제2차 답변 (1830)



In 1830, a great debate took place in the Senate of the U.S. Congress between Daniel Webster, of Massachusetts, and Robert Hayne, of South Carolina. Hayne maintained that the Union of the Stat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is merely a compact between independent States, and that lawfully, if they wished, States could withdraw from the Union. The following excerpt comes from a transcript of Webster's second reply to Hayne, spoken on January 26, where he protested that the Constitution is ordained and established by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its laws bind the States into a perpetual union from which they cannot lawfully separate. In thi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in his eloquent plea for unity, Webster gave voice to the new nationalism, and attempted to sweep away the whole doctrine of the right of a State to secede from the Union or to annul a Federal statute.

1830년 미국 상원에서 다니엘 웹스터 의원(매사추세 츠주 출신)과 로버트 헤인 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헤인 의원은 헌법에 의해 수립된 주연합은 각 독립 주 간에 성립된 하나의 맹약일 뿐이므로 각 주가 원한다면 합법적으로 주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웹스터 의원은 1830년 1월 26일 이에 항의하여 헌법은 전미국 국민에 의해 제정 확립된 것이며, 그리고 각 주를 구속하여 각 주가 제각기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없는 항구적인 연합에 가입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웹스터 의원은 헌법을 이같이 해석하고 단결을 위해 웅변으로 호소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주의를 천명, 주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거나 혹은 연방법을 폐기할 수 있는 주권을 주장하는 모든 이론을 일소하려고 했다.

···This leads us to inquire into the origin of this government and the source of its power. Whose agent is it? Is it the creature of the state legislatures, or the creature of the people? I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be the agent of the state governments, then they may control it, provided they can agree in the manner of controlling it; if

…이 문제로 우리는 미국정부의 기원과 그 권력의 근원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정부는 누구의 대행 기관입니까? 미국정부는 주입법부들이 만든 것일까요? 미국 정부가 주 정부들의 대행 기관이라면, 각 주 정부는 미국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에 합의하기만 하면

it be the agent of the people, then the people alone can control it, restrain it, modify, or reform it. It is observable enough that the doctrine for which the honorable gentleman contends leads him to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not only that this general government is the creature of the states, or that it is the creature of each of the states severally, so that each may assert the power for itself of determining whether it acts within the limits of its authority. It is the servant of four-and-twenty masters, of different wills and different purposes, and yet bound to obey all. This absurdity (for it seems no less) arises from a misconception as to the origin of this government and its true character. It is, sir, the people's Constitution, the people's government, made for the people, made by the people, and answerable to the peopl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have declared that this Constitution shall be the supreme law. We must either admit the proposition or dispute their authority. The states are, unquestionably, sovereign, so far as their sovereignty is not affected by this supreme law. But the state legislatures, as political bodies, however sovereign, are yet not sovereign over the people. So far as the people have given power to the general government, so far the grant is unquestionably good, and the government holds of the people and not of the state governments. We are all agents of the same supreme power, the people. The gen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derive their authority from the same source. Neither can, in relation to the other, be called primary, though one is definite and restricted, and the other general and residuary. The national government possesses those powers, which it can be shown the people have conferred on it, and no more. All the rest belongs to the state governments, or to the people themselves. So far as the people have restrained state sovereignty, by the expression of their will,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far, it must be admitted, state sovereignty is effectually controlled farther.

The sentiment to which I have referred propounds that state sovereignty is only to be controlled by its own "feeling of justice"; that is to say, it is not to be controlled at all, for one who is to follow his own feelings is under no

미국정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인민들의 대행 기관이라면, 그것은 인민들만이 통제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수정 혹은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이론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미국정부가 제주(諸州)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개개 주의 개별적인 산물이므로 각 주는 미국정부 자체의 권한 내에서 행동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권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미국정부는 뜻과 목적을 달리하는 24개(24개 주를 말함)의 주인들의 하인이면서, 동시에 인민 전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미국정부의 기원과 그 진정한 성격에 관한 오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정부의 기원은 인민의 헌법이며, 정부의 성격은 인민을 위해, 인민이 만든, 인민에게 책임지는 인민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이 헌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인하거나 혹은 이 선언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해야 합니다. 각 주는 그들의 주권이 이 최고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확실히 주권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조직체인 주입법부들은. 제아무리 독자적인 권한을 가졌다 할지라도, 국민이 미국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 주권이 확실히 유효하고, 그리고 미국정부가 주정부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국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 국민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최고권력인 대행자들입니다. 미국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은 동일한 연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주정부는 상호관계에 있어 미국 정부는 확정,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는 일반적인, 그리고 잔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한 쪽이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만큼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잔여권한은 주정부들이나 혹은 국민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국민이 미국 헌법에서 그들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의 주권을 제한한 한 주의 주권이 실제로 통제되었음이 시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이상 더 주의 주권이 통제되어 있다거나 혹은 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control. Now, however men may think this ought to be, the fact is tha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have chosen to impose control on state sovereignties. There are those, doubtless, who wish they had been left without restraint; but the Constitution has ordered the matter differently. To make war, for instance, is an exercise of sovereignty; but the Constitution declares that no state shall make war. To coin money is another exercise of sovereign power; but no state is at liberty to coin money. Again, the Constitution says that no sovereign state shall be so sovereign as to make a treaty. These prohibitions, it must be confessed, are a control on the state sovereignty of South Carolina, as well as of the other states, which does not arise "from her own feelings of honorable justice." The opinion referred to, therefore, is in defiance of the plaines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 . .

But, sir, the people have wisely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itself, a proper, suitable mode and tribunal for settling questions of Constitutional law. There are in the Constitution grants of powers to Congress, and restrictions on these powers. There are, also, Prohibitions on the states. Some authority must, therefore, necessarily exist, having the ultimate jurisdiction to fix and ascertain the interpretation of these grants,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The Constitution has itself pointed out, ordained, and established that authority. How has it accomplished this great and essential end? By declaring, sir, that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made in pursuance thereof,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y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I have not allowed myself, sir, to look beyond the Union, to see what might he hidden in the dark recess behind. I have not coolly weighed the chances of preserving liberty when the bonds that unite us together shall be broken asunder. I have not accustomed myself to hang over the precipice of disunion, to see whether, with my short sight, I can fathom the depth of the abyss below; nor could I regard him as a safe counselor in the affairs in this government whose thoughts should be mainly bent on considering, not how the Union may be best preserved but

내가 항의하고 있는 귀하의 생각은, 주의 주권은 주자신의 "정의감"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즉 자기자신의 감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 자는 법의 규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 주권은 전혀 통제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아무리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될지라도, 엄연한 사실은 미국 국민이 주의 주권에 통제를 가하기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주권에 통제가 가해지지 않기를 바란 자들이 있었지만, 미국 헌법은 이 문제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예컨대, 개전은 하나의 주권 행사인데, 미국 헌법은 개전권이 주에게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화폐주조 역시 또 하나의 주권 행사인데, 어떠한 주도 마음대로 화폐를 주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또한 각 주는 조약 체결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이러한 금지 규정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주권에 대한 통제일 뿐만 아니라 기타 제주에 대한 통제이기도 한 것이며, 이러한 통제는 "주 자신의 명예로운 정의감으로부터"연유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항의하고 있는 귀하의 생각은 미국 헌법의 가장 명백한 규정에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인 의원, 국민은 헌법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적절한 방식과 법정을 헌법 자체 안에 현명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미국 헌법 안에는 국민의연방의회에 대한 수권, 이들 제 권한에 대한 제한규정 그리고 각 주에 대한 금지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수권, 제한규정 그리고 금지 규정들에 대한 해석을 확정・확인하는 최종적인 사법권을 가진어떤 권능이 불가피하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미국헌법은 그러한 권능을 지적하고, 제정하고, 확립해놓았습니다. 헌법은 이 위대하고도 필수불가결의목적을 어떻게 달성했을까요? 다음과 같은 규정에의해 달성했습니다. 즉, "본 헌법과 본 헌법에 준거하여제정된 미국 법률들은…각 주의 헌법 혹은 법률들중에 이에 반대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 나라의최고의 법(the supreme law of the land)이다."

해인 의원, 나는 주연합을 넘어서 배후의 어둔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를 단합시키는 연대 관계들이 산산조각 날 때의 자유보존의 기회들에 대해 냉담하게 계산해본 적이 how tolerable might be the condition of the people when it should be broken up and destro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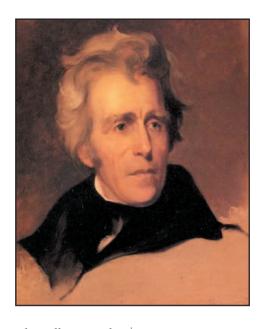
While the Union lasts, we have high, exciting, gratifying prospects spread out before us, for us and our children. Beyond that I seek not to penetrate the veil. God grant that in my day, at least, that curtain may not rise! God grant that on my vision never may be opened what lies behind! When my eyes shall be turned to behold for the last time the sun in heaven, may I not see him shining on the broken and dishonored fragments of a once glorious Union; on states dissevered, discordant, belligerent; on a land rent with civil feuds, or drenched, it may be, in fraternal blood!

Let their last feeble and lingering glance rather behold the gorgeous ensign of the republic, now known and honored throughout the earth, still full high advanced, its arms and trophies streaming in their original luster, not a stripe erased or polluted, nor a single star obscured, bearing for its motto, no such miserable interrogatory as "What is all this worth?" nor those other words of delusion and folly, "Liberty first and Union afterwards"; but everywhere, spread all over in characters of living light, blazing on all its ample folds, as they float over the sea and over the land, and in every wind under the whole heavens, that other sentiment, dear to every true American heart-Liberty and Union, now and forever, one and inseparable!

없습니다. 나 자신 분열의 절벽에 매달려 나의 근시안으로 아래쪽의 심연의 깊이를 내가 재어볼 수 있을 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일에 익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는 국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주연합이 가장 잘 보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연합이 붕괴되고 파괴될 때 국민의 형편이얼마나 좋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에만 주로 골몰하고 있는 자를 안전한 의논 상대자로 간주할 수도 없습니다.

주연합이 존속하는 동안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고매하고도 환희에 찬 흐뭇한 전망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나는 그 이상 베일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적어도 내 평생에는 그 베일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일 배후의 것이 절대로 나의 시계에 나타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이 하늘의 태양을 마지막으로 바라다 보게 될 때, 한때 영광스러웠던 주연합의 부서진 수치스러운 단편들 위에서, 분열되고 불화하고 호전적인 주들 위에서, 그리고 민중의 반목으로 찢겨졌거나 혹은 아마도 동포의 피로 흠뻑 젖어 있는 땅 위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보지 않게 하소서! 힘없고 미련 있는 듯한 내 마지막 눈길들을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존경 받는 공화국의 화려한 국기가 하늘 드높이 게양되고, 그 무기와 전승 기념품들이 본래의 영광을 그대로 빛내고 있고, 그 줄이 하나도 지워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았고, 또 단 한 개의 별도 희미하게 되지 않은 공화국 국기를 볼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모두가 무슨 보람 있는 것인가?" 라는 비참한 질문이나 혹은 "우선 자유 그리고 주연합은 나중"(Liberty first, and Union afterward) 따위의 망상적이고 어리석은 말들을 표어로 삼지 않고, 이 공화국기가 바다와 육지 위에, 그리고 온 천하의 하늘에서 나부낄 때 모든 진정한 미국인들의 심중에 귀중한 또 다른 감정, 즉 "자유와 주연합"(Liberty and Union)은 현재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이고 서로 불가분의 것이라는 감정이, 살아있는 빛인 양 온 누리에 퍼지게 해주소서!

Andrew Jackson on Nullification (1832) / 14. 앤드루 잭슨: 포고문 (1832)



For several years tariffs had been imposed on all imported goods as a "protection" to American manufacturers. This was resented by the State of South Carolina, whose economy rested mainly on agriculture. Outraged by the tariff of July 1832, the Legislature of South Carolina called a convention to decide what should be done. In November of that year the Convention adopted an Ordinance of Nullification, which declared the tariff law null and void in South Carolina, and required all State officers to take an oath of loyalty to the State and the Ordinance. It forbade any judge to take cognizance of any case challenging the Ordinance. In his memorable December 10, 1832, proclamation against this unconstitutional act, President Andrew Jackson reviewed the entire question of States' rights. A compromise tariff in 1833 averted the danger of a showdown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a State, but the doctrines of nullification and secession continued to plague the Nation.

여러 해 동안, 미국 제품의 "보호책"으로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농업의존 경제 하에 있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 는 이에 격분했다. 1832년 6월의 관세율에 분개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의회는 그 대책을 결정하기 위해 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해 11월에 그 회의는 연방법 무효령을 채택하여 관세법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언하고 모든 주 관리들에게 주와 그 법령에 대한 충성 선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법관에게는 이 법령에 대한 이의 소송 접수를 금하였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1832년 12월 10일에 이 위헌 행위에 반대하는 기억될만한 포고에서 주의 권리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연방 정부와 주 사이의 대결위험은 1833년의 타협적인 관세율로서 모면했으나. 연방법 무효 및 이탈주의는 미국을 계속 괴롭혔다.

The ordinance is founded, not on the indefeasible right of resisting acts which are plainly unconstitutional, and too oppressive to be endured, but on the strange position that any one State may not only declare an act of Congress …그 연방법 무효령은, 분명한 위헌성과 견디기 힘든 억압적 조처들에 항거할 수 없는 파기 불능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주라도 (연방) 의회법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법의

void, but prohibit its execution- that they may do this consistently with the Constitution-that the true construction of that instrument permits a State to retain its place in the Union, and yet be bound by no other of its laws than those it may choose to consider as constitutional. It is true they add, that to justify this abrogation of a law, it must be palpably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but it is evident, that to give the right of resisting laws of that description, coupled with the uncontrolled right to decide what laws deserve that character, is to give the power of resisting all laws. For, as by the theory, there is no appeal, the reasons alleged by the State, good or bad, must prevail. If it should be said that public opinion is a sufficient check against the abuse of this power, it may be asked why it is not deemed a sufficient guard against the passage of an unconstitutional act by Congress. There is, however, a restraint in this last case, which makes the assumed power of a State more indefensible, and which does not exist in the other. There are two appeals from an unconstitutional act passed by Congress-one to the judiciary, the other to the people and the States.

If the doctrine of a State veto upon the laws of the Union carries with it internal evidence of its impracticable absurdity, our constitutional history will also afford abundant proof that it would have been repudiated with indignation had it been proposed to form a feature in our Government.

In our colonial state, although dependent on another power, we very early considered ourselves as connected by common interest with each other. Leagues were formed for common defense, and befor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e were known in our aggregate character as the United Colonies of America. That decisive and important step was taken jointly. We declared ourselves a nation by a joint, not by several acts; and when the terms of our confederation were reduced to form, it was in that of a solemn league of several States, by which they agreed that they would, collectively, form one nation,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some certain domestic concerns, and all foreign relations.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기이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헌법의 올바른 해석에 따라 주는 연방의 한 성원으로 있으면서도 그 주가 독자적으로 합헌적이라고 간주하는 법 이외의 어떠한 연방법에도 구속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또한 이 같은 법의 무효화가 정당화되려면 문제의 법이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질의 법들에 항거할 수 있는 권리와 아울러 어떠한 법들이 그 같은 성질의 법들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무절제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법들에 항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상 상소가 없을 터이므로 좋건 나쁘건 그 주가 주장하는 이유가 인정될 것이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권한의 남용은 여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연방)의회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여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간주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며, 바로 이 제약 때문에 주의 그 같은 "권한"은 더욱더 옹호하기 힘들게 된다. 즉. (연방)의회가 위헌적인 법을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두 가지 상소의 길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사법부에의 상소이고 또 하나는 인민과 주들에의 상소입니다...

주의 연방법 거부권 이론은 스스로 비실제적인 불합리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우리 정부의 한 특징이 되게 하자는 제의가 있었더라면 그 제의는 분노로써 거부당했으리라는 많은 증거를 우리의 헌정사는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식민 주 시대에, 우리는 다른 국가에 의존하기는 했으나, 매우 일찍부터 우리 자신들이 서로 공동이익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공동방위를 위한 연맹을 조직하였고, 또 독립선언 이전에 우리들은 그 전체의 성격이 아메리카 식민지 연맹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조치가 아니라, 한 공동조치로서 우리들이 한 국민임을 선언했으며, 또 우리 국가를 형성하기로 한 연방의

I consider, then, the power to annul a law of the United States, assumed by one State, incompatible with the existence of the Union, contradicted expressly by the letter of the Constitution, unauthorized by its spirit, inconsistent with every principle on which It was founded, and destructive of the great object for which it was formed.

If the unequal operation of a law makes it unconstitutional and if all laws of that description may be abrogated by any State for that cause, then, indeed, is the federal Constitution unworthy of the slightest effort for its preservation, We have hitherto relied on it as the perpetual bond of our Union. We have received it as the work of the assembled wisdom of the nation, We have trusted to it as to the sheet-anchor of our safety, in the stormy times of conflict with a foreign or domestic foe. We have looked to it with sacred awe as the palladium of our liberties, and with all the solemnities of religion have pledged to each other our lives and fortunes here, and our hopes of happiness hereafter, in its defense and support.

Here is a law of the United States, not even pretended to be unconstitutional, repealed by the authority of a small majority of the voters of a single State. Here is a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solemnly abrogated by the same authority.

On such expositions and reasonings, the ordinance grounds not only an assertion of the right to annul the laws of which it complains, but to enforce it by a threat of seceding from the Union if any attempt is made to execute them.

This right to secede is deduced from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which they say is a compact between sovereign States who have preserved their whole sovereignty, and therefore are subject to no superior; that because they made the compact, they can break it when in their opinion it has been departed from by the other States. Fallacious as this course of reasoning is, it enlists State pride, and finds advocates in the honest prejudices of those who have not studied the nature of our government

조건은 수 개 주들의 엄격한 연맹의 조건에서 나왔으며, 또 그 조건에 의해 그 주들은 일부 국내 문제들과 모든 외교관계를 지휘할 목적을 갖는 한 나라를 공동으로 형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 주가 미국의 어떤 법을 무효화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연방의 존재와 양립하지 않고, 헌법조문과 명백히 모순되고, 헌법 정신이 허용치 않고, 연방을 창설한 모든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또 연방을 형성한 대목적을 파괴한다고 간주합니다.

만약 어떤 법의 불평등한 운영이 그 법을 위헌으로 만든다면, 그리고 만약 그러한 종류의 모든 법이 그러한 이유로 주에 의해 폐기 될 수 있다면, 사실에 있어서 연방법은 그 보전을 위해 추호도 힘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연방의 영원한 결속요소로서 헌법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국민의 지혜를 모은 업적으로서 인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외국의 적이나 국내의 적과 싸운 격동기에 우리의 안전에 대한 최후의 희망으로서 헌법을 신뢰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외경심을 갖고 헌법을 자유의 수호자로 의지해 왔으며, 또종교적 엄숙성을 갖고, 헌법을 옹호, 지지함으로써 이곳에서의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금후의 행복에 대한 우리 희망을 굳게 지키기로 서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하려고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1개 주의 유권자들 중 얼마 많지 않은 다수의 권한으로 한 미국의 법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권한으로써 미국헌법의 한 조항이 엄숙하게 폐기되었습니다.

그 같은 설명과 논리에 관해 이 무효령은 그 근거로서 불만스런 법을 무효로 할 권리를 주장할 뿐 아니라, 만약 그 법을 시행한다면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으로써 그 무효령을 시행하겠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탈퇴권은 헌법의 성질에서 추론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헌법이 주권을 완전히 보류하며, 따라서 어떠한 상위자의 지배도 받지 않는 주권 있는 주들 sufficiently to see the radical error on which it rest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n forms a government, not a league, and whether it be formed by compact between the States, or in any other manner, its character is the same. It is a government in which all the people are represented, which operates directly on the people individually, not upon the States; they retained all the power they did not grant. But each State having expressly parted with so many powers as to constitute jointly with the other States a single nation, cannot from that period possess any right to secede, because such secession does not break a league, but destroys the unity of a nation, and any injury to that unity is not only a breach which would result from the contravention of a compact, but it is an offense against the whole Union. To say that any State may at pleasure secede from the Union, is to say that the United States are not a nation; because it would be a solecism to contend that any part of a nation might dissolve its connection with the other parts, to their injury or ruin, without committing any offense. Secession, like any other revolutionary act, may be morally justified by the extremity of oppression; but to call it a constitutional right, is confounding the meaning of terms, and can only be done through gross error, or to deceive those who are willing to assert a right, but would pause before they made a revolution, or incur the penalties consequent upon a failure.

Because the Union was formed by compact, it is said the parties to that compact may, when they feel themselves aggrieved, depart from it; but it is precisely because it is a compact that they cannot. A compact is an agreement or binding obligation. It may by its terms have a sanction or penalty for its breach, or it may not. If it contains no sanction, it may be broken with no other consequence than moral guilt; if it has a sanction, then the breach incurs the designated or implied penalty. A league between independent nations, generally, has no sanction other than a moral one; or if it should contain a penalty, as there is no common superior, it cannot be enforced. A government, on the contrary, always has a sanction, express or implied;

사이의 계약이며, 또 그런 주들은 계약을 맺었기때문에, 다른 주들이 그것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해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방향의 추론은 그릇된 것이지만, 주의 자랑거리를 열거하고 또 우리정부의 근거에 관해 근본적인 잘못을 가려낼 만큼 그본질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의 순진한편견에서 그 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은 어떤 연맹이 아니라 한 정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주들의 계약으로 형성하건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형성하건, 그 본성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부이며, 주가 아니라 개개 국민들에 직접 의존해서 운영합니다. 즉, 국민들은 그들이 양허하지 않은 모든 권한은 그들 스스로가 보유합니다. 그러나 각 주는 다른 주들과 공동으로 단일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의 권한을 명문으로 포기했으며, 그때부터 탈퇴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같은 탈퇴가 한 연맹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민의 결속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속에 대한 어떤 가해는 한 계약위반에서 결과하는 침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연방 전체에 대한 모독도 됩니다. 어떤 주가 마음대로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 한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위반도 저지르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가해하거나 파탄케 하면서 그 부분들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혁명적 행동처럼, 탈퇴행위는 극악한 압정에 의해 도의적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을 헌법상의 권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혼동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탈퇴 행위는 큰 잘못을 통해서, 혹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용의가 있으면서도, 혁명하기 앞서 또는 실패에 따른 형벌을 초래하기 앞서 주저하는 사람들을 기만함으로써만 취해질 수 있습니다.

연방은 한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당사자는 그들이 불만을 품을 때 그 연방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계약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한 협약 또는 구속력 있는 의무입니다. 그것은 그 조항에 의해 그것을 and, in our case, it is both necessarily implied and expressly given. An attempt by force of arms to destroy a government is an offense, by whatever means the constitutional compact may have been formed; and such government has the right, by the law of self-defense, to pass acts for punishing the offender, unless that right is modified, restrained, or resumed by the constitutional act. In our system, although it is modified in the case of treason, yet authority is expressly given to pass all laws necessary to carry its powers into effect, and under this grant, provision has been made for punishing acts which obstruct the due administration of the laws.

Men of the best intentions and soundest views may differ in their construction of some parts of the Constitution, but there are others on which dispassionate reflection can leave no doubt. Of this nature appears to be the assumed right of secession. It rests, as we have seen, on the alleged undivided sovereignty of the States, and on their having formed in this sovereign capacity a compact which is called the Constitution, from which, because they made it, they have the right to secede. Both of these positions are erroneous, and some of the arguments to prove them so have been anticipated.

It would not do to say that our Constitution was only a league, but it is labored to prove it a compact (which, in one sense, it is), and then to argue that as a league is a compact, every compact between nations must, of course, be a league, and that from such an engagement every sovereign power has a right to recede. But it has been shown that in this sense the States are not sovereign, and that even if they were, and the national Constitution had been formed by compact, there would be no right in any one State to exonerate itself from the obligation.

So obvious are the reasons which forbid this secession that it is necessary only to allude to them. The Union was formed for the benefit of all. It was produced by mutual sacrifice of interest and opinions. Can those sacrifices be recalled? Can the States, who magnanimously surrendered their title to the territories of the West, recall the grant?

위반한데 대해 법의 강제력이나 처형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법의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을 도의적 죄책이외의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않고 위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법의 구속력을 갖는다면, 그 위반은 지정된, 또는 묵시된 형벌을 받습니다. 독립국가 간의 연맹은 일반적으로 도의적인 것 이외의 법의 구속력을 포함할지라도 공통한 상위자가 없기 때문에 그 형벌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 정부는 언제나 법의 구속력을 명문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가지며, 또 우리의 경우 그 구속력은 필연적으로 명문과 묵시 모두를 포함합니다. 무력의 힘으로 한 정부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어떤 방법으로 헌법적 계약을 맺었건, 하나의 범법행위이며, 따라서 그러한 정부는 자위의 법에 의해 그 범법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는 그것이 헌법적 조치에 의해 수정되거나 제약되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우리 헌법제도는 그것이 대역죄의 경우에 대해 수정하기는 했으나, 그 권력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권 하에 법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선한 의도와 건전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헌법의 일부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검토했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의 조항에 이른바 탈퇴권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합니다. 상술한 것같이, 그 탈퇴권은 이른바 분할되지 않은 주 주권에 근거하고. 또 이 같은 주권의 자격으로서 헌법이라고 부르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주들이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모두 잘못인데, 그 입장을 입증하기 위한 일부 주장이 예견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단순한 연맹에 불과하다고 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나, 헌법이 한 계약임을 입증하고(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합니다), 다음에 연맹이 계약이므로 국가간의 모든 계약은 물론 연맹이 되어야 하며, 또 모든 주권 국가는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이탈할 권리를 갖는다고 힘써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주는 주권을 갖지 않으며, 또 설사 주권을 갖고 또

Will the inhabitants of the inland States agree to pay the duties that may be imposed without their assent by those on the Atlantic or the Gulf, for their own benefit? Shall there be a free port in one State, and enormous duties in another? No one believes that any right exists in a single State to involve all the others in these and countless other evils, contrary to engagements solemnly made. Everyone must see that the other States, in self-defense, must oppose it at all hazards.

국가헌법이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한 주가 그 의무를 면제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 점이 밝혀져 왔습니다.

그 같은 이탈을 금지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러한 이유들을 암시하면 충분합니다. 연방은 모두를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연방은 이익과 의견을 상호간에 희생시킴으로써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복구 시킬 수 있겠습니까? 서부 속령들에 대한 소유권을 관대하게 내어준 주들은 그러한 양도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내지의 주들은 대서양과 멕시코만 연안의 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내지 주들의 동의 없이 부과할지 모를 조세를 납부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한 주에는 자유항이 있고 다른 주에는 무거운 관세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엄숙하게 체결한 협약에 반대되는 이 같은,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사악에 모든 다른 주들을 관련케 하는 권리가 어떤 한 주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주들이 자위를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1835) / 15.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835년)



(Alexis de Tocqueville)

Strangers can often observe with greater clarity that with which we are too familiar, and throughout their history Americans have been fascinated by the comments of foreign travelers. Moreover, those comments have often highlighted aspects of American culture and society that Americans themselves had not previously noticed. Of the many travelers who visited America and wrote down their impressions, none proved as perceptive as Alexis de Tocqueville, and none of their works has had such an enduring impact, not only on explaining Jacksonian America to the Old World, but to the New as well.

De Tocqueville and Gustave de Beaumont, both French aristocrats, were sent by the French government in 1831 to study the American prison system. They arrived in New York in May of that year, and spent nine months traveling around the United States, taking notes not only on prisons, but on all aspects of American society, its economy and its unique political system. After they returned to France in February 1832, the two men submitted their penal report, and Beaumont wrote a novel about rac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외부인이 더 명료하게 고찰할 수 있으며, 미국인은 역사적으로 외국인 여행자의 코멘트에 항상 매료되어 왔다. 이러한 코멘트는 또한, 미국인 스스로 간파하지 못한 미국문화와 미국 사회의 면면을 부각시킨 경우가 많았다. 미국을 방문한 후 그 감상을 기록한 수많은 여행자 중알렉시스 드 토크빌 만큼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한사람은 없었으며, 잭슨 대통령 당시의 미국을 구대륙과신대륙에 전함에 있어 토크빌의 작품만큼 오랜 영향을 미친 작품은 없었다.

프랑스의 귀족인 드 토크빌과 귀스타브 드 보몽(Gustave de Beaumont)은 1831년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감옥제도를 연구하도록 미국으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그 해 5월 뉴욕에 도착해 미국 전역을 9개월간 여행하면서 감옥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 독특한 정치제도 등 미국 사회의 모든 면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1832년 2월 프랑스로 돌아가서 형벌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보몽은 미국의 인종관계에 관한 소설을 썼다.

이 중 드 토크빌의 작품은 고전이 되었으며, 19세기에

But it would be de Tocqueville's work, which went through innumerable editions in the nineteenth century. that became a classic. American politics fascinated him, and he caught the sense--so alien to the Old World--of the dedication of common people to the political process. He came when Andrew Jackson was president and political parties were undergoing a major transformation, from small organizations dominated by local elite caucuses to mass membership bodies devoted to electing officials at the local, state and national level. As he noted with amazement, "No sooner do you set foot upon American ground, than you are stunned by a kind of tumult. . . . Almost the only pleasure which an American knows is to take a part in the government, and to discuss its measures. To give but one example of this enthusiasm, at a great outdoor gathering at Auburn, New York, Senator Rivers of Virginia addressed the audience for three and a half hours! After the crowd took a brief stretch, Senator Legar, of South Carolina went on for another two and a half hours!"

"Democracy in America" is acclaimed for its author's perception, but it has also been criticized by recent scholars for its glaring gaps as well. The aristocratic de Tocqueville chose not to see many things, including poverty in the cities and the plight of slaves. But his account of Jacksonian America captures the energy of the young nation and, above all, how intensely people made democracy work. The following selection, analyzing the political system, caught some of the weaknesses of democracy as well as its strengths.

For further reading: Whitney Pope and Lucetta Pope, Alexis de Tocqueville: His Social and Political Theory (1986); Richard Reeves, American Journey: Traveling with Tocqueville in Search of Democracy in America (1982).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판이 발간되었다. 미국의 정치에 매료된 드 토크빌은 당시 구대륙에서는 낯선 개념이었던, 보통 사람들이 정치 프로세스에 헌신하는 모습을 포착하였다. 그는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당시의 정당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즉 시. 군의 엘리트 지방대회가 지배하는 소규모 조직에서 시, 군, 주 및 전국 수준에서 관리를 선출하는 대규모 당원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을 때 미국에 왔다. 이에 감탄한 그는 "미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일종의 격정에 휩싸이게 된다… 미국인이 아는 거의 유일한 즐거움은 정부에 참여하여 정부의 활동을 논하는 것이다. 이 열정의 일례를 들자면, 뉴욕 주 오번(Auburn)에서 열린 대규모 야외 집회에서 버지니아 주의 리버스(Rivers) 상원의원은 청중들에게 세 시간 반 동안 연설하였다! 그리고, 청중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Legar 상원의원이 또 두 시간 반 동안 연설을 하였다!"고 썼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 작가의 고찰에서는 찬미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엄청난 격차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귀족인 드 토크빌은 도시의 궁핍과 노예의 고통 등 많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잭슨 대통령 당시 미국에 대한 그의 묘사는 신생 국가의 에너지와, 무엇보다,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포착하였다. 다음에 소개된 글들은 정치제도를 분석하고 있는 글로서 민주주의의 장점과 더불어 일부 단점도 포착하고 있다.

관련 추가자료: 위트니 포프(Whitney Pope)와 루세타 포프(Lucetta Pope), 알렉시스 드 토크빌 '그의 사회정치이론(His Social and Political Theory)', 1986년, 리처드 리브즈(Richard Reeves) '미국 여행: 미국의 민주주의를 찾아 토크빌과 함께 떠나는 여행(American Journey: Traveling with Tocqueville in Search of Democracy in America), 1982년.

Ralph Waldo Emerson: Self-Reliance (1841) / 16. 랠프 왈도 에머슨: 자립 (1841년)

Ralph Waldo Emerson (1803-1882) was democracy's poet and the central figure in the Transcendental movement that invigorated American intellectual life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Transcendentalism defined "reason" as the highest human faculty, the individual's innate capacity to grasp beauty and truth by allowing full play to the intellect and emotions. The movement emerged from a small group of intellectuals centered in Concord, Massachusetts, and Emerson proved not only its intellectual leader but its most eloquent voice as well.

Trained as a Unitarian minister, Emerson left the church in 1832 to devote himself to writing and teaching and fostering a unique American philosophy. In "The American Scholar" (1837), he called upon his countrymen to achieve an intellectual independence from Europe to complement the political independence they had already achieved. As Henry Clay had commented, "We look too much abroad. . . . Let us become real and true Americans." In his address to Harvard, Emerson asked, "Why should not we have a poetry and philosophy of insight and not of tradition and a religion by revelation to us? Let us demand our own works and laws and worship." Oliver Wendell Holmes called the speech "Our intellectu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his poetry and essays, Emerson celebrated the diversity and freedom he found in American life, and he demanded that his fellow citizens be worthy of their freedom by daring to be independent in their individual lives. In this, his most famous essay, he declared that "Nothing is sacred but the integrity of your own mind." The quest for self-reliance was really a search for harmony in the universe, which could only be achieved by each person seeking his or her own unique means of self-fulfillment. Emerson scandalized proper society by his attacks on organized religion, which he believed stifled the soul; for him, the divinity of each person lay in the individuality that

랠프 왈도 에머슨(1803-1882년)은 민주주의의 시인이자 19세기 중엽 미국의 지식생활을 고무한 초월주의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다. 초월주의는 '이성'을 인간 최고의 능력, 즉 지성과 감성의 완전한 발현을 통하여 아름다움과 진실을 이해하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 운동은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식인 그룹에서 출발하였는데, 에머슨은 이 운동의 지적 지도자인 동시에 가장 탁월한 대변자였다.

일신론 목사 교육을 받은 에머슨은 1832년 교회를 떠나 미국 고유의 철학을 위한 저술, 강의 및 육성 활동에 헌신하였다. '미국의 학자'("The American Scholar", 1837년)에서 그는 국민들에게 유럽에서 지적으로 독립함으로써 이미 성취된 정치적 독립을 보완하자고 주창하였다. 헨리 클레이(Henry Clay)는 '우리는 해외를 너무 많이 본다… 진정한 미국인이 되자'고 말하였다. 하버드에서 한 연설에서 에머슨은 '왜 우리는 전통에 의한 시와 철학이 아니라 통찰력에 의한 시와 철학과 우리에게 계시된 종교를 가지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의 작품과, 법과 신앙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는 이 연설을 가리켜 '우리의 지적독립 선언문'이라 하였다.

에머슨은 그 시와 수필에서 미국의 삶에서 그가 발견하는 다양성과 자유를 찬미하였고, 개인적인 삶에서 과감하게 독립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출 것을 미국인들에게 요구하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수필에서, 에머슨은 '자신의 마음의 고결성 외에 궁극적으로 신성한 것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자립의 추구는 사실 우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각 개인이 그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실현 수단을 추구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에머슨은 조직화된 종교가 영혼의 숨을 막는다고 공격함으로써 전통적 사회집단의 분노를 샀다. 그는 개인의 신성함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개성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에머슨은 여기에서도 could be sought in a free society. Even there, he noted, the idealist could be misunderst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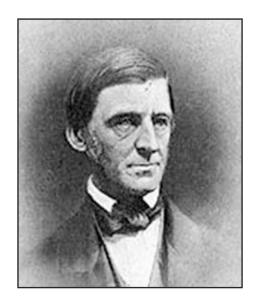
Originally Emerson eschewed the "real" world for his beloved ideas. Although he opposed slavery, he avoided for as long as possible the radical abolitionist societies calling for an end to Negro bondage. But when he believed that his hero, Daniel Webster, had betrayed public trust by supporting the Fugitive Slave Law of 1850, Emerson attacked him publicly. In the next decade, he helped hide runaway slaves and spoke out openly for the abolitionist cause.

For further reading: Gay Wilson Allen, Waldo Emerson (1981); Stephen E. Whicher, Freedom and Fate: An Inner Life of Ralph Waldo Emerson (1953); Philip F. Gura and Joel Myerson, eds., Critical Essays on American Transcendentalism (1982).

이상주의자가 오해 받을 수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당초 에머슨은 사랑하는 철학을 위해 '현실' 세계를 피하였다. 그는 비록 노예제도에 반대하기는 하였지만, 흑인 노예제도의 종식을 요구하는 급진적 노예제도 폐지론자 단체를 오랫동안 피하였다. 그러나, 우상으로 삼고 있던 대니얼 웹스터(Daniel Webster)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고 1850년 도주노예법(Fugitive Slave Law)을 지지하자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그 후 10년 동안 그는 도망 노예를 숨겨주고 공개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였다.

관련 추가자료: 게이 윌슨 엘런(Gay Wilson Allen) 왈도 에머슨(Waldo Emerson), 1981년, 스테픈 E. 위처(Stephen E. Whicher) '자유와 운명: 랠프 왈도 에머슨의 내면세계'(Freedom and Fate: An Inner Life of Ralph Waldo Emerson), 1953년, 필립 E. 구라(Philip F. Gura)와 조엘 마이어슨(Joel Myerson), eds., '미국 초월주의에 관한 비판적 에세이'(Critical Essays on American Transcendentalism), 1982년.



"Self-Reliance" Ne te quaesiveris extra.

"Man is his own star; and the soul that can Render an honest and a perfect man Commands all light, all "자립: 자신 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말라"

"인간은 스스로에게 별과 같은 존재이며, 정직하고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영혼이며, 모든 빛과, 영향력과 운명을 통제하는 존재이다. 인간에게는 일찍 떨어지는 것도 없고 너무 늦게 떨어지는 것도 없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천사는, 그 선악과 관계 없이 우리 옆을 조용히 걷는 운명의 그림자이다." 보몽과 플레처(Fletcher)의 '정직한 자의 운명(Honest Man's Fortune)'의 에필로그.

개구쟁이를 바위산에 던지고, 암컷 늑대의 젖꼭지를 빨리고, 매와 여우와 더불어 겨울을 나게 하면, 그 손과 발이 강하고 빨라지리라.

어느 날 저명한 화가가 쓴 독창적이고 비전통적인 시를 읽었다. 영혼은 그 주제가 무엇이건 간에 이러한 글에서 항상 꾸짖음을 듣게 된다. 이러한 글이 고무하는 정서는 글 속에 담긴 생각 보다 더 가치 있는 influence, all fate; Nothing to him falls early or too late. Our acts our angels are, or good or ill, Our fatal shadows that walk by us still." --Epilogue to Beaumont and Fletcher's Honest Man's Fortune

Cast the bantling on the rocks, Suckle him with the she-wolf's teat, Wintered with the hawk and fox, Power and speed be hands and feet.

I read the other day some verses written by an eminent painter which were original and not conventional. The soul always hears an admonition in such lines, let the subject be what it may. The sentiment they instill is of more value than any thought they may contain. To believe your own thought, to believe that what is true for you in your private heart is true for all men,--that is genius. Speak your latent conviction, and it shall be the universal sense; for the inmost in due time becomes the outmost, and our first thought is rendered back to us by the trumpets of the Last Judgment. Familiar as the voice of the mind is to each, the highest merit we ascribe to Moses, Plato, and Milton is that they set at naught books and traditions, and spoke not what men, but what they thought. A man should learn to detect and watch that gleam of light which flashes across his mind from within, more than the lustre of the firmament of bards and sages. Yet he dismisses without notice his thought, because it is his. In every work of genius we recognize our own rejected thoughts; they come back to us with a certain alienated majesty. Great works of art have no more affecting lesson for us than this. They teach us to abide by our spontaneous impression with good-humored inflexibility than most when the whole cry of voices is on the other side. Else to-morrow a stranger will say with masterly good sense precisely what we have thought and felt all the time, and we shall be forced to take with shame our own opinion from another.

There is a time in every man's education when he arrives at the conviction that envy is ignorance; that imitation is suicide; that he must take himself for better for worse as his portion; that though the wide universe is full of good, no kernel of nourishing corn can come to him but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마음 속에 진실한 것이 만인에게 진실하다고 믿는 것, 이것은 천재성의 발현이다. 자신에게 잠재된 확신을 말하라. 보편적인 생각이 될 것이다. 가장 내적인 것이 때가 되면 가장 외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처음 생각이 마지막 심판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목소리만큼 친근한 모세와 플라톤과 밀턴에 대하여서. 이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바는 이들이 책이나 전통에 기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인간은 음유시인이나 현자가 노래한 창공의 광채 보다 마음 속으로부터 반짝이는 섬광을 감지하고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생각을 자기 것이라는 이유로 무시한다. 천재의 모든 작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을 발견하고, 스스로 거부한 자신의 생각이 타인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옴을 보게 된다. 위대한 예술작품이라고 해서 이 보다 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는 아니한다. 위대한 예술작품은 대부분의 다른 작품의 목소리가 정 반대편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의 자연적인 느낌을 명랑한 의지를 가지고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일 낯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낀 바를 정확하게 말할 것이며, 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끄럽게 받아 들이게 된다.

모든 사람의 교육에서는 시샘이 무지이고, 모방이 자살이며, 좋건 나쁘건 간에 자기 자신을 받아 들여야 하며, 드넓은 우주에 좋은 것이 가득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옥수수 알하나도 오지 아니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다. 인간에게 내재한 힘은 새로운 것으로, 그 자신외에는 그 능력을 알 수 없고, 시도해 보기 전에는 그능력을 알 수 없다. 그냥 되는 것은 없으며, 하나의얼굴과, 성격과, 사실은 인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못하고 다른 얼굴과, 성격과, 사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억의 구조에도 미리 형성된조화가 존재한다. 눈은 한 줄기 빛이 떨어지는 곳에놓이며, 눈은 특정한 빛을 증언할 수 있다. 우리는스스로를 절반밖에 표현하지 못하며, 우리 각각이나타내는 신성한 아이디어를 부끄러워한다. 이는 균형

through his toil bestowed on that plot of ground which is given to him to till. The power which resides in him is new in nature, and none but he knows what that is which he can do, nor does he know until he has tried. Not for nothing one face, one character, one fact, makes much impression on him, and another none. This sculpture in the memory is not without preestablished harmony. The eye was placed where one ray should fall, that it might testify of that particular ray. We but half express ourselves, and are ashamed of that divine idea which each of us represents. It may be safely trusted as proportionate and of good issues, so it be faithfully imparted, but God will not have his work made manifest by cowards. A man is relieved and gay when he has put his heart into his work and done his best; but what he has said or done otherwise shall give him no peace. It is a deliverance which does not de-liver. In the attempt his genius deserts him; no muse befriends; no invention, no hope.

Trust thyself: every heart vibrates to that iron string. Accept the place the divine providence has found for you, the society of your contemporaries, the connection of events. Great men have always done so, and confided themselves childlike to the genius of their age, betraying their perception that the absolutely trustworthy was seated at their heart, working through their hands, predominating in all their being. And we are now men, and must accept in the highest mind the same transcendent destiny; and not minors and invalids in a protected corner, not cowards fleeing before a revolution, but guides, redeemers, and benefactors, obeying the Almighty effort and advancing on Chaos and the Dark.

What pretty oracles nature yields us on this text in the face and behavior of children, babes, and even brutes! That divided and rebel mind, that distrust of a sentiment because our arithmetic has computed the strength and means opposed to our purpose, these have not. Their mind being whole, their eye is as yet unconquered, and when we look in their faces we are disconcerted. Infancy conforms to nobody; all conform to it; so that one babe commonly makes four or five out of the adults who prattle and play to

잡힌 훌륭한 이슈로 믿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이는 충실히 전해질 것이지만, 신은 그 뜻을 겁쟁이가 전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마음을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야 안심하게 되고 명랑하게 된다. 그러나, 말한 바와 달리 행한 바는 아무런 마음의 평화 도 주지 못한다. 이는 구원하지 아니하는 구원이다. 이 시도에서 천재성이 그를 버리고, 뮤즈가 친구하지 아니하며, 발명도 없고 희망도 없다.

자신을 믿으라: 모든 가슴이 이 강철로 된 실을 향해 뛴다. 신의 섭리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곳, 당신의 동시대인의 사회, 사건의 연결고리를 받아 들이라. 위대한 사람은 항상 이를 실천해 왔으며, 당대의 천재에게 스스로를 아이처럼 맡겼고, 절대적으로 믿을만한 것은 가슴에 있다는 생각을 털어놓고, 손으로 일하고,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 동일한 초월적 운명을 가장 높은 이성으로 받아 들여야 하며, 보호 받는 곳에 있는 미성년자나 병약자가 아니라, 또 혁명을 앞두고 도망가는 겁쟁이가 아니라, 신의 전능한 노력에 복종하고 혼란과 어둠 속에서 나아가는 길잡이, 구세주,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자연은 어린이와, 아기와, 심지어 짐승의 얼굴과 행동의 텍스트에 얼마나 아름다운 계시를 내리는지! 우리가 목적에 반하는 힘과 수단에 대한 계산을 끝내고 분열된 반역의 마음과 불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이며, 이들의 눈은 아직 정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 아기는 누구도 따르지 아니하나, 모두를 따르게 한다. 그래서, 아기 하나는 어른 네다섯 명이 말을 걸고 장난치게 만든다. 하늘은 아기와, 청소년과, 어른에게 똑 같은 기지와 매력을 주었고, 아기를 탐스럽고 우아하게 만들었으며, 아기가 제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주장이 무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아기가 말을 할 수 없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들어보라! 옆 방에서도 아기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들리지 아니하는가! 아기는 동시대인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아기가 숫기가 있건 없건 간에, 아기는 어른을 아주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다.

it. So God has armed youth and puberty and manhood no less with its own piquancy and charm, and made it enviable and gracious and its claims not to be put by, if it will stand by itself. Do not think the youth has no force, because he cannot speak to you and me. Hark! in the next room his voice is sufficiently clear and emphatic. It seems he knows how to speak to his contemporaries. Bashful or bold then, he will know how to make us seniors very unnecessary.

The nonchalance of boys who are sure of a dinner, and would disdain as much as a lord to do or say aught to conciliate one, is the healthy attitude of human nature. A boy is in the parlor what the pit is in the playhouse; independent, irresponsible, looking out from his corner on such people and facts as pass by, he tries and sentences them on their merits, in the swift, summary way of boys, as good, bad, interesting, silly, eloquent, troublesome. He cumbers himself never about consequences, about interests; he gives an independent, genuine verdict. You must court him; he does not court you. But the man is as it were clapped into jail by his consciousness. As soon as he has once acted or spoken with eclat, he is a committed person, watched by the sympathy or the hatred of hundreds, whose affections must now enter into his account. There is no Lethe for this. Ah, that he could pass again into his neutrality! Who can thus avoid all pledges and, having observed, observe again from the same unaffected, unbiased, unbribable, unaffrighted innocence,--must always be formidable. He would utter opinions on all passing affairs, which being seen to be not private but necessary, would sink like darts into the ear of men and put them in fear.

These are the voices which we hear in solitude, but they grow faint and inaudible as we enter into the world. Society everywhere is in conspiracy against the manhood of every one of its members. Society is a joint-stock company, in which the members agree, for the better securing of his bread to each shareholder, to surrender the liberty and culture of the eater. The virtue in most request is conformity. Self-reliance is its aversion. It loves not realities and creators, but names and customs.

식사를 확신하면서, 회유하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자를 멸시하는 아이의 무심함은 건전한 인간 본성의 태도이다. 거실에 있는 아이는 극장의 맨 앞 자리와 같다. 독립되어, 책임 지는 바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사실들을 내다보며, 그들의 장점을 아이다운 재빠르고 요약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바보 같다. 말 잘 한다. 문제가 많다 등… 아이는 결과나 이익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아니한다. 아이는 독립적이고 진실한 의견을 제시한다. 어른이 아이의 환심을 사려할 뿐, 아이는 어른의 환심을 사려하지 아니한다. 어른은 그 자각에 의하여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 어른은 한 번 행동이나 말을 통하여 갈채를 받게 되면 공인이 되어 수 백 명으로부터 호감이나 반감의 눈길을 받게 되며, 이들의 애정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망각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시 중립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따라서, 모든 약속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영향 받지 아니하고, 편견 없이, 뇌물로 회유할 수 없고, 위협할 수 없는 순수함으로 관조하고 다시 관조하는 자는 항상 두려운 존재가 된다. 그런 자는 모든 지나가는 문제를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며, 이러한 의견은 사람의 귀에 화살처럼 박혀서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이러한 목소리는 우리가 고독 속에서 듣는 목소리이며, 우리가 세상에 들어서면서 희미해지고 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목소리이다. 어디서든 사회는 그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각 주주에게 돌아오는 빵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빵을 먹는 자의 자유와 문화를 포기하는 합자 회사다. 대부분의 요청에서 순응은 미덕이며, 자립은 악덕이다. 사회는 실질과 창조성이 아니라 이름과 관습을 사랑한다.

어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순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불멸의 야자나무를 얻고자 하는 자는 선이라는 이름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것이 과연 선인지 아닌지를 마땅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의 고결성 외에 궁극적으로 신성한 것은 없다. 스스로의 죄를 사하면, 세상의 동의를 얻게 된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의 케케묵은 원리로 나를 귀찮게 하는

Whoso would be a man, must be a nonconformist. He who would gather immortal palms must not be hindered by the name of goodness, but must explore if it be goodness. Nothing is at last sacred but the integrity of your own mind. Absolve you to yourself, and you shall have the suffrage of the world. I remember an answer which when quite young I was prompted to make to a valued adviser who was wont to importune me with the dear old doctrines of the church. On my saying, "What have I to do with the sacredness of traditions, if I live wholly from within?" my friend suggested,--"But these impulses may be from below, not from above." I replied, "They do not seem to me to be such: but if I am the Devil's child. I will live then from the Devil." No law can be sacred to me but that of my nature. Good and bad are but names very readily transferable to that or this; the only right is what is after my constitution; the only wrong what is against it. A man is to carry himself in the presence of all opposition as if every thing were titular and ephemeral but he. I am ashamed to think how easily we capitulate to badges and names, to large societies and dead institutions. Every decent and well-spoken individual affects and sways me more than is right. I ought to go upright and vital, and speak the rude truth in all ways. If malice and vanity wear the coat of philanthropy, shall that pass? If an angry bigot assumes this bountiful cause of Abolition, and comes to me with his last news from Barbados, why should I not say to him, "Go love thy infant; love thy wood-chopper; be good-natured and modest; have that grace; and never varnish your hard, uncharitable ambition with this incredible tenderness for black folk a thousand miles off. Thy love afar is spite at home." Rough and graceless would be such greeting, but truth is handsomer than the affectation of love. Your goodness must have some edge to it, -- else it is none. The doctrine of hatred must be preached, as the counteraction of the doctrine of love, when that pules and whines. I shu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brother when my genius calls me. I would write on the lintels of the door-post, Whim. I hope it is somewhat better than whim at last, but we cannot spend the day in explanation. Expect me not to show cause why I seek or why I exclude company. They again, do not tell

데 익숙한 소중한 조언자가 나에게 원했던 대답이 기억 난다. '내가 온전히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산다면 내가 전통의 신성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내가 말했을 때, 친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 충동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않아?"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악마의 자식이라면 악마로서 살게 되겠지." 나에게는 내 본성의 율법 외에는 신성한 율법이 없었다. 선과 악은 서로 쉽게 바뀔 수 있는 이름일 뿐이고, 나의 본성에 따른 것만이 옳은 것이며 나의 본성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 외에는 모두가 이름뿐이고 덧없는 것처럼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배지와 이름, 큰 집단, 죽은 기관에 얼마나 쉽게 항복하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고상하고 달변인 사람들은 모두 올바른 길에서 나를 해치고 흔든다. 나는 똑바로 서서 활기차게 나아가야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진실을 거리낌 없이 말하여야 한다. 악의와 허영이 박애주의의 허울을 쓴다면, 그것이 통할 것인가? 분노한 편집광이 노예제도 폐지라는 자비로운 명분을 입고, 나에게 와서 바베이도 스(Barbadoes)의 최신 뉴스를 말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가서 아기를 사랑하라. 나무꾼을 사랑하라. 좋은 품성을 가지고 겸손하라. 품위를 가지라. 냉혹하고 무자비한 야심을 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흑인에 대한 사랑으로 포장하지 말라. 먼 것을 사랑함은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랑하지 못함이다." 이런 말은 거칠고 우아하지 못하겠지만, 사랑을 가장하는 것 보다는 아름답다. 선에는 예리함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다면 선은 아무 것도 아니다. 사랑의 원리가 시름에 잠기고 신음할 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증오의 원리에 대하여서도 설교해야 한다. 내 천재성이 나를 부를 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형제도 피한다. 문틀 위쪽 가로대에 '변덕'이라고 쓴다. 궁극적으로 변덕 보다는 나은 무엇이기를 바라지만 이를 설명하느라 하루를 다 보낼 수는 없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왜 피하고 왜 원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나에게 가난한 모든 자들을 행복하게 할 의무를 말하지 아니한다. 물론, 오늘 어떤 선량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나의 가난한 자들인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me, as a good man did to-day, of my obligation to put all poor men in good situations. Are they my poor? I tell thee, thou foolish philanthropist, that I grudge the dollar, the dime, the cent I give to such men as do not belong to me and to whom I do not belong. There is a class of persons to whom by all spiritual affinity I am bought and sold; for them I will go to prison if need be; but your miscellaneous popular charities; the education at college of fools; the building of meeting-houses to the vain end to which many now stand; alms to sots, and the thousand-fold Relief Societies;-- though I confess with shame I sometimes succumb and give the dollar, it is a wicked dollar, which by and by I shall have the manhood to withhold.

Virtues are, in the popular estimate, rather the exception than the rule. There is the man and his virtues. Men do what is called a good action, as some piece of courage or charity, much as they would pay a fine in expiation of daily non-appearance on parade. Their works are done as an apology or extenuation of their living in the world,--as invalids and the insane pay a high board. Their virtues are penances. I do not wish to expiate, but to live. My life is for itself and not for a spectacle. I much prefer that it should be of a lower strain, so it be genuine and equal, than that it should be glittering and unsteady. I wish it to be sound and sweet, and not to need diet and bleeding. I ask primary evidence that you are a man, and refuse this appeal from the man to his actions. I know that for myself it makes no difference whether I do or forbear those actions which are reckoned excellent. I cannot consent to pay for a privilege where I have intrinsic right. Few and mean as my gifts may be, I actually am, and do not need for my own assurance or the assurance of my fellows any secondary testimony.

What I must do is all that concerns me, not what the people think. This rule, equally arduous in actual and in intellectual life, may serve for the whole distinction between greatness and meanness. It is the harder because you will always find those who think they know what your duty is better than you know it. It is easy in the world to live after the world's opinion; it is easy in solitude to live

자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어리석은 박애주의자들아! 그들이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나도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한고 나도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할진대, 그러한 그들에게 주는 달러 지폐한 장, 10 센트 동전 하나, 1 센트 동전 하나 까지도나는 아까워한다. 소중한 정신적 유대가 있어,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온전히 바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옥에라도갈 수 있다. 그러나, 잡다하고 통속적인 자선단체, 바보로 가득한 대학의 교육, 현재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헛된 목적을 위한 회의장 건설, 술고래에 대한 자선, 수 천을 헤아리는 구민단체를 위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가끔 이들에 굴복하여돈을 낼 때도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주는 돈은 사악한 돈이며, 나는 곧 이를 이길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통속적인 판단으로 보면, 규칙 보다는 규칙의 예외가 미덕이다. 세상에는 사람과 그 미덕이 존재한다. 사람은 용기나 자선 등 남이 훌륭한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을 한다. 이는 퍼레이드에 매일 참석하지 아니한 데 대한 속죄의 방편으로 벌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세상에 사는 데 대한 사과 또는 정상참작 사유로 하는 일이다. 이는 병약자나 정신이상자가 숙식비를 더 많이 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람의 미덕은 참회에 있다. 나는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 내 삶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이 빛나고 불안정한 삶이기 보다는 낮은 삶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실되고 안정된 삶이기를 바란다. 나는 내 삶이 건전하고 달콤한 삶이기를 바라며 식이요법과 출혈이 필요하지 아니하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어른이라는 1차적 증거를 요구하고 자기 행동에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당신의 말을 거부한다.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나는 안다. 나는 내가 기본적 권리를 가진 특권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내 재능이 적고 변변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이고, 이에 대하여 나 자신의 확인과 다른 사람의 2차적 확인은 필요 없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일 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after our own; but the great man is he who in the midst of the crowd keeps with perfect sweetness the independence of solitude.

The objection to conforming to usages that have become dead to you is that it scatters your force. It loses your time and blurs the impression of your character. If you maintain a dead church, contribute to a dead Bible-society, vote with a great party either for the government or against it, spread your table like base housekeepers,--under all these screens I have difficulty to detect the precise man you are: and of course so much force is withdrawn from your proper life. But do your work, and I shall know you. Do your work, and you shall reinforce yourself. A man must consider what a blind-man' s-bluff is this game of conformity. If I know your sect I anticipate your argument. I hear a preacher announce for his text and topic the expediency of one of the institutions of his church. Do I not know beforehand that not possibly can he say a new spontaneous word? Do I not know that with all this ostentation of examining the grounds of the institution he will do no such thing? Do I not know that he is pledged to himself not to look but at one side, the permitted side, not as a man, but as a parish minister? He is a retained attorney, and these airs of the bench are the emptiest affectation. Well, most men have bound their eyes with one or another handkerchief, and attached themselves to some one of these communities of opinion. This conformity makes them not false in a few particulars, authors of a few lies, but false in all particulars. Their every truth is not quite true. Their two is not the real two, their four not the real four; so that every word they say chagrins us and we know not where to begin to set them right. Meantime nature is not slow to equip us in the prison-uniform of the party to which we adhere. We come to wear one cut of face and figure, and acquire by degrees the gentlest asinine expression. There is a mortifying experience in particular, which does not fail to wreak itself also in the general history; I mean "the foolish face of praise," the forced smile which we put on in company where we do not feel at ease, in answer to conversation which does not interest us. The muscles, not

문제가 아니다. 실생활과 지적 생활에서 똑같이 쉽지 아니한 이 규칙은 위대함과 야비함을 구분하는 기준이된다. 이것이 더욱 더 어려운 것은 당신의 의무가무엇인지를 당신 자신 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세상의의견에 따라 살기가 쉽고, 혼자일 때는 자신의 의견에따라 살기가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무리의 한가운데에서도 완벽한 온화함으로 고독의 독립성을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죽은 관습에 순응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을 소모할 뿐 아니라 성격에 대한 인상도 흐리게 한다. 당신이 죽은 교회를 유지하고, 죽은 성경회에 헌금을 내고, 정부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에 관계 없이 큰 정당에 투표하고, 천박한 가정부처럼 식탁을 펼친다면,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서도 올바른 삶에 써야 할 힘이 그만큼 소모된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한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의 일을 하면 스스로를 강화할 수 있다. 사람은 이 순응의 게임이 '장님놀이'(blind-man's-buff) 게임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종파를 알면 당신의 주장을 미리 알 수 있다. 목사가 자기 교단의 기관 중 하나의 좋은 점을 다음 설교의 텍스트와 주제로 발표한다면, 이 목사의 설교에 새롭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말이 포함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미리 모를 것인가? 또, 그 기관이 좋은 근거를 검증하는 체 하더라도 실제로 그리하지 아니할 것임을 내가 모를 것인가? 목사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교구 목사로서 한 쪽 면, 즉 허용된 면만을 보게 될 것임을 내가 모를 것인가? 목사는 고용된 변호사이며, 신자들의 분위기는 공허한 가장에 지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눈길을 고정시키고 어떤 의견의 공동체에 자신을 소속시킨다. 이러한 순응을 통하여 사람들은 몇몇 각론에서 틀리지 아니하게 되고 몇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나머지 모든 각론에서 틀리게 된다. 이들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이들이 말하는 '2'는 '2'가 아니며, 이들이 말하는 '4'는 '4'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는 말은 모두 우리를 실망시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알 수 없다. 한편, 자연은 spontaneously moved but moved by a low usurping willfulness, grow tight about the outline of the face, with the most disagreeable sensation.

For nonconformity the world whips you with its displeasure. And therefore a man must know how to estimate a sour face. The by-standers look askance on him in the public street or in the friend's parlor. If this aversion had its origin in contempt and resistance like his own he might well go home with a sad countenance; but the sour faces of the multitude, like their sweet faces, have no deep cause, but are put on and off as the wind blows and a newspaper directs. Yet is the discontent of the multitude more formidable than that of the senate and the college. It is easy enough for a firm man who knows the world to brook the rage of the cultivated classes. Their rage is decorous and prudent, for they are timid, as being very vulnerable themselves. But when to their feminine rage the indignation of the people is added, when the ignorant and the poor are aroused, when the unintelligent brute force that lies at the bottom of society is made to growl and mow, it needs the habit of magnanimity and religion to treat it godlike as a trifle of no concernment.

The other terror that scares us from self-trust is our consistency; a reverence for our past act or word because the eyes of others have no other data for computing our orbit than our past acts, and we are loath to disappoint them.

But why should you keep your head over your shoulder? Why drag about this corpse of your memory, lest you contradict somewhat you have stated in this or that public place? Suppose you should contradict yourself; what then? It seems to be a rule of wisdom never to rely on your memory alone, scarcely even in acts of pure memory, but to bring the past for judgment into the thousand-eyed present, and live ever in a new day. In your metaphysics you have denied personality to the Deity, yet when the devout motions of the soul come, yield to them heart and life though they should clothe God with shape and color. Leave your theory, as Joseph his coat in the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의 죄수복을 재빨리 우리에게 입혔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얼굴과 모양을 가지게 되었고 가장 부드럽고 우둔한 표정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할 수 없는 굴욕적인 경험이 있다. 바로 '찬미의 바보스러운 표정', 즉 우리가 편안하지 아니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또는 관심 없는 대화에 대한 답례로, 억지로 짓는 미소를 말한다. 이 때 근육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며, 얼굴의 윤곽이 딱딱해지며, 가장 기분 나쁜 느낌이들게 된다.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세상은 그 노여움으로 벌을 내린다. 따라서, 사람은 불쾌한 얼굴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방관자들은 거리에서나 친구 집 거실에서 사람을 탐탁하지 아니하게 쳐다본다. 이러한 반감이 자신과 같은 경멸과 저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슬픈 얼굴로 집에 돌아가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불쾌한 표정은 기분 좋은 표정과 마찬가지로 깊은 뜻이 없으며 바람이 불거나 신문이 시키는 대로 얼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불만은 상원이나 대학의 불만 보다 무서운 것이다. 세상을 아는 단호한 사람이 교양 있는 계급의 분노를 참는 것은 쉽다. 교양 있는 계급은 그 자체가 소심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 분노도 정중하고 신중하다. 이들의 여성적인 분노에 민중의 분노가 더해지면,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이 깨어나면,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지력이 높지 아니한 야수적 힘이 얼굴을 찡그리고 으르렁거리게 되면, 이를 염려할 것 없는 사소한 일로 의연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큰 배포를 발휘하던 습관과 종교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기신뢰를 멀리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관성이다. 타인이 우리의 미래 행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 과거의 행적 외에 달리 의존할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들을 실망시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행동이나 말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왜 지난 일을 돌아 보아야 하는가? 왜 과거에 공적인 자리에서 한 말에 어긋나지 아니하기 위해 기억의 시체를 끌고 다녀야 하는가? 과거에 한 말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무슨 hand of the harlot, and flee.

A foolish consistency is the hobgoblin of little minds, adored by little statesmen and philosophers and divines. With consistency a great soul has simply nothing to do. He may as well concern himself with his shadow on the wall. Speak what you think now in hard words and to-morrow speak what to-morrow thinks in hard words again, though it contradict every thing you said to-day.--"Ah, so you shall be sure to be misunderstood."--Is it so bad then to be misunderstood? Pythagoras was misunderstood, and Socrates, and Jesus, and Luther, and Copernicus, and Galileo, and Newton, and every pure and wise spirit that ever took flesh. To be great is to be misunderstood. . . .

Source: The Complete Essays and Other Writings of Ralph Waldo Emerson (Brooks Atkinson, ed., 1940), 145-52.

일이 일어나는가? 심지어 순수한 기억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기억에만 의존하지는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혜의 법칙인 것 같다. 과거를 눈이 천 개 달린 현재에 비추어 판단하고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야 한다. 형이상학에서는 인격을 부정하고 신격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영혼의 경건한 제안이 있으면, 그 제안에 마음과 생명을 주어라. 마음과 생명이 신에게 모습과 색채를 줄 것이다. 요셉이 그 옷을 매춘부의 손에 둔 채 도망간 것처럼 이론을 버려라.

어리석은 일관성은 그릇이 작은 정치인과 철학자와 성직자가 좋아하는 협소한 마음의 도깨비이다. 위대한 영혼은 일관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대한 영혼은 일관성을 걱정하느니 차라리 벽에 비친 그림자를 걱정할 것이다. 오늘 생각하는 바를 분명한 말로 표현하고, 내일 생각하는 바를 다시 분명한 말로 표현하라. 비록 오늘 한 말과 모두 어긋난다 할지라도. "아, 그러면 오해를 받을 텐데." 오해를 받는 일이 대수인가? 피타고라스도 오해를 받았고,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순수하고 현명한 영혼들이 오해를 받았다. 위대하다는 것은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출처: 랠프 왈도 에머슨의 수필 및 작품 전집(The Complete Essays and Other Writings of Ralph Waldo Emerson, Brooks Atkinson, ed., 1940년), 145-52,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Dred Scott v. Sandford (1857) / 17.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1857년)



Dred Scott's case holds a unique place in American constitutional history as an example of the Supreme Court trying to impose a judicial solution on a political problem. It called down enormous criticism on the Court and on Chief Justice Roger Brooke Taney; a later chief justice, Charles Evans Hughes, described it as a great "self-inflicted wound."

Scott, born a slave, had been taken by his master, an army surgeon, into the free portion of the Louisiana territory. Upon his master's death, Scott sued for his freedom, on the grounds that since slavery was outlawed in the free territory, he had become a free man there, and "once free always free." The argument was rejected by a Missouri court, but Scott and his white supporters managed to get the case into federal court, where the issue was simply whether a slave had standing — that is, the legal right — to sue in a federal court. So the first question the Supreme Court had to decide was whether it had jurisdiction. If Scott had standing, then the Court had jurisdiction, and the justices could go on to decide the merits of his claim. But if, as a slave, Scott did not have standing, then the Court could dismiss the suit for lack of jurisdiction.

The Court ruled that Scott, as a slave, could not exercise

드레드 스콧(DRED SCOTT) 사건에 관한 법원 의견 소개

드레드 스콧 사건은 미국 헌법의 역사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사법적 해결책을 부과하고자 도모한 사례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법원과 대법원장 로저 브룩 태니(Roger Brooke Taney)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후에 대법원장이 된 찰스 에번스 휴즈(Charles Evans Hughes)는 이를 가리켜 대법원이 자초한 '큰 상처'라 하였다.

노예로 태어난 스콧은 육군 소속 외과의사인 주인을 따라 루이지애나 준주(準州)의 자유지역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죽자 스콧은 자유지역에서 노예제도가 불법화 되었으므로 자신이 거기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한 번 자유를 얻으면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는 논리로 자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주장은 미주리 주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스콧과 그 백인 후원자들이 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끌고 갔다. 연방법원에서 논의된 쟁점은 단순히 노예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standing), 즉 법적 권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대법원이 먼저 결정하여야 할 사안은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스콧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면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스콧의 주장에 대하여서도 그 시비를 가려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스콧이 노예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면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할 수 있었다.

법원은 스콧이 노예로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유시민의 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사건이 끝났어야 하였으나, 태니 대법원장과 법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남부의 동조자들은 확정적인 판결로 준주(準州)의 노예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합중국이 소유한 준주(準州)에 시민이 재산, 즉 노예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을 의회가 금지하지 못하도록 한 1820년 미주리 협정(Missouri

the prerogative of a free citizen to sue in federal court. That should have been the end of the case, but Chief Justice Taney and the other southern sympathizers on the Court hoped that a definitive ruling would settle the issue of slavery in the territories once and for all. So they went on to rule that the Missouri Compromise of 1820 was unconstitutional since Congress could not forbid citizens from taking their property, i.e., slaves, into any territory owned by the United States. A slave, Taney ruled, was property, nothing more, and could never be a citizen.

The South, of course, welcomed the ruling, but in the North it raised a storm of protest and scorn. It helped create the Republican Party, and disgust at the decision may have played a role in the election of Abraham Lincoln in 1860.

Compromise of 1820)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태니 대법원장은 노예가 재산에 불과하며, 절대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남부에서는 이 판결을 환영하였지만, 북부에서는 격렬한 항의와 냉소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이는 공화당의 탄생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 판결에 대한 혐오가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관련 추가자료: 돈 E. 페런바허(Don E. Fehrenbacher) '드레드 스콧 사건'(The Dred Scott Case), 1978년, 월터 얼리허(Walter Ehrlich) '그들은 권리가 없다? 자유를 위한 드레드 스콧의 투쟁'(They Have No Rights: Dred Scott's Struggle for Freedom), 1979년.

Chief Justice Taney delivered the opinion of the Court:

The question is simply this: Can a negro, whose ancestors were imported into this country, and sold as slaves, become a member of the political community formed and brought into existence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as such become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and immunities, guarantied by that instrument to the citizen? One of which rights is the privilege of suing in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The words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citizens" are synonymous terms, and mean the same thing. They both describe the political body who, according to our republican institutions, form the sovereignty, and who hold the power and conduct the government through their representatives. They are what we familiarly call the "sovereign people," and every citizen is one of this people, and a constituent member of this sovereignty. The question before us is, whether the class of persons described in the plea in abatement composes a portion of this people, and are constituent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DRED SCOTT V. SANDFORD), 1857년 태니 대법원장의 판결문

쟁점은 간단하다. 그 조상이 이 나라로 수입되어 와서 노예로 팔린 흑인이 미합중국 헌법에 의하여 형성되고 존재하게 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또 헌법에 따라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권리 중 하나가 미합중국의 법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권이다.

'미합중국 국민'과 '시민'은 비슷한 말로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말들은 모두 공화제에 따라 주권국을 구성하고, 권력을 가지고, 대표자를 통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집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주권국민'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며, 모든 시민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이 나라의 구성원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소송 각하 항변에 기재된 부류의 개인이 이러한 국민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나라의 구성원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그들이 국민이 아니며, 국민에 속하지 아니하며, 헌법 상 '시민'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법이 미합중국의 시민에게 제공하고

members of this sovereignty? We think they are not, and that they are not included, and were not intended to be included, under the word "citizens" in the constitution, and can therefore claim none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which that instrument provides for and secures to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n the contrary, they were at that time considered as a subordinate and inferior class of beings, who had been subjugated by the dominant race, and, whether emancipated or not, yet remained subject to their authority, and had no rights or privileges but such as those who held the power and the government might choose to grant them.

It is not the province of the court to decide upon the justice or injustice, the policy or impolicy, of these laws. The decision of that question belonged to the political or law-making power; to those who formed the sovereignty and framed the constitution. The duty of the court is, to interpret the instrument they have framed, with the best lights we can obtain on the subject, and to administer it as we find it, according to its true intent and meaning when it was adopted.

In discussing this question, we must not confound the rights of citizenship which a State may confer within its own limits, and the rights of citizenship as a member of the Union. It does not by any means follow, because he has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a citizen of a State, that he must be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He may have all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citizen of a State, and yet not be entitled to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a citizen in any other State. For, previous to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every State had the undoubted right to confer on whomsoever it pleased the character of citizen, and to endow him with all its rights. But this character of course was confirmed to the boundaries of the State, and gave him no rights or privileges in other States beyond those secured to him by the laws of nations and the comity of States. Nor have the several States surrendered the power of conferring these rights and privileges by adopting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보장하는 권리와 특권을 아무 것도 주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그들은 당시 종속적이고 열등한 부류로 생각되었고, 우월한 종족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해방 여부와 관계 없이 우월한 종족의 권한에 귀속되며, 권력을 가진 자나 정부가 부여하지 아니하는 권리나 특권은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법률의 정의와 불의, 현책(賢策)과 졸책(拙策)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영역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정치 권력이나 입법 권력에 속하는 문제이며, 주권국을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한 자들에게 속하는 문제이다. 법원의 의무는 이들이 제정한 헌법을 해당 주제에 대한 최선의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고 제정 당시의 진정한 의도와 취지에 따라 판단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우리는 각 주가 그 한도 부여하는 시민의 권리와 연 방 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을 혼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람이 어느 주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미합중국의 시민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성립될 수 없다. 이 사람은 어느 주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주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미합중국 헌법을 채택하기 전에는 모든 주가 그 의사에 따라 만인에게 시민의 자격과 모든 권리를 부여할 무제한의 권리가 있었음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특성은 해당 주의 경계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주에서는 국가의 법률과 주 간의 예의에 따라 보장되는 바 외에는 어떠한 권리나 특권도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몇몇 주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할 권한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헌법 채택 이래 어느 주도 그 자체의 행동이나 법률로써 미합중국 헌법으로 창조된 정치공동체에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을 어느 주의 구성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이유로, 헌법으로 창조된 이 새로운 정치적 It is very clear, therefore, that no State can, by any act or law of its own, pass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 introduce a new member into the political community crea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t cannot make him a member of this community by making him a member of its own. And for the same reason it cannot introduce any person, or description of persons, who were not intended to be embraced in this new political family, which the constitution brought into existence, but were intended to be excluded from it.

The question then arises,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personal rights and privileges to which the citizen of a State should be entitled, embraced the negro African race, at that time in this country, or who might afterwards be imported, who had then or should afterwards be made free in any State; and to put it in the power of a single State to make him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endue him with the full rights of citizenship in every other State without their consent? Do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ct upon him whenever he shall be made free under the laws of a State, and raised there to the rank of a citizen, and immediately clothe him with all the privileges of a citizen in every other State, and in its own courts?

The court thinks the affirmative of these propositions cannot be maintained. And if it cannot, the plaintiff in error could not be a citizen of the State of Missouri, within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consequently, was not entitled to sue in its courts.

It is true, every person, and every class and description of persons, who were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 recognized as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became also citizens of this new political body; but none other; it was formed by them, and for them and their posterity, but for no one else. And the personal rights and privileges guaranteed to citizens of this new sovereignty were intended to embrace those only who were then members of the several State communities, or who should afterwards by birthright or otherwise become members,

가족에 포함시킬 의도가 없었고 또 의도적으로 배제된 어떠한 사람이나 사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주의 시민에게 부여되는 개인의 권리와 특권과 관련한 헌법의 조항이 당시 이 나라에 있거나 그 후에 수입된 흑인으로서 당시에 또는 그 이후에 해방된 자를 포함하는지, 또 그러한 자를 미합중국의 시민으로 만들고 다른 주의 동의 없이 모든 다른 주에 해당하는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할 권한을 일개 주에 부여하였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미합중국 헌법은 흑인이 어떤 주의 법률에 따라 해방될 때마다 또 시민의 반열에 합류할 때마다, 그 즉시 다른 모든 주와 그 주의 미합중국 법원에서 시민의 특권을 즉각적으로 부여하는가?

법원은 이러한 명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소를 잘못 제기한 원고는 미합중국 헌법이 정한 의미의 미주리 주 시민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미합중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헌법의 채택 당시 몇 개 주에서 시민으로 인정 받고 있던 모든 개인, 모든 계층, 사람에 대한 모든 설명에 해당하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치적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으며, 그 외에는 아무도 구성원이 되지 못하였다. 이 집단은 이들에 의하여, 이들과 그 후손을 위해 형성된 것으로서 그 외 누구를 위한 집단도 아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주권국의 시민들에게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은 당시 몇 개 주 공동체의 구성원이었거나 후에 태생에 따라 또는 헌법의 조항과 헌법의 원리에 따라 달리 구성원이 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 집단은 당시 상이하고 개별적인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던 구성원들을 하나의 정치적 가족으로 통합한 것이었으며, 그 권력은 특정 목적의 경우 미합중국의 전 영토에 미쳤다. 이 집단은 각 시민에게 이전에 가지지 못하였던 소속 주 밖에서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모든 주에서 개인의 권리와 재산의 권리에 있어서 해당 주 시민들과 완벽하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 집단은 사람을 미합중국 국민으로 만들었다...

당시 법률과 역사 및 독립 선언서에 사용된 언어를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s on which it was founded. It was the union of those who were at that time members of distinct and separate political communities into one political family, whose power, for certain specified purposes, was to extend over the whol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nd it gave to each citizen rights and privileges outside of his State which he did not before possess, and placed him in every other State upon a perfect equality with its own citizens as to rights of person and rights of property; it made him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opinion of the court, the legislation and histories of the times, and the language used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how, that neither the class of persons who had been imported as slaves, nor their descendants, whether they had become free or not, were then acknowledged as a part of the people, nor intended to be included in the general words used in that memorable instrument...

It is too clear for dispute, that the enslaved African race were not intended to be included, and formed no part of the people who framed and adopted this declaration; for if the language, as understood in that day, would embrace them, the conduct of the distinguished men who fram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ould have been utterly and flagrantly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they asserted; and instead of the sympathy of mankind, to which they so confidently appealed, they would have deserved and received universal rebuke and reprobation...

But there are two clauses in the constitution which point directly and specifically to the Negro race as a separate class of persons, and show clearly that they were not regarded as a portion of the people or citizens of the government then formed.

One of these clauses reserves to each of the thirteen States the right to import slaves until the year 1808, if it thinks proper...And by the other provision the States pledge themselves to each other to maintain the right of 볼 때 노예로 수입된 부류의 개인이나 그 후손들 모두 해방되었느냐 여부를 막론하고 당시 국민의 일부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잊지 말아야 할 선언서에 사용된 일반 용어에 포함시킬 의도도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의견이다…

노예화된 아프리카 종족을 포함시킬 의도가 없었고 이들이 독립 선언서를 만들고 채택한 국민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은 너무도 명백하여 이에 대하여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만약 당시의 해당 용어가 흑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독립 선언서를 만든 뛰어난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이 주장하는 원칙에서 크게 분명히 벗어난 것이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호소한 인류의 공감 대신에 보편적인 비난과 질책이 쏟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는 흑인 종족을 별개 부류의 개인으로 직접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흑인들이 당시 구성된 정부의 국민이나 시민의 일부로 간주되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항이 두 개 있다.

이러한 조항 중 하나는 13개 주 각각에 각 주의 판단에 따라 1808년까지 노예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며… 나머지 한 조항에 의하여서는 각 주 간에 노예생활에서 탈출하여 각 주의 영역 내에서 발견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주인의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흑인을 가리키고 포함하는 유일한 조항인 이 두조항은 흑인을 재산으로 취급하고, 그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하고 있다. 흑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다른 힘도 헌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미합중국 정부가 특별히 위임된 힘의 정부이므로 이러한 두 개 조항 이상의 권한을 합헌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미합중국 정부는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 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관여할 권리가 없으며, 흑인이해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각 주가 생각하는 정의, 인류애, 사회의 이익과 안전에 따라 흑인 문제를 각 주가 전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각 주는 이

property of the master, by delivering up to him any slave who may have escaped from his service, and be found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he only two provisions which point to them and include them, treat them as property, and make it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protect it; no other power, in relation to this race, is to be found in the constitution; and as it is a government of special, delegated powers, no authority beyond these two provisions can be constitutionally exercise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had no right to interfere for any other purpose but tha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owner, leaving it altogether with the several States to deal with this race, whether emancipated or not, as each State may think justice, humanity, and the interests and safety of society, require. The States evidently intended to reserve this power exclusively to themselves...

Upon a full and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subject, the court is of opinion, that, upon the facts stated... Dred Scott was not a citizen of Missouri within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not entitled as such to sue in its courts; and, consequently, that the circuit court had no jurisdiction of the case, and that the judgment on the plea in abatement is erroneous...

We proceed...to inquire whether the facts relied on by the plaintiff entitled him to his freedom...

The act of Congress, upon which the plaintiff relies, declares that slavery and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shall be forever prohibited in all that part of the territory ceded by France, under the name of Louisiana, which lies north of thirty-six degrees thirty minutes north latitude and not included within the limits of Missouri. And the difficulty which meets us at the threshold of this part of the inquiry is whether Congress was authorized to pass this law under any of the powers granted to it by the Constitution; for, if the authority is not given by that instrument, it is the duty of this Court to declare it void and inoperative and incapable of conferring

권한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고자 함이 분명하다…

사안을 완전하고 면밀하게 심리한 결과, 법원은 진술된 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때 드레드 스콧은 미합중국 헌법에서 정한 의미의 미주리 주의 시민이 아니며 따라서 미합중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 따라서, 본 순회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본 소송 각하 항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근거로 삼은 사실이 원고에게 자유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원고가 의존하고 있는 연방의회의 법률은 노예제도와 비자발적 노예상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인경우를 제외하고 프랑스가 양도한 지역으로서 '루이지애나'라 불리며 북위 36도 30분에 위치하고있으며 미주리 주의 경계 내에 속하지 아니한지역에서 영원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본 심리의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연방의회가헌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 하에서 이 법률을통과시킬 자격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 그권한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법률이 무효이고, 어느 한 주의 법률에서 노예로규정된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것이 본법원의 의무이다.

원고의 법정 대리인은 헌법의 조항 중에서 '미합중국에 귀속되는 영토와 여타 재산을 처분하고 이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는 조항을 크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은 당해 조항이 현재의 논란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헌법으로 부여된 권한은 무엇이든 간에 당시 미합중국에 속해 있었거나 미합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한 영토에 국한되거나 국한시킬 의도가 있었으며, 그러한 권한은 영국과의 조약으로 설정된 경계 내에만 미치며 그 후에 외국 정부로부터 취득한 영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알려진 특정 영토에 대한 특별 조항이었으며, 당시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었으며 그 이상은 아니었다…

freedom upon anyone who is held as a slave under the laws of any one of the states.

The counsel for the plaintiff has laid much stress upon that article in the Constitution which confers on Congress the power "to dispose of and mak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respecting the territory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United States"; bu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that provision has no bearing on the present controversy, and the power there given, whatever it may be, is confined, and was intended to be confined, to the territory which at that time belonged to, or was claimed by, the United States and was within their boundaries as settled by the treaty with Great Britain and can have no influence upon a territory afterward acquired from a foreign government. It was a special provision for a known and particular territory, and to meet a present emergency, and nothing more...

We do not mean, however, to question the power of Congress in this respect. The power to expand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by the admission of new states is plainly given; and in the construction of this power by all the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it has been held to authorize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not fit for admission at the time, but to be admitted as soon as its population and situation would entitle it to admission...

It may be safely assumed tha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ho migrate to a territory belonging to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cannot be ruled as mere colonists, dependent upon the will of the general government, and to be governed by any laws it may think proper to impose. The principle upon which our governments rest, and upon which alone they continue to exist, is the union of states, sovereign and independent within their own limits in their internal and domestic concerns, and bound together as one people by a general government, possessing certain enumerated and restricted powers, delegated to it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and exercising supreme authority within the scope of the powers granted to it, throughout the dominion of the United States. A power,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연방의회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주를 받아들여 미합중국의 영토를 확장할 권한이 부여된 것은 분명하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 권한을 해석함에 있어, 의회에게 당시에는 받아 들이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나 국민과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받아 들일 수 있는 영토의 취득을 승인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미합중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미합중국 시민을 연방정부의 뜻에 따라 단순히 이주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며 연방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률로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토대가 되는 원리는 '각 주의 연방'이라는 원칙이며 이 원칙에 의하여서만 각 정부가 지속될 수 있다. 이 원칙은 각 주가 그 내부적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경계 내에서 주권과 독립성을 가지는 가운데, 여러 주의 시민들이 위임한 열거되고 제한된 일부 권한을 보유하고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미합중국의 지배력이 미치는 영토 전역에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한 국민으로 결속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식민지와 복속 영토를 취득하고 보유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식민지와 복속 영토에 대하여 제한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연방정부의 존재 형태와 일관성이 없다. 연방정부가 취득하는 것은 모두 연방정부를 창설한 여러 주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여러 주의 시민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수탁자이며 특별히 부여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연방의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시민의 재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은 우리의 헌법과 정부 형태 상 단순한 임의 권한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권한과 시민의 권리와 특권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하여 규제를 받아야 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또, 준주(準州)가 미합중국의 일부가 될 때에는 연방정부는 그 준주(準州)를 창조한 자들이 부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연방정부는 시민에 대한 권한이 헌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의되고 제한된 가운데 해당 준주(準州)를 소유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헌법에 그 존재의 근거를 therefore, in the general government to obtain and hold colonies and dependent territories, over which they might legislate without restric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its own existence in its present form. Whatever it acquires, it acquire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who created it. It is their trustee acting for them and charged with the duty of promoting the interests of the whole people of the Union in the exercise of the powers specifically granted...

But the power of Congress over the person or property of a citizen can never be a mere discretionary power under our Constitution and form of government. The powers of the government and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citizen are regulated and plainly defined by the Constitution itself. And, when the territory becomes a part of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government enters into possession in the character impressed upon it by those who created it. It enters upon it with its powers over the citizen strictly defined and limited by the Constitution, from which it derives its own existence, and by virtue of which alone it continues to exist and act as a government and sovereignty. It has no power of any kind beyond it; and it cannot, when it enters a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put off its character and assume discretionary or despotic powers which the Constitution has denied to it. It cannot create for itself a new character separated from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uties it owes them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e territory, being a part of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 both enter it under the authority of the Constitution, with their respective rights defined and marked out; and the federal government can exercise no power over his person or property, beyond what that instrument confers, nor lawfully deny any right which it has reserved...

These powers, and others, in relation to rights of person, which it is not necessary here to enumerate, are, in express and positive terms, denied to the general government; and the rights of private property have been guarded with equal care. Thus the rights of property are united with the rights of person and placed on the same

두고 있으며, 헌법에 의하여서만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정부와 주권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연방정부는 어떠한 종류의 권한도 가진 바 없으며, 연방정부가 미합중국의 어떤 영토에 들어설 때 그 영토의 특성을 누르고 헌법이 부인한 임의 또는 전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연방정부는 또한 그 자신을 위해 미합중국 시민들과 헌법의 조항에 따라시민들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동떨어진 새로운 특성을 창조할 수는 없다. 미합중국의 일부인 영토와, 헌법의 권위 하에서 그 영토에 들어서는 정부와시민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권리가 정의 및 표시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그 개인과 재산에 대하여 헌법이부여한 권한 외에는 행사하지 못하며, 헌법이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합법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이러한 권한 등은, 여기서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명시적이고 분명한 용어로 연방정부에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이와 동일한 주의로 보호되어 왔다. 따라서, 재산권은 제5차 헌법 수정조항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와 결합되어 동일한 기반 위에 놓였다. 제5차 헌법 수정조항은 적법절차 없이 생명, 자유 및 재산을 박탈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합중국의 시민이 단지 미합중국의 특정 영토에 스스로 왔다는 이유로 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한 바 없는 시민의 자유나 재산을 박탈하는 의회의 활동은 적법절차의 이름으로 미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예라는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서로 다르고, 미합중국의 헌법을 설명함에 있어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인과 노예 간의 관계와 그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국가의 법률과 그 용도, 저명한 법학자들의 글,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주장에서 고려되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미합중국의 국민과 정부 사이에 서서 그 사이의 관계에 간섭하는 국가의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의 권한과 그 정부 하에 있는 시민의 권리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규정을 명료하게 적어 놓은 것이다. 미합중국의 국민은 ground by the Fif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at 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life, liberty, and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And an act of Congress which deprive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his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merely because he came himself or brought his property into a particular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had committed no offense against the laws, could hardly be dignified with the name of due process of law...

It seems, however, to be suppos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roperty in a slave and other property and that different rules may be applied to it in expounding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laws and usages of nations, and the writings of eminent jurists upon the relation of master and slave and their mutual rights and duties, and the powers which governments may exercise over it, have been dwelt upon in the argument.

But, in considering the question before us,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re is no law of nations 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government and interfering with their relation to each other. The powers of the government and the rights of the citizen under it are positive and practical regulations plainly written dow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have delegated to it certain enumerated powers and forbidden it to exercise others. It has no power over the person or property of a citizen but what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have granted. And no laws or usages of other nations, or reasoning of statesmen or jurists upon the relations of master and slave, can enlarge the powers of the government or take from the citizens the rights they have reserved. And if the Constitution recognizes the right of property of the master in a slave, and makes no distinction between that description of property and other property owned by a citizen, no tribunal, act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whether it be legislative, executive, or judicial, has a right to draw such a distinction or deny to it the benefit of the provisions and guaranties which have been provided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against the encroachments of the government.

연방정부에 열거된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다른 권한의행사를 금지하였다. 연방정부는 개인이나 시민의재산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주인과노예 간의 관계에 관한 어떠한 국가의 법률과 그용도, 또는 정치가나 법학자들의 판단도 정부의권한을 확대하거나 시민들로부터 보장된 권리를박탈할 수 없다. 만약 헌법이 노예에 대한 주인의재산권을 인정하고 이 재산권과 시민이 소유한 다른재산권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면, 미합중국의 권위하에서 활동하는 입법부,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어떠한 재판소도 그러한 구분하거나 정부의침해로부터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조항과 보장의혜택을 부인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본 판결문의 앞부분에서 다른 사항을 주장하면서 노예에 대한 재산권이 헌법에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통 상품이나 재산처럼 노예를 매매할 권리가 미합중국의 시민들에게, 원하는 모든 주에서, 20년 간 허용되었다. 또, 정부는 명시적인 용어로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을 경우 향후에도 계속 이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은 명확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표현이 너무 명확한 나머지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기까지 하다.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의회에 노예라는 재산에 대하여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바 없으며, 노예라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재산 보다 덜 보호해도 된다고 규정하는 바 없다. 의회에 부여된 유일한 권리는 소유자의 권리를 수호 및 보호할 권리와 함께 부여된 권리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언급된 경계선의 북쪽에 위치한 미합중국의 영토에서 이러한 종류의 재산을 소유 및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 의회의 행위는 헌법으로 용인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무효이며, 비록 드레드 스콧 본인이나 그 가족이 주인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그 곳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영토에 들어옴으로써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 법원의 의견이다.

출처: 19 Howard(1857년), 393.

Now, as we have already said in an earlier part of this opinion, upon a different point, the right of property in a slave is distinctly and expressly affirmed in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traffic in it, like an ordinary article of merchandise and property, was guaranteed to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in every state that might desire it, for twenty years. And the government in express terms is pledged to protect it in all future time if the slave escapes from his owner. That is done in plain words — too plain to be misunderstood. And no word can be found in the Constitution which gives Congress a greater power over slave property or which entitles property of that kind to less protection than property of any other description. The only power conferred is the power coupled with the duty of guarding and protecting the owner in his rights.

Upon these considerations it is the opinion of the Court that the act of Congress which prohibited a citizen from holding and owning property of this kind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north of the line therein mentioned is not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and is therefore void; and that neither Dred Scott himself, nor any of his family, were made free by being carried into this territory; even if they had been carried there by the owner with the intention of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Source: 19 Howard (1857), 393.

Abraham Lincoln: First Inaugural Address (1861) / 18. 에이브러햄 링컨: 제1차 취임사 (1861)

When Abraham Lincoln assumed the office of President on March 4, 1861, seven southern States already had seceded from the Union and four others had announced that they would oppose any attempts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oerce the States. The Civil War was only a month away. In his First Inaugural Address, President Lincoln reiterated his constitutional doctrine that the Union was older than the States and that the contract between the States was binding and irrevocable.

1861년 3월 4일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 남부의 7개 주는 이미 연방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다른 4개 주는 각 주들의 지배를 강요하는 연방정부의 어떤 시도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시민 전쟁은 이로부터 단지 한달 후에 발발하였다. 링컨대통령은 그의 제1차 취임연설에서, 연방은 주보다오래되었으며, 연방 각 주간의 협약은 의무적이며, 취소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천명했다.



···I hold that in contemplation of universal law and of the Constitution the Union of these States is perpetual. Perpetuity is implied, if not expressed, in the fundamental law of all national governments. It is safe to assert that no government proper ever had a provision in its organic law for its own termination. Continue to execute all the express provisions of our National Constitution, and the Union will endure forever, it being impossible to destroy it except by some action not provided for in the instrument itself.

Again: If the United States be not a government proper, but an association of States in the nature of contract merely, can it, as a contract, be peaceably unmade

보편적 법칙과 헌법을 고찰한 주들이 모여이루어진 이 연방은 영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의 기본법에는 영구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규 정부로서 그기본법 속에 자체의 종말에 관한 조항을 담은 예는 없었다고 단언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의 모든 명시적 조항을 계속 시행한다면 연방은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헌법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행동에 의하지 않고는 연방을 붕괴시키는 일이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 정규 국가가 아니라 단지 계약과 같은 성격을 띤 주들의 연합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으로서의 연합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 전부가 아닌 일부에 의해 평온하게 해체될 수 있겠습니까?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그것을 어길 수도, 말하자면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합법적으로 취소하는 데는 당사자 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들 일반적 원칙들로부터 내려오면서, 법적으로 고찰해 보면 연방은 그 자체의 역사로부터 영원한 승인을 받는다는 명제에 도달합니다. 연방은 헌법보다도 훨씬 오래된 것입니다. 연방은 사실상 1774년의 동맹규약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연방은 1776년의 독립 선언으로 성숙해지고 지속되었습니다. 연방은 성숙을 거듭했고, 당시 13개 주 모두는 1778년의 연합규약으로써 연방이 무궁해야 함을

by less than all the parties who made it? One party to a contract may violate it--break it, so to speak--but does it not require all to lawfully rescind it?

Descending from these general principles, we find the proposition that in legal contemplation the Union is perpetual, confirmed by the history of the Union itself. The Union is much older than the Constitution. It was formed, in fact,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n 1774. It was matured and continued by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776. It was further matured, and the faith of all the then thirteen States expressly plighted and engaged that it should be perpetual, by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in 1778. And finally, in 1787, one of the declared objects for ordaining and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was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But if destruction of the Union by one or by a part only of the States be lawfully possible, the Union is less perfect than before the Constitution, having lost the vital element of perpetuity.

It follows from these views that no State upon its own mere motion can lawfully get out of the Union; that resolves and ordinances to that effect are legally void, and that acts of violence within any State or States against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are insurrectionary or revolutionary, according to circumstances.

I therefore consider that in view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the Union is unbroken, and to the extent of my ability, I shall take care, as the Constitution itself expressly enjoins upon me, that the laws of the Union be faithfully executed in all the States. Doing this I deem to be only a simple duty on my part, and I shall perform it so far as practicable unless my rightful masters, the American people, shall withhold the requisite means or in some authoritative manner direct the contrary. I trust this will not be regarded as a menace, but only as the declared purpose of the Union that it will constitutionally defend and maintain itself.

Plainly the central idea of secession is the essence of anarchy. A majority held in restraint by constitutional checks and limitations, and always changing easily with deliberate changes of popular opinions and sentiments, is 명시적으로 서약하고 보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7년에 헌법 제정의 목적으로 천명된 것 중의 하나가 "보다 완전한 연방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들 가운데 단지 하나 또는 일부에 의해 연방의 붕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연방은 영구성이라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정 이전보다 불완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견해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즉 어떤 주도 스스로의 단순한 발의로는 합법적으로 연방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그런 취지로의 결의와 포고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그리고 어떤 주나 혹은 주들에서 미국의 권위를 거스르는 폭력 행위는 사정에 따라 반란 또는 혁명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연방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 능력이 미치는 한 헌법 자체가 제게 명시적으로 명하는 대로 연방의법률이 모든 주에서 충실히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박한 의무일뿐이라고 여기며, 나의 당연한 주인인 미국 국민이필요한 수단을 허락하지 않거나 어떤 권위 있는 방식으로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지시하지 않는 한실행 가능한 데까지 그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이것이 하나의 협박이 아니라 단지 헌법에 정해진바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유지하겠다는 연방의결의 천명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탈의 중심 개념이 곧 무정부 상태의 본질임은 명백합니다. 헌법상의 억제와 제약에 의해 행동이 한정되고 여론과 국민 감정의 신중한 변화에 따라 언제나 민감하게 움직이는 다수야말로 자유 국민의 유일한 참된 주권자 입니다. 그런 다수를 배척하는 자는 누구든 필연적으로 무정부 상태나 전제주의로 치닫습니다. 만장 일치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구적 협정으로서의 소수의 지배는 전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배척한다면 남는 것은 어떤 형태든 무정부 상태나 전제주의뿐인 것입니다.

the only true sovereign of a free people. Whoever rejects it does of necessity fly to anarchy or to despotism. Unanimity is impossible. The rule of a minority, as a permanent arrangement, is wholly inadmissible; so that, rejecting the majority principle, anarchy or despotism in some form is all that is left.

One section of our country believes slavery is right and ought to be extended, while the other believes it is wrong and ought not to be extended. This is the only substantial dispute. The fugitive- slave clau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for the suppression of the foreign slave trade are each as well enforced, perhaps, as any law can ever be in a community where the moral sense of the people imperfectly supports the law itself. The great body of the people abide by the dry legal obligation in both cases, and a few break over in each. This, I think, can not be perfectly cured, and it would be worse in both cases after the separation of the sections than before. The foreign slave trade, now imperfectly suppressed, would be ultimately revived without restriction in one section, while fugitive slaves, now only partially surrendered, would not be surrendered at all by the other.

Physically speaking, we can not separate. We can not remove our respective sections from each other nor build an impassable wall between them. A husband and wife may be divorced and go out of the presence and beyond the reach of each other, but the different parts of our country can not do this. They can not but remain face to face, and intercourse, either amicable or hostile, must continue between them.

In your hands, my dissatisfied fellow-countrymen, and not in mine, is the momentous issue of civil war. The Government will not assail you. You can have no conflict without being yourselves the aggressors. You have no oath registered in heaven to destroy the Government, while I shall have the most solemn one to "preserve, protect, and defend it."

I am loath to close. We are not enemies, but friends.

우리 나라의 한 지역에서는 노예 제도가 옳으며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이 그릇되며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실질적 논쟁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도망간 노예에 관한 조항과 대외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률이 각기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률 자체가 국민의 도의심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사회에서도 무슨 법률이든 항상 시행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국민 대다수는 무미 건조한 법적 의무만을 준수하며, 각 경우마다 소수의 사람들은 되풀이하여 법률을 어깁니다. 나는 이것이 완전하게 치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지역간의 분리 이전보다 이후에 사정은 악화될 것입니다. 현재 불완전한 대로 금지되어 있는 대외 노예 무역이 한 지역에서는 궁극적으로 무제한으로 되살아날 것이고, 반면에 현재 부분적으로만 인도되는 도망간 노예들이 다른 한 지역에서는 전혀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을 서로 떼어놓을 수도 없고 또한 지역과 지역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혼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발길이 닿을 수도 없는 곳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각 지역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교류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만을 품은 국민 여러분, 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제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공격자가 되지 않는 한 전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부를 파괴하겠다고 하늘에 맹세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정부를 "보존·보호 및 수호하겠다"는 가장 엄숙한 선서를 할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끝맺음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감정이 격앙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애정의 유대가 끊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라는 신비로운 심금은 모든 전쟁터와 We must not be enemies. Though passion may have strained it must not break our bonds of affection. The mystic chords of memory, stretching from every battlefield and patriot grave to every living heart and hearthstone all over this broad land, will yet swell the chorus of the Union, when again touched, as surely they will be, by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애국자의 무덤에서부터 이 드넓은 땅 전역의 모든 살아 있는 가슴과 가정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금에, 우리 본성에 깃든 보다 선량한 천사의 손길이 다시금 닿게 될 때면—— 필경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 연방 찬가는 한층 드높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Abraham Lincoln: State of the Union Address (1862) / 19. 아브라함 링컨: 연례교서 (1862-)



Until the very end of the Civil War, President Lincoln urged on Congress his plan to give pecuniary aid to States adopting the gradual abolishment of slavery. His annual message to Congress on December 1, 1862, contained a specific plan for compensated emancipation to which he invited the attention of Congress. It is memorable not only for this plan but for the wonderfully eloquent and moving appeal to the moral verdict of history: "We shall nobly save or meanly lose the last, best hope of earth."

시민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의 점차적인 폐지를 채택하는 주들에게 대해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그의 계획을 국회에 설득시켰다. 1862년 12월 1일, 국회에 보내는 그의 연간 메세지는 그가 국회의 주의를 집중시켰던 노예 해방에 대한 보상에 특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링컨의 이러한 계획은 기념비적일뿐만 아니라 역사의 도덕적 판단에 설득적이고 감동적 호소였다.

Fellow-citizens, we cannot escape history. We of this Congress and this Administration will be remembered in spite of ourselves. No personal significance or insignificance can spare one or another of us. The fiery trial through which we pass will light us down, in honor or dishonor, to the latest generation. We say we are for the Union. The world will not forget that we say this. We know how to save the Union. The world knows we do know how to save it. We, even we here, hold the power and bear the responsibility. In giving freedom to the slave,

시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들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이 행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불같은 시련은 명예와 불명예로 우리를 마지막 세대까지 끌어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연방을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이것을 말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있는 우리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데 있어, 우리는 자유로움이 -- 우리가 주는 것과 우리가 유지하는 것과 같이 명예로운 자유라고 확신합니다. we assure freedom to the free,--honorable alike in what we give and what we preserve. We shall nobly save or meanly lose the last, best hope of earth. Other means may succeed; this could not fail. The way is plain, peaceful, generous, just,--a way which, if followed, the world will forever applaud, and God must forever bless.

우리는 마지막이자 그리고 최상의 희망을 당당하게 구제하거나 열약하게 잃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마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이 방법이 따라진다면, 이 방법은 명료하고 평화롭고 관대하며, 세계는 영원히 찬양할 것이며, 신은 영원히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Abraham Lincoln: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1863) / 20. 에이브러햄 링컨: 노예 해방 선언 (1863)



The Civil War had broken out in April and as early as July 22, 1862, President Lincoln had read to his Cabinet a preliminary draft of the historic proclamation. Secretary Seward suggested that the proclamation should not be issued until a military victory had been won. In September, the Federal victory at Antietam gave Lincoln his desire opportunity, and, on September 22, he read draft of the proclamation to his Cabinet. After some modifications this was issued as a preliminary proclamation; the formal Emancipation Proclamation was announced to the world on January 1, 1863.

남북전쟁은 1861년 4월에 발발했다. 1862년 7월 22일 링컨 대통령은 그의 각료들에게 역사적인 노예 해방선언의 초안을 낭독해 보였다. 그 때 수워드 국무장관은 군사적 승리를 거둘 때가지는 이 선언문을 발표하지 말자고 제의했다. 그 해 9월 앤티탬에서의 연방군의 승리는 링컨이 바라던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그는 9월22일 노예해방 선언의 제 2초안을 내각에게 낭독했다. 몇 가지 수정을 가하여 이 선언문은 예비선언으로 발표되었다. 정식 노예해방 선언문은 1863년 1월 1일에 온 세계에 대하여 발표되었다.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sixty-three,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미국 대통령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 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인 본인에게 부여되는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적합하고 필요한 전쟁조치로서, 서기 1863년 1월 1일, 그리고 상기 1월 1일부터 1백일 동안에 그렇게 하기 위한 본인의 목적에 따라 그 주민들이 현재 미국에 대하여 각각반란상태에 있는 다음 주와 주의 부분을 반란주로 지정하는 바입니다. 즉,

period of 100 days from the day first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la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 Bon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Nort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s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s where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단, 세인트 버나드, 플래퀘민즈,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즈, 세인트 제임즈, 어센시온, 어삼프션, 테레본, 래포치,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및 뉴올리언즈시를 포함하는 올리언즈 등의 교구는 이에서 제외됨),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및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정해진 48개 카운티와 버클리, 애코맥, 노드햄프턴, 엘리자베드 시티, 요크, 프린세스 앤, 그리고 노포크시와 포츠머드 시를 포함한 노포크 카운티는 이에서 제외됨). 위 제외된 지역에는 현재로서는 이 포고령이 발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상기 권한에 의하여, 그리고 그목적을 위하여 상기 주와 주의 지역 내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자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상기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그 자유가 선언된 상기자 들에게 자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력 행위를 삼가도록 명하며, 또 본인은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합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적합한 조건을 가진 자는 미국 군대에 편입되어 요새, 진지 및 기타 부서에 배치되며, 각종 함선에 배치될 것임을 선언하고 알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정당한 행동으로 믿어지며, 군사상의 필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이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본인은 인류의 이해심 많은 판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링컨의 노예해방 보상을 요구하는 1862년 12월 1일자 대의회 교서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의 점진적인 폐지를 단행하고 있는 주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은 손실을 보상하는 금전상의 원조를 주기 위한 자기의 계획을 승인하도록 의회에 촉구했다. 그의 Lincoln's message to Congress of December 1, 1862 calling for compensated emancipation.

Until the very end of the Civil War, President Lincoln urged on Congress his plan to give pecuniary aid to States adopting the gradual abolishment of slavery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resulting from the change in systems. His annual message to Congress on December 1, 1862, contained a specific plan for compensated emancipation to which he invited the attention of Congress. It is memorable not only for this plan but for the wonderfully eloquent and moving appeal to the moral verdict of history: "We shall nobly save or meanly lose the last, best hope of earth."

...The plan (for compensated emancipation) is proposed as permanent constitutional law. It cannot become such without the concurrence of, first, two thirds of Congress, and afterwards three fourths of the States. The requisite three fourths of the States will necessarily include seven of the slave States.*Their concurrence, if obtained, will give assurance of their severally adopting emancipation at no very distant day upon the new constitutional terms. This assurance would end the struggle now and save the Union forever...

Fellow-citizens, we can not escape history. We of this Congress and this administration will be remembered in spite of ourselves. No personal significance or insignificance can spare one or another of us. The fiery trial through which we pass will light us down in honor or dishonor to the latest generation. We say we are for the Union. The world will not forget that we say this. we know how to save the Union. The world knows we do know how to save it. We, even we here, hold the power and bear the responsibility. In giving freedom to the slave we assure freedom to the free-honorable alike in what we give and what we prewerve. We shall nobly save or meanly lose the last, best hope of earth. Other means may succeed; this could not fail. The way is plain, paceful, generous, just-a way which if followed the world will forever applaud and God must forever bless.

1862년 12월 1일자 대의회 연결 교서에는 그가 의회의 주의를 환기시킨 노예해방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교서는 비단 이 노예해방 보상계획으로 해서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가장 좋은 희망을 숭고하게 살리지 못할 것같으면 그것을 비열하게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역사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놀라울 만큼 웅변적이고 감동적인 호소로 해서 더욱 기억할 만하다.

… '노예해방 보상"계획은 영구적인 헌법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먼저 의회의 3분의 2의 동의와 그 다음으로 전 주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노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7개 주*도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주들이 동의한다면 그들이 머지않아서 새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노예 해방을 실시한다는 것을 보장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장은 현재의 투쟁을 종식시키고, 연방을 영원히 살리게 될 것입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현 의회와 현행정부를 맡고 있는 우리들은 좋건 싫건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의 어느 사람이 출중하다고 해서, 또는 출중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만이 후세의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열화 같은 시련은 후세의 세대들에게 우리를 명예롭게, 혹은 불 명예롭게 비춰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방을 지지한다고 말은 합니다.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방을 살리는 방법을 압니다. 우리가 연방을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이곳에 있는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우리는 자유인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주는 것과 가지고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다 같이 명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세상의 마지막 가장 좋은 희망을 숭고하게 살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비열하게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수단도 성공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이 방법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분명하고, 평화로우며, 관대하고 정의로운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르면 온 세계 사람들이 영원히 박수를 보낼 것이며, 하나님도 틀림없이 영원히

*That is, States which had legalized slavery.	축복해줄 것입니다.
	*즉, 합법화된 노예제도를 실시하던 주들

Abraham Lincoln: The Gettysburg Address (1863) / 21. 에이브러햄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 (1863)



Lincoln's Address at the Dedication of the Gettysburg National Genetics, November 19, 1893.

Formula and move yates ago or Fation length farth on this more than the continuent a new nation monitored in Borty, and distinct in the proposition that we should not bit. But is a larger seems, we meant definition we make the fatight of the size of

The great Battle of Gettysburg, fought for three days in July, 1863 through the streets and around the countryside of the little Pennsylvania town, was the turning point of the Civil War. Congress decided to make a national cemetery of the battlefield where so many gallant men had fallen. President Lincoln came from Washington to dedicate that cemetery. His dedication speech of November 19, 1863, short as it is, is one of the most eloquent statements of the democratic faith ever made.

1863년 7월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마을인 게티즈버그의 거리와 그 주변에서 사흘이나 계속되었던 게티즈버그 대 전투는 남북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의회는 수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죽은 이 격전지를 국립 묘지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링컨 대통령은 이 묘지를 헌납하기 위하여 위싱턴에서 왔다. 1863년 11월 19일에 있은 그의 헌납식 연설은 짧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민주적 신념의 가장 웅변적인 '성명'의 하나가 되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e nation might live. It is

지금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 신대륙에 자유를 신봉하고,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조에 헌신하는 새 국민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국민이 또는 어떤 국민이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큰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대 격전지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의 일부를, 이 국민이 살 수 있도록 이곳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로 바치기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we can not consecrate, we can not hallow,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땅을 헌납할 수도, 신성화 할 수도, 성역화 할 수도 없습 니다. 이곳에서 싸운 살아있는 분과 전사한 분들이 우리가 더하고 덜 할 수 있는 미약한 힘을 훨씬 초월해서 이 땅을 성역화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주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랫동안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나 그 분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싸운 분들이 이만큼 숭고하게 성취해 놓은, 아직 끝맺지 못한 일들을 위해 살아 있는 우리들은 헌신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위대한 과업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명예로 운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마지막 헌신을 다한 그 대의에 한층 더 헌신하게 되며, 이곳에 모인 우리 들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숭고하게 결의 하며, 이 국민이 하나님의 가호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합시다.

Abraham Lincoln: Second Inaugural Address (1865) / 22. 에이브러햄 링컨: 제2차 취임사 (1865)

The country was still torn by civil war when Lincoln was elected to a second term of office in 1864. At that time the outcome of the war was still in doubt, and the triumphant re-election of Lincoln was a heartening manifestation of the determination of the people of the North to see the war through to a successful conclusion. When Lincoln took the oath of office on March 4, 1865 it was clear that the North was victorious, and that the war would soon come to an end. Lincoln here addressed himself to the great problems that would face the American people after the war. Lincoln wanted to avoid all question of fault or of punishment. This was the policy he was prepared to carry through when an assassin's bullet put an end to his noble ideal.

1864년 링컨이 제2차 임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무렵 미국은 아직 내전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 당시 전쟁의 승패는 아직 예측할 수 없었으나 링컨이 당당히 재선된 것은 이 전쟁을 기어코 성공적으로 매듭짓겠다는 북부인 들의 결의의 힘찬 표명이었다. 1865년 3월 4일 링컨이 취임 선서를 하였을 때에는 북부가 승세를 굳히고 있었으며, 전쟁이 머지않아 끝나리라는 것이 명백했다. 링컨은 여기에서 이 전쟁이 끝난 후 미국민들이 직면하게 될 큰 문제들에 착수했다. 링컨은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벌하는 모든 문제를 피하고자 했다. 그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려 하고 있을 때에 한 자객의 흉탄으로 그의 이러한 숭고한 이상은 무산되고 말았다.

Fellow-Countrymen:

At this second appearing to take the oath of the Presidential office there is less occasion for an extended address than there was at the first. Then a statement somewhat in detail of a course to be pursued seemed fitting and proper. Now, at the expiration of four years, during which public declarations have been constantly called forth on every point and phase of the great contest which still absorbs the attention and engrosses the energies of the nation, little that is new could be presented. The progress of our arms, upon which all else chiefly depends, is as well known to the public as to myself, and it is, I trust, reasonably satisfactory and encouraging to all. With high hope for the future, no prediction in regard to it is ventured.

On the occasion corresponding to this four years ago all thoughts were anxiously directed to an impending civil war. All dreaded it, all sought to avert it. While the inaugural address was being delivered from this place, devoted altogether to saving the Union without war, insurgent agents were in the city seeking to destroy it without war--seeking to dissolve the Union and divide effects by negotiation. Both parties deprecated war, but

동포 여러분: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이렇게 두 번째로서니 긴 연설을 할 필요가 처음보다 적습니다. 첫 번째취임 때는 앞으로 추구할 방침을 다소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어울리고 또 적합해 보였습니다. 이제 4년이만료되는 이 마당에선, 아직도 국민의 주의를 빼앗고정력을 몰입하는 중대한 싸움의 모든 대목과 국면마다공적 선언서가 끊임없이 나왔던 터라, 새로운 것이라곤내보일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무력의 발전은 저 자신만큼이나 일반 국민도 잘 아는 바로서 누구에게나 꽤 만족스럽고 고무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 커다란 희망을가지면서도 그 희망이 어떻게 될지 굳이 예측해 볼생각은 없습니다.

4년 전 지금과 같은 계제에는 온갖 상념이 임박한 내란에로 염려스럽게 쏠렸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투려워했고 모두가 그것을 회피하고자 애썼습니다. 전쟁 없이 연방을 구하려는 일념에 전적으로 바쳐진취임사가 이 자리에서 낭독되고 있는 동안에도반란자들은 이 도시에서 전쟁 없이 연방을 파괴하고자,다시 말해 연방을 해체하고 재산을 협상에 의해 나눌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가 전쟁은 옳지

one of them would make war rather than let the nation survive, and the other would accept war rather than let it perish, and the war came.

One-eighth of the whole population were colored slaves, not distributed generally over the Union, but localized in the southern part of it. These slaves constituted a peculiar and powerful interest. All knew that this interest was somehow the cause of the war. To strengthen, perpetuate, and extend this interest was the object for which the insurgents would rend the Union even by war, while the Government claimed no right to do more than to restrict the territorial enlargement of it. Neither party expected for the war the magnitude or the duration which it has already attained. Neither anticipated that the cause of the conflict might cease with or even before the conflict itself should cease. Each looked for an easier triumph, and a result less fundamental and astounding. Both read the same Bible and pray to the same God, and each invokes His aid against the other. It may seem strange that any men should dare to ask a just God's assistance in wringing their bread from the sweat of other men's faces, but let us judge not, that we be not judged. The prayers of both could not be answered. That of neither has been answered fully. The Almighty has His own purposes. "Woe unto the world because of offenses; for it must needs be that offenses come, but woe to that man by whom the offense cometh." If we shall suppose that American slavery is one of those offenses which, in the providence of God, must needs come, but which, having continued through His appointed time, He now wills to remove, and that He gives to both North and South this terrible war as the woe due to those by whom the offense came, shall we discern therein any departure from those divine attributes which the believers in a living God always ascribe to Him? Fondly do we hope, fervently do we pray, that this mighty scourge of war may speedily pass away. Yet, if God wills that it continue until all the wealth piled by the bondsman's two hundred and fifty years of unrequited toil shall be sunk, and until every drop of blood drawn with the lash shall be paid by another drawn with the sword, as was said three thousand years ago, so still it must be said "the judgments of the Lord are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않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쪽은 이 나라를 살아 남게 하느니 차라리 전쟁을 받아들이려 하여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흑인 노예가 전 인구의 8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연방 전역에 걸쳐 널리 분산되어 있지 않고 남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특수하고 강력한 이해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해 관계가 전쟁의 원인임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이 이해 관계를 강화하고 영구화하며 확대시키는 것이야말로 반란자들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연방을 분열시키고자 한 목적이었으며, 반면에 정부는 이 이해 관계가 준 주들에 까지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려고 했을 뿐 그 이상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전쟁이 이렇게 까지 크게 확대되고 오래 지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전쟁 자체의 소멸과 더불어 심지어 그 이전에라도 소멸되리라고는 어느 쪽에서도 예기치 못했습니다. 각자가 보다 손쉽게 승리를 거두리라고 기대했지 이렇게 근본적이고 놀라운 결과가 빚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모두가 동일한 성경을 읽고 동일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도 각기 상대편을 무찌를 하나님의 도움을 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굴에 땀 흘려 얻은 빵을 어떤 사람들이 빼앗는 일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움을 감히 청하다니 기이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심판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심판하지 말도록 합시다. 양쪽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의 기도도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당신 나름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세상에 죄악의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만약 미국의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없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분께서 거두시려 하시는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들 중 하나이며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화로서 남부와 북부 모두에게 이 끔찍한 전쟁을 주시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항상 그 분께로 돌리는 저 성스러운 속성들에 위배되는 어떤 점을 그 속에서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이

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 with firmness in the right as God gives us to see the right, let us strive on to finish the work we are in, to bind up the nation's wounds, to care for him who shall have borne the battle and for his widow and his orphan, to do all which may achieve and cherish a just and lasting peace among ourselves and with all nations.

크나큰 정벌이 신속하게 사라지기를 우리는 한결같이 희망하고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굴레를 쓴 자의 보람 없는 노고에 의해서 250년 동안이나 축적된 부가 무너뜨려질 때까지, 그리고 3,000년 전의 말씀대로 채찍으로 뽑아낸 핏방울 하나 하나가 칼로 뽑아낸 다른 핏방울에 의해 갚아질 때까지 전쟁을 지속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주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원한을 품지 않고, 모두에 대해 자비를 품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의 정의를 굳게 믿고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과업을 끝맺고 이 나라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싸움터에서 쓰러진 사람과 그 미망인과 고아를 보살피며, 우리 자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하고자 계속 분발합시다.

Theodore Roosevelt: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1907) / 23. 데어도어 루즈벨트: 천연 자원의 보존 (1907)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1858-1919) was an ardent advocate of outdoor life, and of all his policies that of conservation of the nation's natural resources was of the most permanent significance. In his first message to Congress, he had declared that the forest and water problems were the most vital domestic problems facing the American people. During his administration he succeeded in setting aside almost 60 million hectares of timber land in the United States proper and some 34 million hectares of mineral lands in Alaska. More than this, he dramatized the conservation problem before the Nation by his speeches, his actions, and by the convening of the Conservation Conference, making the protection of natural resources a national issue.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his Seventh Annual Message to Congress on December 3, 1907.

데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1858-1919)은 야외생활의 열렬한 주창자였고 그의 모든 정책 가운데서 미국의 천연 자원 보존정책은 가장 영구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그의 첫 교서에서 산림 문제와 수자원 문제는 미국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내 문제라고 선언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미국 본토에 삼림지 약 6천만 헥타르와 알래스카에 광물 매장지 약 3천 4백만 헥타르를 획정해 놓는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루즈벨트는 그의 연설과 행동, 그리고 천연 자원 보존회의 개최 등으로 천연 자원 보존문제를 국민 앞에서 극적으로 표현하여 천연 자원 보존을 전국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다음은 1907년 12월 3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발표한 제 7차 연두교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To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 . . The conservation of our natural resources and their proper use constitute the fundamental problem which underlies almost every other problem of our national life....As a nation we not only enjoy a wonderful measure of present prosperity but if this prosperity is used aright it is an earnest of future success such as no other nation will

상하 의원 여러분께:

...우리의 천연 자원의 보존과 그 자원의 적절한 사용은 우리 국민생활의 거의 모든 다른 문제의 기초가 되는 근본 적인 문제입니다....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현재 경탄할 정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번영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다른 어느 국민도 갖지 못할 미래의 성공의 '보증'이 될 have. The reward of foresight for this nation is great and easily foretold. But there must be the look ahead, there must be a realization of the fact that to waste, to destroy, our natural resources, to skin and exhaust the land instead of using it so as to increase its usefulness, will result in undermining in the days of our children the very prosperity which we ought by right to hand down to them amplified and developed. For the last few years, through several agencies, the government has been endeavoring to get our people to look ahead and to substitute a planned and orderly development of our resources in place of a haphazard striving for immediate profit. Our great river systems should be developed as national water highways.

. . . From the Great Lakes to the mouth of the Mississippi there should be a deep waterway, with deep waterways leading from it to the East and the West. Such a waterway would practically mean the extension of our coastline into the very heart of our country. It would be of incalculable benefit to our people. The inland waterways which lie just back of the whole Eastern and Southern coasts should likewise be developed. Moreover, the development of our waterways involves many other important water problems, all of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same general scheme. The government dams should be used to produce hundreds of thousands of horse-power as an incident to improving navigation; for the annual value of the unused water-powered of the Untied States perhaps exceeds the annual value of the products of all our mines. As an incident to creating the deep waterways down the Mississippi, the government should build along its whole lower length levees which, taken together with the control of the headwaters, will at once and forever put a complete stop to all threat of floods in the immensely fertile delta region.

Irrigation should be far more extensively developed than at present. . . .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seriously devote itself to this task, realizing that utilization of waterways and water-power, forestry, irrigation, and the reclamation of lands threatened with overflow, are all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이 같은 선견지명의 보상은 매우 크고도 쉽사리 예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며, 우리 천연 자원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도록 천연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천연 자원을 낭비하고, 파괴하고, 국토를 메마르게 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늘리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바로 그 번영을 우리의 자손 세대에 가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몇몇 기관을 통해 국민들이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즉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닥치는 대로 천연 자원을 개발하는 대신,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자원개발을 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하천망은 전국적인 수로로 발전돼야 할 것이며,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5대 호로부터 미시시피 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수심이 깊은 수로가 있어야 하며, 그 수로로부터 동서양 쪽으로 뻗어나가는 수심이 깊은 여러 수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로는 실제로 우리의 해안선이 우리나라의 바로 심장부에까지 확장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될 것입 니다.

동부해안 및 서부해안 안쪽에 놓여 있는 내륙수로들도 마찬가지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수로개발은 동일한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로고려되어야 할 많은 다른 중요한 수자원 문제를포함합니다. 정부가 건설한 댐들은 항로 개량사업의부산물로서 수십만 마력의 수력발전을 하는데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사용수력의 연간 총 가치는 아마도 미국의 전 광산물의연간 총 가치를 능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시시피강 하류까지 깊은 수심의 수로를 만드는 부대사업으로 정부는 강 줄기를 따라 제방을 구축해야하는데, 이 제방은 상류에서 수류 조절과 더불어 엄청나게 비옥한 하류의 3각 주 지역의 모든 홍수 위험을 영구히, 완전하게 없애줄 것입니다.

관개도 현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발전시켜야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런 과업에 진지하게 헌신해야 하며, 그리고 수로와 수력의 이용, 조림, 관개그리고 홍수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의 간척부서 등은 모두가 동일한 문제로 서로 의존해야 한다는

interdependent parts of the same problem. The work of the Reclamation Service in developing the larger opportunities of the Western half of our country for irrigation is more important than almost any other movement. The constant purpose of the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the Reclamation Service has been to use the water resources of the public lands for the ultimate greatest good of the greatest number; in other words, to put upon the land permanent home-makers, to use and develop it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children and children's children.

. .

Some such legislation as that proposed is essential in order to preserve the great stretches of public grazing-land which are unfit for cultivation under present methods and are valuable only for the forage which they supply. . . . As the West settles, the range becomes more and more overgrazed. Much of it cannot be used to advantage unless it is fenced, for fencing is the only way by which to keep in check the owners of nomad flocks which roam hither and thither, utterly destroying the pastures and leaving a waste behind The unlawful fencing of public lands for private grazing must be stopped, but the necessity which occasioned it must be provided for.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have control of the range, whether by permit or lease, as local necessities may determine. Such control could secure the great benefit of legitimate fencing, while at the same time securing and promoting the settlement of the country. . . . The government should part with its title only to the actual home-maker, not to the profit-maker who does not care to make a home. Our prime object is to secure the rights and guard the interests of the small ranchman, the man who ploughs and pitches hay for himself. It is this small ranchman, this actual settler and home-maker, who in the long run is most hurt by permitting thefts of the public land in whatever form.

Optimism is a good characteristic, but if carried to an excess it becomes foolishness. We are prone to speak of the resources of this country as inexhaustible; this is not so. The mineral wealth of the country, the coal, iron, oil, gas, and the like, does not reproduce itself, and therefore is certain to be exhausted ultimately; and wastefulness in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서반부의 관개를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는 간척사업은 어떤다른 운동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간척 사업과 관련된정부의 변함없는 목적은 최다수의 궁극적인 최대복지를 위하여 공유지의 수자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토지에 영구히 가정을 만들어자식들을 불러 들이고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후손의 후손을 위하여 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방법으로는 경작에 적합하지 않고 다만 마초 공급용 가치만 있는 광대한 공유 목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입법이 절대로 필요하며, 이주민이 서부에 정착해감에 따라 이 지역의 목초지는 방목으로 점점 더 헐벗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목초지의 대부분은 울타리를 둘러치지 않는 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막기는 여기 저기 몰려다니며 목초지들을 황폐화하고 떠나버리는 유목가축들의 소유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때문입니다.

사적인 방목을 위해 공유지에 불법으로 울타리를 치는 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현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에 의하건 혹은 임차지 계약에 의하건 이 지역을 관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이 지방의 이민 개척을 확보, 증진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울타리 막기의 아주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소유권을, 가정에는 관심이 없이 폭리만 추구하려는 자들에게 보다는, 실제로 가정을 꾸미는 자에게만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 경작하고 건초를 장만하는 소목장 경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의 이익을 지켜주는데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공유지의 절취를 허용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 소목장 경영자이자 실제 정착하는 가정을 만드는 자입니다.

낙관은 좋은 성격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어리석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자원은 무진장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dealing with it today means that our descendants will feel the exhaustion a generation or two before they otherwise would. But there are certain other forms of waste which could be entirely stopped-the waste of soil by washing, for instance, which is among the most dangerous of all wastes now in progress in the United States, is easily preventable, so that this present enormous loss of fertility is entirely unnecessary. The preservation or replacement of the fores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preventing this loss. . . . The present annual consumption of lumber is certainly three times as great as the annual growth; and if the consumption and growth continue unchanged, practically all our lumber will be exhausted in another generation. . . . We should acquire in the Appalachian and White Mountain regions all the forest-lands that it is possible to acquire for the use of the nation. These lands, because they form a national asset, are as emphatically national as the rivers which they feed, and which flow through so many States before they reach the ocean. . . .

않습니다. 석탄, 철, 석유, 가스 등과 같은 이 나라의 광물자원은 재생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고갈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자원을 다룸에 있어 낭비하는 일은 우리의 후손들이 그자원의 고갈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을 때보다 한세대 혹은 두세대 더 일찍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방치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낭비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태에 의한 토양의 낭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낭비중에서 가장 위험한 낭비인데, 이것은 쉽게 방지될 수 있으며, 방지만 되면 현재 토지 산출력의 이 엄청난 손실은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삼림보호 혹은 조림은 이런 손실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의 연간 목재 소비량은 확실히 연간 목재 생산량의 3배나 됩니다. 따라서, 목재 소비량과 생산량이 현재대로 계속 변함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의 모든 목재는 다음 세대에 가서 고갈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애팔래치아 산맥과 화이트 산맥 지대에서 국민의 사용을 위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삼림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삼림지들도 국가자산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와 수많은 주를 거쳐 대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하천들과 다름 없이 단연 전국적인 성격을 띤 것입니다....

Woodrow Wilson: First Inaugural Address (1913) / 24. 우드로 윌슨: 첫 취임 연설 (1913)

In his campaign for electio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oodrow Wilson, at the time Governor of the State of New Jersey, maintained that special interests had too powerful a hand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hat government had "not been administered by the common people." He took office determined to carry through a program of sweeping domestic reforms. His First Inaugural Address on March 4, 1913, reaffirmed the philosophy of the "new freedom" which he had enunciated during the campaign, and called for a larger role by government in regulation of the economy. It is with the Wilson Administration that the United States began the development of those welfare policies which have since become so familiar a feature of American national policies. Wilson's First Inaugural Address is one of the most notable statements of the American democratic creed; for eloquence it compares with President Jefferson's First Inaugural and President Lincoln's Second Inaugural Address.

우드로 윌슨은 뉴저지 주지사 재직 당시 미국 대통령 출마 선거운동에서 연방정부의 행정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정부가 "보통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폭적인 국내 개혁안을 실행하겠다고 결심하며 취임했다. 1913년 3월 4일 그의 첫 취임연설은 그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언한, "새 자유"의 철학을 재확인했고, 경제를 규제하는데 있어 정부의 더 큰 역할을 촉구했다. 미국이 복지 정책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은 윌슨 행정부 때부터였으며, 그 복지 정책들은 그 이후 미국의 국가적 정책에서 아주 친숙한 특징이 되었다. 윌슨 대통령의 첫 취임연설은 미국의 민주적 신조의 가장 주목할만한 진술 중의 하나이며, 그리고 웅변의 측면에서는 제퍼슨 대통령의 첫 취임 연설과 링컨 대통령의 제 2차 취임 연설과 비교된다.



···Some old things with which we had grown familiar, and which had begun to creep into the very habit of our thought and of our lives, have altered their aspect as we

… 우리가 친숙하게 지내왔고 또 바로 우리의 사고와 생활 습관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던 일부 옛 것들이, 최근 들어 신선하고 깨어난 눈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자 면모가 일신되어 가식이 벗겨지고 낯설고 어쩐지 불길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일부 새로운 것들은 그 참 모습을 이해하려는 기꺼운 자세로 솔직하게 바라보자 오랫동안 믿어 친숙해진 것, 바로 우리 자신의 신념 같은 모습을 띠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통찰력에 의해 우리가 쇄신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의 규모, 활력의 다양성과 범위, 개인의 창의에 의해 구상되고 집단의 무한한 진취적 기상에 의해 세워진 기업 등 물질적 측면에서 비할 바 없이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도덕적 힘에서도 위대합니다. 대단히 have latterly looked critically upon them, with fresh, awakened eyes; have dropped their disguises and shown new things, as we look frankly upon them, willing to comprehend their real character, have come to assume the aspect of things long believed in and familiar, stuff of our own convictions. We have been refreshed by a new insight into our own life.

We see that in many things that life is very great. It is incomparably great in its material aspects, in its body of wealth, in the diversity and sweep of its energy, in the industries which have been conceived and built up by genius of individual men and the limitless enterprise of groups of men. It is great, also, very great, in its moral force.

Nowhere else in the world have noble men and women exhibited in more striking forms the beauty and the energy of sympathy and helpfulness and counsel in their efforts to rectify wrong, alleviate suffering, and set the weak in the way of strength and hope. We have built up, moreover, a great system of government, which has stood through a long age as in many respects a model for those who seek to set liberty upon foundations that will endure against fortuitous change, against storm and accident. Our life contains every great thing, and contains it in rich abundance.

But the evil has come with the good, and much fine gold has been corroded. With riches has come inexcusable waste. We have squandered a great part of what we might have used, and have not stopped to conserve the exceeding bounty of nature without which our genius for enterprise would have been worthless and impotent, scorning to be careful, shamefully prodigal as well as admirably efficient. We have been proud of our industrial achievements, but we have not hitherto stopped thoughtfully enough to count the human cost.

At last a vision has been vouchsafed us of our life as a whole. We see the bad with the good, the debased and decadent with the sound and vital. With this vision we 위대합니다.

고결한 남녀들이 잘못을 바로 잡고, 고통을 덜고약자에게 힘과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동정심과조언의 아름다움과 활기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 준적은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없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위대한 정부 체제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체제는 우발적변화나, 격동과 재난에도 견딜 수 있을 기반 위에자유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많은 면에서 하나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위대한 것을, 그것도 넘칠 만큼 풍요롭게 간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과 함께 나쁜 것도 나타나 많은 순금이 부식되고 말았습니다. 부와 함께 변명이 있을 수 없는 낭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신중함을 경멸하고 감탄할 만큼 유능하면서도 수치스러울 만큼 방탕하여 선용할 수도 있었을 것을 대부분 헛되이써버렸고 굉장한 자연의 혜택 -없었다면 우리의기업적 천재성도 쓸모 없이 무력해지고 말았을- 을 보존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산업적 성과를 자랑해 왔지만 걸음을 멈추어 그인간적 비용을 헤아려 볼 만큼 사려 깊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을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선과 함께 악을 보고, 건전하고 생기 넘치는 것과 함께 천하고 퇴폐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로 다가갑니다. 우리의 의무는 선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악을 정화하고, 재검토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하고 시정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공동생활의 모든 과정을 약화시키거나 감상적으로 만들지 않고 순화하고 인간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두번째 생각에 이릅니다. 우리의 눈에서 경솔함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애초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세웠고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해 온 기준에 맞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작업은 복원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고쳐야 할 것들을 다소 세심하게 조목조목

approach new affairs. Our duty is to cleanse, to reconsider, to restore, to correct the evil without impairing the good, to purify and humanize every process of our common life without weakening or sentimentalizing it.

We have come now to the sober second thought. The scales of heedlessness have fallen from our eyes. We have made up our minds to square every process of our national life again with the standards we so proudly set up at the beginning and have always carried at our hearts. Our work is a work of restoration.

We have itemized with some degree of particularity the things that ought to be altered and here are some of the chief items: A tariff which cuts us off from our proper part in the commerce of the world, violates the just principles of taxation, and makes the Government a facile instrument in the hands of private interests; a banking and currency system based upon the necessity of the Government to sell its bonds fifty years ago and perfectly adapted to concentrating cash and restricting credits; an industrial system which, take it on all its sides, financial as well as administrative, holds capital in leading strings, restricts the liberties and limits the opportunities of labor, and exploits without renewing or conserving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ountry; a body of agricultural activities never yet given the efficiency of great business undertakings or served as it should be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science taken directly to the farm, or afforded the facilities of credit best suited to its practical needs; water-courses undeveloped, waste places unreclaimed, forests untended, fast disappearing without plan or prospect of renewal, unregarded waste heaps at every mine. We hav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production, but we have not studied cost or economy as we should either as organizers of industry, as statesmen, or as individuals.

Nor have we studied and perfected the means by which government may be put at the service of humanity, in safeguarding the health of the Nation, the health of its men and its women and its children, as well as their rights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This is no sentimental duty. The firm basis of government is justice, not pity. These are

정리했고, 몇몇 주요 조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교역에서 우리의 합당한 역할을 저해하는 관세는 과세의 올바른 원칙을 위반하고 정부를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도구로 만듭니다. 지금의 금융·통화 제도는 50년 전 정부가 공채를 판매할 수 밖에 없던 사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완전히 현금을 집중시키고 신용 거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 구조는 어느 모로 보나 - 행정뿐만 아니라 금융 면에서도 - 자본가를 과보호하고 노동자의 자유와 기회를 제한하며 나라의 천연 자원을 재생 시키거나 보존함이 없이 개발만 하는 구조입니다. 농업은 아직 거대한 사업으로서의 능률을 갖추거나 응당 그래야 하듯 직접 농장에 적용되는 과학의 덕을 보거나 실제 필요에 가장 부합되는 신용 거래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수로, 간척되지 않은 황무지, 돌보지 않은 삼림이 재생의 계획이나 전망도 없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광산마다 버려진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어느 나라도 해낸 바 없는 가장 능률적인 생산 수단을 연구해 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 조직자, 정치가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응당 그래야 하듯 비용과 절약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생존 투쟁권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즉 남녀노소의 건강을 지켜 줌으로써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연구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정보의 확고한 기반은 동정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이것들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만약 변경, 통제하거나 혼자서 대처할 수 없는 거대한 산업적, 사회적 과정의 결과로부터 남녀노소가 생명과 활력을 보호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으뜸가는 필수 요건인 평등이나 기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는 자신의 구성 요소들을 스스로 파괴하거나 약화시키거나 혹은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의 으뜸가는 의무는 그것이 섬기는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혼자서는 결정할 힘이 없는 위생법, 순수 식품법 및 노동 조건에 관한 법은 바로 정의와 법의 효력이 감당해야 할 일 가운데 익히 알려진 것들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matters of justice. There can be no equality or opportunity, the first essential of justice in the body politic, if men and women and children be not shielded in their lives, their very vitality, from the consequences of great industrial and social processes which they can not alter, control, or singly cope with. Society must see to it that it does not itself crush or weaken or damage its own constituent parts. The first duty of law is to keep sound the society it serves. Sanitary laws, pure food laws, and laws determining conditions of labor which individuals are powerless to determine for themselves are intimate parts of the very business of justice and legal efficiency.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we ought to do, and not leave the others undone, the old fashioned. never-to-be-neglected, fundamental safeguarding of property and of individual right. This is the high enterprise of the new day: To lift everything that concerns our life as a Nation to the light that shines from the hearthfire of every man's conscience and vision of the right. It is inconceivable that we should do this as partisans; it is inconceivable we should do it in ignorance of the facts as they are or in blind haste. We shall restore, not destroy. We shall deal with our economic system as it is and as it may be modified, not as it might be if we had a clean sheet of paper to write upon; and step by step we shall make it what it should be, in the spirit of those who question their own shallow self-satisfaction of the excitement of excursions whither they can not tell. Justice, and only justice, shall always be our motto.

And yet it will be no cool process of mere science. The Nation has been deeply stirred, stirred by solemn passion, stirred by the knowledge of wrong, of ideals lost, of government too often debauched and made an instrument of evil. The feelings with which we face this new age of right and opportunity sweep across our heartstrings like some air out of God's own presence, where justice and mercy are reconciled and the judge and the brother are one. We know our task to be no mere task of politics but a task which shall search us through and through, whether we be able to understand our time and the need of our

나머지 일들, 즉 재산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전통적이고 기본적이며 절대로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만인의 양심과 정의관의 따뜻한 불길에서 나오는 빛의 높이까지 고양시키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고귀한 과업입니다. 당파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거나 맹목적으로 서두르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괴할 것이 아니라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 체제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변경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야지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내키는 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박한 자기만족이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소풍을 떠날 때의 흥분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의심하여 조언과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좌우명은 정의, 오로지 정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냉엄한 과학적인 절차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깊이 각성하였습니다. 진지한 열정에 각성하고, 그릇됨과 실종된 이상들과 너무 자주 타락해 악의 도구가 된 정부를 앎으로써 각성했습니다. 정의와 기회의 이 새로운 시대를 대하는 우리의 소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선율처럼 우리의 심금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 곳에서는 정의와 자비가 화해를 이루고 판사와 형제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업이 단순히 정략적 차원의 과업이 아니라 우리를 속속들이 들추어 낼 과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국민의 대변인이며 통역자인가, 그리고 우리가 고상한 행동 방침을 이해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과 그것을 선택하려는 바로잡힌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드러날 과업인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헌신의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당파적 세력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세력이 모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이 중대한 국면에 people, whether we be indeed their spokesmen and interpreters, whether we have the pure heart to comprehend and the rectified will to choose our high course of action.

This is not a day of triumph; it is a day of dedication. Here muster, not the forces of party, but the forces of humanity. Men's hearts wait upon us; men's lives hang in the balance; men's hopes call upon us to say what we will do. Who shall live up to the great trust? Who dares fail to try? I summon all honest men, all patriotic, all forward-looking men, to my side. God helping me, I will not fail them, if they will but counsel and sustain me!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희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 보라고 합니다. 그 크나큰 신뢰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히 시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모든 정직한 사람들, 모든 애국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제 곁으로 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나를 도우시기에 만약 그들이 내게 조언을 해주고나를 뒷받침 해 주기만 한다면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Woodrow Wilson: Address at Mobile (1913) / 25. 우드로 월슨: 모빌 연설 (1913)

In this speech delivered before the Southern Commercial Congress at Mobile, Alabama, on October 27, 1913, President Woodrow Wilson announced his policy toward Latin America. The promises of the address were not consistently observed, but relations with the Latin American states were materially improved.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3년 10월 27일, 앨라배마 주 모빌에서 열린 남부 산업 평의회에서의 이 연설에서 그의 라틴 아메리카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연설에서 밝힌 약속은 철저하게 준수되지 못했으나, 미국과 중남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



...The future is going to be very different for this hemisphere from the past. These States lying to the south of us, which have always been our neighbors, will now be drawn closer to us by innumerable ties, and, I hope, chief of all, by the tie of a common understanding of each other. Interest does not tie nations together; it sometimes separates them. But sympathy and understanding does unite them, and I believe that by the new route that is just about to be opened,* while we physically cut two continents asunder, we spiritually unite them. It is a spiritual union which we seek....

We must prove ourselves their friends, and champions upon terms of equality and honor. You cannot be friends upon any other terms than upon the terms of equality. You cannot be friends at all except upon the terms of honor. We must show ourselves friends by comprehending their interest whether it square with our own interest or not. It is a very perilous thing to determine the foreign policy of a

…서반구의 미래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펼쳐져 있고 언제나 우리의 이웃인 이 나라들은 이제 많은 유대 관계에 의해, 바라건대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유대 관계인 상호간의 공동 이해에 의해 우리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국가들을 결속시키지 못하고, 국가들을 가끔 이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정과 이해는 국가들을 단결케 하며, 또 막 개통될 새로운 길을 통해 우리는 두 대륙을 물리적으로는 단절시키지만, 정신적으로는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 하는 것은 정신적 결합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방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또 대등과 존경의 관계에서 그 일을 위해 앞장서 싸워야합니다. 우리는 대등의 관계 이외의 어떠한 관계에의해서도 우방이 될 수 없으며, 또 존경의 관계에입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와대립하건 말건, 그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함으로써그들의 우방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외교정책을 물질적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은 매우위험합니다. 그것은 상대국들에게 불공정할 뿐 아니라, 자체 행동에 관해서도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이해는 우의의 모든 열매가 자라나는 토양이 되어야 하며, 또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미국의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고귀한 한 가지 이유와 충동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타고난 자유의 발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이익과는 다른 인권, 국가보전, 그리고 기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맞서야 할 nation in the terms of material interest. It not only is unfair to those with whom you are dealing, but it is degrading as regards your own actions.

Comprehension must be the soil in which shall grow all the fruits of friendship, and there is a reason and a compulsion lying behind all this which is dearer than anything else to the thoughtful men of America, I mea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liberty in the world. Human rights, national integrity, and of opportunity as against material interests-that is the issue which we now have to face. I want to take this occasion to s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again seek one additional foot of territory by conquest. She will devote herself to showing that she knows how to make honorable and fruitful use of the territory she has, and she must regard it as one of the duties of friendship to see that from no quarter are material interests made superior to human liberty and national opportunity. I say this, not with a single thought that anyone will gainsay it, but merely to fix in our consciousness what our real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America is.

It is the relationship of a family of mankind de voted to the development of true constitutional liberty. We know that that is the soil out of which the best enterprise springs. We know that this is a caw which we are making in common with our neighbor because we have had to make it for ourselves.

Reference has been made here today to some of the national problems which confront us as a Nation. What is at the heart of all our national problems? It is that we have seen the hand of material interest sometimes about to close upon our dearest rights and possessions. We have seen material interests threaten constitutional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we will now know how to sympathize with those in the rest of America who have to contend with such powers, not only within their borders but from outside their borders also....

In emphasizing the points which must unite us sympathy and in spiritual interest with the Latin American peoples, we are only emphasizing the points of our own life, and we should prove ourselves untrue to our own traditions if we proved ourselves untrue friends to them....

문제입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미국이 결코 다시는 정복을 통해 그 영토를 한 치도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그 보유 영토를 어떻게 하면 영예롭고도 혜택이 많도록 사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헌신할 것이며, 또 미국은 그어떤 쪽에서도 물질적 이익이 인간의 자유와 국가적기회보다 우위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의를 위한 의무로 간주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나 반박할 수 있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여타 미주국가들과우리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 의식 속에고정시키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타고난 자유의 발전에 헌신하는 인류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최선의 기업이 싹터나오는 토양임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이웃들과 같이 공동으로 받들어야 할 대의임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받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나라로서 당면하고 있는 일부 국가적 과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적 과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보아온 바와 같이 물질적 이익의 손이 우리의 가장고귀한 권리와 소유물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이익이 미국에서 타고난 자유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국경선 내부만이 아니라 국경선 외부로부터도들어오는 그런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여타 미주국가들과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동정과 정신적 이해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미국을 결속케 해야 하는 점들을 강조함에 있어,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의 생활에 관한 사항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국가들에게 성실치 않은 우방임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통에도 성실치 않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Woodrow Wilson: Fourteen Points Speech (1918) / 26. 우드로 월슨: 14개 항 (1918)

United States President Woodrow Wilson delivered a speech to Congress on January 8, 1918, outlining fourteen points for reconstructing a new Europe following World War I. While many of the points were specific, others were more general, including freedom of the seas, abolishing secret treaties, disarmament, restored sovereignty of some occupied lands, and the right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of others. The speech, that was made without prior coordination or consultation with his counterparts in Europe, reached for the highest ideals, and was a precursor to the League of Nations. However, history shows that despite the idealism,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Europe adopted only a few of the points.

월슨 미국 대통령은 1918년 1월 8일 미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을 뒤따르는 새로운 유럽의 재건을 위해 14개 항을 제시했다. 이 항의 다수가 구체적인데 반해, 나머지 다른 항들은 공해의 자유, 비밀 조약 폐지, 군비 축소, 몇 몇개의 점령지에 대한 주권 회복, 국가의 자유 결정력 등을 포함하여 보다 일반적이었다. 유럽에 있는 상대국들과 이전의 조정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이 연설은 최상의 이상에 도달하고자 하였으며, 국제연맹의 전조가 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상주의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전후 재건에는 이 14개 항 중에서 단지 몇 개의 항만이 채택되었음을 보여준다

It will be our wish and purpose that the processes of peace, when they are begun, shall be absolutely open and that they shall involve and permit henceforth no secret understandings of any kind. The day of conquest and aggrandizement is gone by; so is also the day of secret covenants entered into in the interest of particular governments and likely at some unlooked-for moment to upset the peace of the world. It is this happy fact, now clear to the view of every public man whose thoughts do not still linger in an age that is dead and gone, which makes it possible for every nation whose purposes are consistent with justice and the peace of the world to avow now or at any other time the objects it has in view.

We entered this war because violations of right had occurred which touched us to the quick and made the life of our own people impossible unless they were corrected and the world secured once and for all against their recurrence. What we demand in this war, therefore, is nothing peculiar to ourselves. It is that the world be made fit and safe to live in; and particularly that it be made safe for every peace-loving nation which, like our own, wishes to live its own life, determine its own institutions, be

...평화를 위한 절차가 시작될 때, 그 절차는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며, 지금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비밀 양해도 포함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자 목적이 될 것입니다. 정복과 세력 강화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정부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뒤, 어떤 예기할 수 없는 시점에서 세계평화를 뒤엎을 가능성을 내포한 비밀 협약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주 가버린 한 시대에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고 있는 모든 공인들에게 분명하게 된 이 다행한 사실은, 정의와 세계 평화에 부합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연상하는 목표를 현재 또는 여타 시기에 공언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참전한 이유는 정의의 유린이 우리의 공분을 터뜨렸고, 또 그것이 시정되고 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계를 안전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세계는 살아가기에 적합하고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져야하고, 특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살고 자신의 체제를 결정하고, 또 세계의 여타 국민이폭력과 이기적 침략이 아닌 정의와 공평한 처우의

assured of justice and fair dealing by the other peoples of the world as against force and selfish aggression.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are in effect partners in this interest, and for our own part we see very clearly that unless justice be done to others it will not be done to us.

The program of the world's peace, therefore, is our program; and that program, the only possible program, as we see it, is this:

- I. Open covenants of peace, openly arrived at, after which there shall be no private international understandings of any kind but diplomacy shall proceed always frankly and in the public view.
- II. Absolute freedom of navigation upon the seas, outside territorial waters, alike in peace and in war, except as the seas may be closed in whole or in part by international action for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venants.
- III. The removal, so far as possible, of all economic barri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quality of trade conditions among all the nations consenting to the peace and associating themselves for its maintenance.
- IV. Adequate guarantees given and taken that national armaments will be reduced to the lowest point consistent with domestic safety.
- V. A free, open-minded, and absolutely impartial adjustment of all colonial claims, based upon a strict observance of the principle that in determining all such questions of sovereignty the interests of the populations concerned must have equal weight with the equitable claims of the government whose title is to be determined.
- VI. The evacuation of all Russian territory and such a settlement of all questions affecting Russia as will secure the best and freest cooperation of the other nations of the world in obtaining for her an unhampered and unembarrassed opportunity for the independent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평화 애호국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모든 국민은 사실상 한 배에 탄 사람들이며, 또 우리는 타국에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한, 타국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계획은 우리들의 평화이며, 또 우리가 유일하게 가능한 평화라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뒤에는 외교를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비밀 국제 조약도 있어서는 안되는 공개적인 평화협약을 언제나 솔직하게 대중이보는 가운데서 진행 시킨다.
- 2. 국제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에 의해 공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영해 바깥 공해 상에서의 항해는 절대 자유다.
- 3. 평화에 동의하고 그 유지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가능한 한의 모든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대등한 통상 조건을 수립한다.
- 4. 국가의 군비를 국내 안전에 적합한 최저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적절한 보장을 주고 받는다.
- 5.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주민의 이익은 앞으로 조건이 결정될 정부의 권리 주장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모든 식민지 요구를 자유롭고, 편견 없이 또 절대 공평하게 조정한다.
- 6. 모든 러시아 영토로부터의 철수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을, 러시아가 그 자체의 정치적 발전과 국내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롭고도 자연스러운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세계 다른 나라들의 최선의, 또 가장 자유로운 협조를 확보하도록, 또 러시아가 그 자신이 선택하는 제도하에 자유국가 사회에 참여하는데 진지한 환영을 받도록 해준다. 그리고 또 환영 이상으로 러시아가

determination of her own political development and national policy and assure her of a sincere welcome into the society of free nations under institutions of her own choosing; and, more than a welcome, assistance also of every kind that she may need and may herself desire. The treatment accorded Russia by her sister nations in the months to come will be the acid test of their good will, of their comprehension of her needs as distinguished from their own interests, and of their intelligent and unselfish sympathy.

VII. Belgium, the whole world will agree, must be evacuated and restored, without any attempt to limit the sovereignty which she enjoys in common with all other free nations. No other single act will serve as this will serve to restore confidence among the nations in the laws which they have themselves set and determined for the government of their relations with one another. Without this healing act the whole structure and validity of international law is forever impaired.

VIII. All French territory should be freed and the invaded portions restored, and the wrong done to France by Prussia in 1871 in the matter of Alsace-Lorraine, which has unsettled the peace of the world for nearly fifty years, should be righted, in order that peace may once more be made secure in the interest of all.

IX. A readjustment of the frontiers of Italy should be effected along clearly recognizable lines of nationality.

X. The peoples of Austria-Hungary, whose place among the nations we wish to see safeguarded and assured, should be accorded the freest opportunity of autonomous development.

XI. Rumania, Serbia, and Montenegro should be evacuated; occupied territories restored; Serbia accorded free and secure access to the sea; and the relations of the several Balkan states to one another determined by friendly counsel along historically established lines of allegiance and nationality; and international guarantees of

필요로 하고 스스로 요망하는 모든 종류의 원조를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 수 개월 동안 러시아의 자매국가들이 러시아에게 부여하는 대우는 그들의 선의, 그들 자신의 이익과 구별되는 러시아의 필요에 대한 그들의 이해, 그리고 그들의 총명하고도 이기적이 아닌 동정에 대한 엄격한 시험이 될 것이다.

7. 전 세계는 벨기에가 다른 모든 자유 국가와 마찬가지로 누리는 주권을 제한 받지 않는 가운데, 벨기에에서 철수하고, 벨기에가 복구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국가들이 상호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하고 결정한 법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다른 어떠한 단일 조치도 이 조처만큼 유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 같은 복구 조치가 없다면, 국제법의 전체 구조와 유효성은 영원히 손상될 것이다.

8. 모든 프랑스 영토는 해방되어야 하고 침략 받은 지역은 수복되어야 하며, 또 평화가 만인을 위해 다시 정착될 수 있도록, 세계 평화를 근 50년간 뒤흔들었던 알자스-로렌 문제에 관해 1871년 프러시아가 프랑스에게 행한 부당한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

9. 이탈리아의 국경선 조정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국경선에 따라서 시행해야 한다.

10. 우리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사람들의 국제적 지위가 보전되고 보장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1. 루마니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서 철군하고 그 점령 지역이 수복되어야 하며, 세르비아에 자유롭고 안전한 공해 통행을 허용해야 하며, 또 발칸 제국의 상호관계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충성과 국경선에 따라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발칸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영토 보전에 대한 국제적 보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2. 현 오토만 제국의 터키 지역은 확고한 주권을 보장해야 하나, 현재 터키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생활의 안정과 아무런 방해 없는 자치의 발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several Balkan states should be entered into.

XII. The Turkish portions of the present Ottoman Empire should be assured a secure sovereignty, but the other nationalities which are now under Turkish rule should be assured an undoubted security of life and an absolutely unmolested opportunity of an autonomous development, and the Dardanelles should be permanently opened as a free passage to the ships and commerce of all nations under international guarantees.

XIII. An independent Polish state should be erected which should include the territories inhabited by indisputably Polish populations, which should be assured a free and secure access to the sea, and whose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should be guaranteed by international covenant.

XIV. A general association of nations must be formed under specific covenants for the purpose of affording mutual guarantees of political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to great and small states alike.

In regard to these essential rectifications of wrong and assertions of right we feel ourselves to be intimate partners of all the governments and peoples associated together against the Imperialists. We cannot be separated in interest or divided in purpose. We stand together until the end.

For such arrangements and covenants we are willing to fight and to continue to fight until they are achieved; but only because we wish the right to prevail and desire a just and stable peace such as can be secured only by removing the chief provocations to war, which this program does not remove. We have no jealousy of German greatness, and there is nothing in this program that impairs it. We grudge her no achievement or distinction of learning or of pacific enterprise such as have made her record very bright and very enviable. We do not wish to injure her or to block in any way her legitimate influence or power. We do not wish

그리고 다다넬즈 해협은 국제 보장 하에 만국의 선박과 통상을 위해 자유 통행로로 항구적으로 개방되어야한다.

13. 분명히 폴란드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독립된 폴란드 국가를 설립해야 하며, 그 국가에는 자유롭고 안정된 공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그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국제 협정으로서 보장해야 한다.

14.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 간의 전면적 제휴 체제를 특정 협약 하에 형성해야 한다.

그릇된 일들을 이렇듯 필수적으로 시정하고 정당한 일을 주장함에 있어,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해 연합하고 있는 모든 정부 및 국민들의 친근한 동반자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에서 분리되거나 혹은 목적에서 분열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단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조치와 규약을 위해 투쟁하고 또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정의가 이기기를 바라고 또 주요 전쟁 도발 행위를 제거함으로써만 이룩될 수 있는 공정하고도 안정된 평화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계획은 그러한 도발자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인의 위대함을 시기하지 않으며, 또 이 계획에는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업적, 또는 뛰어난 학문, 혹은 그 나라가 매우 찬란하고, 큰 선망의 대상이 될 기록을 남기게 한 평화적 시도를 시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영향력이나 힘을 어떤 방법으로든 봉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 독일이 우리와 세계의 여타 평화 애호국들과 정의와 법과 공정한 관계의 약정 속에서 제휴할 용의를 갖는다면 시기나 적대적인 통상 조치로 독일과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독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세계의, 세계 국민들 속에서 지배자의 지위가 아니라 한 평등한 지위를 수락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또 독일에게 그 제도의 변경도 수정도

to fight her either with arms or with hostile arrangements of trade if she is willing to associate herself with us and the other peace-loving nations of the world in covenants of justice and law and fair dealing. We wish her only to accept a place of equality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 the new world in which we now live, -- instead of a place of mastery.

Neither do we presume to suggest to her any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her institutions. But it is necessary, we must frankly say, and necessary as a preliminary to any intelligent dealings with her on our part, that we should know whom her spokesmen speak for when they speak to us, whether for the Reichstag majority or for the military party and the men whose creed is imperial domination.

We have spoken now, surely, in terms too concrete to admit of any further doubt or question. An evident principle runs through the whole program I have outlined. It is the principle of justice to all peoples and nationalities, and their right to live on equal terms of liberty and safety with one another, whether they be strong or weak. Unless this principle be made its foundation no part of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justice can st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could act upon no other principle; and to the vindication of this principle they are ready to devote their lives, their honor, and everything that they possess. The moral climax of this the culminating and final war for human liberty has come, and they are ready to put their own strength, their own highest purpose, their own integrity and devotion to the test.

제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즉, 우리 측이 독일과 이해력 있는 흥정을 하는 예비 조건으로서 그의 대변인이 우리에게 말할 때 독일의회의 다수당이건, 군부 혹은 제국주의적 지배를 신조로 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누구를 대변하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어떠한 의혹이나 의문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용어로 말했습니다. 이상 내가 설명한 계획을 관통하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민과 국민에 대한 공정의 원칙이고 또 그들이 강대하건 약소하건 상호 평등한 조건의 자유와 안전 속에서 사는 권리입니다. 이 원칙을 기초로 하지 않는 한, 국제 정의 체제의 어떠한 부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미국민들은 다른 어떠한 원칙에 입각해서도 행동할 수 없으며, 이 원칙을 옹호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과 명예와 그들이 갖는 모든 것을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의 도덕적 절정, 즉 인간 자유를 위한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싸움은 시작됐으며, 미국민은 이 시험에 그들 자신의 힘과 지고한 목적과 주체와 헌신을 제공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s" Speech / 27.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네 가지 자유" 연설 (1941)

In his January 6, 1941 State of the Union Address,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enunciated four "essential human freedoms." This came to be accepted as the most succinct statement of the principles for which the American people were prepared to fight. In this excerpt, the President asked Congress to provide under lend-lease arrangements vital armaments and other supplies to those countries whose defense the President considered essential to U.S. interests.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1월6일, 의회에 대한 말씀에서 네 가지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천명했다. 이것은 미국민들이 싸워 지켜나갈 각오가되어 있는 원칙들을 가장 간결하게 정의한 성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말씀에서 대통령은 미국의이해관계를 위해 꼭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이간주하는 국가들에게 무기 대여 협정에 따라 필수적무기나 기타 물자들을 제공해 줄 것을 의회에요청했다.

Therefore, as your President, performing my constitutional duty to "give to the Congress information of the state of the Union," I find it, unhappily, necessary to report that the future and the safety of our country and of our democracy are overwhelmingly involved in events far beyond our borders.

Armed defense of democratic existence is now being gallantly waged in four continents. If that defense fails, all the population and all the resources of Europe, Asia, Africa and Australasia will be dominated by the conquerors. Let us remember that the total of those populations and their resources in those four continents greatly exceeds the sum total of the population and the resources of the whole of the Western Hemisphere-many times over.

Just as our national policy in internal affairs has been based upon a decent respect for the rights and the dignity of all our fellow men within our gates, so our national policy in foreign affairs has been based on a decent respect for the rights and dignity of all nations, large and small. And the justice of morality must and will win in the end.

Our national policy is this:

First, by an impressive expression of the public will and without regard to partisanship, we are committed to all-inclusive national defense.



'미 연방의 정세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보고할' 헌법상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와 안전이 우리의 국경선에서 멀리 떨어져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압도적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고 보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민주적 존재의 무력 방위가 이제는 4개의 대륙에서 당당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어전이 패배한다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와 남태평양 제도의 모든 인민과 모든 자원이 정복자의 지배 아래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인민과 자원의 합계는 서반구 전체의 자원과 인구의 합계를 훨씬 초월하는, 실로 몇 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Second, by an impressive expression of the public will and without regard to partisanship, we are committed to full support of all those resolute peoples, everywhere, who are resisting aggression and are thereby keeping war away from our Hemisphere. By this support, we express our determination that the democratic cause shall prevail; and we strengthen the defense and the security of our own nation.

Third, by an impressive expression of the public will and without regard to partisanship, we are committed to the proposition that principles of morality and considerations for our own security will never permit us to acquiesce in a peace dictated by aggressors and sponsored by appeasers. We know that enduring peace cannot be bought at the cost of other people's freedom.

New circumstances are constantly begetting new needs for our safety. I shall ask this Congress for greatly increased new appropriations and authorizations to carry on what we have begun.

I also ask this Congress for authority and for funds sufficient to manufacture additional munitions and war supplies of many kinds, to be turned over to those nations which are now in actual war with aggressor nations.

Our most useful and immediate role is to act as an arsenal for them as well as for ourselves. They do not need man power, but they do need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the weapons of defense.

The time is near when they will not be able to pay for them all in ready cash. We cannot, and we will not, tell them that they must surrender, merely because of present inability to pay for the weapons which we know they must have.

I do not recommend that we make them a loan of dollars with which to pay for these weapons-a loan to be repaid in dollars.

우리의 국내 문제에 관한 국가적 정책이 지금까지 우리 국내 모든 국민의 권리와 위엄의 합당한 존중을 기초로 해 온 것과 같이, 우리 외교 문제에 관한 국가적 정책도 강대국이나 약소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권리와 위엄의 합당한 존중에 기초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덕의 정의는 결국 승리해야 하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적 정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공공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당파성에 구애됨이 없이 확고부동한 입장을 취하는 총괄적인 국방에 전력을 다한다.

둘째, 우리는 공공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당파성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든 침략에 대항하고, 그럼으로써 전쟁이 우리가 사는 서반구에 파급되는 것을 막고 있는 용감한 여러 국민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 지원으로 우리는 민주적인 대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우리의 결의를 표명하며 또한 우리 자국의 방위와 안전도 강화한다.

셋째, 우리는 공공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당파성에 구애됨이 없이 도덕의 원칙과 우리 자신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침략자들이 강요하고 그 동조자들이 후원하는 평화에 묵종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우리는 영구적인 평화가 다른 국민의 자유를 대가로 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필요를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계속 수행하는데 필요한 크게 증액된 새로운 지출과 권한을 승인해 줄 것을 현 의회에 요청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현재 침략국들과 실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에 넘겨줄 갖가지 추가 탄약과 전쟁 보급품을 제조하는데 충분한 권한과 자금도 현 의회에 요청합니다.

우리의 가장 유익하고 즉각적인 역할은 우리

I recommend that we make it possible for those nations to continue to obtain war materials in the United States, fitting their orders into our own program. Nearly all their materiel would, if the time ever came, be useful for our own defense.

Taking counsel of expert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considering what is best for our own security, we are free to decide how much should be kept here and how much should be sent abroad to our friends who by their determined and heroic resistance are giving us time in which to make ready our own defense.

Let us say to the democracies: "We Americans are vitally concerned in your defense of freedom. We are putting forth our energies, our resources and our organizing powers to give you the strength to regain and maintain a free world. We shall send you, in ever-increasing numbers, ships, planes, tanks, guns. This is our purpose and our pledge."

In fulfillment of this purpose we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e threats of dictators that they will regard as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or as an act of war our aid to the democracies which dare to resist their aggression.

The happiness of future generations of Americans may well depend upon how effective and how immediate we can make our aid felt. No one can tell the exact character of the emergency situations that we may be called upon to meet. The Nation's hands must not be tied when the Nation's life is in danger.

We must all prepare to make the sacrifices that the emergency-almost as serious as war itself-demands. Whatever stands in the way of speed and efficiency in defense preparations must give way to the national need.

As men do not live by bread alone, they do not fight by armaments alone. Those who man our defenses, and those behind them who build our defenses, must have the stamina and the courage which come from unshakable 자신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병기고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 상당의 방위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무기를 현찰로 지불하지 못하게 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말할 수는 없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 무기들을 지불할 달러 차관을 해줄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자신의 계획에 그들의 주문을 맞춰 넣어 그들이 미국에서 전쟁물자를 계속 획득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합니다.

전문 육, 해군 당국의 조언에 따라, 무엇이 우리 자신의 방어에 최선인지를 고려해, 우리는 얼만 큼을 미국에 두고 얼만 큼을 해외의 우방들에게 보낼 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의 우방들은 그들의 확고하고 영웅적인 저항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자체방어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민주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시다: "우리 미국인은 민주 국가들의 방위와 자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력과 자원과 조직력을 제공하고, 민주 국가들에게 자유 세계를 회복하고 보전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 국가들에게 선박과 항공기와 탱크와 대포를 보낼 것이며 또한 그 수를 점차증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약속입니다." 이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 우리는 그들의 침략에 저항하려고 하는 민주 국가들에게 우리가 주는 원조를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고 하는 독재자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장래 세대의 행복은 우리의 원조를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처하도록 요청 받을 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의 정확한 성격을 belief in the manner of life which they are defending. The mighty action that we are calling for cannot be based on a disregard of all things worth fighting for.

The Nation takes great satisfaction and much strength from the things which have been done to make its people conscious of their individual stake in the preservation of democratic life in America.

Those things have toughened the fibre of our people, have renewed their faith and strengthened their devotion to the institutions we make ready to protect.

Certainly this is no time for any of us to stop thinking about th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which are the root cause of the social revolution which is today a supreme factor in the world.

For there is nothing mysterious about the foundations of a healthy and strong democracy. The basic things expected by our people of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re simple. They are:

Equality of opportunity for youth and for others.

Jobs for those who can work.

Security for those who need it.

The ending of special privilege for the few.

The preservation of civil liberties for all.

The enjoyment of the fruits of scientific progress in a wider and constantly rising standard of living.

These are the simple, basic things that must never be lost sight of in the turmoil and unbelievable complexity of our modern world. The inner and abiding strength of our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is dependent upon the degree to which they fulfill these expectations.

아무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생존이 위협 받을 때 그 국가의 손이 묶여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비상 사태, 가령 전쟁과 같이 심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요구하는 희생은 용감히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위 준비의 속도와 능률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가적 필요에 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은 또한 군비로써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병력과, 그들의 뒤에서 우리 방위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방어하고 있는 생활양식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정력과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막강한 행동은 그를 위해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해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국가는 미국에서 민주적 생활을 보존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 행해진 일들로부터 커다란 만족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자질을 강화시켰고, 그들의 신념을 재생시켰으며 우리들이 지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공고히 했습니다. 지금은 오늘날 세계에서 하나의 최고 동인인 사회적 혁명의 근본원인인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생각을 멈출시간이 아닙니다.

탄탄하고 건전한 민주주의의 기초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들의 정치나 경제 제도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것은 다음과 같이 단순합니다:

청년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회 균등,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 소수를 위한 특권의 정지, 모든 사람의 시민적 자유 보전, 보다 넓고 부단히 상승하는 생활 수준에서 과학적 진보의 성과 향유 등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근대 세계의 혼란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복잡성 가운데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될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제도나 경제 Many subjects connected with our social economy call for immediate improvement.

As examples:

We should bring more citizens under the coverage of old-age pensions and unemployment insurance.

We should widen the opportunities for adequate medical care.

We should plan a better system by which persons deserving or needing gainful employment may obtain it.

I have called for personal sacrifice. I am assured of the willingness of almost all Americans to respond to that call.

In the future days, which we seek to make secure, we look forward to a world founded upon four essential human freedoms.

The first is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everywhere in the world.

The second is freedom of every person to worship God in his own way-everywhere in the world.

The third is freedom from want-which, translated into world terms, means economic understandings which will secure to every nation a healthy peacetime life for its inhabitants-everywhere in the world.

The fourth is freedom from fear-which, translated into world terms, means a world-wide reduction of armaments to such a point and in such a thorough fashion that no nation will be in a position to commit an act of physical aggression against any neighbor-anywhere in the world.

That is no vision of a distant millennium. It is a definite basis for a kind of world attainable in our own time and generation. That kind of world is the very antithesis of the so-called new order of tyranny which the dictators seek to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기대를 실현하는가에 따라서 그 제도의 내적이고 영속적인 강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에 연관된 많은 주제가 즉각적인 개선을 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노후 연금과 실업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의료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더 넓혀야 합니다. 효과적 고용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인 희생을 외쳤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인이 기꺼이 이러한 외침에 답하여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려는 앞날에서는 네 가지 본질적이고 인간적인 자유에 기초를 둔 세계를 고대합니다.

첫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전 세계 공통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을 예배하는 자유로 전 세계 공통입니다.

셋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 이것을 세상 말로 옮긴다면 모든 나라가 그 국민을 위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도 전세계 공통입니다.

넷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세상 말로 옮긴다면 세계적인 군축이 철저히 추진되고, 어떠한 나라도 인접국에 대하여 물리적 침략 행위를 계획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전세계 공통입니다.

그것은 먼 천 년에나 실현될 수 있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 우리의 세대에서 실현될 수 있는 세계의 현실적 기초입니다. 이런 세계는 독재자들이 폭탄을 터뜨려 창조하려는, 소위 압제의 새 질서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 신질서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위대한 개념인

create with the crash of a bomb.

To that new order we oppose the greater conception-the moral order. A good society is able to face schemes of world domination and foreign revolutions alike without fear.

Since the beginning of our American history, we have been engaged in change-in a perpetual peaceful revolution-a revolution which goes on steadily, quietly adjusting itself to changing conditions- without the concentration camp or the quick-lime in the ditch. The world order which we seek is the cooperation of free countries, working together in a friendly, civilized society.

This nation has placed its destiny in the hands and heads and hearts of its millions of free men and women; and its faith in freedom under the guidance of God. Freedom means the supremacy of human rights everywhere. Our support goes to those who struggle to gain those rights or keep them. Our strength is our unity of purpose.

To that high concept there can be no end save victory.

도덕적 질서로 대항합니다. 훌륭한 사회란 세계지배와 해외 혁명 계획에 대해 마찬가지로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변화---항구적인 평화 혁명---변화하는 조건에 꾸준하고 조용하게 적응하면서 계속되는 혁명---에 참여해 왔고, 거기에는 강제 수용소나 생석회 웅덩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세계 질서는 우호적인 문명 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자유 국가들의 협조입니다.

이 나라는 그 운명을 그 수백만 자애로운 남녀의 손과 머리와 가슴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신념을 신의 인도에 맡겼습니다. 자유란 어디에서나 인권의 최고선입니다. 우리의 지지는 그 인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강인함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로 통일되는 데 있습니다.

이 숭고한 이념에는 승리말고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The Atlantic Charter (1941) / 28.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서양 헌장 (1941)



A few months before the United States entered the Second World War, in dramatic meetings aboard the U.S. cruiser Augusta and the British battleship Prince of Wales at Argentia Bay off Newfoundland, this statement of common aims and principles was announced August 14, 1941 by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and British Prime Minister Winston Churchill.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몇 달 전, 뉴펀들랜드 아르젠치아(Argentia) 만에 정박중인 미국 순양함 오거스타 호와 영국 전함 프린스 오프 웨일즈 호에서 극적인 회의들을 가진 후, 1941년 8월 14일 프랭클린 D. 루즈벨트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다음과 같은 공동의 목표와 원칙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rime Minister, Mr. Churchill, representing His Majesty's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being met together, deem it right to make known certain common principles in the national policie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on which they base their hopes for a better future for the world.

First, their countries seek no aggrandizement, territorial or other;

Second, they desire to see no territorial changes that do not accord with the freely expressed wishes of the peoples concerned:

Third, they respect the right of all peoples to choose the form of government under which they will live; and 미국 대통령과 영국 여왕의 정부를 대표하는 처칠 총리는 회합을 가진 후 세계의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그들의 꿈의 기초가 되고 있는 양국 국가정책상의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천명할 필요를 느꼈다.

첫째, 양국은 영토 또는 그 외 어떤 확장도 추구하지 않는다.

둘째, 양국은 관련 국민들의 자유로이 표현된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영토변경도 없기를 바란다.

셋째, 양국은 모든 국민들이 그들을 통치할 정부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며, 또 주권과 자치권을 강제적으로 박탈당한 국민들에게 주권과 자치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they wish to see sovereign rights and self government restored to those who have been forcibly deprived of them;

Fourth, they will endeavor, with due respect for their existing obligations, to further the enjoyment by all States, great or small, victor or vanquished, of access, on equal terms, to the trade and to the raw materials of the world which are needed for their economic prosperity;

Fifth, they desire to bring about the fullest collaboration between all nations in the economic field with the object of securing, for all, improved labor standards, economic advancement and social security;

Sixth, after the final destruction of the Nazi tyranny, they hope to see established a peace which will afford to all nations the means of dwelling in safety within their own boundaries, and which will afford assurance that all the men in all the lands may live out their lives in freedom from fear and want;

Seventh, such a peace should enable all men to traverse the high seas and oceans without hindrance;

Eighth, they believe that all of the nations of the world, for realistic as well as spiritual reasons must come to the abandonment of the use of force. Since no future peace can be maintained if land, sea or air armaments continue to be employed by nations which threaten, or may threaten, aggression outside of their frontiers, they believe, pending the establishment of a wider and permanent system of general security, that the disarmament of such nations is essential. They will likewise aid and encourage all other practicable measures which will lighten for peace-loving peoples the crushing burden of armaments.

Franklin D. Roosevelt Winston S. Churchill 넷째, 양국은 기존 의무를 존중하면서 강대국이나 약소국, 승전국이나 패전국에 상관 없이 모든 국가가 동등한 조건으로 무역 및 경제번영에 필요한 세계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노력한다.

다섯째, 양국은 모든 국가를 위한 근로기준 개선, 경제 발전 및 사회보장 확보를 위해 경제분야에서 모든 국가 간의 최대한의 협력을 바란다.

여섯째, 양국은 나치 정권의 완전 붕괴 후 모든 국가에게 자국 국경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을 주고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을 공포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속에 일생을 살 수 있게 해줄 평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일곱째, 이 같은 평화는 모든 사람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공해와 대양을 항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정신적이유뿐 아니라 현실적 이유 때문에 무력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자국 국경 밖에서 침략을 자행하거나 자행할지도 모를 국가들이 육, 해, 공군의 군비 증강을 계속할 경우 미래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은 보다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전반적 안보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그 같은 국가들의 군축은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양국은 이와 마찬가지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군비부담을 경감할 기타 모든 실천 가능한 조치들을 지원 및 장려할 것이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윈스턴 S. 처칠

Harry S. Truman: The Truman Doctrine (1947) / 29. 해리 트루먼: 트루먼 독트린 (1947)



The immediate background of this message to Congress by President Harry S. Truman on March 12, 1947, is stated in the text. The idea that the United States was to underwrite the defense of free states against "totalitarian regimes" was widely hailed as a sharp new turn in American foreign policy, a world-wide equivalent of the Monroe Doctrine of 1823 that announced that the Western Hemisphere was no longer to be subjected to European colonization. The Soviet Union regarded the Truman Doctrine as an open threat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Soviet-dominated areas and Russian expansion.

해리 S. 트루먼이 1947년 3월 12일 의회에 보낸 이 교서의 직접적인 배경은 본문에 나와 있다. 미국이 "전체주의 정권들"을 상대로 한 자유국가의 방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미국 외교정책의 급격한 새 전환점으로, 또한 서반구가 이제 더 이상 유럽식민화에 예속되지 않은 것임을 천명한 1823년의 먼로독트린의 세계적 확대판으로 널리 환영 받았다. 소련은트루먼 독트린을 소련 지배지역 및 소련 확장에 대한미국의 공공연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Mr. President, Mr. Speaker, Members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which confronts the world today necessitates my appearance before a joint session of the Congress. The foreign policy and the national security of this country are involved.

One aspect of the present situation, which I wish to present to you at this time for your consideration and decision, concerns Greece and Turkey.

The United States has received from the Greek Government an urgent appeal for financial and economic assistance.

대통령 각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 나는 양원 합동회의에 출석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의 검토와 결정을 요청하는 현 사태의 한 국면은 그리스와 터키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리스 정부로부터 긴급 재정·경제원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The very existence of the Greek state is today threatened by the terrorist activities of several thousand armed men, led by Communists, who defy the government's authority at a number of points, particularly along the northern boundaries.

Greece must have assistance if it is to become a self-supporting and self-respecting democracy. The United States must supply that assistance. We have already extended to Greece certain types of relief and economic aid but these are inadequate. There is no other country to which democratic Greece can turn. No other nation is willing and able to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for a democratic Greek government.

Greece's neighbor, Turkey, also deserves our attention. The future of Turkey as an independent and economically sound state is clearly no less important to the freedom-loving peoples of the world than the future of Greece.

Since the war Turkey has sought financial assistance from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effecting that modernization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its national integrity. That integrity is essential to the preservation of order in the Middle East.

As in the case of Greece, if Turkey is to have the assistance it needs, the United States must supply it. We are the only country able to provide that help....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the creation of conditions in which we and other nations will be able to work out a way of life free from coercion. This was a fundamental issue in the war with Germany and Japan. Our victory was won over countries which sought to impose their will, and their way of life, upon other nations.

To ensure the peaceful development of nations, free from coercion, the United States has taken a leading part in establishing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is designed to make possible lasting freedom and independence for all its members. We shall not realize our objectives, however, unless we are willing to help free peoples to maintain their free institutions and their national integrity against aggressive movements that seek to impose upon them totalitarian regimes. This is no more

오늘날 그리스 국가의 존립 자체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권위에 대항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수천 명의 무장 세력의 특히 북부 국경 지대에서의 테러 활동으로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자립적이며 긍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이 원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에 몇가지 종류의 구호 및 경제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 그리스가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나라는 달리 없습니다. 민주주의 그리스 정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나라는 달리 없습니다.

그리스의 이웃나라 터키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독립국으로서 또 경제적으로 건전한국가로서의 터키의 미래는 분명히 그리스의 미래 못지않게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민들에게 중요합니다.

터키는 전쟁 이후 국가 보전 유지에 필요한 현대화를 위해 영국과 미국에 추가적 재정원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 보전은 중동지역의 질서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터키에 필요한 원조역시 미국이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적 목표중의 하나는 우리와 다른 국가들이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는 독일, 일본과의 전쟁에서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지와 삶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는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은 유엔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의 영구적인 자유와 독립을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전체주의 정권을 강요하려는 침략적 활동에 대항하여 자유로운 제도와 국가 보전을 than a frank recognition that totalitarian regimes imposed on free peoples, by direct or indirect aggression, undermine 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eace and hence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he peoples of a number of countries of the world have recently had totalitarian regimes forced upon them against their will.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made frequent protests against coercion and intimidation, in violation of the Yalta agreement, in Poland, Rumania, and Bulgaria. I must also state that in a number of other countries there have been similar developments.

At the present moment in world history nearly every nation must choose between alternative ways of life. The choice is too often not a free one.

One way of life is based upon the will of the majority, and is distinguished by free institutions, representative government, free elections, guarantees of individual liberty, freedom of speech and religion, and freedom from political oppression.

The second way of life is based upon the will of a minority forcibly imposed upon the majority. It relies upon terror and oppression, a controlled press and radio; fixed elections, and the suppression of personal freedoms.

I believe that it must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free peoples who are resisting attempted subjugation by armed minorities or by outside pressures.

I believe that we must assist free peoples to work out their own destinies in their own way.

I believe that our help should be primarily through economic and financial aid which is essential to economic stability and orderly political processes.

The world is not static, and the status quo is not sacred. But we cannot allow changes in the status quo in violation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by such methods as coercion, or by such subterfuges as political infiltration. In helping free and independent nations to maintain their freedom, the United States will be giving effect to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t is necessary only to glance at a map to realize that the survival and integrity of the Greek nation are of grave importance in a much wider situation. If Greece should fall 유지하려는 자유 국민들을 도와줄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목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저 직접 혹은 간접 침략에 의해 자유 국민들에게 강요된 전체주의 정권은 국제평화의 기초를, 따라서 미국의 안보를 저해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몇몇 국가의 국민들은 최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전체주의 정권을 강요 받았습니다. 미국정부는 폴란드,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서 얄타협정을 위반한 강압과 협박에 대해 항의를 빈번히 제기했습니다. 나는 또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여졌음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사의 현 시점에서 거의 모든 국가는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택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삶의 방식은 다수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며, 자유 제도, 대의정치, 자유선거, 개인자유의 보장,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 다른 생활방식은 다수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된 소수의 의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공포와 억압, 언론 및 방송 통제, 선거 조작 및 개인 자유의 억압에 의존합니다.

나는 미국의 정책이 무력을 가진 소수 혹은 외부의 압력이 자신을 종속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자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 국민이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지원은 주로 경제적 안정과 질서 있는 정치 과정에 필수적인 경제 및 재정 원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멈춰 있지 않으며, 현상 유지가 전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압 혹은 정치적 속임수와 같은 협잡을 통해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현상 변화를 under the control of an armed minority, the effect upon its neighbor, Turkey, would be immediate and serious. Confusion and disorder might well spread throughout the entire Middle East.

Moreover, the disappearance of Greece as an independent state would have a profound effect upon those countries in Europe whose peoples are struggling against great difficulties to maintain their freedoms and their independence while they repair the damages of war.

It would be an unspeakable tragedy if these countries, which have struggled so long against overwhelming odds, should lose that victory for which they sacrificed so much. Collapse of free institutions and loss of independence would be disastrous not only for them but for the world. Discouragement and possibly failure would quickly be the lot of neighboring peoples striving to maintain their freedom and independence.

Should we fail to aid Greece and Turkey in this fateful hour, the effect will be far reaching to the West as well as to the East. We must take immediate and resolute action.

The seeds of totalitarian regimes are nurtured by misery and want. They spread and grow in the evil soil of poverty and strife. They reach their full growth when the hope of a people for a better life has died. We must keep that hope alive. The free peoples of the world look to us for support in maintaining their freedoms.

If we falter in our leadership, we may endanger the peace of the world -- and we shall surely endanger the welfare of our own nation.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들이 그들의 자유를 유지하는 일을 돕기 위해 미국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스의 생존과 보전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는 세계지도만 잠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가 무장된 소수의 통치 하에 들어간다면, 인접국 터키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이고도 심각할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중동 전역에 퍼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그리스의 주권 상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승률이 희박한 싸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해온 이 국가들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없습니다. 자유 제도의 붕괴와 독립의 상실은 그들뿐 아니라 세계에도 재난이 될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웃 국민들은 이에 곧바로 실망하고, 어쩌면 그들의 노력도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동양뿐 아니라 서양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체주의 정권의 씨앗은 고통과 궁핍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 씨앗은 빈곤과 싸움이라는 나쁜 땅에서 퍼지고 자랍니다. 이 씨앗은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최대로 자랍니다. 전세계 모든 국민이 그들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지도력이 흔들린다면, 세계평화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 그리고 이는 반드시 이 나라의 안녕까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Dwight D. Eisenhower: Atoms for Peace (1953) / 30.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평화를 위한 원자력 (1953)



Atomic power, if misused threatens to end human life; if wisely used, it holds out hope and promise of a better life for all mankind. On December 8, 1953,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in a speech to the United Nations directed worldwide attention to the enormous potential for good inherent in the development of atomic energy. He proposed that nations throughout the world contribute jointly to a pool of atomic resources to be used for socially desirable purposes. Thus the President aroused world hope that in the long run atomic energy would redound to the benefit of the world community.

잘못 사용된 원자력은 인류의 삶에 종지부를 찍으며, 슬기롭게 사용된 원자력은 인류에게 희망과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한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12월 8일 유엔에서의 연설에서 원자력 개발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전세계에 알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원자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원자력 자원을 공동 관리하는데 모두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자력이 장기적으로 국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전세계에 불러 일으켰다.

The United States, heeding the sugges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s instantly prepared to meet privately with such other countries as may be "principally involved", to seek "an acceptable solution" to the atomic armaments race which overshadows not only the peace, but the very life, of the world.

We shall carry into these private or diplomatic talks a new conception. The United States would seek more than the mer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tomic materials for 미국은 유엔 총회의 시사점을 유의하여 즉시 "주요 관련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과 비공개 회담을 개최하여 세계 평화에 뿐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핵 군비 경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공개 혹은 외교 회담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할 것입니다.

미국은 군사적 목적의 핵 물질의 단순한 감축 혹은 제거 그 이상을 모색할 것입니다. military purposes. It is not enough to take this weapon out of the hands of the soldiers. It must be put into the hands of those who will know how to strip its military casing and adapt it to the arts of peace.

The United States knows that if the fearful trend of atomic military build-up can be reversed, this greatest of destructive forces can be developed into a great boon, for the benefit of all mankind. The United States knows that peaceful power from atomic energy is no dream of the future. The capability, already proved, is here today. Who can doubt that, if the entire body of the world's scientists and engineers had adequate amounts of fissionable material with which to test and develop their ideas, this capability would rapidly be transformed into universal, efficient and economic usage?

To hasten the day when fear of the atom will begin to disappear from the minds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s of the East and West, there are certain steps that can be taken now.

I therefore make the following proposal:

The governments principally involved, to the extent permitted by elementary prudence, should begin now and continue to make joint contributions from their stockpiles of normal uranium and fissionable materials to a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e would expect that such an agency would be set up under the aegis of the United Nations. The ratios of contributions, the procedures and other details would properly be within the scope of the "private conversations" I referred to earlier.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ndertake these explorations in good faith. Any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acting in the same good faith will find the United States a not unreasonable or ungenerous associate.

Undoubtedly, initial and early contributions to this plan would be small in quantity. However, the proposal has the great virtue that it can be undertaken without the irritations 군인들의 손에서 핵무기를 빼앗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무기는 핵무기의 군사적 성격을 제거하고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아는 자들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가공할 핵 군비 강화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면 최대의 파괴력이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한 엄청난 혜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적인 힘이 미래의 꿈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전세계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를 실험 개발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충분히 갖게 된다면, 그 능력이 신속하게 보편적, 효율적, 경제적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이 국민들의 마음과 그리고 동서양 각국 정부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할 날을 앞당기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기초적 분별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요 관련국 정부는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보통 우라늄 및 핵분열 물질을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 공동 기증하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구가 유엔의 후원 하에 설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부의 비율, 절차 및 기타 세부 사항은 마땅히 본인이 앞서 말한 "비공개 회담"의 범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조사를 성실히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취지로 행동하는 어떤 국가라도 미국이 불합리하거나 인색한 동료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최초 및 초기 기부량은 분명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완전히 만족할만한

and mutual suspicions incident to any attempt to set up a completely acceptable system of world-wide inspection and control.

The atomic energy agency could be made responsible for the impounding, storage and protection of the contributed fissionable and other materials. The ingenuity of our scientists will provide special safe conditions under which such a bank of fissionable material can be made essentially immune to surprise seizure.

The more important responsibility of this atomic energy agency would be to devise methods whereby this fissionable material would be allocated to serve the peaceful pursuits of mankind. Experts would be mobilized to apply atomic energy to the needs of agriculture, medicine and other peaceful activities. A special purpose would be to provide abundant electrical energy in the power-starved areas of the world.

Thus the contributing Powers would be dedicating some of their strength to serve the needs rather than the fears of manki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more than willing - it would be proud to take up with others "principally involved" the development of plans whereby such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would be expedited.

Of those "principally involved" the Soviet Union must, of course, be one.

I would be prepared to submit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d with every expectation of approval, any such plan that would, first, encourage world-wide investigation into the most effective peacetime uses of fissionable material, and with the certainty that the investigators had all the material needed for the conducting of all experiments that were appropriate; second, begin to diminish the potential destructive power of the world's atomic stockpiles; third, allow all peoples of all nations to see that, in this enlightened age, the great

전세계적 사찰 및 관리 체제 수립 시 발생하기 쉬운 의견 충돌이나 상호 의심을 유발하지 않고 실행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기부된 핵분열 물질 및 기타 물질의 압류, 저장 및 보호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핵분열 물질을 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히 안전한 환경을 고안할 것입니다.

이 원자력 기구의 더욱 중요한 책임은 핵분열 물질이 인류의 평화적인 일에 이바지하게끔 할당할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원자력을 농업, 의학 및 기타 평화적 활동의 필요에 응용할 것입니다. 전세계 전력 부족 지역에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 하나의 특별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국들은 그들의 힘의 일부를 바쳐 인류의 공포가 아닌, 인류의 필요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주요 관련국"과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할 계획 개발에 기꺼이 나설 것이며, 또 그 같은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물론 "주요 관련국"에는 소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반드시 승인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미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첫째, 핵분열 물질의 가장 효과적인 평화시 사용의 국제 사찰을 촉구하고 모든 적절한 실험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하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둘째, 전세계 핵 비축의 잠재적 파괴력을 줄이기 시작한다.

셋째, 동서를 막론한 지구 상의 강대국들이 이 문명의 시대에 전쟁 군비 강화보다는 인류의 열망에 먼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의 모든 국민들이 알도록 한다. Powers of the earth, both of the East and of the West, are interested in human aspirations first rather than in building up the armaments of war; fourth, open up a new channel for peaceful discussion and initiative at least a new approach to the many difficult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in both private and public conversations if the world is to shake off the inertia imposed by fear and is to make positive progress towards peace.

Against the dark background of the atomic bomb, the United States does not wish merely to present strength, but also the desire and the hope for peace. The coming months will be fraught with fateful decisions. In this Assembly, in the capitals and military headquarters of the world, in the hearts of men everywhere, be they governed or governors may they be the decisions which will lead this world out of fear and into peace.

To the making of these fateful decisions, the United States pledges before you, and therefore before the world, its determination to help solve the fearful atomic dilemma - to devote its entire heart and mind to finding the way by which the miraculous inventiveness of man shall not be dedicated to his death, but consecrated to his life.

넷째, 평화적인 논의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적어도 비공개 및 공개 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이는 세계가 공포로 인해 생겨난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평화를 향한 긍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원자폭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미국은 단지 힘을 보여 주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중대한 결정이 많이 내려질 것입니다. 본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수도와 군 사령부에서, 그리고 통치자건 국민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 세계를 공포에서 평화로 이끌 결정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미국은 여러분 앞에서, 즉 전 세계 앞에서 가공할 핵의 딜레마의 해결을 돕겠다는 결심, 즉 인간의 놀라운 발명이 인간의 죽음에 공헌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찾는 데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바칠 것임을 서약합니다

Brown v. Board of Education (1954) / 31.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1954년)



(Chief Justice Earl Warren, who wrote the opinion for Brown v. Board)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was a landmark cas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ded on May 17, 1954, which explicitly outlawed racial segregation of public education facilities (legal establishment of separate government-run schools for blacks and whites), ruling so on the grounds that the doctrine of "separate but equal" public education could never truly provide black Americans with facilities of the same standards available to white Americans.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썼던 대법원장, 얼 워런 (Earl Warren)

1954년 5월 17일에 판결이 난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 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는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라는 공교육의 독트린이 백인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시설을 흑인 학생들은 결코 제공받을 수 없었다는 근거하에서 공교육의 인종 분리를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여 운영된 공립학교들의 법적 제도) 명백하게 비합법화한 미합중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1954) (USSC+)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347 U.S. 483 Argued December 9, 1952

Reargued December 8, 1953 Decided May 17, 1954

APPEAL FROM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KANSAS*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347 U.S. 483(1954년) (USSC+)

미합중국 대법원

347 U.S. 483

1심: 1952년 12월 9일 2심: 1953년 12월 8일

최종 판결: 1954년 5월 17일

미합중국 캔자스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에 항고됨*

Syllabus

Segregation of white and Negro children in the public schools of a State solely on the basis of race, pursuant to state laws permitting or requiring such segregation denies to Negro childre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guaranteed by the Fourteenth Amendment-- even though the physical facilities and other "tangible" factors of white and Negro schoola may be equal.

- (a) The history of the Fourteenth Amendment is inconclusive as to its intended effect on public education.
- (b) The question presented in these cases must be determined not on the basis of conditions existing when the Fourteenth Amendment was adopted, but in the light of the full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and its present place in American life throughout the Nation.
- (c) Where a State has undertaken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n education in its public schools, such an opportunity is a right which must be made available to all on equal terms.
- (d) Segregation of children in public schools solely on the basic of race deprives children of the minority group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even though the physical facilities and other "tangible" factors may be equal.
- (e) The "separate but equal" doctrine adopted in Plessy v. Ferguson, 163 U.S. 537, has no place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 (f) The cases are restored to the docket for further argument on specified questions relation to the forms of the decrees.

MR. CHIEF JUSTICE WARREN delivered the opinion of the Court.

These cases come to us from the States of Kansas, South Carolina, Virginia, and Delaware. They are

판결 요지

주 공립학교에서 백인 어린이와 흑인 어린이를 오로지 인종을 토대로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의무화하는 주법에 따라 그러한 분리를 시행하는 것은, 비록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의 물리적 시설과 여타 '유형적' 요소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흑인 어린이들에게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이 보장하는,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다.

- (a)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의 역사는 공교육에 대한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 (b) 이러한 여러 사건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이 채택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미국 전역에서 공교육의 발전상과 공교육이 미국인의 생활에서 현재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 어느 주가 공립학교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그러한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권리이다.
- (d) 공립학교에서 어린이를 오로지 인종을 토대로 분리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 시설과 여타 '유형적' 요소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소수집단 어린이들에게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 (e)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163 U.S. 537)에 서 채 택된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는 원리는 공교육에 적용될 수 없다.
- (f) 이러한 여러 사건은 판결문의 형식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사건 일람표에 다시 올랐다.

워런 대법원장의 판결문.

이러한 여러 사건은 캔자스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premised on different facts and different local conditions, but a common legal question justifies their consideration together in this consolidated opinion.

In each of the cases, minors of the Negro race, through their legal representatives, seek the aid of the courts in obtaining admission to the public schools of their community on a nonsegregated basis. In each instance, they had been denied admission to schools attended by white children under laws requiring or permitting segregation according to race. This segregation was alleged to deprive the plaintiffs of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In each of the cases other than the Delaware case, a three-judge federal district court denied relief to the plaintiffs on the so-called "separate but equal" doctrine announced by this Court in Plessy v. Ferguson, 163 U.S. 537. Under that doctrine, equality of treatment is accorded when the races are provided substantially equal facilities, even though these facilities be separate. In the Delaware case, the Supreme Court of Delaware adhered to that doctrine, but ordered that the plaintiffs be admitted to the white schools because of their superiority to the Negro schools.

The plaintiffs contend that segregated public schools are not "equal" and cannot be made "equal," and that hence they are deprived of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Because of the obvious importance of the question presented, the Court took jurisdiction. Argument was heard in the 1952 Term, and reargument was heard this Term on certain questions propounded by the Court.

Reargument was largely devoted to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adoption of the Fourteenth Amendment in 1868. It covered exhaustively consideration of the Amendment in Congress, ratification by the states, then-existing practices in racial segregation, and the views of proponents and opponents of the Amendment. This discussion and our own investigation convince us that, although these sources cast some light, it is not enough to resolve the problem with which we are faced. At best, they are inconclusive. The most avid proponents of the

주, 버지니아 주, 델라웨어 주에서 대법원으로 상고 되었다. 이 사건들은 상이한 사실과 상이한 현지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의 법률적 쟁점에 의하여 이 여러 사건을 본 종합 판결문에서 고려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각 사건에서 흑인 미성년자들은 모두 그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각 지역사회의 공립학교에 분리되지 아니한 가운데 입학허가를 받고자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였다. 각 경우에 흑인 미성년자들은 인종에 따른 분리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법률에 따라 백인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입학을 거부 당하였다. 이러한 분리가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이 보장하는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원고들에게 박탈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델라웨어 주 사건을 제외한 각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연방 지방법원이 본 법원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163 U.S. 537)에서 발표한 소위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는 원리에 따라 원고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이 원리에 따르면, 비록 시설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평등한 시설이 각 인종에게 제공될 경우에만 처우의 평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델라웨어 주 사건의 경우에는,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이 워리를 고수하였으나. 백인학교가 흑인학교 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백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라고 명령하였다.

원고들은 분리된 공립학교가 '평등'하지 아니하고 '평등'하도록 만들 수도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이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박탈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시된 이 문제의 중요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본 법원은 이 사건을 관할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제1심이 1952년에 있었으며, 제2심이 법원이 제출한 일부 의문에 대하여 금년에 진행되었다.

제2심에서는 1868년 제14차 헌법 수정조항 채택을 둘러싼 상황을 주로 다루었다. 제2심에서는 의회의 수정조항 검토, 각 주의 비준, 당시 존재하던 인종차별 관행, 수정조항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견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이 논의와 본 법원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본 법원은 이러한 사안 등이 일부 시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post-War Amendments undoubtedly intended them to remove all legal distinctions among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Their opponents, just as certainly, were antagonistic to both the letter and the spirit of the Amendments and wished them to have the most limited effect. What others in Congress and the state legislatures had in mind cannot be determined with any degree of certainty.

An additional reason for the inconclusive nature of the Amendment's history with respect to segregated schools is the status of public education at that time. In the South, the movement toward free common schools, supported by general taxation, had not vet taken hold. Education of white children was largely in the hands of private groups. Education of Negroes was almost nonexistent, and practically all of the race were illiterate. In fact, any education of Negroes was forbidden by law in some states. Today, in contrast, many Negroes have achieved outstanding success in the arts and sciences, as well as in the business and professional world. It is true that public school education at the time of the Amendment had advanced further in the North, but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n Northern States was generally ignored in the congressional debates. Even in the North, the conditions of public education did not approximate those existing today. The curriculum was usually rudimentary; ungraded schools were common in rural areas; the school term was but three months a year in many states, and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was virtually unknown. As a consequence,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should be so little in the history of the Fourteenth Amendment relating to its intended effect on public education.

In the first cases in this Court construing the Fourteenth Amendment, decided shortly after its adoption, the Court interpreted it as proscribing all state-imposed discriminations against the Negro race. The doctrine of "separate but equal" did not make its appearance in this Court until 1896 in the case of Plessy v. Ferguson, supra, involving not education but transportation. American courts have since labored with the doctrine for over half a

이러한 사안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확정적이지 못하다'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전후의 헌법 수정조항을 열렬하게 지지한 사람들은 헌법 수정조항이 '미합중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개인들' 간에 모든 법적 차별을 제거하고자 하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헌법 수정조항을 반대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헌법 수정조항의 자구와 정신을 모두 반대하였으며 헌법 수정조항의 효과가 가장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치기를 바랐다. 연방의회나 각 주 의회 의원들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분리된 학교와 관련한 헌법 수정조항의 역사가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에는 당시 공교육의 상황도 관련이 있다. 남부에서는, 일반과세에 의한 무상보통학교 운동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백인 어린이의 교육은 대개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흑인의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흑인의 거의 전부가 문맹이었다. 일부 주에서는 흑인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오늘날 흑인들이 기업과 전문직업 세계에서 뿐 아니라 예술, 과학 부문에서도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다. 헌법 수정조항 당시 공립학교 교육이 북부에서 크게 발전하였지만, 이 수정조항이 북부 주들에 미친 영향은 의회의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배제되었다. 북부에서조차도 공교육의 여건이 지금과는 큰 거리가 있었다. 교과과정은 대개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시골에는 학년 구분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었고, 학기가 1년에 3개월밖에 안 되는 주가 많았으며, 의무취학의 개념은 거의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 결과,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의 역사에서 공교육에 대한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기록된 바가 거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였다.

본 법원에서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의 채택 직후 그해석을 다룬 최초의 사건들에서, 본 법원은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이 흑인에 대하여 각 주에서 부과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는 원리는 교육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다룬 1896년 위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본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후 미국의 법원은 이 원리를 놓고 반 세기 이상 고민을

century. In this Court, there have been six cases involving the "separate but equal" doctrine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In Cumming v. County Board of Education, 175 U.S. 528, and Gong Lum v. Rice, 275 U.S. 78, the validity of the doctrine itself was not challenged. In more recent cases, all on the graduate school level, inequality was found in that specific benefits enjoyed by white students were denied to Negro students of the same educational qualifications. Missouri ex rel. Gaines v. Canada, 305 U.S. 337; Sipuel v. Oklahoma, 332 U.S. 631; Sweatt v. Painter, 339 U.S. 629; McLaurin v. Oklahoma State Regents, 339 U.S. 637. In none of these cases was it necessary to reexamine the doctrine to grant relief to the Negro plaintiff. And in Sweatt v. Painter, supra, the Court expressly reserved decision on the question whether Plessy v. Ferguson should be held inapplicable to public education.

In the instant cases, that question is directly presented. Here, unlike Sweatt v. Painter, there are findings below that the Negro and white schools involved have been equalized, or are being equalized, with respect to buildings, curricula, qualifications and salaries of teachers, and other "tangible" factors. Our decision, therefore, cannot turn on merely a comparison of these tangible factors in the Negro and white schools involved in each of the cases. We must look instead to the effect of segregation itself on public education.

In approaching this problem, we cannot turn the clock back to 1868, when the Amendment was adopted, or even to 1896, when Plessy v. Ferguson was written. We must consider public education in the light of its full development and its present place in American life throughout the Nation. Only in this way can it be determined if segregation in public schools deprives these plaintiffs of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Today, education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laws and the great expenditures for education both demonstrate our recognition of the

계속해 왔다. 본 법원에서는 공교육 부문에서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는 원리와 관련된 사건이 모두 6건이 다루어진 바 있다. 커밍 대 군 교육위원회 사건(Cumming v. County Board of Education, 175 U.S. 528)과 공 럼 대 라이스 사건(Gong Lum v. Rice, 275 U.S. 78)에서는 이 원리 자체의 정당성은 도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과 모두 관련된 최근의 사건에서는, 백인 학생들이 누리는 구체적인 혜택이 동일한 교육적 자격을 갖춘 흑인 학생들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 데서 불평등이 주장되었다. 미주리 대 캐나다 사건(Missouri ex rel. Gaines v. Canada, 305 U.S. 337), 시퓨얼 대 오클라호마 사건(Sipuel v. Oklahoma, 332 U.S. 631),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Sweatt v. Painter, 339 U.S. 629), 맥로린 대 오클라호마 고등교육 위원 사건(McLaurin v. Oklahoma State Regents, 339 U.S. 637) 등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데 이 원리를 재고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위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에서 법원은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을 공교육에 적용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을 유보하였다.

즉각적인 사건에서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었다. 여기서,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과는 달리 흑인학교와 백인학교가 건물, 교과과정, 교사의 자격과 봉급, 여타 '유형적' 요소에서 평등해졌거나 평등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법원의 판단은 각 사건에 관련된 흑인학교와 백인학교 간의 유형적 요소의 비교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차별이 공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아야하다.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우리는 헌법 수정조항이 채택되었던 1868년이나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판결이 있었던 1896년으로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공교육의 발전상과 공교육이 미국인의 생활에서 현재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하여서만 공립학교의 차별이 이러한 원고로부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박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은 주 정부와 시, 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의무취학법과 교육에 투입되는 importance of education to our democratic society. It is required in the performance of our most basic public responsibilities, even service in the armed forces. It is the very foundation of good citizenship. Today it is a principal instrument in awakening the child to cultural values, in preparing him for later professional training, and in helping him to adjust normally to his environment. In these days, it is doubtful that any child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succeed in life if he is denied the opportunity of an education. Such an opportunity, where the state has undertaken to provide it, is a right which must be made available to all on equal terms.

We come then to the question presented: Does segregation of children in public schools solely on the basis of race, even though the physical facilities and other "tangible" factors may be equal, deprive the children of the minority group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We believe that it does.

In Sweatt v. Painter, supra, in finding that a segregated law school for Negroes could not provide them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his Court relied in large part on "those qualities which are incapable of objective measurement but which make for greatness in a law school." In McLaurin v. Oklahoma State Regents, supra, the Court, in requiring that a Negro admitted to a white graduate school be treated like all other students, again resorted to intangible considerations: "... his ability to study, to engage in discussions and exchange views with other students, and, in general, to learn his profession." Such considerations apply with added force to children in grade and high schools. To separate them from others of similar age and qualifications solely because of their race generates a feeling of inferiority as to their status in the community that may affect their hearts and minds in a way unlikely ever to be undone. The effect of this separation on their educational opportunities was well stated by a finding in the Kansas case by a court which nevertheless felt compelled to rule against the Negro plaintiffs:

Segregation of white and colored children in public

막대한 지출을 보면 민주사회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은 가장기본적인 공공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며, 심지어군에 복무하는 데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훌륭한시민이 되기 위한 기반이다. 오늘날 교육은 어린이가문화적 가치를 깨닫고, 장래의 직업교육을 위한 준비를갖추고, 환경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주된 수단이다. 오늘날 어린이에게 교육의 기회가부정된다면 그 어린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지극히 의문스럽다. 어느 주가 교육 기회를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그러한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렇다면, 본 법원은 본 사건에서 제기된 쟁점에 도달하게 된다. 공립학교에서 어린이를 오로지 인종을 토대로 분리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 시설과 여타 '유형적' 요소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소수집단 어린이들에게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인가? 본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한다.

위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에서 흑인에게 분리된 법학대학원이 흑인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있어 본 법원은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법학대학원의 우수성에 기여하는 특성'에 의존하였다. 위 맥로린 대 오클라호마 주 고등교육 위원 사건에서 본 법원은 백인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흑인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처우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있어 다시 '… 공부하고, 토론에 참가하고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또 일반적으로 자기 직업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무형적 요소에 호소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중요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단순히 그 인종 때문에 비슷한 연령의 다른 아이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열등감을 초래하며, 이는 다시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가 교육기회에 미친 영향은 캔자스의 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잘 기술되어 있으며, 이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schools has a detrimental effect upon the colored children. The impact is greater when it has the sanction of the law, for the policy of separating the races is usually interpreted as denoting the inferiority of the negro group. A sense of inferiority affects the motivation of a child to learn. Segregation with the sanction of law, therefore, has a tendency to [retard] the educational and mental development of negro children and to deprive them of some of the benefits they would receive in a racial[ly] integrated school system.

Whatever may have been the extent of psychological knowledge at the time of Plessy v. Ferguson, this finding is amply supported by modern authority. Any language in Plessy v. Ferguson contrary to this finding is rejected.

We conclude that,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the doctrine of "separate but equal" has no place. Separate educational facilities are inherently unequal. Therefore, we hold that the plaintiffs and others similarly situated for whom the actions have been brought are, by reason of the segregation complained of, deprived of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guaranteed by the Fourteenth Amendment. This disposition makes unnecessary any discussion whether such segregation also violates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Because these are class actions, because of the wide applicability of this decision, and because of the great variety of local conditions, the formulation of decrees in these cases presents problems of considerable complexity. On reargument, the consideration of appropriate relief was necessarily subordinated to the primary question -- the constitutionality of segregation in public education. We have now announced that such segregation is a denial of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In order that we may have the full assistance of the parties in formulating decrees, the cases will be restored to the docket, and the parties are requested to present further argument on Questions 4 and 5 previously propounded by the Court for the reargument this Term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s again invited to participate. The Attorneys General of the

백인 어린이와 유색인종 어린이를 공립학교에서 분리하는 것은 유색인종 어린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인종을 분리하는 정책이 일반적으로 흑인집단의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가 법의 용인 하에 이루어질 경우그 악영향이 더욱 커진다. 열등감은 아이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의 용인 하에 이루어지는 분리는 흑인 어린이의 교육적, 정신적 발달을 지체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인종적으로 통합된 학교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일부를 박탈하는 경향이 있다.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당시의 심리학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지 간에, 본 판결은 현대 심리학 권위의 충분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판결문의 내용 중 본 판결에 위배되는 내용은 배제한다.

본 법원은 공교육에서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는 원리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분리된 교육시설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다. 따라서, 본소송의 당사자로서 유사한 처지에 있는 원고 등은 소송의 사유인 분리로 인해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으로 보장된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박탈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의 적법절차조항(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을 위반하였느냐 여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게 된다.

본 사건이 집단 소송이고, 본 판결의 결과가 널리영향을 미치며, 현지의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사건의 판결을 도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복잡성이수반된다. 2심에서 적절한 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첫번째 쟁점, 즉 공교육에서 분리의 합헌성에 대한판단이 선행되어야 하였다. 이제 본 법원은 그러한분리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발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도출함에 있어당사자들의 전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이 사건은소송사건 일정표에 다시 등재될 것이며, 당사자들은이전에 금년도의 2심을 위하여 본 법원이 제안한 쟁점4와 5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미합중국 법무부 장관도 다시 참여하여야 한다.

states requiring or permitting segregation in public education will also be permitted to appear as amici curiae upon request to do so by September 15, 1954, and submission of briefs by October 1, 1954.

It is so ordered.

* Together with No. 2, Briggs et al. v. Elliott et al., on appeal from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South Carolina, argued December 9-10, 1952, reargued December 7-8, 1953; No. 4, Davis et al. v. County School Board of Prince Edward County, Virginia, et al., on appeal from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argued December 10, 1952, reargued December 7-8, 1953, and No. 10, Gebhart et al. v. Belton et al., on certiorari to the Supreme Court of Delaware, argued December 11, 1952, reargued December 9, 1953.

공교육에서 분리를 의무화하거나 용인하고 있는 주의 법무부 장관 역시 법정조언자(amici curiae, 法廷助言者)로서 1954년 9월 15일까지 요청에 따라 출석이 허용되며, 1954년 10월 1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법원은 이상(以上)과 같이 명령한다.

* 1952년 12월 9-10일에 1심, 1953년 12월 7-8일에 2심이 이루어지고 미합중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동부 지방법원에서 항고된 사건번호 2번 브릭스 외 대엘리엇 외 사건(No. 2, Briggs et al. v. Elliott et al.), 1952년 12월 10일에 1심, 1953년 12월 7-8일에 2심이이루어지고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서항고된 사건번호 4번 데이비스 외 대 버지니아주프린스 에드워드 군 교육위원회 외 사건(No. 4, Davis et al. v. County School Board of Prince Edward County, Virginia, et al.), 1952년 12월 11일에 1심, 1953년 12월 9일에 2심이 이루어지고 델라웨어 주 대법원으로이송명령이 내려진 사건번호 10번 겝하트 외 대 벨튼외 사건(No. 10, Gebhart et al. v. Belton et al.)에 대한판결도 위 판결로 갈음한다.

John F. Kennedy: Inaugural Address (1961) / 32. 존 F. 케네디: 취임사 (1961)



One of the most eloquent of America's Presidents was the youthful John Fitzgerald Kennedy, whose career came tragically to an end with his assassination in Dallas, Texas, on November 22, 1963. In his Inaugural Address on January 20, 1961, he called for a spirit of resolution and sacrifice to meet the many challenges of the times. The address was a reaffirmation of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e First Inaugural Addresses of Jefferson and Wilson.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뛰어난달변가 중 하나였다. 케네디는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저격범의 손에 의하여 뜻하지 않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61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는 시대의 여러 도전에 대처하기위해 결단과 희생의 정신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연설은 제퍼슨과 윌슨의 첫 취임사에 명시된 원칙의 재확인이었다.

Vice President Johnson, Mr. Speaker, Mr. Chief Justice, President Eisenhower, Vice President Nixon, President Truman, reverend clergy, fellow citizens, we observe today not a victory of party, but a celebration of freedom--symbolizing an end, as well as a beginning--signifying renewal, as well as change. For I have sworn before you and Almighty God the same solemn oath our forebears prescribed nearly a century and three quarters ago.

The world is very different now. For man holds in his mortal hands the power to abolish all forms of human poverty and all forms of human life. And yet the same revolutionary beliefs for which our forebears fought are still at issue around the globe--the belief that the rights of

친애하는 존슨 부통령, 의장님, 대법원장님, 아이젠하워 대통령, 닉슨 부통령, 트루만 대통령, 목사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자유의 제전 - 시작뿐 아니라 종결도 상징하고 변화뿐아니라 쇄신도 나타내는 - 을 거행합니다. 내가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조들이 거의 175년 전에 규정한 것과 똑같은 엄숙한 선서를 했기때문입니다.

세계는 이제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모든 형태의 빈곤과 모든 형태의 인간 생명을 없앨 수 있는 힘을 수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이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똑같은 혁명적 믿음 - 인간의 권리는 국가의 관대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 에 대해서는 전 man come not from the generosity of the state, but from the hand of God.

We dare not forget today that we are the heirs of that first revolution. Let the word go forth from this time and place, to friend and foe alike, that the torch has been passed to a new generation of Americans--born in this century, tempered by war, disciplined by a hard and bitter peace, proud of our ancient heritage--and unwilling to witness or permit the slow undoing of those human rights to which this Nation has always been committed, and to which we are committed today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Let every nation know, whether it wishes us well or ill, that we shall pay any price, bear any burden, meet any hardship, support any friend, oppose any foe, in order to assure the survival and the success of liberty.

This much we pledge--and more.

To those old allies whose cultural and spiritual origins we share, we pledge the loyalty of faithful friends. United, there is little we cannot do in a host of cooperative ventures. Divided, there is little we can do--for we dare not meet a powerful challenge at odds and split asunder.

To those new States whom we welcome to the ranks of the free, we pledge our word that one form of colonial control shall not have passed away merely to be replaced by a far more iron tyranny. We shall not always expect to find them supporting our view. But we shall always hope to find them strongly supporting their own freedom--and to remember that, in the past, those who foolishly sought power by riding the back of the tiger ended up inside.

To those peoples in the huts and villages across the globe struggling to break the bonds of mass misery, we pledge our best efforts to help them help themselves, for whatever period is required--not because the Communists may be doing it, not because we seek their votes, but because it is right. If a free society cannot help the many who are poor, it cannot save the few who are rich.

세계에 걸쳐 아직도 의견이 구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 첫 혁명의 계승자라는 것을 차마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친구와 적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그 횃불이 새로운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알립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미국인들은 금세기에 태어나 전쟁으로 단련되고 고되고 쓰라린 평화에 의해 훈련되고 고래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며 이 나라가 언제나 전념해 왔고 또 오늘 우리가 국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전념하고 있는 인권이 서서히 파멸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방치하지 않을 사람들이란 것을 알립시다.

우리가 자유의 생존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고 어떤 짐도 감내하고 어떤 고난에도 맞서며 친구라면 누구든지 지지하고 적이라면 누구든지 반대할 것이란 점을 우리에게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간에 모든 국가에 알립시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서약합니다. 그리고도 서약할 것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정신적 기원을 공유하는 저 오랜 동맹국들에게 우리는 충실한 친구로서의 충성을 서약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함께 해내지 못할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열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불화와 분열로는 강력한 도전과제에 감히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해 마지않는 신생 국가들에게 우리는 한 가지 형태의식민 통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지 훨씬 가혹한 독재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이 국가들이 항상 우리의 의견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하기를 바라고, 또 과거에어리석게도 호랑이의 잔등에 올라타고서 권력을 노렸던 자들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항상기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오두막과 촌락에서 대량 빈곤의 속박을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 국민들에게 우리는 아무리 오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를 To our sister republics south of our border, we offer a special pledge--to convert our good words into good deeds--in a new alliance for progress--to assist free men and free governments in casting off the chains of poverty. But this peaceful revolution of hope cannot become the prey of hostile powers. Let all our neighbors know that we shall join with them to oppose aggression or subversion anywhere in the Americas. And let every other power know that this Hemisphere intends to remain the master of its own house.

To that world assembly of sovereign states, the United Nations, our last best hope in an age where the instruments of war have far outpaced the instruments of peace, we renew our pledge of support--to prevent it from becoming merely a forum for invective--to strengthen its shield of the new and the weak--and to enlarge the area in which its writ may run.

Finally, to those nations who would make themselves our adversary, we offer not a pledge but a request: that both sides begin anew the quest for peace, before the dark powers of destruction unleashed by science engulf all humanity in planned or accidental self-destruction.

We dare not tempt them with weakness. For only when our arms are sufficient beyond doubt can we be certain beyond doubt that they will never be employed.

But neither can two great and powerful groups of nations take comfort from our present course--both sides overburdened by the cost of modern weapons, both rightly alarmed by the steady spread of the deadly atom, yet both racing to alter that uncertain balance of terror that stays the hand of mankind's final war.

So let us begin anew--remembering on both sides that civility is not a sign of weakness, and sincerity is always subject to proof.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Let both sides explore what problems unite us instead of belaboring those problems which divide us. 돕는 것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표를 얻고자 해서도 아니며,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사회가 빈궁한 다수를 도울 수 없다면 부유한 소수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경 남쪽의 자매 공화국들에게 우리는 특별한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진보를 위한 새로운 동맹에서 우리의 훌륭한 언사를 훌륭한 행동으로 옮기고 자유인들과 자유 정부들이 빈곤의 사슬을 끊는 것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희망의 혁명이 적대적 강대국들의 먹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 양 아메리카 어느 곳에서든 그들과 힘을 합쳐 침략이나 전복에 맞설 것이란 점을 우리의 모든 이웃국가들에게 알립시다. 그리고 이 반구는 변함없이 자기집의 주인 노릇을 할 작정임을 다른 모든 강대국들에게 알립시다.

주권국들의 세계 회의이고 전쟁의 수단이 평화의수단을 훨씬 앞지른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최상의 희망인 저 유엔에게, 우리는 유엔이 단지 독설의 광장으로 전략하는 것을 막고 신생국과 약소국에 대한 방패 역할을 강화하며 유엔의 권한이 미칠 수 있는지역을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지지 서약을 새로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수가 되고자 하는 저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이 아닌 요청을 전합니다. 즉 과학이 풀어놓은 음험한 파괴력이 온 인류를 계획된 또는 우발적인 자멸 속으로 몰아넣기 전에 양측 모두가 평화의 추구를 새로이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약점을 보여 그들을 유혹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무력이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할 때만 그 무기들이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대하고 강력한 두 국가 집단 중 어느 쪽도 우리의 현 방침에서 위안을 얻지는 못합니다. 양측 모두가 현대식 무기에 과중한 비용을 들이고 있고, 치명적 핵무기의 지속적 확산에 당연히 불안해 Let both sides, for the first time, formulate serious and precise proposals for the inspection and control of arms--and bring the absolute power to destroy other nations under the absolute control of all nations.

Let both sides seek to invoke the wonders of science instead of its terrors. Together let us explore the stars, conquer the deserts, eradicate disease, tap the ocean depths, and encourage the arts and commerce.

Let both sides unite to heed in all corners of the earth the command of Isaiah--to "undo the heavy burdens ... and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And if a beachhead of cooperation may push back the jungle of suspicion, let both sides join in creating a new endeavor, not a new balance of power, but a new world of law, where the strong are just and the weak secure and the peace preserved.

All this will not be finished in the first 100 days. Nor will it be finished in the first 1,000 days, nor in the life of this Administration, nor even perhaps in our lifetime on this planet. But let us begin.

In your hands, my fellow citizens, more than in mine, will rest the final success or failure of our course. Since this country was founded, each generation of Americans has been summoned to give testimony to its national loyalty. The graves of young Americans who answered the call to service surround the globe.

Now the trumpet summons us again--not as a call to bear arms, though arms we need; not as a call to battle, though embattled we are--but a call to bear the burden of a long twilight struggle, year in and year out, "rejoicing in hope, patient in tribulation"--a struggle against the common enemies of man: tyranny, poverty, disease, and war itself.

Can we forge against these enemies a grand and global alliance, North and South, East and West, that can assure a more fruitful life for all mankind? Will you join in that

하면서도, 양측 모두 인류 최후의 전쟁을 막아 주는 저불확실한 공포의 균형을 바꾸어 놓으려고 매진하기때문입니다.

그러니 양측 모두가 공손함이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며 진정을 증명하려면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새로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결코 두려워서 협상하지는 맙시다. 그렇지만 결코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양측 모두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문제를 갖고 고심하지 말고 우리를 합치게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탐구합시다.

양측 모두가 처음으로 군비의 감시와 제한을 위한 진지하고 세세한 제안들을 공식화하고 다른 국가들을 파괴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모든 국가들의 절대적 통제 하에 둡시다.

양측 모두가 과학의 가공할 힘 대신 경이로운 성과에 호소하도록 노력합시다. 함께 별을 탐구하고 사막을 정복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심해를 개발하며 예술과 교역을 장려합시다.

양측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 도처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고……압박 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이사야의 명령을 유념합시다.

그리고 만약 협력의 발판이 의심의 정글을 밀어낼수 있다면 양측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노력 - 새로운 힘의 균형이 아니라 강자는 정의롭고 약자는 안전하며 평화가 보존되는 새로운 법률의 세계 - 을 창출합시다.

이 모든 일이 백일 만에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일 만에도, 또 이 행정부의 임기 동안에도, 심지어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우리의 일생 동안에도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작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 방침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는 제 손보다는 여러분의 손에 더 많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미국인들은 각세대마다 나라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징집에 응한 젊은 미국인들의 무덤이 전세계를 에워쌉니다.

historic effort?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only a few generations have been granted the role of defending freedom in its hour of maximum danger. I do not shrink from this responsibility--I welcome it. I do not believe that any of us would exchange places with any other people or any other generation. The energy, the faith, the devotion which we bring to this endeavor will light our country and all who serve it--and the glow from that fire can truly light the world.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Finally, whether you are citizens of America or citizens of the world, ask of us the same high standards of strength and sacrifice which we ask of you. With a good conscience our only sure reward, with history the final judge of our deeds, let us go forth to lead the land we love, asking His blessing and His help, but knowing that here on earth God's work must truly be our own.

이제 다시 그 트럼펫 소리가 우리를 부릅니다. 비록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소리는 무장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전투태세는 갖추고 있지만 그것은 전투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갖고 고난을 견디어 내는" 기나긴 황혼의 투쟁 - 독재, 빈궁, 질병 및 전쟁 그 자체와 같은 인류 공통의 적들에 맞선 투쟁 - 의 짐을 연년세세 짊어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적들에 맞서 온 인류에게 보다 결실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응대한 전 세계 동맹을 남과 북, 동과 서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노력에 동참하겠습니까?

기나긴 세계 역사에서 단지 몇 세대만이 세계가 최대의 위험에 처한 시각에 자유를 수호할 역할을 부여 받았습니다. 나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나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어떤 다른 국민이나 어떤 다른 세대와 자리를 바꾸고 싶어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 노력을 위해 우리가 쏟는 정력과 신념과 헌신은 조국과 조국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앞길을 밝혀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진실로 세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들이 서로 힘을 합해 인간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미국 국민이건 세계 시민이건 간에 여기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과 똑같이 높은 수준의 힘과 희생을 요청 하십시오. 거리낌 없는 양심을 유일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삼고, 역사를 우리 행위의 궁극적 심판자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없이 여기 지상에서 진실로 우리 자신의 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지를 이끌어 나아갑시다.

John F. Kennedy: American University Commencement (1963) / 33. 존 F. 케네디: 아메리칸 대학교 연설 (1963)

President Kennedy's hope for peace ran like one continuous thread through his speeches. But never was it more stirringly enunciated than in this address at the American University in Washington D. C. on June 10, 1963.

케네디의 평화에 대한 희망이 한 오라기의 실처럼 그의 모든 연설에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 희망은 1963년 6월 10일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행한 이 연설에 가장 잘 천명되어 있다.



I have, therefore, chosen this time and place to discuss a topic on which ignorance too often abounds and the truth too rarely perceived. And that is the most important topic on earth: peace. What kind of peace do I mean and what kind of peace do we seek? Not a Pax Americana enforced on the world by American weapons of war. Not the peace of the grave or the security of the slave. I am talking about genuine peace, the kind of peace that makes life on earth worth living, the kind that enables men and nations to grow, and to hope, and to build a better life for their children -- not merely peace for Americans but peace for all men and women -- not merely peace in our time but peace in all time.

I speak of peace because of the new face of war. Total war makes no sense in an age where great powers can maintain large and relatively invulnerable nuclear forces and refuse to surrender without resort to those forces. It makes no sense in an age where a single nuclear weapon

본인은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고, 그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그러면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인 세계 평화를 논하기 위해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택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의 전쟁 무기가 세계에 강제하는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평화도 아니며, 노예적인 안전도 아닙니다. 본인이 말하는 평화는 순수한 평화, 지구상의 삶을 살 보람이 있게 해주는 평화, 세계의 인류와 국가들이 성장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한 보다 좋은 삶을 바라고 건설할 수 있게 해줄 평화 - 단순히 미국인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 우리시대의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평화입니다.

본인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전쟁이 새로운 양상을 띠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대규모의, 그리고 비교적 무찌르기 힘든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고, 이 핵무기를 써보지 않고서는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시대에는 전면전이란 무의미합니다. 핵무기 하나가 2차 대전 중 연합군의 전 공군이 사용했던 폭발력의거의 10배의 위력을 갖고 있는 시대에는 전면전이란무의미합니다. 핵 교전으로 생기는 치명적인 독이바람과 물과 흙과 씨앗에 의해 지구의 곳곳으로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로 운반되는시대에는 전면전이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합리적 인간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목적으로써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평화의 추구가 전쟁의 추구만큼 극적일 수 없음을 contains almost ten times the explosive force delivered by all the allied air forces in the Second World War. It makes no sense in an age when the deadly poisons produced by a nuclear exchange would be carried by wind and water and soil and seed to the far corners of the globe and to generations yet unborn.

I speak of peace, therefore, as the necessary, rational end of rational men. I realize that the pursuit of peace is not as dramatic as the pursuit of war, and frequently the words of the pursuer fall on deaf ears. But we have no more urgent task.

Some say that it is useless to speak of peace or world law or world disarmament, and that it will be useless until the leaders of the Soviet Union adopt a more enlightened attitude. I hope they do. I believe we can help them do it. But I also believe that we must reexamine our own attitude, as individuals and as a Nation, for our attitude is as essential as theirs.

First examine our attitude towards peace itself. Too many of us think it is impossible. Too many think it is unreal. But that is a dangerous, defeatist belief. I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war is inevitable, that mankind is doomed, that we are gripped by forces we cannot control. We need not accept that view. Our problems are manmade; therefore, they can be solved by man. And man can be as big as he wants. No problem of human destiny is beyond human beings. Man's reason and spirit have often solved the seemingly unsolvable, and we believe they can do it again. I am not referring to the absolute, infinite concept of universal peace and good will of which some fantasies and fanatics dream. I do not deny the value of hopes and dreams but we merely invite discouragement and incredulity by making that our only and immediate goal.

Let us focus instead on a more practical, more attainable peace, based not on a sudden revolution in human nature but on a gradual evolution in human institutions -- on a series of concrete actions and effective

알고 있고,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세계 평화나 국제법 또는 세계의 군축을 이야기해 보아야 소용없다고, 또 소련 지도자들이 보다 깨인 태도를 취할 때까지는 소용없으리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본인은 소련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본인은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또한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그들의 태도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평화 자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재검토해봅시다. 우리들 사이에는 평화가 불가능하다고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화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위험하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전쟁이란 불가피하며, 인류는 숙명적으로 멸망하게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함때문에 꼼짝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간에 의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걸린 어떤 문제도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정신력으로 겉으로 보기에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종종 해결하였으며, 또 우리는 인류가 그런 일을 다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본인은 범세계적 평화와 친선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한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희망과 꿈의 소중함을 부인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꿈을 우리의 유일한 목전의 목표로 삼는다면 오직 실망과 회의를 초래할 뿐입니다.

인간 본성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인간의 제도의 점진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한,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과 효과적인 합의를 agreements which are in the interest of all concerned. There is no single, simple key to this peace; no grand or magic formula to be adopted by one or two powers. Genuine peace must be the product of many nations, the sum of many acts. It must be dynamic, not static, changing to meet the challenge of each new generation. For peace is a process -- a way of solving problems.

With such a peace, there will still be quarrels and conflicting interests, as there are within families and nations. World peace, like community peace, does not require that each man love his neighbor, it requires only that they live together in mutual tolerance, submitting their disputes to a just and peaceful settlement. And history teaches us that enmities between nations, as between individuals, do not last forever. However fixed our likes and dislikes may seem, the tide of time and events will often bring surprising changes in the relations between nations and neighbors. So let us persevere. Peace need not be impracticable, and war need not be inevitable. By defining our goal more clearly, by making it seem more manageable and less remote, we can help all people to see it, to draw hope from it, and to move irresistibly towards it.

And second, let us reexamine our attitude towards the Soviet Union. It is discouraging to think that their leaders may actually believe what their propagandists write. It is discouraging to read a recent, authoritative Soviet text on military strategy and find, on page after page, wholly baseless and incredible claims, such as the allegation that American imperialist circles are preparing to unleash different types of war, that there is a very real threat of a preventive war being unleashed by American imperialists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that the political aims -- and I quote -- "of the American imperialists are to enslave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the European and other capitalist countries and to achieve world domination by means of aggressive war."

Truly, as it was written long ago: "The wicked flee when no man pursueth."

바탕으로 한 보다 실제적이고 성취하기 쉬운 평화에 주력합시다. 이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한 가지 단순한 해결책이나 한두 강대국이 채택할 웅대하거나 마술 같은 비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여러 국가의 산물이자 여러 가지 행동의 총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마다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며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평화란문제 해결의 한 과정,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있다 해도 가족이나 국가 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싸움과 이해 상충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평화란 지역사회의 평화와 같은 것이어서 모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필요로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이 분쟁을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면서 상호 관용 속에함께 살 것만을 필요로 합니다. 역사는 국가간의 적대관계란 개인간의 그것과도 같은 것이어서 영원히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고 싫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 국가간의 관계와 이웃간의관계에는 놀라운 변화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끈기 있게 평화를 추구해야합니다. 평화란 반드시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전쟁이란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또한 그 목표를 보다 잘 다룰 수 있고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인지하고 그로부터 희망을 얻어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재검토해봅시다. 선전원들이 쓰는 내용을 그들의 지도자들이실제로 믿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낙담하게 됩니다. 소련의 '군사 전략'에 관한 최근의 권위 있는 글을읽어보면 낙담하게 됩니다. 이 '군사전략'에 관한 글을보면, "미 제국주의자 집단이 색다른 형태의 전쟁을일으키려 하고 있다(든가)… 미 제국주의자들이소련에 대해서 예방 전쟁을 일으킬 위협이 실제로존재한다(든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적은유럽 및 기타 지역의 자본주의 국가를 경제적,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는데 있다(든가)… 침략 전쟁을

Yet it is sad to read these Soviet statements, to realize the extent of the gulf between us. But it is also a warning, a warning to the American people not to fall into the same trap as the Soviets, not to see only a distorted and desperate view of the other side, not to see conflict as inevitable, accommodation as impossible, and communication as nothing more than an exchange of threats.

No government or social system is so evil that its people must be considered as lacking in virtue. As Americans, we find communism profoundly repugnant as a negation of personal freedom and dignity. But we can still hail the Russian people for their many achievements in science and space, in economic and industrial growth, in culture, in acts of courage.

Among the many traits the peoples of our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none is stronger than our mutual abhorrence of war. Almost unique among the major world powers, we have never been at war with each other. And no nation in the history of battle ever suffered more than the Soviet Union suffered in the Second World War. At least 20 million lost their lives. Countless millions of homes and families were burned or sacked. A third of the nation's territory, including two thirds of its industrial base, was turned into a wasteland -- a loss equivalent to the destruction of this country east of Chicago.

Today, should total war ever break out again -- no matter how -- our two countries will be the primary target. It is an ironic but accurate fact that the two strongest powers are the two in the most danger of devastation. All we have built, all we have worked for, would be destroyed in the first 24 hours. And even in the cold war, which brings burdens and dangers to so many countries, including this Nation's closest allies, our two countries bear the heaviest burdens. For we are both devoting massive sums of money to weapons that could be better devoted to combat ignorance, poverty, and disease. We are both caught up in a vicious and dangerous cycle, with suspicion on one side breeding suspicion on the other, and

일으켜 세계를 지배하려 획책하고 있다"는 따위의 허무 맹랑한 주장이 페이지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옛 말대로, "악인은 아무도 추적하지 않아도 도망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인의 글을 읽고 우리 양국 사이에 이처럼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면 서글픕니다. 그러나 이는 소련인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왜곡되고 절망적인 면만을 보지 말라는,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화해를 불가능한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그리고 의사 전달을 단순한 위협의 교환으로만 보지 말라는 미국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국민에게 미덕이 없다고 보아야 할 만큼 악독한 정부나 사회체제란 없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거부하는 심히 역겨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 국민이 과학, 우주 분야에서, 경제 및 산업 발전에서, 문화와 용기 있는 행동에서 많은 업적을 올린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강한 특성은 우리가 서로 전쟁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강대국 중우리 양국이 서로 전쟁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별나기까지 한 일입니다. 전쟁 사상 어느 나라도 소련이 2차대전 중에 입은 만큼 큰 피해를 입은 일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자는 적어도 2천만 명은됩니다. 무수한 집과 농장이 소각되거나 약탈되었습니다. 그 공업 기반의 거의 3분의 2를 포함하여 전국토의 3분의 1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따지자면 시카고 동편의 국토가 황폐화한 것과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전면전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찌 됐건 우리 두 나라가 주도적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두 최강국이 황폐화의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은 반어적이면서도 정확한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처음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건설해 놓은 모든 것, 우리가 일해온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들을 포함하여

new weapons begetting counter-weapons. In short, bo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the Soviet Union and its allies, have a mutually deep interest in a just and genuine peace and in halting the arms race. Agreements to this end are in the interests of the Soviet Union as well as ours. And even the most hostile nations can be relied upon to accept and keep those treaty obligations, and only those treaty obligations, which are in their own interest.

So let us not be blind to our differences, but let us also direct attention to our common interests and the means by which those differences can be resolved. And if we cannot end now our differences, at least we can help make the world safe for diversity. For in the final analysis, our most basic common link is that we all inhabit this small planet. We all breathe the same air. We all cherish our children's futures. And we are all mortal.

Third, let us reexamine our attitude towards the cold war, remembering we're not engaged in a debate, seeking to pile up debating points. We are not here distributing blame or pointing the finger of judgment. We must deal with the world as it is, and not as it might have been had the history of the last 18 years been different. We must, therefore, persevere in the search for peace in the hope that constructive changes within the Communist bloc might bring within reach solutions which now seem beyond us. We must conduct our affairs in such a way that it becomes in the Communists' interest to agree on a genuine peace. And above all, while defending our own vital interests, nuclear powers must avert those confrontations which bring an adversary to a choice of either a humiliating retreat or a nuclear war. To adopt that kind of course in the nuclear age would be evidence only of the bankruptcy of our policy -- or of a collective death-wish for the world.

To secure these ends, America's weapons are non-provocative, carefully controlled, designed to deter, and capable of selective use. Our military forces are committed to peace and disciplined in self-restraint. Our diplomats are instructed to avoid unnecessary irritants and purely rhetorical hostility. For we can seek a relaxation of tensions without relaxing our guard.

많은 나라들에게 부담과 위험을 안겨주는 냉전에서조차 우리 두 나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우리는 다 같이 무지와 빈곤과 질병을 근절하는데 쓰는 것이 더 좋을 막대한 돈을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위험한 악순환 속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한쪽의 의심은 상대방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무기는 또 그에 대응하는 무기를 낳게 됩니다.

요컨대, 미국과 그 맹방, 소련과 그 맹방은 다 같이 정당하고, 순수한 평화에 대해, 그리고 군비 경쟁을 막는데 대해 서로 깊은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이 목적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뿐 아니라 소련에게도 이익이 되며, 심지어 가장 적대적 국가들도 그런 조약 의무를 받아들여 지킬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조약 의무는 그들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견에만 집착하지 말고, 공동의 이익과 그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에 주의를 돌립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이견을 지금 없앨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는 세계를 다양성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공동의 유대는 우리 모두가 이 조그마한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서 논쟁을 하여 쟁점을 늘리려 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냉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재검토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남을 비난하거나 삿대질하여 시비를 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다루어야지, 지난 18년 동안의 역사가 달랐더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권 내의 건설적인 변화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책을 가능케 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참을성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 knows, will never start a war. We do not want a war. We do not now expect a war. This generation of Americans has already had enough -- more than enough -- of war and hate and oppression. We shall be prepared if others wish it. We shall be alert to try to stop it. But we shall also do our part to build a world of peace where the weak are safe and the strong are just. We are not helpless before that task or hopeless of its success. Confident and unafraid, we must labor on--not towards a strategy of annihilation but towards a strategy of peace.

있게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에 동의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고, 핵 강대국들은 상대방을 굴욕적인 후퇴 아니면 핵전쟁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대결을 피해야 합니다. 핵 시대에 그런 노선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책의 실패 아니면 전세계가 모두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무기는 비도발적이며, 주의 깊게 통제되고, 핵 억지를 위해 고안되었고,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평화를 다짐하는 것이며, 자제의 기강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관들은 불필요한 자극과 공연한 적대적 언사를 삼가도록 훈련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서도 긴장 완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현 세대의 미국인들은 이미 전쟁과 증오와 억압을 지겹도록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자는 안전하고 강자는 의로운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 앞에 무력하지 않으며, 그 성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전멸의 전략이 아닌 평화의 전략을 향해 계속 노력 할 것입니다. As far as black Americans were concerned, the nation's response to the Supreme Court ruling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which declared segregation of schools illegal-- was agonizingly slow, and neither state legislatures nor the Congress seemed willing to help their cause along. Finally, President John F. Kennedy recognized that only a strong civil rights bill would put teeth into the drive to secur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for African Americans. On June 11, 1963, he proposed such a bill to Congress, asking for legislation that would provide "the kind of equality of treatment which we would want for ourselves." Southern representatives in Congress managed to block the bill in committee, and civil rights leaders sought some way to build political momentum behind the measure.

A. Philip Randolph, a labor leader and longtime civil rights activist, called for a massive march on Washington to dramatize the issue. He welcomed the participation of white groups as well as black in order to demonstrate the multiracial backing for civil rights. The various element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many of which had been wary of one another, agreed to participate.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the Congress of Racial Equality, the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the 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 and the Urban League all managed to bury their differences and work together. The leaders even agreed to tone down the rhetoric of some of the more militant activists for the sake of unity, and they worked closely with the Kennedy administration, which hoped the march would, in fact, lead to passage of the civil rights bill.

On August 28, 1963, under a nearly cloudless sky, more than 250,000 people, a fifth of them white, gathered near the Lincoln Memorial in Washington to rally for "jobs and freedom." The roster of speakers included speakers from

미국 흑인들이 염려한 대로, 피부색에 따른 학교의 분리를 불법으로 선언했던 브란운 대 교육위원회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의 반응은 고통스럽게도 더디게 나타났고 입법부나 의회에서도 그들의 소송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나서지 않았다.

결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하나의 강력한 민권 법안만이 유일하게 미국 흑인들을 위한 법의 평등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1963년 6월 11일, 그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과 같은 처수"를 제공하는 법률 제정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에 그러한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 남부 하원의원들은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가까스로 막아냈고, 민권 지도자들은 정치적 추진력을 세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았다.

노동 지도자이자, 오랜간 민권 운동가였던, 필립 랜돌프 (A. Philip Randolph)는 이것을 이슈화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거대한 행렬을 요청했다. 그는 민권에 대한 다인종의 지지를 증명하기 위해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 단체들의 참여를 환영했다. 민권운동의 다양한 집단들, 그 중에서도 서로 서로 경계했던 집단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동의했다. 국립유색인진흥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인종평등의회(Congress of Racial Equality), 남부 크리스찬 리더십 회의(The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학생 비폭력 조정 위원회(The 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 그리고 도시 연맹(Urban League) 모두 그들의 차이점을 뒤로하고 함께 도왔다. 단체의 지도자들은 심지어 통합을 위하여 투쟁적인 지도자들의 설득력을 보다 부드럽게 하자는데 동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케네디 행정부와 가깝게 일했으며, 사실상 그 거대한 행렬이 시민권 법안의 통과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1963년 8월 28일, 25만명 이상의 군중(그들의 1/5이 백인이었음)이 "책임과 자유"를 외치며 모였던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에 모였다. nearly every segment of society; labor leaders like Walter Reuther, clergy, film stars such as Sidney Poitier and Marlon Brando and folksingers such as Joan Baez. Each of the speakers was allotted fifteen minutes, but the day belonged to the young and charismatic leader of the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Dr. Martin Luther King Jr. had originally prepared a short and somewhat formal recitation of the sufferings of African Americans attempting to realize their freedom in a society chained by discrimination. He was about to sit down when gospel singer Mahalia Jackson called out, "Tell them about your dream, Martin! Tell them about the dream!" Encouraged by shouts from the audience, King drew upon some of his past talks, and the result became the landmark statement of civil rights in America; a dream of all people, of all races and colors and backgrounds, sharing in an America marked by freedom and democracy.

연설자들의 명부에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의 연설자들- 노동 지도자인 월터 로더(Walter Reuther), 성직자들, 시드니 포이티어(Sydney Poitier), 말론 브란도(Marlon Brando)등의 영화 배우, 조안 배츠(Joan Baez)와 같은 포크 가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연설자들에게는 15분간의 연설이 할당되어 있었으나, 이 날은 남부 크리스찬 리더십 회의의 젊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에게 속해있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Dr. Martin Luther King Jr.)는 차별이라는 체인에 묶여진 사회에서 그들의 자유를 깨닫고자 했던 미국 흑인들의 고통에 대해 짧고 다소 형식적인 낭송을 준비했다. 그가 막 자리에서 앉으려는 순간 가수펠 가수였던 마할리아 잭슨(Mahalia Jackson)이 "마틴! 그들에게 너의 꿈을 말해. 그들에게 꿈에 대해서 말해"라고 외쳤다. 청중들의 외침에 고무된 그는 그의 예전 연설 중 몇 가지를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의 민권에 대한 획기적인 진술이 되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로 마크된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 모든 인종, 피부색,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꿈.



On August 28, 1963, some 100 years after President Abraham Lincoln sign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freeing the slaves, a young man named Martin Luther King climbed the marble steps of the Lincoln Memorial in Washington, D.C. to describe his vision of America. More than 200,000 people-black and white-came to listen. They came by plane, by car, by bus, by train, and by foot. They came to Washington to demand equal rights for black people. And the dream that they heard on the steps of the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에 서명 한지약 1백 년 되는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이라는이름의 한 청년이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설명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대통령기념관의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20만 명이 넘는 흑인과 백인들이 경청하러 왔다. 그들은 비행기로, 자동차로, 버스로, 기차로 그리고 걸어서 왔다. 그들은 흑인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념관의 계단에서 들은 꿈은 한 세대의 꿈이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의 약속을 현실로 실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어둡고 쓸쓸한 인종 차별의 골짜기로부터 분기하여 인종적 정의의 햇볕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흑인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기 전까지 미국에는 안식도 평온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의 밝은 날이 오기까지 반란의 회오리바람이 계속 우리 국가의 Monument became the dream of a generation.

... Now is the time to make real the promises of democracy. Now is the time to rise from the dark and desolate valley of segregation to the sunlit path of racial justice.

There will be neither rest nor tranquility in America until the Negro is granted his citizenship rights. The whirlwinds of revolt will continue to shake the foundations of our nation until the bright day of justice emerges.

But there is something that I must say to my people, who stand on the warm threshold which leads into the palace of justice: In the process of gaining our rightful place, we must not be guilty of wrongful deeds.

The marvelous new militancy which has engulfed the Negro community must not lead us to a distrust of all white people, for many of our white brothers, as evidenced by their presence here today,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destiny is tied up with our destiny. And they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freedom is inextricably bound to our freedom...

Continue to work with the faith that unearned suffering is redemptive. Go back to Mississippi, go back to Alabama, go back to South Carolina, go back to Georgia, go back to Louisiana, go back to the slums and ghettos of our northern cities, knowing that somehow this situation can and will be changed.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 And if America is to be a great nation, this must

기반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흑인 사회를 집어 삼켜버린 놀라운 새 투지가 모든 백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오늘 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입증하듯, 우리의 많은 백인 형제들은 그들의 자유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유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의 영예는 보상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일합시다. 미시시피 주로, 앨라배마 주로, 루이지애나 주로 그리고 우리 북부 여러 도시의 빈민가와 게토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변화될 것임을 아십시오. . .

나는 오늘 나의 여러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박은 꿈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나라 국민들이 분기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삼는다"는 이 나라 국민 신조의 참 뜻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애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 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 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 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become true.

And so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from the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But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when this happens, when we allow freedom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그러므로 자유가 뉴햄프셔주의 거대한 언덕 위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뉴욕주의 강대한 산들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펜실베이니아주의 앨리게니 산맥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콜로라도 주의 눈 덮인 로키 산맥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캘리포니아 주의 굽이진 능선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가 조지아 주의 스톤 마운틴에서도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미시시피 주의 모든 언덕과 둔덕으로부터도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모든 산허리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우리가 자유가 울리게 할 때, 모든 크고 작은 마을에서,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서 자유가 울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인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이방들,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에 손을 잡고 옛흑인영가 "마침내 해방되었도다! 마침내해방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마침내해방되었도다!"를 노래 부를 수 있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Lyndon B. Johnson: On the Civil Rights Act (1964) /35. 린든 B. 존슨: 민권 연설 (1964)

Shortly after Vice President Lyndon B. Johnson succeeded John F. Kennedy as President, he moved forthrightly to help eradicate a persistent evil in American life: racial discrimination. Mr. Johnson urged the Congress to enact a law, proposed by President Kennedy in 1963, that would insure the voting rights of all Americans; make it a punishable offense to deny anyone entry into hotels, restaurants and other public places solely on the basis of race or religion; speed progress toward racially integrated schools; and provide a means of assuring equal job opportunities for all. After lengthy debate in the Congress, the bill was passed in 1964 by overwhelming majorities in both Houses. The law is the most sweeping civil rights measure ever enacted and constitutes a landmark in American legislative history. Before signing it, President Johnson broadcast a statement to the American people on July 2, 1964.

린든 B. 존슨 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승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곧바로 미국 사회의 고질적 약인 인종차별의 근절을 돕는 조치를 취했다. 존슨 대통령은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즉, 모든 미국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국민 어느누구에게라도 오로지 인종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호텔, 음식점 및 기타 공공 장소에서 입장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간주한다; 흑백통합학교의 추진을 가속화한다;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평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오랜 논란 끝에 1964년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제정법 사상 가장 포괄적인 시민권 법안이며, 그리고 미국의 입법 사상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1964년 7월 2일, 존슨 대통령은 이 법안을 서명하기 전 미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라디오로 발표했다.



...My Fellow Americans: I am about to sign into law the Civil Right Act of 1964. I want to take this occasion to talk to you about what that law means to every American.

…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본인은 1964년 시민권 법안에 서명, 발효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이 법안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국민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188년 전 이번 주에 용맹스러운 일단의 남성들이 자유를 위한 기나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국을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자유의 이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외세의 지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인간지사에서 정의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신성한 명예를 걸었습니다.

그 투쟁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날 먼 곳에 있는 대륙의 구석구석에서, 이들 미국의 애국자들의 이념은 아직도 자유에 굶주려 One hundred and eighty-eight years ago this week a small band of valiant men began a long struggle for freedom. They pledged their lives, their fortunes, and their sacred honor not only to found a nation, but to forge an ideal of freedom; not only for political independence, but for personal liberty;not only to eliminate foreign rule, but to establish the rule of justice in the affairs of men.

That struggle was a turning point in our history. Today in far corners of distant continents, the ideals of those American patriots still shape the struggles of men who hunger of freedom.

This is a proud triumph. Yet those who founded our country knew that freedom would be secure only if each generation fought renew and enlarge its meaning. From the Minutemen at Concord to the soldiers in Vietnam, each generation has been equal to that trust.

Americans of every race and color have died in battle to protect our freedom. Americans of every race and color have worked to build a nation of widening opportunities. Now our generation of Americans has been called on to continue the unending search for justice within our own borders.

We believe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Yet many are denied equal treatment. We believe that all men have certain unalienable rights. Yet many Americans do not enjoy those rights. We believe that all men are entitled to the blessings of liberty. Yet millions are being deprived of those blessings; not because of their own failures, but because of the color of their skin.

The reasons are deeply imbedded in history and tradition and the nature of man. We can understand ?without rancor or hatred?how this all happened.

But it cannot continue. Our Constitution, the foundation of our Republic, forbids it. The principles of our freedom forbid it. Morality forbids it. And the law I will sign tonight forbids it.

있는 인간들의 투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들은 각 세대가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투쟁할 때에만 자유가 보장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립전쟁 당시의 옛 전장 콩코드의 민병들로부터 월남에 나가있는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는 그러한 신임을 받을 만 했습니다.

여러 인종과 피부색의 미국 국민들이 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 인종과 피부색의 미국 국민들이 기회 확대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우리 국경 안에서 정의를 위한 탐구를 항구적으로 계속할 것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이 양도 불가의 권리들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러한 권리들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이 자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미국 국민들이 그들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피부색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간의 역사와 전통과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습니다. 우리는 원한이나 증오심 없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건국의 기초인 우리의 헌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원칙이 그것을 금합니다.

이 법안은 수개월 간의 가장 신중한 논쟁과 토론 끝에 탄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약 1년여 전 우리의 존경하는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상하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 법안을 찬성했습니다.

That law is the product of months of the most careful debate and discussion. It was proposed more than one year ago by our late and beloved President John. F. Kennedy. It received the bipartisan support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of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An overwhelming majority of Republicans as well as Democrats voted for it.

It has received the thoughtful support of tens of thousands of civic and religious leaders in all parts of this Nation. And it is supported by the great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The purpose of the law is simple. It does not restrict the freedom of any American so long as he respects the rights of others. It does not give special treatment to any citizen.

It does say that those who are equal before God shall now also be equal in the polling booths, in the classrooms, in the factories, and in hotels, restaurants, movie theaters, and other places that provide service to the public.

I am talking steps to implement the law under my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take care that the laws are faithfully executed.

First, I will send to the Senate my nomination of LeRoy Collins to be Director of the Community Relations Service. Governor Collins will bring the experience of a long career of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to the task of helping communities solve problems of human relations through reason and common sense.

Second, I shall appoint an Advisory Committee of distinguished Americans to assist Governor Collins in his assignment.

Third, I am sending Congress a request for supplement appropriations to pay for necessary costs of implementing the law, and asking for immediate action.

Fourth, already today in a meeting of my Cabinet this afternoon I directed the agencies of this Government to

이 법안은 이 나라 전역에서 수만 명의 시민 및 종교 지도자들의 사려 깊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미국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미국 국민 각자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미국 국민 어느 누구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자들은 투표장에서 도, 교실에서도, 공장에서도, 호텔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영화관에서도 그리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장소에서도 평등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법률의 충실한 집행을 돌봐야 하는 나의 헌법상의 의무에 의해 이 법을 실행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본인은 리로이 콜린즈 주지사의 지역사회국 국장 임명안을 상원에 회부합니다. 콜린즈 주지사는 지역사회가 인간관계 문제들을 이성과 상식에 의해 해결하는 일을 돕는 과업에 오랜 기간의 탁월한 공무원 생활 경험을 적용할 것입니다.

둘째로, 본인은 콜린즈 주지사의 임무를 돕기 위해 저명한 미국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임명합니다.

셋째로, 본인은 이 법의 실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추가 세출안을 의회에 송부,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넷째로, 본인은 오늘 오후 각료 회의에서 현 정부의 각 기관이 이 법에 의해 부여되는 새로운 책임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지체 없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진전 상황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렸습니다.

다섯째로, 본인은 당해 관리들에게 이 법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준법정신을 다지게끔 대표 단체들을 만나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fully discharge the new responsibilities imposed upon them by the law and to continue to do it without delay, and to keep me personally informed of their progress.

We must not approach the observance and enforcement of this law in a vengeful spirit. Its purpose is not to punish. Its purpose is not divide, but to end divisions; divisions which have all lasted too long. Its purpose is national, regional. Its purpose is to promote a more abiding commitment to freedom, a more constant pursuit of justice, and a deeper respect for human dignity.

We will achieve these goals because most Americans are law-abiding citizens who want to do what is right. That is why Civil Rights Act relies first on voluntary compliance, the on the efforts of local communities and States to secure the rights of citizens. It provides for the national authority to step in only when others cannot or will not do the job.

This Civil Rights Act is a challenge to all of us to go to work in our communities and our States, in our homes and in our hearts, to eliminate the last vestiges of injustice in our beloved America.

So tonight I urge every public official, every religious leader, every business and professional man, every working man, every housewife; I urge every American; to join in this effort to bring justice and hope to all our people; and to bring peace to our land.

My fellow citizens, we have come now to a time of testing. We must not fail.

Let us close the springs of racial poison. Let us pray for wise and understanding hearts. Let us lay aside irrelevant differences and make our Nation whole. Let us hasten that day when out unmeasured strength and our unbounded sprit will be free to do the great works ordained for this Nation by the just and wise God who is the Father of us all.

우리는 복수심에서 이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응징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분열이 아니라 너무 오래 계속되어 온 분열을 종식 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입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자유에 대한 보다 오래 지속되는 헌신, 정의의 보다 꾸준한 추구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보다 깊은 존중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준법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들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민권법이 1차적으로 자발적 준법에 의존하며, 2차적으로 지방의 지역사회나 각 주의 시민권 보장 노력에 의존하는 이유입니다. 이 법안은 기타 기관들이 이 과업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 연방 정부의 권한이 개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법은 각 지역사회에서, 각 주에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하러 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의 불의의 마지막 잔재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본인은 모든 관리, 모든 종교 지도자, 모든 기업인 및 전문직 인사, 모든 근로자, 모든 주부, 즉 모든 미국민에게 우리 전국민에게 정의와 희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 국토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러한 노력에 참가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험의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 차별의 근원을 봉쇄해 버립시다. 슬기롭고이해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무 상관 없는 (인종적) 차이를 내버리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합시다. 우리의 무한한 힘과 우리의 속박되지 않은 정신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공정하고도슬기로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정해 주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자유로워질 날을 서둘러다가오게 합시다.

Jimmy Carter: United Nations Address (1977) / 36. 지미 카터: 유엔 연설 (1977)



Peace, arms control, a greater role for the Third World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a steadfast dedication to human rights were key elements in President Carter's foreign policy. The following is excerpted from the text of his address to the United Nations on March 17, 1977, eight weeks after he was sworn in as President.

평화, 무기 통제, 국제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제3세계의 보다 큰 역할, 그리고 인권에의 확고한 헌신 등은 카터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중심적인 요소다. 다음은 카터 대통령이 취임 후 8주 후인 1977년 3월 17일 유엔에서 행한 연설에서 발췌한 것이다.

...I see a hopeful world, a world dominated by increasing demands for basic freedoms, for fundamental rights, for higher standards of human existence. We are eager to take part in the shaping of this world.

But in seeking such a better world, we are not blind to the reality of disagreement nor to the persisting dangers that confront us. Every headline reminds us of bitter divisions, of national hostilities, of territorial conflicts, of ideological competition....

We can only improve this world if we are realistic about its complexities. The disagreements we face are deeply rooted and they often raise difficult philosophical …본인은 희망찬 세계가, 기본적 자유, 근본적 권리, 인간 존재의 보다 높은 기준에 대한 커져 가는 요구가 지배하는 세계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틀을 잡아가는 일에 참여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의견 차이가 있는 현실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 위험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신문의 헤드라인마다 우리에게 극심한 분열, 국가간의 적대 관계, 영토 분쟁, 이념 경쟁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처해야만 이 세계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s well as practical issues. They will not be solved easily nor quickly. The arms race is now imbedded in the fabric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can only be contained with the greatest of difficulty. Poverty and inequality are of such monumental scope that it will take decades of deliberate and determined effort even to improve the situation.

I stress these dangers and these difficulties because I want all of us to dedicate ourselves to a prolonged and persistent effort designed

- * To maintain peace and to reduce the arms race.
- * To help build a better and more cooperativ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 * To work with potential adversaries as well as with our friends to advance the cause of human rights.

In seeking these goals, I recognize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world. We can sometimes help others resolve their differences, but we cannot do so by imposing our own particular solutions.

···While the ultimate goal is for all nuclear powers to end testing, we do not regard this as a prerequisite for suspension of tests by the principal nuclear powers···

However, the effort to contain the arms race is not a matter just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lone. There must be a wider effort to reduce the flow of weapons to all the troubled spots of this globe. Accordingly, we will try to reach broader agreements among producer and consumer nations to limit the export of conventional arms, and we will take initiatives of our own since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arms suppliers of the world.

We are deeply committed to hal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We will undertake a new effort to reach multilateral agreements, designed to provide legitimate supplies of nuclear fuels while controlling poisonous and dangerous atomic wastes…But the search for peace also means the search for justice.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before us as a

당면하고 있는 이견은 그 뿌리가 깊으며, 가끔 실제에 있어서 뿐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문제들은 쉽게 혹은 빨리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비 경쟁은 이제 국제 문제의 바탕에 뿌리를 박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빈곤과 불평등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만도 수십 년에 걸친 신중하고 결의에 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위험과 난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노력에 헌신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즉,

- --평화를 유지하고 군비 경쟁을 줄이고,
- --보다 낫고 협조적인 국제 경제 체제의 수립을 돕고.
- --인권의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우방뿐 아니라 잠재적인 적대 세력과도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본인은 미국 혼자서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이견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으나, 우리만의 특정한 해결책을 강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핵 보유국의 핵실험 중지이기는 하나, 우리는 이것을 주요 핵 보유국에 의한 실험 중지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비 경쟁의 억제 노력은 미국과 소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무기 생산국과 소비국이 보다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이 세계 주요 무기 공급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간 핵무기 확산 중지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연료의 합법적 공급과 위험한 유독 핵 폐기물 통제를 목적으로 한 다자 협정 체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할 것입니다. nation, and therefore one of our greatest opportunities, is to participate in molding a global economic system which will bring greater prosperity to the people of all countries...

I also believe that the developing countries must acquire fuller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conomic decision-maker process...

We must use our collective natural resources wisely and constructively....We must also recognize that the world is facing serious shortages of energy. This is a truly global problem. For our part, we are determined to reduce waste and to work with others toward a proper sharing of the benefits and costs of energy resources.

The search for peace and justice means also respect for human dignity. All the signatories of the U.N. Charter have pledged themselves to observe and respect basic human rights. Thus, no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an claim that mistreatment of its citizens is solely its own business. Equally, no member can avoid its responsibility to review and to speak when fortune or unwarranted deprivation of freedom occurs in any part of the world.

The basic trust of human affairs points toward a more universal demand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United States has a historical birthright to be associated with this process.

We in the United States accept this responsibility in the fullest and most constructive sense. Ours is a commitment, not just a political posture. I know perhaps as well as anyone that our ideals in the area of human rights have not always been attained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American people have an abiding commitment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se ideals. We are determined, therefore, to deal with our deficiencies quickly and openly.

In our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ese mutual concerns will be reflected in our political, our cultural and our economic attitudes. 그러나 평화 추구는 또한 정의의 추구도 뜻합니다. 한 국가로서 우리가 당면한 하나의 대도전, 그리고 따라서 우리의 위대한 하나의 기회는 모든 나라 국민의 번영을 더욱 확대할 세계적 경제제도 형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개도국이 세계 경제 의사 결정 과정에 보다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천연 자원을 슬기롭고도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가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 국제적 문제입니다. 우리 미국으로서는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의 혜택과 비용을 적절히 서로 나누어 갖는 방향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화와 정의에 대한 추구는 또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유엔 헌장의 모든 서명국은 기본 인권을 준수하고 존중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어떠한 회원국도 자국민의 학대는 오로지 국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엔의 어떠한 회원국도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고문이나 부당한 자유의 박탈이 있을 때 이것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말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사의 기본 방향은 기본 인권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요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 관계할 수 있는 역사적 생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가장 완전하고 건설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책임을 수용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공약이며, 정치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본인도 인권 분야에서의 우리의 이상이 미국에서 언제나 실현되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은 이러한 이상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흡한 점을 신속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These then are our basic priorities as we work with other members to strengthen and to improve the United Nations:

- * We will strive for peace in the troubled areas of the world.
- * We will aggressively seek to control the weaponry of war.
- * We will promote a new system of international economic progress and cooperation.
- * We will be steadfast in our dedication to the dignity and well-being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우리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상호 관심사들이 우리의 정치, 문화 및 경제적인 태도에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유엔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리의 우선적 기본 목표가 됩니다.

- *우리는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전쟁 무기의 통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 *우리는 새로운 국제 경제 발전 및 협력 체제를 추진하다.
- *우리는 세계 전 지역 국민들의 존엄과 안녕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United States Supreme Court: 25 Historic Decisions / 37. 미국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대표 25 판결)



Rulings and interpretations by the Supreme Court, since its creation in 1789, have given substance to the basic structure of the democratic system and contributed to its development. Among the many decisions which have profoundly influenced the country's history are those described below:

1789년에 창설된 이래로 미국 대법원은 그 판결과 해석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구조에 내용을 부여하여 그 발달에 기여하였다. 다음은 미국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온 많은 판결 중의 일부이다.

Marbury v. Madison (1803)

Chief Justice John Marshall claimed for the Supreme Court the power of judicial review of acts of Congress. Since that time the Court has had authority to declare unconstitutional both State and Federal laws which it deems "repugnant to the Constitution."

McCulloch v. Maryland (1819)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s a government of the people and its powers emanate from the people. Though its powers are limited, where authority is granted, it is granted fully and completely; in that realm where it 마버리 대 매디슨 (1803).

존 마샬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의회가 제정한 법을 재심리할 권한을 요구하였다. 그때부터 대법원은 그가 "헌법과 모순된다"고 간주하는 주법과 연방법 모두를 위헌이라고 선언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맥큐로크 대 메릴랜드 주(1819).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의 정부이며, 또 그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그 권력은 제한되기는 하나, 권한이 부여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또 완전하게 허여되며, 또 정부는 그 권한을 갖는 영역에서 has authority, it is supreme. In achieving its legitimate ends, it may use whatever means are appropriate.

Commonwealth v. Hunt (1842)

This was a decision not of the Supreme Court but of the highest court of the State of Massachusetts. In the Federal system most matters having to do with labor were long supposed to be entire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s. This decision laid down the principle, never thereafter abandoned, that labor had a right to organize in unions, and that a strike for higher wages or shorter hours was not a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but a legitimate labor activity.

Ex Parte Milligan (1866)

In unanimous decision the Court ruled that military courts should be denied the right to try civilians, reaffirming the "birthright of every American citizen, when charged with crime, to be tried and punished according to the common law." The decision further stated that both the military and the President are controlled by law and have their appropriate spheres to duty which must not be exceeded.

Munn v. Illinois (1876)

This famous decision sustained the right of the States to regulate the rates charged by warehouses for grain storage. In the course of the opinion Chief Justice Waite laid down the principle, now universally accepted, that wherever property is "affected with a public interest" the public has an interest in its use and may regulate that use.

Ex Parte Yarbrough (1884)

In a powerful opinion by Justice Samuel F. Miller, the Court upheld Congress' power to punish as a crime against Federal law private interference with the right of any American citizen to vote in a Federal election. It made clear that the right of all Americans to vote for their representatives in Congress must be protected.

최고이다. 정부는 합법적 목적 달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 헌트(1842).

이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주 최고 법원의 판결이다. 연방 제도에서 근로와 관계 있는 대부분의 사항은 오랫동안 주의 전적 관할 하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할 권리를 가지며, 또 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파업은 "(가격 유지를 위한) 거래 제한의 공모"가 아니라 합법적 근로 활동이라는 원칙을 정하였다. 그 후 이것은 포기(抛棄)된 적이 없다.

밀리간 단독 소송(1866).

대법원은 모든 미국 시민의 생득권을 재확인하면서, 군법회의가 민간인을 재판하는 권리를 부인해야 하며, 범죄 혐의를 갖는 민간인은 보통 법에 따라 재판되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또한 군부와 대통령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또 벗어나서는 안 되는 적절한 직무 영역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먼 대 일리노이 주(1876).

이 유명한 판결은 창고업자가 양곡 저장에 부과하는 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주의 권리를 확인하였다. 그 심리 과정에서 웨이트 대법원장은 재산이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경우에나 국민은 그 재산의 사용에 이해관계를 지니며 그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지금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원칙을 정하였다.

야브로 단독 소송(1884).

밀러 대법관의 설득력 있는 견해에 따라서 대법원은 연방 선거에서의 모든 미국 시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사적 방해를 연방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연방 회의의 권한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모든 미국민들이 연방 의회에 보낼

Muller v. Oregon (1908)

This decision, sustaining the right of a State to regulate the working hours of women, is the judicial foundation for much of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both State and national, of the past half century.

Pierce v. Society of Sisters (1925)

The State of Oregon had required by law that all children attend public schools. This decision held that such a requirement was an improper interference with religious freedom, and that the State could not hamper or destroy private or parochial schools.

Grosjean v. American Press Company (1935)

The State of Louisiana laid a discriminatory tax on newspapers with a circulation of over twenty thousand copies. The Court held that this tax violated the guarantee of freedom of the press in the Firs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at amendment was "to preserve an untrammeled press as a vital source of information."

West Coast Hotel Co. v. Parrish (1937)

Chief Justice Hughes delivered a Court opinion establishing the validity of minimum wage laws. In time minimum wage standards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and, today, a Federal Minimum Wage Act guarantees a wage of not less than \$2.20 an hour for workers employed by busines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NLRB v. Jones and Laughlin Steel Corp (1937)

In a decision guaranteeing the workers'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forbidding employers to interfere with the formation of labor unions, the Supreme Court encouraged the rapid growth of modern labor unions. Today, over one-fourth of America's total labor force are members of trade unions.

대표를 투표에 의해 선출할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뮬러 대 오리건 주(1908).

여성의 근로 시간을 규제할 수 있는 주권을 확인한 이 판결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나온 대부분의 주 및 전국적 사회복지 입법의 사법적 근거가 되었다.

피어스 대 부인협회(1925).

오리건 주는 모든 어린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법으로 요구하였다. 대법원은 그 같은 요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치 못한 간섭이며, 주는 사립학교나 교구 학교를 방해하거나 폐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로스진 대 아메리칸 프레스 회사(1935).

루이지애나 주는 2만부 이상의 발행 부수를 갖는 신문사들에게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였다. 대법원은 이 세금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한다고 판정하였다. 그 조항의 목적은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방해되지 않는 언론을 보전하는데" 있었다.

웨스트 코스트 호텔 대 패리쉬(1937).

휴즈 대법원장은 최저 임금법의 합법성을 확립하는 판결을 내렸다. 얼마 안되어 최저 임금제는 전국적으로 퍼졌으며, 오늘날 연방 최저 임금령은 주간 상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저 2달러 20센트를 보장하고 있다.

전국노동쟁의 조정국 대 존즈 앤드 롤린 제철회사(1937).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노조 조직 간섭을 금지하는 판결로, 대법원은 현대식 노조의 급속한 성장을 장려하였다. 오늘날 미국 근로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노조원이다.

U.S. v. Darby Lumber Co. (1941)

Earlier efforts to outlaw child labor by Federal legislation had proved abortive. This decision sustained the provision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utlawing the labor of children in industry, as a proper exercise of Congressional control over commerce.

West Virginia v. Barnette (1943)

The State of West Virginia had required a flag salute from all children in public schools; children who refused to salute the flag could be dismissed from school. The Court held that to require a flag salute from the children of parents who had religious scruples against such a gesture-in this case the Jehovah's Witnesses-was a violation of the freedom of religion guaranteed by the First Amendment.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

This case tested the validity of State laws that provided for racial segregation in the public school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eparate educational facilities are inherently unequal." It followed this ruling with another on May 31, 1955, which established the principle that desegregation must proceed with "all deliberate speed." The lower courts were assigned the responsibility for applying this principle. These rulings started a substantial change in the legal status of Negroes not only in education but in other fields as well.

Gideon v. Wainright (1963)

In this case (and others similar to it), the principle was established that a citizen being tried in a State court must be provided counsel to assure the same protection of his rights that he enjoys in a Federal court, by virtue of the first te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Kirkpatrick v. Preisler (1968)

미국 대 다비 목재회사(1941).

연방 입법에 의해 미성년자 근로를 불법화하려던 초기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이 판결은 연방의회에 의한 상업 통제의 한 적절한 행사로서 공장에서 미성년자 근로를 불법화한 공정노동기준법의 규정을 확정하였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대 바네트(1943).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공립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것을 요구했고, 국기에 대해 경례하기를 거부하는 어린이를 퇴학 시킬 수 있게 했었다. 대법원은 그러한 경례를 종교적으로 꺼리는 부모의 어린이에게(이 경우는 여호와의 증인)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요구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브라운 대 토페카 교육위원회(1954).

본건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을 규정한 주법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래부터 불평등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재정 후 1955년 5월 31일에 내리 또다른 판결은 인종차별 철폐를 "아주 침착한 속도"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하급법원에게이 원칙을 적용할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 같은 판결들로서 교육에서 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흑인의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기데온 대 웨인라이트(1963).

본건(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은 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에게 수정헌법 첫 10개조의 권한으로 그가 연방 법원에서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보호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커크패트릭 대 프레이슬러(1968).

In a landmark decision, the Court extended its one-vote doctrine to local governments.

Jones v. Mayer (1968)

The ruling in this case prohibited racial discrimination in all sales and rentals of real estate, turning the century-old civil-rights law of 1866 into a sweeping fairhousing statute.

Benton V. Maryland (1969)

The Court held that the Fif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stating that one cannot be tried twice for the same crime, applies to the separate states as well as to the Federal Government.

Chimel v. California (1969)

In this case the Court ruled that the Fourth Amendment requires a warrant for any search incident to an arrest that goes beyond the suspect's immediate surroundings.

Swann v. Charlotte-Mecklenberg (1971)

In an extension of the school desegregation decision of 1954, the Court ruled that State-imposed segregation was a violation of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Argersinger v. Hamlin (1972)

The Court ruled that no indigent person may be jailed for a petty offense unless he has been furnished free legal counsel or has waived his right to an attorney. This wa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to extend the Sixth Amendment's guarantee of counsel to misdemeanor trials that usually carries a punishment of less than a year in prison.

Communist Party of Indiana v. Whitcomb (1974)

획기적인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1표주의를 지방정부로 확대 적용하였다.

존즈 대 메이어(1968).

본건에서의 판결은 100년 된 1866년의 민권법을 포괄적인 공정가옥 매매법으로 수정하여 모든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였다.

벤튼 대 메릴랜드 주(1969).

대법원은 누구도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수정 헌법 제5조는 개별 주와 더불어 연방정부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치멜 대 캘리포니아 주(1969).

본건에서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4조에 따라 구속을 초래하는 수색이 혐의자의 가까운 주변을 넘어서는 경우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스완 대 샤로테-메클렌버그(1971).

대법원은 1954년의 학교 인종차별 철폐 판결을 확대하여 주가 강요하는 인종차별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한 보호"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아거싱거 대 햄린(1972).

어떠한 빈곤한 사람도 그에게 무료 변호인이 제공되거나 자기 권리를 한 대리인에게 넘겨주지 않은 한, 경범죄로 투옥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이것은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경범죄에 대한 수정 헌법 제6조의 변호 보장 조항을 확장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다.

인디애나 공산당 대 위트콤(1974).

대법원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미국정부를 전복하려

The Court held unconstitutional a State law prohibiting access to the ballot to political parties not willing to file an affidavit renouncing overthrow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y force or violence.

Corning v. Brennan (1974)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women must receive equal pay for equal work, whether or not men doing the same job, work different shifts or claim special privileges.

Buckley v. Valleo (1976)

The Supreme Court upheld government financing of presidential campaigns and campaign contribution disclosure requirements. Ceilings on political contributions were also upheld while limits on political expenditures (except for presidential candidates who accepted federal subsidies) were struck down.

Franks v. Bowman (1976)

The Supreme Court rule that individuals denied employment because of race, and then later hired by the same organization, should be awarded the seniority and benefits they would have accumulated if hired in the first instance. 시도하지 않겠다고 선서하는 구술서를 제출할 용의가 없는 정당이 투표 용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코닝 대 브레난(1974).

여성 근로자는 그와 동일한 일을 하는 남성 근로자가 상이한 교대시간에 일하건 또는 특전을 요구하건 관계없이 동등한 작업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버클리 대 발레오(1976).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자금의 정부 공여와 선거자금 기부금의 공표 의무를 확인하였다. 정치기금의 상한선도 확인했으며 한편 정치자금지출제한은 연방 보조금을 수락한 대통령 입후보자를 제외하고 철폐되었다.

프랭크스 대 보우먼(1976).

대법원은 인종 문제로 고용을 거부당한 개인이 나중에 동일한 기관에 의해 고용되는 경우, 처음에 고용되었을 경우 축적했을 근속연수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자료 제공처 : 의회도서관.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irs Section U.S. Embassy Seoul

10, Namyoung-dong Yongsan-gu Seoul 140-160 TEL: 02)397-4662 FAX: 02)795-3606 E-mail: ircseoul@state.gov Web Site: http://seoul.usembassy.gov